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박사학위논문

국왕교육의 관점에서 본 조선전기 경연제도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박 상 진

국왕교육의 관점에서 본 조선전기 경연제도 연구

지도교수 우 용 제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전 공

박 상 진

박상진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_____ 곽 덕 주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박 종 배 _____ (인)

위 원 _____ 지 정 민 _____ (인)

위 원 _____ 이 상 무 _____ (인)

위 원 _____ 우 용 제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 전기 경연의 성립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선의 경연은 서연과 더불어 대표적인 국왕 교육 제도로서, 국왕을 초월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 보고 성리학적 교양을 갖추도록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제도의 운영이 실제 어떤 방향으로 이뤄졌는지에 관해 기존 연구 상으로 그 어떠한 합의도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경연은 그 제도적 양태(樣態) 상 교육 활동과 정치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도가 유래했던 중국보다 더 엄정하게 운영해온 점은 조선 왕조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제도 그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조선이 국왕 교육을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게 된 까닭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연구의 방향을 잘 잡기 위해 먼저 그 제도적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그 후 관련된 주제들을 조금 더 주밀하게 다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연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특징은 여말선초의 관제 개혁과 조선 개국의 연관성이다. 신진 사대부들은 이미 여말부터 꾸준히 국왕 교육의 정제화(定制化)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말 위화도회군 이후 신흥 무장 세력과 연합한 이후 기존 관제의 정비로써 개국을 준비하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조선은 경연과 서연에 관한 기구를 국초부터 운영할 수 있었으나, 짧은 제도 정비 기간은 곧바로 운영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즉, 사대부들은 훈도(薰陶)를 명분으로 국왕 교육 제도의 활성화(日御經筵)를 도모한 반면, 정작 국왕들은 사적인 교류에 치우친 채 사대부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연히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제1차 왕자의 난 직후 집현전 복설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실제 정착에 이르지 못했고, 태종 등극 후 2차례에 걸쳐 다시 재론이 있었지만 이 역시도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사대부들의 이런 노력은 단지 논의를 통해 제도 개편을 탐색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정도였다.

오히려 이런 탐색이 제대로 빛을 발했던 시기는 세종 때였다. 그는 기존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겸관인 경연관들과 함께 점진적으로 교육에 참여시키는 한편, 고제상정(古制詳定)에도 참여시키고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허용하는 등, 연구 활동의 참여와 수행을 충분히 뒷받침해줌으로써 학사 개인과 기구의 역량을 크게 강화시켰다. 이를 통해 집현전은 겸관들보다 여러 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여 나갔으며, 마침내 재위 후반, 국왕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전임 기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집현전은 고문, 연구 - 교육과 시사(정무협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경연 기구만의 전형성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국왕 교육 과정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기대했던 사대부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였던 것이다. 다만 여기서 이후 발

전 방향을 두고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게 되고, 세종이 이에 종신전업(終身專業)과 내부 승진에 의한 장기근속을 요구한 것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였다.

이후 이는 경연 제도 자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세종은 문종의 대리청정을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세자첨사원을 설치하여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관행은 집현전을 대간(臺諫), 삼관(三館)과 더불어 언론 기구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그 결과 세조 초년에 발생한 단종 복위 사건으로 인해 집현전이 혁파됨으로써 경연 제도에도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세조와 예종은 각각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를 운영함은 물론, 이의 복설(復設)에 관한 논의까지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대부의 요구를 꺾어 국초부터 추구해온 교화의 방식을 훼손시켰던 것이다. 이로 인해 생긴 지배층 내부의 갈등은 다양한 후유증과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성종이 친정을 개시한 뒤 예문관을 분설(分設)하여 홍문관을 설치할 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한 마디로 세종 이후 운영 방향을 두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왕 교육 제도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종의 홍문관은 기존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시킨 완성형 기관이다. 성종은 경연 회복과 함께 담당 기구를 재건해야 한다는 사대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전업에 중점에 두고 장기근속을 추구하던 사대부와 달리 논핵과 규간까지 대폭 허용했다. 또한 성종은 특진관 제도의 신설을 통해 경연 주제의 시의성을 높이고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그 결과 공론 정치의 풍조가 일어나면서 경연 제도는 조선 정국의 중심이 되었고, 홍문관은 양사(兩司)와 더불어 언론 기관으로 완전히 정착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홍문관 낭관들을 청요로 만들어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교육과 정치의 융합이라는 경연의 운영 목적에도 일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성종 당시의 이 방식이 조선말까지 정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홍문관의 등장은 세조의 세자시강원과 더불어 조선의 국왕 교육을 주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

주 요 어 : 經筵, 日御經筵, 集賢殿, 親講, 弘文館, 規諫

학　　번 : 2010-30367

목 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문제 4

Ⅱ. 왕조 교체기 경연의 제도적 변화와 의미
1. 여말선초 경연 정례화 논란의 배경 13
2. 집현전의 복설과 경연 제도의 상관성 33
3. 소결 : 국왕 교육 정례화의 시작 45

Ⅲ. 경연 담당 기구의 등장
1. 경연 기구의 성립과 발전 48
2. 경연 기구의 운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과 영향 59
3. 소결 : 경연과 경연 기구의 제도적 전형성 형성 71

Ⅳ. 경연 제도의 위기와 극복
1. 경연의 존폐 위기와 지배층의 갈등 73
2. 위기의 극복과 경연 제도의 완성 89
3. 소결 : 조선 국왕 교육의 정립 108

Ⅴ. 요약 및 결론 112

참고문헌 122
ABSTRACT 127

표 목 차

표1 정종과 태종 당시 제안된 집현전 편제의 비교 43

표2 보문각의 편제 변화 51

표3 집현전의 직능과 연관성 71

표4 세종과 세조의 언론활동 비교 83

표5 단종과 성종의 경연청 구성 비교 98

표6 예문관 직제 변천 과정 100

표7 홍문관의 기능과 상호 연관성 107

Ⅰ. 서론

1. 문제제기

본 논문은 경연(經筵)을 중심으로 조선 전기[1] 국왕 교육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존재 의의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연은 송나라에서 유래하여 고려와 조선에서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제도로서, 국왕이 신하와 함께 경전 및 역사서의 강독[강론(講論)]과 정사에 관한 토론[논사(論思)][2]을 병행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의 경연은 중국에 비해 한층 진일보하여 사목(事目)이나 의주(儀註)의 마련에 그치지 않고 담당 기구의 설치로 착실한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런 일련의 모습은 국왕의 역할과 통치에 관한 당시 지배층의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모두가 새 왕조의 이념에 맞는 참된 국왕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제도를 고찰한다는 것은 곧 성리학적 정치에 관한 당시 사람들의 이상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조선이 교육과 정치를 어떻게 한 제도 안에서 병행하며 자연스럽게 공존시킬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즉, 국왕 교육은 분명 한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운영한 제도 중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활동의 상관성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조선의 경연이 가진 이런 특징은 국왕과 사대부가 경연 운영 방식과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로 조선이 추구하는 국왕의 모습과 이상적인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왕 본인과 사대부 간 아주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논의의 결과물이 『경국대전』 안에 정리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정치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수기치인(修己治人), 또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이라는 유교의 이념적 지향이 지닌 본질을 이해하는 첫 관문인 것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여말에 수입된 성리학(性理學)이다. 신진 사대부들이 고려의 국왕 의례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경연에 주목했던 까닭이 바로 성리학에 있기 때문이다.[3] 여말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 전기와 같

---

1) 보통 시대 구분은 그 전후로 상당한 규모의 사회적 변화를 촉발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데, 고려를 무신정변과 몽고와의 관계로 구분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조선의 경우 대개 양란(兩亂)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지만, 제도사를 다루는 만큼 여기서 법전의 편찬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법전의 편찬을 통해 제도적 정비가 1차적으로 완료되고 그 규정 또한 어느 정도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2) 이동건(2017)에 따르면, 유교에서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은 상호 필수불가결한 관계이다. 즉, 수기 없는 치인은 불가능하며, 치인은 반드시 수기를 전제로 해야만 한다. (「『논사록』을 통해 본 고봉의 도학정신」, 『퇴계학논집』 20호, 영남퇴계학연구원, 129쪽) 따라서 강론에 반대되는 논사는 외왕(外王), 또는 치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은 국가 건전성 회복을 명분으로 제도 개혁을 추구했으며, 그 방안으로서 성리학에서 유래한 교과(四書)와 운영 방식(輪番)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실제로 과거 과목(四書疑)과 성균관 과정의 개설(四書五經齋)을 거쳐, 위화도회군 이후 실시한 관제 개혁에 국왕 교육의 개편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다. 정리하자면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신진 사대부에 의해 국왕의 권위를 회복할 방안으로서 국왕 교육 제도가 부각되었고, 앞서 이를 운영했던 송나라의 제도를 검토하여 제도적 개혁의 방향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진 사대부들의 이런 관점은 위화도회군 이후 정비된 법률을 종합한『경제육전(經濟六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법전의 편찬을 주도한 조준에 따르면, 사대부들은 "인간의 도덕적 생활이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경(敬)'과 '공(公)'을 근본으로 한 조선의 새로운 정치 방식을 인정(仁政)으로 규정하였다.[4] 특히 조선은 고려와 달리 국왕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매일같이 운영하여[일어경연(日御經筵)] 심성 함양된 성인(師)과 사회적 역할로서 국왕(君)을 일치시키려고 하였는데, 이것은『대학』에서 주자에 의해 제시된 국왕의 상(像)을 교육으로 구현하고[훈도(薰陶)], 경전과 교육 활동에서 형성된 덕목이 정치를 지도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위화도회군 이후 나타난 국왕 교육 제도의 변화는 성리학이 추구한 수기치인을 군사(君師)와 인정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제 이상의 점에 유의하여 본 논문이 취한 여말선초의 구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 첫 단계는 국왕 교육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와 정비의 시기로 고려 창왕으로부터 조선 태종까지 왕조 교체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집권한 신진 사대부와 회군 지휘부는 제도 개혁을 통해 권문(權門)과 세가(勢家)들의 적폐를 청산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연과 서연 역시 명칭 회복과 함께 겸직의 편제를 갖춘 상설 제도로서 정비되었다.[5] 이후 고려 왕조 안에서 이전까지의 운영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 동안 제안에만 머무르던 여러 방식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왕조가 교체된 뒤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며 이에 따른 보완이 진행되었다. 한 마디로 이 시기는 국왕 교육 제도의 전형을 갖추어 나가는 시기인 만큼

---

3) 이렇게 볼 여지는 다음과 같다 : 하나는 고려 경연을 일종의 유교의식으로 보는 경우이다. 권연웅(1983)에 따르면, 공민왕 당시의 서연(경연)을 상기와 같이 평가하면서 전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고려시대의 경연」,『경북사학』제6집, 경북사학회, 17쪽) 다른 하나는 왕권 강화를 위해 정치적 역할을 높였다는 접근이다. 신수정(2012)에 따르면, 이 경우 고려 왕조의 학사들은 조선의 경연처럼 시정득실을 논하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예종 이전까지 제관전학사에 해당하는 이들의 활동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려 국왕 교육의 주요 기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려전기 학사관부와 예종대 학사직 운영」,『역사와 현실』제86권, 한국역사연구회, 152쪽)

4) 김인규(2018), 「『경제육전』의 성립배경과 편찬자 조준의『주례』인식」,『퇴계학논총』제32집,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144쪽, 149-150쪽.

5) 윤훈표(2009),「고려말 개혁정치와 경연제도의 개편」,『사학연구』제93호, 한국사학회, 66쪽과 68쪽. 윤훈표는 창왕 때의 경연 개편 과정을 '제도화 내지 상설기구화의 전 단계'로 보면서 '일반부서의 관원들처럼 직위, 업무, 자격 등이 사전 규정되고 이에 의거하여 집행되는 것과 유사한 체제로 운영해가는 전 단계'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왕조 교체 전후의 상황을 관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세종부터 세조 2년(1456년)까지의 기간으로 소위 경연 담당 기구의 출현과 첫 운영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핵심적 특징은 앞서 진행된 제도적 보완의 산물로서 고려의 집현전이 '복설(復設)'되었다는 점이다. 설치 초기 집현전은 고려의 보문각처럼 도서 보관[장경적(藏經籍)]과 강론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동시에 태종 때부터 설치된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와 함께 고제 연구[고제상정(古制詳定)]를 협업하였다. 또한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에게 사가독서(賜暇讀書)를 새로 시행하여 연구 대상을 다양하게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세종은 국왕 교육 과정의 정례화와 국왕 고문(顧問)의 정착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지만, 이 성공 이후 운영의 장기적 방향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세조 2년, 집현전 혁파의 빌미가 마련된다. 왜냐하면 세종 말년의 이 갈등으로 인해 운영 방식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경연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해소의 기간이다. 문종과 단종의 재위 기간을 거치면서 집현전은 상당히 변화하였으며, 이런 경향으로 인해 단종 복위 사건 등 잇따른 정치적 파국과 함께 경연과 집현전 모두가 혁파되고 말았다. 이후 세조는 국왕 교육을 소략한 방식으로 대체시켰고, 세조의 후계자인 예종은 유훈(遺訓)을 앞세워 고문의 약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결국 예종 사후 즉위한 성종 때에 대왕대비와 훈신(勳臣)에 의해 경연청이 먼저 복원되었고, 철렴(撤簾) 후 성종이 젊은 관료의 상소를 수용하여 예문관을 분설(分設)한다. 성종은 이 새 기구인 홍문관을 세종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한편으로 직접 별정직인 특진관 제도의 신설을 주도하여 경연 제도를 정립시켰다. 결국 이것이 세조와 예종에 대비된 성종 나름의 해소 방식이었던 것이다.

더불어 상기 구분에 따른 논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주제 몇 가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먼저 세종 즉위 이전부터 간관들에 의해 단속적(斷續的)으로 제기되었던 집현전 복설 제안이다. 사실 이 제안에 관한 기록은 집현전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서 종종 언급되었으나 사료에 언급된 양이 소략한데다 관심 또한 세종 때의 운영에만 집중되어 있어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세종이 재위 초에 집현전을 곧바로 복설할 수 있었던 까닭이 이런 선행된 논의의 영향일 가능성은 충분하며, 그 논의 과정 속에서 그 복설의 목적이 경연의 정례화 논의라는 점이 드러날 여지도 어느 정도 있다. 따라서 이를 다룸으로써 조선 초 경연 정례화 문제가 지배층 내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이 드러나고, 동시에 집현전을 경연 담당 기구로 파악해야 한다는 추정도 보다 충분하게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세종 재위 말년 나타난 소위 '언관화(言官化)' 경향을 경연 제도에 관한 논의와 긴밀하게 연관시켜 보는 것이다. 집현전은 재위 중기로 접어들면서 인사 정책을 둘러싸고 세종과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이는 그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입장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언관화'로 보인 경향은 이렇게 내재

된 갈등이 재위 후반의 각종 이슈와 맞물려 강력하게 폭발한 것이다. 다만 기존 연구들은 이 특정 시기의 현상을 과도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이후 다양한 형태의 후속 사건으로 이어져 장기간 후유증을 남긴 점을 간과한 것이다. 즉, 세종 말년의 여러 조치가 법률적 효력을 지닌 관행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집현전의 위상과 역할에 변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은 국왕 교육이라는 주제에 맞게 이를 제도적 변천과 연관시켜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문제

그럼 기존 연구들은 국왕 교육 제도를 그 동안 어떻게 다뤄왔는지 살펴보자.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보인 점은 조선의 국왕 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대체로 이것은 여말 사대부들의 국왕 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제도화가 기존 연구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한 것으로, 국왕의 문치를 위한 형식적 의례에서 16세기 공론 정치의 중심으로 바뀌기까지의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 추적해보려는 것이다. 성리학자인 사대부들이 조선 건국의 과정에서 국왕 교육의 정례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만큼, 국초 반포된 관제 중 포함된 국왕 교육 제도는 그 정책적 실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래야 이후를 '제도적 정착'이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본 논문에서 여말선초를 관통하여 보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왕 교육 제도가 고려와 조선 간에 계승된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살펴야 할 첫 번째 기준은 여말 변화 요인으로 이야기된 성리학의 국왕 수신론(國王 修身論)을 조선 전기의 제도적 변화와 어떻게 관련시키는지 하는 것이다. 충목왕 때 처음 이것을 제기한 이제현은 심성 함양에 의한 국왕 권위의 형성을 경연 운영의 목적으로 설명했으며[6], 이는 무신 정변 이후 실추된 고려 국왕의 권위를 재확립하기 할 방안으로 경연에 주목한 것이었다. 당시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를 대체할 새 왕조의 성패도 국왕의 교육 수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확신했으며[7], 이를 위해 문치의 표방을 위한 형식적 의례였던 국왕 교육의 정비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그 운영의 측면에서 국왕의 필요에 의해 부정기적 개최를 하던 기존 방식에서 '훈도 함양'을 위해 활동이 정례화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조선 국왕 교육을 주제로 다룬 연구에서 이와 같은 제도적 승계라는 성격이 충분히 고려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가령 여말 경연의 제도적 개편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도 내용이 조선으로 넘어오면 경연 운영의 목적을 통치 질서의

6) 김인호(1998),「여말선초 군주 수신론과 대학연의」,『역사와 현실』제29권, 한국역사연구회, 76-77쪽. 89-90쪽.

7) 윤훈표(2009),「고려 말 개혁정치와 경연제도의 개편」,『사학연구』제93호, 한국사학회, 51-52쪽과 65쪽.

수립으로 정리하기 때문이다.[8] 이것은 여말 경연 변화의 원인을 국왕의 심성함양으로 정리하다가 왕조 교체 후 별 다른 설명 없이 그 운영 목적을 통치 질서로 급격히 선회한 것이다. 물론 이런 해석에 대해, 심성 함양이 개인적 수준의 활동이고 교화는 공동체적 수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개인의 총합이 국가'라는 관점에서 추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동일한 대상에 관한 연구 안에서 관점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그 원인이 고려와 조선 간 제도적 승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도 확실하다.

기존 연구의 이런 경향은 그 연구 범위를 조선 시대로 좁혀도 그대로 드러난다. 권연웅(1998)은 조선 경연의 운영 목적을 '잠재적 폭군 길들이기'[9], 곧 국왕의 자의적 권력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강태훈(1997)의 경연 정의를 참고해 자세히 풀어보면, 조선의 경연은 "필부의 것과 공효(功效)부터 다른" 제왕학, 곧 "통치의 방법"과 "심성적 훈련"을 동시에 하는 과정이다.[10] 여기서 "심성적 훈련"을 앞선 여말 제도 발생의 상황과 연관시켜 보면, 기존 연구는 국왕의 수신(修身)을 '국왕의 자의성을 막고 성리학적 정치 방식과 원리에 순응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수신을 이렇게 규정할 경우 과연 전통적 의미의 '수기(修己)'와 '치인(治人)', 또는 '내성(內聖)'과 '외왕(外王)' 중 무엇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게 된다. 이 둘은 긴밀한 동시에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의 이런 경향은 경연의 제도적 성격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원택(2014)은 조선의 경연을 유교적 공론의 장(*Confucian public forum*)으로 정의하면서, 그 공론을 국왕 권력의 자의성과 폭력에 저항하여 공(公)을 구현한 것으로 간주한다.[11] 이때 경연에서 구현되는 '공'은 길들여짐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강태훈이 말했던 "심성적 훈련"과 길들여짐이 동치(同値)될 수 있는 개념인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경연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교육이라기보다 정치적 소통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조선의 경연은 국왕 교육, 또는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확대된 언론의 장이며, 다른 연구에서 이를 교육 제도라고 말한 것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개혁 이슈 중 하나로서 국왕 교육이 부각된 여말의 상황과 이후 조선 국초의 경연 운영을 별개로 다루기 때문이다. 즉, 조선 국왕 교육은 여말 당시 개혁의 산물이었는데도 막상 제도사 연구에서 그 둘을 연관하여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조선의 국왕 교육

8) 윤훈표(2009), 70쪽과 74쪽.
9) 권연웅(1998), 「조선전기 경연의 위임론」, 『경북사학』 제21집, 경북사학회, 946쪽.
10) 강태훈(1997), 「경연의 교육학적 접근」, 『교육연구』 제18호, 원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3-4쪽과 7-8쪽.
11) 이원택(2014), 「유교적 공론장으로서의 경연과 유교지식인의 정체성」, 『태동고전연구』 제33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08-109쪽.

제도는 명목인 '훈도함양(薰陶涵養)'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단아한 선비와의 만남'[12]을 추구하였고, 여말 개혁을 통해 편제, 인원 구성, 교육 과정의 운영과 교재 선정까지 시범 운영해왔다. 국초 과정 운영의 정례화[일어경연(日御經筵)] 시도와 개국 후 반포된 편제 및 인원 구성 등은 그런 논의의 연속성을 짐작할 수 있는 특징들을 보여주며, 심지어 태조 즉위 후 반포된 국왕 교육 제도는 공양왕 때 편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기존 연구의 또 다른 문제는 조선 왕조가 운영한 집현전의 성격을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사실 연구자에 따라 집현전은 도서관[13], 교육 기구[14], 문한 기구[15], 그리고 막료 조직[16]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는데, 이런 정의들은 각 연구자들의 관심과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파생된 것들이다. 이들의 관점에서 집현전은 대단히 평면적인 성격의 기구로서 그 역할 역시 교육과 정치를 넘나들고 있는데, 특히 이 집현전의 역할에 관해 연구자들이 내놓은 규정과 해석은 상호 상반된 정도가 상당하기까지 하다. 이런 현상은 역설적으로 집현전의 본질에 관해 아직도 적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심지어 기존 연구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개념 도구나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기존 연구에서 세종의 집현전은 대체 무엇을 위한 기구였는지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집현전의 모본(模本)인 보문각은 도서관과 문한 기구의 역할을 관행적으로 갖추고 있었고, 이와 유사한 금내학관(禁內學官) 역시 이미 직제 상 소속 학사를 두고 있었다. 이것은 고려 때부터 문한 기구들이 장서와 교육을 기본 직능으로 두고 있으며, 함께 포함된 교감(校勘)과 인쇄 등도 이것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에 비해 관제 원칙 상 명확한 직능을 갖춘 직제 외에 자신만의 측근을 별도로 둘 수 없었던 조선에서 집현전이 복설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왕 교육 과정의 꾸준한 운영이라는 조선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조선의 관제 설치[설관(設官)] 및 운영은 산관(散官)과 같은 명목상의 직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국왕이 직영(直營)하는 기구와 그에 따른 예산을 갖지 못하므로 문

---

12) 출처는『성종실록』성종 2년(1471년) 음력 11월 21일 기사 중 "인주(人主)의 배움에 귀중한 것은 단아한 사람과 정직한 선비가 이를 위하여 전후좌우에 있어, 그 보는 바는 반드시 정직한 선비고, 듣는 바는 반드시 정직한 말이어서 거기에 함양(涵養)하고 훈도(薰陶)되어 덕성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所貴乎人主之學者, 爲有端人正士, 爲之前後左右, 使其所見必正士, 所聞必正言, 有以涵養、薰陶, 成就德性耳.)이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중종실록』중종 13년(1518년) 음력 8월 7일 기사와『명종실록』명종 10년(1555년) 음력 12월 14일 기사에도 나오는 점에 비추어 상당히 관용적인 표현으로 추정된다.

13) 이재철(1973),「집현전의 기능에 대한 연구」,『인문과학』제30권,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28-131쪽.

14) 유영옥(1994),「집현전의 운영과 사상적 경향」,『부대사학』제18집, 부산대학교 사학회, 5쪽과 12쪽.

15) 최승희(1966),「집현전연구(상)」,『역사학보』제32집, 역사학회, 7쪽.

16) 문재우(1993),「현대 막료조직과 조선조 집현전과의 비교연구」,『한국행정사학지』제2권 제1호, 한국행정사학회, 203-206쪽. 집현전 소속 학사를 '막료'로 규정하는 것은 계선조직(系線組織)의 외부에서 그 계획수립과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인격적 보완을 전제로 한 것(192쪽)이다.

한 기구의 독립적 운영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집현전은 운영 과정에서 고려의 금내학관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집현전은 세종의 지시에 따라 국왕 교육 및 고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거의 모든 학사들이 상참, 윤대 등, 정치적 의례에도 필수적으로 입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왕 교육이 형식적 의례에 불과했던 고려에서 보문각과 청연각을 포함한 금내학관들이 지녔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런 특징은 집현전이 국왕 교육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이며, 세종이 그 시점에서 모든 관행을 만들어 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관행이 이후 성종의 홍문관 분설 때까지 영향을 끼친 만큼, 집현전과 경연 제도를 국왕 교육의 관점에서 함께 관련시켜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국왕 교육의 제도적 전형성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집현전 연구에서 보이는 또 다른 경향은 '집현전의 언관화(言官化)'로 불리는 특정 시기의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이것은 '국왕 교육을 맡은 집현전 학사들이 양사(兩司)의 간관들처럼 간쟁 행위를 한 것'을 지칭하며, 대체로 세종의 재위 말년, 왕실의 불사(佛事)로 인해 본격 발현되었다고 설명된다. 특히 '언관화'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연구자들은 이런 경향이 집현전 본연의 임무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며, 대체로 그 기준이 되는 '본연'을 문한(文翰)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7] 즉, 집현전이 일반적인 고문을 넘어서서 척불(斥佛)을 명분으로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명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지점에서 기존 연구는 앞서 집현전을 규정한 막료 조직이나 도서관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했던 것과 크게 상충되는 점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이런 모순은 오랫동안 내재된 세종과 집현전의 갈등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세종은 국왕 교육에 관한 전임(專任)이 결정하면서[18] 집현전의 인사이동 금지와 내부 승진을 병행하려 하였고, 그 이후 일부 체직(遞職)을 빌미로 이 원칙을 깨려는 시도가 일어날 때마다 재차 강조해왔다. 결국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는 조선 국왕 교육의 방식은 집현전 학사의 활동 영역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기존 연구에서 '언관화'로 본 일련의 경향은 이 위에 왕실의 불사가 기름을 부은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즉,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할지라도 맥락 상 '집현전 학사의 정치 참여'라는 매개로 인해 오랜 갈등이

17) 가령 이재철(1973)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고제(古制) 연구', '학문 연구', 또는 '학자 양성'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도서관'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문한 기구가 도서관과 강론 기능을 갖는 것을 들고 있다. (128쪽) 또한 집현전 연구를 최초로 한 최승희(1966) 역시 초기 집현전 복설의 목적으로 '문풍의 진작'과 '학자의 양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역시 문한 기구의 성격으로 이해한 것에 해당한다.

18) 대표적으로 유영옥(1994)과 최승희(1967)의 경우가 이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유영옥은 집현전의 경연관 역할 담당과 세자첨사원 참여를 언관화의 요인으로 꼽았고(22쪽), 최승희도 경연을 전담한 점이 언관화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52쪽) 이를 종합해보면, 집현전이 경연 기구가 된 이후 꾸준히 언관화 가능성이 발생해서 세종 20년(1438년) 가장 심중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폭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왕의 스승'이자 이념적 동문(同門)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역시 이런 상황을 촉발하는 데 한 몫을 담당했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기존 연구의 결론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가령 강태훈(1997)은 상참과 연계되면서 경연에서 본격적으로 정치와 교육의 역할이 혼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19], 이는 제도적으로 상참이 정비된 세종 11년(1429년)[20] 이후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본 것이다. 다만 강태훈의 이런 주장은 언관화가 촉발된 것으로 제시된 시기(세종 30년(1448년))와 시기적으로 거리가 멀다. 즉, 만일 강태훈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갑작스럽게 언관처럼 행동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고, 동시에 정치 의례와 경연의 연계가 세종 당시 국왕 교육의 특징인데 왜 언관화가 본연에서 벗어난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결국 기존 연구처럼 언관화를 특수한 경향으로 주장하면 우선 다른 연구들과의 이런 상충된 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집현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기구의 대표적 특성을 파악하는데도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종 재위 후반기의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집현전이 학사 양성 기구에서 교육 기구로 진행했다는 주장[21]과 경연 참여 초기부터 '경연 정치'를 시작했다는 주장[22]이 공존하거나, 집현전 학사들이 교육 활동을 매개로 정치적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주장과 활발한 연구 및 강론으로 인한 질적 성장에도 불구, 통치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주장[23]까지 뒤섞이게 된 것이다. 동시에 시기적으로 세종 말년의 오랜 와병과 그로 인한 세자(문종)의 감국 등으로 인한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리하면 집현전이 어떤 역할을 수행한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국왕 교육과의 관련성을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결론과 관련하여 반드시 살펴야 하는 비교 대상이 바로 성종의 홍문관(弘文館)이다. 홍문관은 국가의 문한 기능을 총괄했음은 물론, 언론 기관으로서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등, 전신인 집현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24], 이는 경연 담당 기구의 복원 이후 연구 - 교육에 묶어두었던 세종 때와 달리 문종 이후의 변화를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종이 분설 초창기부터 이런 조치를 시행했다는 사실은 모든 면에서 집현전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거꾸로 세종이 집현전을 경연과 무관할 수 없는 기구임을 추론할 수 있다. 성종

---

19) 강태훈(1997),「경연의 교육학적 접근」,『교육연구』제18호, 원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8쪽.
20)『세종실록』권44 세종 11년(1429년) 음력 4월 22일 네 번째 기사 기준.
21) 이재철(1973), 128-129쪽과 152쪽.
22) 지두환(1998),「조선 전기 경연관 직제의 변천」,『한국사논총』제20호,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52-53쪽.
23) 윤훈표(2009),「조선 경연 실시의 의미」,『율곡사상연구』제18집, 율곡연구원, 224쪽과 226쪽.
24) 김정기(2002),「성종조 홍문관의 정치 행정적 기능」,『한국행정사학회지』제11호, 한국행정사학회, 198-199쪽.

의 이 조치에 반대한 다수의 사대부들이 모두 세종 당시의 운영을 그 근거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 홍문관을 통해 집현전이 국왕 교육과 얼마나 밀접한 기구였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기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초 조선 국왕 교육에 관해 연구자들은 그 논의의 시점(始點)인 여말 시기를 연관시켜 다루고 있지 않다. 여말 성리학자인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 국왕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경연과 서연의 개편이 부각될 수 있었고, 특히 창왕부터 공양왕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숙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 빠르게 조선의 정식 관제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런 왕조 교체기 정제화(定制化) 과정의 산물이 바로 개국 후 등장한 매일 개최(정례화)에 대한 요구로, 국왕 교육 제도와 관련된 모든 논란은 기본적으로 훈도함양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기존 연구는 이런 점을 인식하지 않고 여말과 국초를 분리된 것처럼 다룸으로써 조선의 국왕 교육을 정치적 기능 면에서만 다루게 되었다.

다음 집현전과 홍문관이 조선의 경연 담당 기구로서 국왕 교육과 밀접한 연관시켰을 때 그 본연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기존 연구는 주로 자신들의 관심과 직능(職能)을 관련시켜 기구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 중 한 가지 특징만을 집중 부각함으로써 상호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집현전도 이미 논의 초기부터 고려의 보문각을 참조하여 직제와 직능을 논의한 흔적이 있고, 다른 국왕 의례였던 상참, 윤대를 경연과 관련시킴으로써 조선 경연 담당 기구만의 특성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국왕 교육의 관점으로 살펴야 두 기구의 본질과 특징이 드러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기존 연구는 경연 담당 기구로서 집현전과 홍문관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견강부회(牽强附會)의 결론을 유추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본 논문이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 살펴보자. 국왕 교육 제도는 왕조 교체기에 한 차례 변화를 거치며 승계되었으므로, 당연히 여말의 관제 개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진행된 제도 개혁 중의 성과가 태조 등극 후 반포된 관제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간의 정비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 과정 운영의 문제로 보완과 재정비도 수시로 이루어졌다. 그 산물로 경연 담당 기구의 등장이 이뤄진 만큼, 이에 관한 세종 이전의 보완과 재정비 논의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만 그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지 않았고 사료 상의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어 연구 결과가 상당한 개연성도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점은 기존 연구 중 해당 시기를 다룬 연구들의 도움을 함께 받아 진행하고자 한다.

2장은 여말(麗末)부터 태종까지, 왕조 교체기 중 일어난 새로운 경연 제도의 발생과 상황을 광범위하게 다루고자 한다. 조선의 국왕 교육 제도는 '훈도함양(薰陶涵

養)', 곧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선 인성의 감화까지 구현하도록[25] 설계되었고,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 활동의 정례화[(일어경연)日御經筵]를 강조하였다. 기존 연구도 형해화(形骸化)되었던 국왕 교육이 여말에 주목받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왜 이후 조선 왕조에서 한동안 자리 잡지 못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개국 후 지배층 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로 집현전의 복설이 이뤄졌다는 점으로 볼 때, 국왕 교육의 정례화에 대한 논의와 집현전의 복설 논의를 연결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2장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왕조 교체기 새 국왕 교육의 정착 과정을 전개할 것이다.

다음은 조선 경연 담당 기구의 설치 과정과 의의에 관한 것이다. 그 동안 기존 연구는 사료의 여러 내용 중 선별된 특정한 내용을 근거로 해당 기구를 규정하였다. 이는 연구 방향이 주로 국왕의 정치적 상황이나 업적과 연관시켜 다루려는 경향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는 집현전의 소속 학사들이 간관과 같은 쟁론(諍論)을 한 것을 '언관화(言官化)'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식하는데[26], 이때 왕실과 사대부 간의 갈등이 상당했던 요인으로 세종의 불사(佛事)를 강조하고 있다.[27] 이상을 종합해 보면 기존 연구는 집현전의 성격에 관해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면서도 간관으로 활동의 폭이 확장된 세종 재위 후반기의 모습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는 집현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집현전이 복설되는 과정을 연구 목적에 따라 원활하게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한다. 집현전의 운영 시기는 정종 때 일부와 세종 이후부터 세조 2년(1456년)으로 나뉘며, 세종 말년 진행된 갈등이 혁파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후과(後果)를 남겼다. 이는 한 시기만 국한하여 집현전을 다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 또한 상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가장 활발했던 운영 시기였던 세종 재위기 당시 여러 논란을 거치며 남긴 산물은 경연 담당 기구의 전형성 형성에 포함되었고, 이후 예문관에서 분설된 홍문관의 설치와 방향성 논의에도 일종의 기준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집현전 관련 논의는 한 장에 이를 모아서 압축적으로 다루기보다 시간 순서에 따라 논의 과정에 맞게 나누어 다룰 필요가 있다.

---

25) 이에 관하여『단종실록』단종 3년(1455년) 음력 4월 17일 첫 번째 기사 참조.

26) 이와 관련하여 참고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 유영옥(1994),「집현전의 운영과 사상적 경향 ; 성리학 이해를 중심으로」,『부대사학』제18집, 최승희(1966),「집현전연구(상)」,『역사학보』제32집 ; 정두희(1980),「집현전 학사 연구」,『전북사학』제4집 ; 강문식(1998),「집현전 출신 관인의 학문관과 정치관」,『한국사론』39 ; 이재철(1973),「집현전의 기능에 관한 연구」,『인문과학』제30권

27) 김종명(2007)에 따르면, 조선 왕실은 표면적인 척불(斥佛)과 달리 왕실 내부에서 숭불(崇佛)의 분위기를 유지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인 경우가 태종과 세종으로, 정책적 억압과 달리 점차 노골적으로 호불(好佛)을 드러냈다. 심지어 이 때문에 한글 창제에도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김종명의 결론이기도 하다. (59쪽) 이것은 훈민정음 반포 후 불경을 연속으로 언해(諺解)한 경우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세종의 불교신앙과 훈민정음 창제」,『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제6권 제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 학회 참고)

3장은 세종 시대 집현전이 꾸준한 논의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그 기능적 발전과 정착, 그리고 새롭게 제기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기능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집현전을 고려 보문각에서 유래한 전통적인 기능을 계승한 측면과 새로 정비, 또는 신설되는 국왕 의례들과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볼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언관화'로 다뤄지는 불사(佛事)에 대한 간쟁을 재위 20년(1438년) 이후 집현전의 역할 및 인사 운영 방향과 문종의 대리청정을 둘러싼 논쟁에 연관시키고, 이 중 대리청정 기간에 신설된 세자첨사원(世子詹事院)을 세종이 마련한 하나의 출구 전략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것은 집현전의 '언관화'가 특정 시기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국왕 교육을 전임(專任)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부작용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4장은 이 3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세조 2년까지 제도적으로 국왕 교육에 점증된 위기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종과 단종 재위기 중 집현전 학사들이 겸직과 체직을 통해 경연과 양사(兩司)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로 인해 당시 집현전이 국왕 교육(연구 - 교육)보다 정치 고문(시사 및 간쟁)에 치우쳤다. 더 나아가 이 경향이 계유정난(癸酉靖難) 이후 조카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세조가 집현전을 불편하게 받아들이게 한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단종 복위 사건의 발생 후 세조가 곧바로 경연 정지와 함께 혁파시키는 데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세종 말년의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되어 세조 때 국왕 교육 과정 운영에 파국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세조의 이런 돌연한 행보와 사대부와의 갈등을 통해 위기가 점증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국왕 교육의 관점에서 왕권 강화와 신권 견제의 충돌을 보여줌은 물론, 국왕의 임의적 주도로 국왕 교육을 크게 변질시킨 것이다. 물론 이는 일찍이 기존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한 사실이며[28],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국왕 교육인 세자 교육(서연)의 분리까지 그 변화의 폭이 크기도 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조는 국왕 교육 제도 자체를 불신하거나 무용하다고 말하는 등, 상당히 과격한 언행도 보여주었으며, 사망하기 전에도 세자(예종)에게 유신을 믿지 말도록 당부하는 등[29], 일관된 행보를 보였다. 즉, 세조는 경연청의 운영 목적인 '훈도'를 교육과 정치를 통한 보좌가 아닌 국왕에 대한 견제로 판단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 전기의 여러 현상 중 가장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종의 홍문관 분설이 지닌 의미이다. 세조의 직전 후계자로서 경연 재개에 부정적이었던 예종과 달리, 성종은 철렴 후 경연의 제도적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성종 시대 국왕 교육의 특징은 홍문관 분설과 특진관 신설로, 이를

28) 최선혜(2015),「조선 세조대 강론의 시행과 유신의 성장」,『역사학연구』제57집, 호남사학회, 18쪽.

29)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1468년) 음력 10월 6일 4번째 기사 참고.

통해 경연의 시사 및 간쟁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것은 세종 때처럼 연구와 교육 강화를 바랬던 사대부와 이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는데, 아마도 세종 재위 말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안정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홍문관은 문종 - 단종 때와 같은 겸직과 체직의 자유를 갖춤은 물론, 스스로 언론 기구로서도 모습을 갖추게 된다. 다만 특진관의 경우 본 논문의 특성 상 다룰 수 있는 기간이 이 제도의 발생 초기까지만 포함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루기 어려우며, 요약 및 결론에서 이와 관련된 후속 과제를 조금 더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이제 이상을 통해 본 논문은 아래의 두 가지 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 첫째, 조선의 국왕 교육은 제도적으로 국왕의 교육적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이 대상인 국왕으로 인해 그것을 주로 정치적으로 해석한 점은 원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조선의 집현전과 홍문관은 그 직능과 역할 상 경연 담당 기구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역시 보좌를 하는 대상이 국왕이라는 점으로 인해 엇갈린 해석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 발전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왕 교육과 일정하게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왕 교육의 틀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중종 이후와 조선 전기를 균일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16세기 이후 조선 성리학 발전과 연결하여 이후 교육과 사상으로의 영향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왕조 교체기 경연의 제도적 변화와 의미

조선 국왕 교육 제도의 원형은 사실 건국 전인 1388년, 고려 창왕(昌王) 즉위 후 설치한 경연청에서 유래하였다. 위화도회군 후 창왕을 옹립한 집권 세력은 신진 사대부에서 제시한 국왕 교육 과정의 상설화를 수용했고, 이것이 공양왕 재위기 몇 차례 관제 개혁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당시 제도 정비의 주된 방향은 "매일 편전에 모이고, 날을 정하여 면대함[日坐便殿, 分日進對]"[30]의 실현으로, 일상화된 국왕의 교육 활동을 통해 그들이 이상적으로 인식한 성군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다만 이런 사전 정지작업에도 불구, 집현전 설치 이전까지 경연은 지배층의 기대만큼 잘 운영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그 양상은 경연에 대한 국왕의 의무적 참여를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경연의 제도적 활성화와 정례화를 위한 보완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1. 여말선초 경연 정례화 논란의 배경

역사 상 국왕 교육인 경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우선 국왕의 교육적 활동이 사료 상 언급된 시점은 고려 광종부터이다.[31] 국왕이 행해야 할 수덕(修德)의 방법으로서 독서가 제시되었고 교재로 언급된『정관정요(貞觀政要)』를 이후 계속 사용하는 등, 국왕의 학습 전통이 구체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경연 운영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 예종 11년(1116년) 보문각(寶文閣)과 청연각(淸讌閣)에 관한 기록[32]으로, 서화, 문서와 함께 경전이 보관된 장소에서 학사들이 '숙직'과 국왕에 대한 '강론'을 수행했다는 것이었다. 이것

30)『고려사』권110 제신열전 권제23 '이제현' : "當請日坐便殿, 每與宰相, 論議政事, 或可分日進對, 雖無事, 不廢此禮."

31)『고려사』권2 광종세가 권제2 원년(950년) 음력 1월 : "(庚戌)元年 春正月 大風拔木, 王問禳灾之術. 司天奏曰, "莫如修德." 自是, 常讀 『貞觀政要』." 그러나 경우에 따라 원삼국시대로 앞서 잡거나(강태훈(1989),「고려시대 군왕교육 연구」, 혜전전문대학논문집 제7집, 혜전대학교) 보문각이 설치되는 예종을 포함, 12세기 즈음으로 잡는 등(권연웅(1983),「고려시대의 경연」,『경북사학』제6집, 경북대 문리과대학 사학과 ; 남지대(1983),「조선 초기의 경연 제도 : 세종·문종 연간을 중심으로」,『한국사론』제9집,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 다양하다. 이것은 국왕(또는 후계자)의 교육 활동에 관한 사실(史實) 중 어떤 것을 기준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특히 고려는 국왕의 교육 활동과 경연 기구의 설치가 혼재되어 있는 듯하다.

32)『고려사』권76 백관지(1) 권제30 '보문각'에 따르면 "예종(睿宗) 11년(1116년)에 궁궐 안에 청연각(淸燕閣)을 짓고 학사(學士)·직학사(直學士)·직각(直閣)을 각각 1인씩 선발하여 두면서, 아침저녁으로 경서(經書)를 강론하게 하였다"고 하며, 같은 해 11월 11일 청연각에서『상서』를 강론한 것과 국자사업 겸 기거주 지제고 김부일(國子司業 兼 起居注 知制誥 金富佾)을 보문각 대제로 임명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기간 초부터 전각을 세우고 인원을 배치한 것으로 대략 정리된다. 또한 『고려사절요』권9 예종(2) 11월 기록으로 청연각에서 보문각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도 확인된다. 이것은 서긍의『선화봉사고려도경』(권6 궁전2 '연영전각')에 인용되어 있고, 같은 내용이 김인존(金仁存)의 열전(「청연각기(淸讌閣記)」)에도 있어 그 저자가 확인된다.

은 문한 기구의 학사들이 참여, 교육을 보좌하는 방식으로 경연의 형식이 갖춰짐을 의미하며, 특정 기구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는 형태로 그것이 정형화됨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차기 국왕에 대한 교육인 서연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동궁관은 고려 성종 당시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의 개정 기록[33]에 처음 등장하고 이후 현종(顯宗)과 문종에 걸쳐 차례대로 정비되었는데, 특히 고려 문종 22년(1068년)에 개정된 직제에는 시강학사, 시독학사, 시독사와 삼사·삼소 등이 등장한다.[34] 이처럼 '보도(輔導)'를 명분으로 하는 책임관의 편성이 빠르게 이뤄지고[35] 제수 대상의 품계에 구애받지 않은 점[36]은, 이 시기에 국왕의 후계자에 대한 명칭이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는 점[37]에 비추어 봐도, 고려가 차기 국왕 교육을 위한 적임자 선별과 교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연이 고려 예종 때 정비된 것과 달리 서연은 국초부터 빠르게 한 점으로 보아, 고려의 국왕 교육이 주로 서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음도 이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고려의 경연이 갈수록 형식적 의례에 머물렀다는 것[38]이다. 그 원인은 국왕에 대한 고문 경로가 다양했기 때문[39]으로, 이로 인해 경연 운영의 필요가 조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 또한 사료를 토대로 볼 때 경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주와 명수(名數)가 임의적이어서 업무의 책임성과 집중도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충렬왕 이후 보문서(寶文署)로 격하되면서 이름만 남은 점[40]은 단지 명칭의 격하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로서 존재 이유가 박약했던 것도 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즉, 고려의 경연이 국왕의 문

---

33) 김대식(2003),「고려전기 중앙관제의 성립과 육전제의 영향」, 성균관대 사학과 한국사 전공 박사학위논문, 121쪽.

34)『고려사』권77 백관지2 권제31 '동궁관' : "二十二年, 置太師·太傅·太保, 各一人, 從一品, 少師·少傅·少保, 各一人從二品. 賓客四人正三品, 左右庶子, 各一人正四品, 左右諭德, 各一人正四品, 侍講學士·侍讀學士, 各一人從四品, 左右贊善大夫, 各一人, 中舍人一人, 中允一人, 並正五品, 洗馬一人, 典內一人, 並從五品, 文學一人, 司議郎一人, 並正六品, 侍讀事一人."

35) 김지선(2014)에 따르면, 고려의 동궁관은 직무에 따라 보도(輔導), 시종 및 보좌, 서무와 경제, 그리고 호위로 구분되어 있었고, 내관으로 추정되는 태자가령, 태자복, 솔갱령 등이 있었다. (「고려 문종의 즉위와 동궁관 확충」,『한국중세사연구』제40호, 한국중세사학회, 189쪽)

36) 홍완표, 이진한 등(2000),「고려시대 동궁 4품 이하 관직의 제수와 녹봉」,『한경대학교 논문집』제32집, 한국중세사학회, 국립 한경대학교, 59쪽.

37) 사료 상 국왕의 후계자를 정윤(正胤)으로 지칭했으며, 광종 때에는 왕태자(王太子)와 이를 병칭한 경우[王太子, 內史諸軍事, 內議令, 正胤]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왕태자로 굳어진 것은 현종 이후로 보인다. [延慶君欽爲王太子(현종 13년, 1022년 음력 5월 25일)]

38) 권연웅은 기록에 기준하여 예종의 경연을 부정기적으로 보았으며(7쪽), 그 후계자인 인종 때에도 경연은 체계적 교육이 아닌 유교의식으로 규정(표1(8쪽)과 10쪽)되었다. 그리고 무신정변 전 마지막 군주인 의종 때는 단 2건에 불과하였다. 이는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권연웅(1983),「고려시대의 경연」,『복현사림(舊, 경북사학)』제6집, 경북사학회 참고)

39) 박재우(2011),「고려의 정치제도와 권력관계 : 통일신라의 정치제도와 비교」,『한국중세사연구』31집, 한국중세사학회, 219-220쪽.

40)『고려사』권76 백관지1 권제30 '보문각' : "毅宗五年, 始置文牒所於寶文閣, 以文士十四人及寶文閣校勘, 專掌其事, 命司空林光爲別監. 忠烈王元年, 改寶文署. (중략) 忠烈王以後, 寶文閣徒有其名."

치(右文之治)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 사대부의 등장 이전까지 당시 지배층 내에서 경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진 사대부들이 경연 변화의 주도 세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과 좌주문생제(座主門生制)를 통해 학문 공동체를 형성한 세력으로, 벌열(閥閱) 출신부터 양인과 향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급에서 출현, 형성되었다. 이들은 성리학의 영향으로 '양신(良臣)의 간언이 있은 뒤라야 성덕(聖德)을 이룰 수 있다'[41]는 생각을 제도 정비로 구현하려 하였으며, 왕권 강화책으로서 경전 교육을 통한 국왕의 심성함양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들이 국왕 교육의 정례화를 도모했던 것은 무신정변 이후 실추된 국왕의 권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으로,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에서 주장한 성군 만들기를 위해 '교화에 의한 통치의 재건'을 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신진 사대부의 이런 인식은 충목왕에게 올린 이제현의 상소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국왕 전하께서 예전 같으면 원자(元子)로서 학문을 시작했을 나이에 천자의 명령을 받들어 조종의 중대한 왕업을 이어 전왕(충혜왕)이 폐위된 뒤를 감당하게 되었으니 어찌 공경하고 근신하여 언행에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공경하고 근신하려면 덕을 닦는 것 만한 것이 없고, 덕을 닦는 방법 중 으뜸으로 학문만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좨주 전숙몽(祭酒 田淑蒙)이 이미 스승으로 명단에 올라 있으니, 다시 재능 있는 유학자 2명을 선택하여 전숙몽과 함께 『효경(孝經)』과 『논어(論語)』, 『맹자(孟子)』, 『대학(大學)』, 『중용(中庸)』을 강론하게 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의 도를 익히시고, 의관이 단정한 자제들 가운데 바르고 신중하며 덕이 많고 학문과 예를 좋아하는 사람 10명을 뽑아 시학(侍學)으로 삼아 좌우에서 덕을 돕고 이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사서(四書)를 숙독하고 나면 차례로 육경(六經)을 강론하고, 교만과 사치, 음란과 안일, 음악과 여색, 개와 말 따위가 눈과 귀에 닿지 못하게 하면, 습성이 이루어지고 알지 못하는

41) 김인호는 이제현 계열이 국왕 교육을 설치한 배경에 관해『익재집(益齋集)』내 연보(年譜)에 기록된 발언을 인용하면서 측근 정치를 청산하고 군주와 신료 간 논의의 통로를 마련하려 한 것으로 평가했다. (73쪽) 이것은 무신 정변과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관제의 격과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도감 등 임시기구의 남설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 의견을 보탠다면 국왕 교육 제도가 전기에 이미 형식적 의례에 불과했고, 왕이 발양해야 할 덕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랐기 때문에 '수덕'의 방식도 다를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성리학으로 인해 '덕'의 정의에 변화가 일어나 국왕에게 기대하는 모습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김인호(1998),「여말선초 군주수신론과『대학연의』」,『역사와 현실』제29권, 한국역사연구회) 대표적으로 감찰대부 김속명(監察大夫 金續命)이 헌납 황근(獻納 黃瑾)과 더불어 올린 글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여기서 두 사람은 공민왕이 승려와 환관,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점을 들어 "다시 경연을 열어 날마다 치국의 도리를 물으시고, 항상 성현의 글을 살펴서 이단의 설을 섞지 마십시오.(復開經筵, 日訪治道, 常觀聖賢之書, 勿雜異端之說)"라고 아뢰었다. 윤훈표는 이런 반발이 '서연 실시를 개혁 정치의 상징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57쪽), 그 이유는 "성리학에 근거하는 개혁 정치"를 펼치기 위해 경연이 필요했기 때문(58쪽)이라는 것이다. (윤훈표(2009),「고려 말 개혁정치와 경연제도의 개편」,『사학연구』제93호, 한국사학회)

사이에 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42]

이제현의 이 상소는 국왕 교육에 대한 신진 사대부의 정형화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여기서 국왕은 날로 스스로 새롭게 함(日新又日新)으로써 유교적 성인이자 성군을 추구하는 존재로[43], 경연은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할 가장 유효한 제도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이제현은 덕을 닦기 위한 교과("사서육경"), 강론의 내용("격물치지, 성의정심"), 그리고 기대효과("습관과 성품이 이루어지고 덕이 이루어질 것")를 상세하게 언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덕성 함양의 초석이 되는 학문적 견문과 지식의 여부를 통치능력과 직결시키려는 인식[44]을 드러냈다. 이렇게 정립된 국왕 교육 활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위화도회군 이후 고려 우왕(禑王) 선위(禪位)의 전말을 명나라에 아뢰기 위해 작성된 표전문(表箋文)에서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된다.

병마도통사 최영(兵馬都統使 崔瑩)이 사냥용 매와 개를 진상하여 사냥에 나가도록 유인하니, 서연(경연)을 하지 못하여 신(우왕)이 그로 인해 듣고 아는 것에 무지하게 되었습니다.[45]

이 표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왕 교육의 부진이 부덕과 실정(失政)의 요인'이라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제현의 상소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입장으로, 여기서 '듣고 아는 것[所聞知]'은 곧 사서오경을 학습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습(習)'과 '성(性)'이 모두 제 자리를 잡는 것[成德]을 말함이니, 일찍이 성인이 말한 두 개념에 미루어서[46] 국왕 교육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또한 '듣고 아는 것'의 강조 역시 성인이 제시한 배움의 방법에서 유래한 것[47]으로 교육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된 것이다. 신진 사대부들은 우왕 폐정의 원인을 이처럼 교육 활동 부재에서 찾음으로써 장차 이를 위한 대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위화도회

---

42) 『고려사』 권110 제신열전 권제23 '이제현' : "今我國王殿下, 以古者元子入學之年, 承天子明命, 紹祖宗重業, 而當前王顚覆之後. 可不小心翼翼以敬以愼. 敬愼之實, 莫如修德, 修德之要, 莫如嚮學. 今祭酒田淑蒙, 已名爲師, 更擇賢儒二人, 與淑蒙講孝經·語·孟·大學·中庸, 以習格物致知誠意正心之道, 而選衣冠子弟正直謹厚好學愛禮者十輩爲侍學, 左右輔導. 四書旣熟, 六經以次講明, 驕奢·淫佚·聲色·狗馬, 不使接于耳目, 習與性成德造罔覺, 此當務之莫急者也."

43) 김인호(1998), 「고려후기 사대부의 경세론 연구」,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40쪽.

44) 김인호(1998), 「여말선초 군주수신론과 『대학연의』」, 『역사와 현실』 제29권, 한국역사연구회, 90쪽.

45) 『고려사』 권137 열전 권제50 창왕 즉위년(서기 1388년) 음력 7월 : "有兵馬都統使崔瑩, 進鷹犬, 導田獵, 罷去書筵, 臣由是, 無所聞知."

46) 『논어(論語)』 양화편(陽貨篇) : "子曰 : 性相近也, 習相遠也。"

47) 『논어(論語)』 술이편(述而篇) : "子曰 : 蓋有不知而作之者, 我無是也。多聞擇其善者而從之, 多見而識之, 知之次也。"

군 이후 국왕 교육 제도가 개혁 과제로서 제시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었다.

한편 국왕 교육의 목적인 '훈도(薰陶涵養)'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는 당대 성리학자인 권근의「대학지장지도(大學指掌之圖)」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행(知行)은 이른바 "두 가지 공부(兩件工夫)"[48]로서 인간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공동선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것[49]이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人)에서 취하여 (자신의) 마음(心)에 택하고, 자신(의 일상)에 기준(本)을 두면서 백성들(의 일상)에서 증험(驗)하는 것"[50]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국왕 교육은 교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심성의 본질을 깨닫고, 동시에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일상을 근거로 교화를 시행하는 방법인 것이다. 즉, 국왕 교육은 성리학의 공부론과 교화론을 제왕학(帝王學) 안에 통합시키고 실제 정치에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이 바라는 성인의 다스림을 현실에서 이루도록 하는 활동인 것이다.

이상의 주장을 바탕으로 위화도회군 직후인 창왕 즉위년(1388년) 음력 8월, 정식 개청(開廳)된 경연청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서연을 열어 이색(李穡)을 영서연사(領書筵事)로, 문하평리 정몽주(門下評理 鄭夢周)를 지서연사(知書筵事)로 삼고, 좌대언 권근(左代言 權近)·좌부대언 유염(左副代言 柳琰)·성균대사성 정도전(成均大司成 鄭道傳)을 또한 서연시독(書筵侍讀)으로 두었다. 또 사헌부(司憲府)·중방(重房)·사관(史官) 각 1인씩 날짜를 바꾸어 입시하게 하였다.[51]

이 편제에서 주목할 점은 경연관의 업무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먼저 이들의 겸직에 명호(名號)를 부여한 것이 그 첫 번째 단서이다. 그 이듬해[52] 윤소종(尹紹宗)이 창왕에게 올린 권학 상소에 따르면, 경연관들은 천자의 후계자를 교도하는 역할[53]인 태사(太師)와 태부(太傅), 소사(小師)와 소부(小傅)[54]에 비견되고

48) 정대환(2002),「『입학도설』을 통해 본 권근의 성리학」,『범한철학』제26집, 범한철학회, 102쪽.

49) 고대혁(2012),「『근사록』과 유학의 공부론」,『동방학』제22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59-260쪽.

50) 장경상(2018),「『대학연의집략』과『국조대학연의』역주」, 고려대학교 고전번역협동과정 고전번역전공 박사논문, 59쪽. 원문은 최한기의『인정(人政) '강관론(講官論), 제왕학(帝王學)'의 "取於人而擇諸(之於)心, 本於身而驗諸(之於)民"이다.

51)『고려사』권137 열전 권제50 창왕 즉위년(1388년) 음력 8월 : "開書筵, 以李穡領書筵事, 門下評理鄭夢周知書筵事, 左代言權近·左副代言柳琰·成均大司成鄭道傳, 並充書筵侍讀. 又令司憲府重房史官各一人, 更日入侍."

52) 윤소종이 상소를 올린 시기에 관해 "대사성(大司成)으로 옮긴 후 서연(書筵)에 가서 앞서의 상소를 올리니"라고 한 점이 그 단서가 된다. 서연(경연)이 처음 열린 음력 8월 당시 성균관 대사성은 정도전이기 때문이다. 정도전은 공양왕 총서에서 창왕 원년 11월 무인일(8일, 양력 12월 6일) 당시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언급된 점, 윤소종은 이인임의 죄를 논하던 창왕 즉위년(1388년) 12월까지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였고 공양왕 원년(1389년) 음력 4월과 음력 7월 기록에 대사성으로 기록된 점에 비추어 최소 창왕 1년인 1389년 무렵으로 보인다.

53)『대대례기(大戴禮記)』'보부(保傅)' : "昔者, 周成王幼, 在襁褓之中, 召公爲太保, 周公爲太傅, 太公爲太師。保, 保其身體 ; 傅, 傅其德義 ; 師, 導之敎順, 此三公之職也。於是爲置三少, 皆上大夫也。曰少保、少傅、少師, 是與太子宴者也. 故孩提, 三公三少固明孝仁禮義以導習之也."

54)『고려사』권120 제신열전 권제33 '윤소종' : "今領書筵·知書筵, 古之大師·太傅也, 侍讀古之小師·小傅

있다. 윤소종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조선의 관직 설치 원칙인『주례(周禮)』의 "오직 왕이 나라를 세움은 바름을 분별하여 자리를 바르게 하고, 나라를 세우고 사방을 정비하며, 관제를 설치하고 직제를 나누어서, 이로써 백성을 지극히 위함"[55]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경전에서 언급된 해당 직제의 설치 목적이 효, 인, 예, 의의 의미를 밝혀 익히도록 이끄는 것인 점[56]은 경연관의 역할이 교육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삼공과 삼소가 설치된 배경이기도 한 주나라 주공과 강태공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다뤄지고 있는데, 바로 성인인 주공과 강태공이 범인인 성왕을 교도한다는 것을 통해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성인이 국왕이었던 주나라 문왕이나 무왕 같은 경우보다 범인인 성왕 같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이처럼 성인이 국왕이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국왕을 성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새로운 국왕 교육 제도는 바로 '국왕의 수신만이 바른 정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57]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신진 사대부의 인식은 분명 고려 중기까지 잔존하여 있던 기존 경연의 부활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고려의 경연은 국왕의 호학(好學)과 숭유(崇儒), 문치를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의례로서, 상황에 따라 특선(特選)된 문사나, 재추(宰樞), 종친(宗親)과 보문각 등, 문한 기구의 학사 등을 탄력적으로 구성[58]되었다. 또한 고려 경연이 이런 구성 방식을 보였던 것은 국왕의 수신보다 정치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되는 부정기적 운영을 위한 것이다.[59] 그에 비해 창왕 당시 개청된 새 경연청은 고려 경연의 전형적 모습이었던 예종 재위기[60]는 물론, 위화도 회군 이전에 시행된 모습[61]과도 크게 다르다. 새 경연청은 독립적 편제와 관명(官

也."

55)『주례(周禮)』: "惟王建國, 辨方正位, 體國經野, 設官分職, 以爲民極." 이 문구는 춘하추동 모든 관직을 다룬 각 편의 서두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56)『대대례기(大戴禮記)』보부편(保傅篇) : "三公三少固明孝仁禮義以導習之也."

57) 김인호(1998)는 국왕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가 고려 전후기의 군주수신론을 다르게 봐야 할 기준이라고 보면서, 고려후기의 군주수신론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논리를 적용"한 "도덕과 정치의 일치를 이상"으로 한다고 분석한다. (88-89쪽) 이것은 성리학자들이 국왕 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말선초 군주수신론과 『대학연의』」,『역사와 현실』제29권, 한국역사연구회)

58) 강태훈(1989),「고려시대 군왕교육 연구」,『혜전전문대학논문집』제7집, 혜전대학교, 12쪽.

59) 윤훈표(2009)에 따르면, 경연의 변화는 군주관과 시대적 상황의 결부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의 군주는 도덕적 존재의 정점에 이르는 성인까지 될 필요가 없었는데, 여말부터 공론, 또는 민심의 향방에 의해 검증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긴밀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바뀐 요인 중 하나가 성리학의 수용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윤훈표(2009),「고려 말 개혁정치와 경연제도의 개편」,『사학연구』제93호, 한국사학회, 66쪽.)

60)『고려사』권14 예종세가 권제14 예종 12년(1117년) 음력 12월 20일 : "癸酉, 御淸讌閣, 命金緣講書洪範, 令諸王·宰樞及諸學士聽講." ;『고려사』권14 예종세가 권제14 예종 11년(1116년) 음력 12월 23일 : "壬午 御淸讌閣, 命內侍良醞令池昌洽, 講禮記中庸·投壺二篇. 謂寶文閣學士等曰, "投壺古禮也, 廢已久矣. 宋帝所賜其器極爲精備, 將試之. 卿等可纂定投壺儀, 幷圖以進."

61) 대표적으로『고려사』권37 충목왕세가 권제37 충목왕 즉위년(1344년) 음력 6월의 기록이 있다.

名), 그리고 직능을 갖추어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발생시키고[62], "여러 강관(講官)과 관각(館閣)의 학사들이 항상 좌우에서 모시도록 하여"[63] 실효성을 갖춘 것이다.

특히 이 새 관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국왕 교육을 맡은 교관들의 상설화이다. 이 역시 창왕에게 윤소종이 건의한 내용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

지금 전하께서 단정하게 공수하여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아가 올바른 도를 듣고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 산재[64]를 〈지냈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65]

여기서 본격적으로 경연의 매일 개최를 의미하는 "일어경연(日御經筵)"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국왕 주도로 열리는 고려의 경우와 달리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청한 것이다. 즉, 이들이 국왕에 부속된 내시(內侍)와 마찬가지로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관료인 동시에 그 국왕의 필요만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감화하여 성인의 길로 이끄는 스승의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다. 또한 경연관을 "바른 사람[정인(正人)]"으로 지칭한 점에서 교감과 감화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이후 조선 경연의 운영 목적으로 제시될 '훈도함양(薰陶涵養)'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다만 창왕도 곧 새 집권세력의 정치적 명분[폐가입진(廢假立眞)][66]에 의해 폐위됨으로써 이 개편의 실질적인 완성은 다음 공양왕 때 이뤄지게 되었다.

병자일 처음으로 경연(經筵)을 열고, 심덕부(沈德符)와 우리 태조[李成桂]를 영경연사(領經筵事)로, 정몽주(鄭夢周)·정도전(鄭道傳)을 지경연사(知經筵事)로, 김사형(金士衡)·박의중(朴宜中)을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이행(李行)·성석용(成石瑢)·민개(閔開)·이사위(李士渭)를 참찬관(叅贊官)으로, 윤소종(尹紹宗)·이첨(李詹)을 강독관(講讀官)으로, 우홍득(禹洪得)·한상경(韓尙敬)·신원필(申元弼)을 검토관(檢討官)으로 삼았다.[67]

---

62) 창왕 때 새로 설치된 경연청의 의미에 관해서 윤훈표(2009),「고려말 개혁정치와 경연제도의 개편」,『사학연구』제93호, 한국사학회, 67-70쪽 참조. 윤훈표는 이를 두고 "경연관 직제의 제도화 내지 상설 기구화의 초기적인 모습"(68쪽)으로 규정하였다.

63)『고려사』권120 제신열전 권제33 '윤소종' : "命諸講官館閣學士, 常侍左右, 從容宴語, 開說道理, 至於日昃, 至於夜分."

64) 원래 이것은 제관(祭官)이 치재(致齋)하기에 앞서 며칠 동안 몸이나 행동을 삼가던 일을 의미한다. 여기서 윤소종이 사용한 의미는 아마도 근신일 것으로 추정된다.

65)『고려사』권120 제신열전 권제33 윤소종 : "今殿下端拱, 日御經筵, 聞正道, 近正人, 則散齋固無嫌矣."

66)『고려사』권116 제신열전 권제29 심덕부 : "禑·昌, 本非王氏, 不可奉宗祀. 又有天子之命, 當廢假立眞."

67)『고려사』권45 세가 권제45 공양왕 2년(1390년) 음력 1월 12일 : "丙子 始開經筵, 以沈德符及我太祖領經筵事, 鄭夢周·鄭道傳知經筵事, 金士衡·朴宜中同知經筵事, 李行·成石瑢·閔開·李士渭參贊官, 尹紹宗·李詹講讀官, 禹洪得·韓尙敬·申元弼撿討官.";『고려사절요』권34 공양왕1 공양왕 2년 음력 1월 : "置經筵官. 以沈德符及我太祖領經筵事, 鄭夢周鄭道傳知經筵事." 또한 관제의 개혁에 관하여 조준은『주례』를 인용하면서 고려 전후기 사이에 비정상화의 정도 차이가 존재함을 주장하였고("넓게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太祖, 왕건)께서 나라를 여신 처음에 관직을 설치하여 직책을 나누면서 재상(宰相)을 두어 6부를 다스리고 감(監)·시(寺)·창(倉)·고(庫)를 두어서 6부에 나누어 둔 것은 아주 훌

[공양왕(恭讓王)] 3년에 징원당(澄源堂)을 설치하고, 세자좌사경(世子左司經)과 세자우사경(世子右司經)을 징원당좌사경(澄源堂左司經)과 징원당우사경(澄源堂右司經)으로 고쳤다.[68]

징원당(澄源堂)을 설치했다. 또한 춘방원(春坊院)도 세웠다.[69]

공양왕 재위기의 국왕 교육 제도는 창왕 때에 비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변화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연관은 편제 상 보다 세분화되었고(동지경연사 / 참찬관, 강독관, 검토관), 동궁관 역시 통합된 편제[70]에서 기능적인 분리(징원당과 춘방원[71])가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경연관의 세분화는 인원의 증설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의 보좌를 강화한 측면이 엿보이고, 동궁관의 분화는 이와 달리 독립 부서로서 세자첨사부(世子詹事府)를 해체시켜 위상을 축소시킨 측면이 있다. 또한 서연관을 별도로 징원당에 배속하여 교육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전문화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실질적 교관인 좌우사경(左右司經)만 직제 상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72]이다.

공양왕 시기에 나타난 이런 변화는 해당 시기 대사헌 조준이 국왕 교육에 관해 발언한 내용[73]에 비추어 살펴볼 때 "날을 바꿔가며 입직"하고 "조석으로 함께 거하는" 것을 각각 구현한 것이었다. 즉, 조준의 발언에 따르면 경연관의 증설은 상하번의 경우와 같이 인원에 여유를 두어 교육의 충실함을 높이고 본직의 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었으며, 서연관 중 사경만 분리한 징원당 설치의 경우는 하루 종일 모시도록 하는 '전업(專業)'에 중점을 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교관을 행정 및 호위 업무(지원사와 자의 / 좌우위솔과 세마 / 장사)[74]와 별도로 둔

륭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니 폐단이 생겨 인사행정[典理]을 맡은 자가 사람을 선발하는 법을 알지 못하니 유품(流品)이 남발되었고, 군사행정[軍簿]을 맡은 자가 병액(兵額)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 무비(武備)가 해이해지게 되었습니다.",『고려사』 권118 제신열전 권제31 '조준') 그 연장선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68)『고려사』 권77 백관지(2) 권제31 : "三年, 置澄源堂, 改世子左·右司經, 爲澄源堂左·右司經."

69)『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2) 공양왕 3년(1391년) 음력 8월 : "置澄源堂. 又立春坊院."

70) 고려 문종 22년인 1068년 당시 동궁관 체제는 당상관인 태자삼사, 삼소, 빈객, 교관과 보좌 중심의 춘방(春坊), 행정 중심의 첨사부(詹事府), 사적 보좌를 하는 3사(寺), 호위 중심인 제솔부(諸率府)로 구분되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관과 보좌가 통합된 춘방(春坊)인데, 이는 교육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문종 당시 동궁관 체제에 관해서는 홍완표 등(2000),「고려시대 동궁 4품 이하 관직의 제수와 녹봉」,『한경대학교 논문집』 제32집, 한경대학교 참조.

71)『고려사』 권77 백관지(2) 권제31 '동궁관' : "又立春坊院, 專掌東宮事務, 置知院事一人正四品, 左右衛率各一人正五品, 以武官爲之, 諮議一人正六品, 洗馬一人正七品, 長史一人從七品."

72) 고려 후기 당시 '사경'은 세자첨사부에 속한 6품의 관직이었다. (『고려사』 권77 백관지(2) 권제31 동궁관 참조) 이것이 등장한 시기는 공양왕 2년(1390년)으로, 서연청의 관명을 변경하면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지서연, 동지서연, 시학이었다가 세자좌우사, 좌우빈객, 좌우보덕, 좌우필선, 좌우문학, 좌우사경으로 구분된다. 이 관명은 이후 조선의 세자시강원에서 그대로 다시 보인다.

73)『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1) 공양왕 원년(1389년) 음력 12월 : "願殿下擇鴻儒之通經史正心術者, 更日入直, 討論經史, 商確治道以成緝熙光明之學. (…) 又爲世子, 特開書筵, 以當世大儒爲師傅, 經明行修之士爲僚佐, 朝夕與居, 講明經籍以明端本澄源之學."

74) 주69의 춘방원 편제 참조.

점은 이후 조선 태종 때의 익위사(翊衛司) 및 경승부(敬承府) 설치와 비견될 수 있는 만큼 그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서연의 경우 조선 건국 후 발표된 관제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후 동궁관의 규모를 축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을 통해 고려 창왕 이후 국왕 교육 제도는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먼저 형식적 의례에 그쳤던 국왕 교육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 그들은 공민왕 이후 제도적 개선의 방향을 고려 전기의 건전성 회복으로 잡고 있었는데[75], 이 개선 대상 중에 국왕 교육 제도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당시 재개된 경연은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한 합좌(合坐)에 가까웠는데[76], 바로 이 점이 위화도회군 이후 국왕 교육 제도의 편제에 변화가 발생한 원인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새로 집권층에 참여한 신진 사대부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국왕에게 개최의 권한 대신 참여의 의무를 부과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었다. 이때부터 국왕 교육의 매일 개최와 '훈도함양'이라는 목표가 확실하게 제시되었던 것이다.

또한 집권 후 국왕 교육의 기능적 정비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가령 신진 사대부의 집권 참여 후 개청된 경연청은 상·하번과 겸직 보임으로 직능과 책임을 분명히 했으며, 서연청 역시 세자첨사부 소속으로 통합된 것과 달리 징원당으로 분리하여 운영했다. 특히 서연청을 담당하는 관헌의 분할 및 독립 기구 신설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도 세조 12년(1466년)에 가서야 동일한 조치가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때 만들어진 세자시강원의 관명(官名)은 공양왕 말의 징원당 및 춘방원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 이는 세조 재위 중엽의 이 조치가 여말의 경우를 참조했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그 만큼 위화도회군 이후 사대부들이 국왕 교육 제도에 취했던 조치는 조선 왕조의 제도 운영에 여러모로 많은 영향을 남긴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논의와 제도화 과정을 거쳐 나타난 조선 국왕 교육 제도의 초기 형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국초에 발표된 관제 속에서 경연관과 서연관은 공양왕 당시의 관제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양쪽 모두 기본적으로 겸직으로서 교대하여 국왕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려 왕조와 달리 국왕과 세자는 의무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것이 요구되며, 동시에 고문의 방식을 제도화하여 신하들의 책임으로 부여한 것이었다. 이것이 '교육을 통한 예의의 내면화'[77], 또는 '전통(경

75) 김영수(1997)는 민현구(1974)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고려후기의 주요한 개혁목표는 고려초기의 건전성 회복"이었다고 주장한다. (각주15, 146쪽) 여기서 말하는 고려 초기의 모습은 바로 조준의 상소에서 제시된 태조 당시의 원리(設官分職,『고려사』권118 제신열전 권제31 '조준')를 의미한다. (「고려 공민왕대 초반기(공민왕 1-5년)의 개혁정치와 반개혁정치의 대립」,『한국정치연구』제6집,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76) 윤훈표(2009),「고려말 개혁정치와 경연제도의 개편」,『사학연구』제93호, 한국사학회, 56-57쪽.

77) 김태희(2018),「조선의 유가적 법치 이념」,『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제17권 제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41쪽.

사)에 관한 교육으로써 권력을 제어함'[78]으로, 국왕을 성리학적 이상에 맞는 성인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인 것이다. 이처럼 조선의 새 지배층은 여말의 개혁 방향인 '국왕의 의무적 참여'와 '운영의 정례화'를 정착시키고자 비교적 짧은 정비 과정에도 불구, 왕조의 교체 후 서둘러 이를 적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된 새 국왕 교육 제도는 곧바로 문제를 일으켰다.

간관이 매일 경연을 개최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은 말씀하시기를, "수염과 머리털이 이미 허옇게 되었으니 반드시 여러 유생들에게 강론을 들을 필요는 없겠다." 도승지 안경공(安景恭)이 대답하였다. "간관이 말씀드린 뜻은 비단 전하로 하여금 글을 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저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여 바른 말을 듣기 위함입니다." 임금이 말씀하였다. "내가 비록 경연에는 나가지 않지만 매번 편전에서 유경(劉敬)에게 『대학연의』를 강론하도록 하고 있다."[79]

군자를 친하게 대하시고 소인을 멀리 하소서. 『서경』에 이르기를 '삼공은 도를 논하며 나라를 다스린다.' 고 하였고, 또한 '조석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여 자신의 덕을 돕게 하라.' 하였습니다. 옛날의 현군(賢君)은 한밤중일지라도 자리 앞에서[前席] 현사(賢士)를 맞이하였으니 그 근면함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는 대신을 접견하는 날이 적으므로 경륜을 위한 말이 위에 통하지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매일 현사와 대신을 접견하여 정치의 도리를 강론 받는다면, 폐해는 사라지고 이익이 생기며 소인이 스스로 물러갈 것입니다.[80]

우선 태조 재위 당시의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실록의 몇 가지 대화는 그 실태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왕의 사적인 교류와 경연을 통한 공적인 접견 요구 사이의 논란이다. 공적인 접견은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 심성함양의 요체로 제시된 '훈도함양'의 제도적 방안으로서, 성리학적 지식(경사)의 전달뿐만 아니라 사제(師弟)로서 인격적 감화까지 포괄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 '조석의 가르침[조석납회(朝夕納誨)]', 즉 종일의 교육이 일찍부터 이야기되었다. 따라서 인원과 횟수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며, 특히 사적인 교류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태조가 가까이 하던 유경(이후 이름 유창(劉敞))은 그의 잠저(潛邸) 시절부터 가까운 인물이었던 만큼 사대부들의 반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왜 이토록 사대부들은 심성함양과 인간적 감화를 중시하였는가? 일단 상주문과

---

78) 함재학(2006),「유교전통 안에서의 입헌주의 담론」,『법철학연구』제9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189쪽.

79)『태조실록』권2 태조 1년(1392년) 음력 11월 12일 : "諫官請日開經筵, 上曰: "鬚鬢旣白, 不必會諸儒聽講。" 都承旨安景恭對曰: "諫官之意, 非但欲殿下讀書, 蓋欲近正人而聞正言。" 上曰: "予雖不出經筵, 每於便殿, 令劉敬講《大學衍義》。""

80)『태조실록』권14 태조 7년(1398년) 음력 윤5월 11일 : "親君子遠小人。 《書》曰: "三公論道經邦。" 又曰: "朝夕納誨, 以輔台德。" 古之賢君, 或夜半前席, 以迎賢士, 其勤如此。 今殿下接見大臣之日少, 故經綸之言, 不得上達。 伏望日接賢士大臣, 講論治道, 則弊無不革, 利無不興, 而小人自退矣."

법전에서 인용된 경전[81]과 재상의 직분에 대한 언급[82]을 종합해보면, 조선의 사대부들은 좋은 정치의 중대한 원리와 법칙으로서 성왕의 심법(心法)을 국왕에게 전수하는 것[83]을 중요시하였으며, 간관과 안경공 등이 주장한 '선비와 대신의 접견과 강론'은 이 전수를 덕성과 기질의 양육(養)[84]이라는 의미와 동일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성리학에서 말하는 교육의 경험적 차원(下學)에 해당[85]한다. 더불어 이렇게 양육된 덕성과 기질은 기본적으로 거경궁리(居敬窮理)[86]를 통해 형성되는 만큼, 이를 위해 응당 국왕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위한 이른바 인륜적 일상[87]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왕 교육 제도의 운영에서 사대부들이 제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사대부들은 이 '인륜적 일상'을 설명하기 위해 남송의 진덕수가『대학연의(大學衍義)』에서 밝힌 제왕의 학문 방식을 인용하였다.

전하의 생각에는 반드시 넓은 집과 뜰 안 어디서든지 배움이 없을 수 없는데 어찌 반드시 일정한 법도에 구속되어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간 후에야 학문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이 생각하건대, 군주의 학문은 한갓 외우고 설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경연에 나가서 선비를 맞이하여 강론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어진 사대부를 접견할 때가 많이 하여 덕성을 함양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환관과 첩실[宮妾]을 가까이할 때가 줄여 그 나태함을 털어버릴 수 있기[振起] 때문입니다.[88]

이에 따르면 국왕은 수신을 통해 치국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하며, 그 수신을 위해 특수하게 조성된 환경을 갖춘 곳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그곳은 덕이 있는 인사를 가까이 하고 환관과 여성으로부터 격리되는 곳을 말한다. 사대부들이 소인의 대명

---

81)『서경』열명상(說命上) : "命之曰 : 「朝夕納誨, 以輔台德。(…) 惟暨乃僚, 罔不同心, 以匡乃辟。俾率先王, 迪我高后, 以康兆民."

82)『經濟文鑑』'相業' : "人主以論相爲職 ; 宰相以正君爲職."

83) 송재혁(2015),「정도전의 정치체제론 :『서경』의 정치이념과 왕권의 정상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85-87쪽.

84) 주자는『맹자』이루(하)의 "中也養不中, 才也養不才"을 설명하면서 "養, 謂涵育薰陶, 俟其自化也"로서 버림(棄)의 반대로 사용되었으며, 고자(상)[涵養氣質, 而薰陶德性]과『주자어류』논어(10) 공야장(상) 자위자천장[涵養德性, 薰陶氣質]으로 보면 함양, 훈도 모두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 또 주자(6) 논취사(論取士)에 따르면 "薰陶漸染"으로 사용되는 것도 보인다.

85)『宋史』道學傳(1) '程頤' : "今夫人民善教其子弟者, 亦必延名德之士, 使与之處, 以薰陶成性。"

86)『朱子語類』학(學)3 '논지행(論知行)' : "學者工夫, 唯在居敬、窮理二事。此二事互相發."

87) 고대혁(2012)은『중용』13장에 언급된 공자의 언명을 통해 그가 추구한 일상을 '인륜적(人倫的)'인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자신과 관계 맺는 타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관계가 복잡하게 변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유학 공부의 기본 역시 이 안에서 행동거지와 관계 형성 및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근사록』과 유학의 공부론」,『동방학』제22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73쪽) 그 외에 하학상달에 관한 주자의 주장["下學而上達", 每學必自下學[事]去. ;『朱子語類』]도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할 것이다.

88)『태조실록』권2 태조 1년(1392년) 음력 11월 14일 : "殿下之意, 必謂廣廈大庭, 無地非學, 何必拘於常典, 日御經筵, 然後以爲學哉? 臣等以爲人君之學, 非徒誦說, 其所以日御經筵, 迎訪採納者, 一以接賢士大夫之時多, 而薰陶其德性, 二以親宦官宮妾之時少, 而振起其怠惰."

사로 환관과 여성을 지목하는 것은 대체로 전통적인 시각에서 그들이 국왕의 판단을 흐리는 주범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대부들은 경사의 훈고(訓詁)에 머물지 않고 심성에 내면화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므로, 사제로서 교관들과 친밀함을 도모하여 감화 받는 것을 좋은 교육의 선례로 제시하였다. 그렇기에 이런 특수한 환경이 일상의 중심이어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왕 교육에 대한 사대부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후계자에 대한 교육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번에 공신자제들로 하여금 세자를 시학하게 하였더니, 나이 어린 이들이 강독은 하지 않고 도리어 세자의 뜻에 맞추는[逢迎] 폐해를 일으켰다. 이제부터 함께 시학하지 말고 다만 날을 바꿔 직숙(直宿)하는 것만 허락하라.[89]

간관이 세자가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아뢰니, 임금이 세자에게 매일 서연(書筵)에 나아가 강습을 받는 데 게을리 하지 말라고 명하였다.[90]

의안군 이방석(宜安君 李芳碩)의 서연관에 대한 기록들은 그 방향성에 있어 태조의 것에 나오는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당연히 차기 국왕에 대한 교육도 훈도함양이라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초기 공신의 자제들에게 맡겼던 것을 점차 주요 공신이 대신하게 된 점은 다분히 어린 후사(後嗣)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로 추정된다. 즉, 의안군이 학업에 충실하지 않음으로 인해 후사로서 지녀야 할 정당성이 약화되는 것을 염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는 여러 모로 이 상황이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당시 서연의 중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로 볼 수 있다.

또 하나 여기서 드러나는 점은 이때 서연청 운영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연의 매일 개최 및 참여 요구에 대한 일종의 방패막이였다는 것이다. 서연관 설치를 의안군의 세자 즉위(태조 1년(1392년) 음력 8월 20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91], 주요 인사들을 의안군 주위에 배치하는 등[92], 운영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태조의 행동이 주목되는 까닭은 자신에 대한 교육 참여 요구에 대해 '연로함'과 '사적 교류'를 앞세운 것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태조가 의도적으로 세자의 교육으로 관심을 돌리고 교육 참여

89)『태조실록』권3 태조 2년(1393년) 음력 5월 7일 : "曩者功臣子弟, 令侍學世子, 其年少輩, 不事講讀, 反生逢迎之害。自今毋與侍學, 只許更日直宿."

90)『태조실록』권8 태조 4년(1395년) 음력 9월 18일 : "諫官上言世子不好學, 上命世子日就書筵, 講習毋怠."

91) 앞서 언급된 공신자제의 시학 배치를 기준으로 봐도 즉위 후 이른 시점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과거를 뜻하는 '낭자(曩者)'의 용례로 볼 때 즉위 1년 후인 1393년 무렵으로 보인다.

92)『태조실록』권7 태조 4년(1395년) 음력 3월 13일 : "世子二(貳)師鄭道傳講《孟子》." ;『태조실록』권7 태조 4년(1395년) 음력 5월 11일 : "始置世子副賓客。以韓尙敬爲左副賓客, 劉敬爲右副賓客."

에 대한 자신의 태만을 덮으려 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이미 고려의 경우 국왕 교육의 운영에 관한 전통이 미약하였으므로, 태조 역시 이런 배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정당화했던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경연의 정례화를 둘러싼 논란은 1차 왕자의 난 이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태조가 정난 직후 곧바로 왕위를 정종에게 넘기자[93] 경연도 재개되었는데, 그것이 국왕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94]이다. 문제는 국왕으로서 정종의 입지가 대단히 애매모호했다는 것이다. 비록 진안대군(鎭安大君, 이방우)의 뒤를 이어 장자의 자격으로 왕위를 이었지만, 정난의 주체인 정안대군(靖安大君, 태종)과 바로 아래 동생인 회안대군(懷安大君, 이방간)에게 눌렸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이런 상황은 정종이 그 주체들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추대됨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종이 수행하는 경연 내 역시 정상적인 수준의 운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간쟁을 맡은 문하부의 낭사(郎舍)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소장(疏章)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

신 등이 가만히 들으니, 경연 제도는 비단 도학(道學)을 연구하여 밝히는(講明) 것뿐만 아니라 역대 흥망의 자취도 연구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은 모범으로 삼고 악한 것은 경계하여 족히 그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聳動] 방종하려는 뜻을 억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연관은 다만 구두(句讀)만 알 뿐, 도학의 본의[宗]를 강구하지도, 역대의 자취도 아뢰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전하께서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시나, 성학(聖學)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니 경연 강관(講官)의 직분을 그르친[失]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매양 경연에 나아가시면 대간(臺諫) 한 사람으로 하여금 번갈아 입시하게 하고, 또 경연관으로 하여금 치도(治道)를 강론하게 하여 날이 기울 때 마치소서.[95]

소장에 나온 문하부 낭사들의 태도는 경연관들의 역량에 대한 폄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문하부 낭사(간관)들은, 경연관의 인적 구성이 태조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96], 의외로 그들의 역량을

93) 정확히 태조 7년(1398년) 음력 9월 5일에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왕위 계승 후 약 1달 뒤인 10월 5일『정관정요』를 교재로 강론이 시작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비록『태조실록』에 기록되었더라도, 이미 즉위한 정종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며, 다만 이듬해를 재위 1년으로 맞추기 위해 태조 기록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94) 김인호(1998),「여말선초 군주수신론과 『대학연의』」,『역사와 현실』제29권, 한국역사연구회, 95쪽.

95)『정종실록』권1 정종 1년(1399년) 음력 5월 1일 : "臣等竊聞, 經筵之制, 非惟講明道學, 歷代興替之迹, 無所不講。 故善可爲法, 惡可爲戒, 足以聳動其善心, 懲創其逸志。今者經筵官, 但知句讀, 不講道學之宗, 不陳歷代之迹, 故雖殿下日御經筵, 無補於聖學, 殊失經筵講官之職. 願自今, 每御經筵, 令臺諫一員, 更迭入侍, 又令經筵官, 講論治道, 至于日昃乃罷."

96) 시기로 보면 지경연사 이서는 대사헌에서 파직된 태조 3년과 왕비의 능을 지키게 했던 태조 5년, 그리고 그 공으로 참찬문하부사로 복직한 태조 7년 등 관력을 추적하여 보건대 태조 7년 이후부터 경연관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박은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참찬문하부사 겸 대사헌으로 복직한 태조 7년, 배중륜 역시 태조 7년 당시 시강관, 조용은 태조 7년 이후 간관으로 활동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보면 태조 7년 이후의 경연청 인원이 문하부의 시무소에 거론된 대상인 것으로 짐작

크게 폄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박과 조용은 국왕을 위해 『사서절요(四書切要)』를 찬술한 경험이 있는 만큼[97], 경연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구두만 알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당초 낭사들이 한 발언의 중심을 다룬 곳에 두고 있다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즉, 기존 연구에서 정종 재위기의 경연이 단지 의례의 유지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98]이 나온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경연이 이전 태조 때 거의 시행되지 않았던 경연을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낭사들이 올린 발언 중 "날이 기운 뒤에 마치라[至于日昃乃罷]"는 제안이 등장하는 것은 유의하여 볼 일이다. 당시 경연을 담당한 교관들이 대부분 겸직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본업을 제쳐두고 교육만 준비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당연히 본직의 업무를 면제해야 하므로 사실상 전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왕 교육을 담당하는 녹관(祿官)의 설치를 이로써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낭사들은 이 시기부터 경연의 정례화를 위해 이를 담당할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던 셈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제안이 집현전을 설치할 즈음인 세종 즉위 초까지 반복되고 있었고, 겸직과 상·하번에 의한 운영으로 시작한 초기 형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추정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2차 왕자의 난(정종 2년(1400년) 음력 1월 28일) 이후 태종을 세자로 삼고[99] 서연을 시행한 점이다.

신 등이 엎드려 살피건대, 전하가 동궁에 계실 때에 서연을 열어 『대학연의(大學衍義)』

된다.

97) 『태조실록』 권15 태조 7년(1398년) 음력 12월 17일 : "左政丞趙浚、兼大司憲趙璞、政堂文學河崙、中樞院學士李詹、左諫議大夫趙庸、奉常少卿鄭以吾等, 撰《四書切要〔四書節要〕》以進."

98) 실제로 윤훈표(2010), 「조선 정종 때의 경연에 대하여」(『한성사학』 25집, 한성사학회)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윤훈표는 조선 정종도 그 경연의 형식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다(8쪽)는 식으로 당대 인식을 추정하고 있으니, 바로 "늙었으니 배울 것이 없지만[予老矣, 無及於學]"(정종 2년(1400년) 음력 5월 8일 5번째 기사)는 표현에 근거한 듯 보인다. 그런데 정종이 한 그 말은 국왕들이 으레 하는 핑계로 보이므로 다소 과도한 추정이라 판단된다.

99) 태종의 세자 논의는 『정종실록』 권3 정종 2년(1400년) 2월 1일 기사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때에도 정종은 태종을 '동복아우[(同)母弟]'로 지칭하였다. 문제는 2월 4일 책봉 당시 대신 중에(누구인지 언급되지 않음) "왕태제(王太弟, 국초의 왕세제 지칭)로 삼으라고" 조언하자 "지금 나는 직접 이 아우로 아들을 삼겠다[今予則直以此弟爲子]"고 한 발언이다. 태종도 이를 기준으로 부자 관계에 해당하는 삼년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후 명나라와 조선 양국 모두 정종의 이 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먼저 태종 1년(1401년) 음력 6월 12일 명나라 예부 자문(咨文)에서 조선 측이 주달(奏達)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정종을 '친형(親兄)'이라고 명백히 언급했다는 사실을 남긴 점, 세종 6년(1424년) 음력 7월 12일 정종의 하명에 비추어 변계량이 세종에게 '정종의 손자로 지칭할 것[稱孫於恭靖]'을 제안했는데 중의가 논박한 점, 그보다 1년 전인 세종 5년(1423년) 11월 17일에도 "우리 공정 대왕(恭靖大王)과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의 두 신위는 같이 한 대[一世]가 되오니"[我恭靖大王、太宗恭定大王兩位, 同爲一世]라고 언급하며 공영달의 『춘추』 해석인 "『春秋孔氏正義』 曰: '父子異昭穆, 兄弟昭穆同"과 『예기』의 "『禮記』'祭統' 曰: '祭有昭穆者, 所以別父子也。'"을 인용한 점에 비추어 이후 형제상속으로 인식한 것이라 추정된다.

를 강론하였으니, 성학(聖學)에 이미 열심히 하신 성과[緝熙之功]가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도의를 강론하여 존양성찰(存養省察)의 공효를 더하신다면, 전하의 마음이 광명정대하여져서 사리(事理)를 분별해야 할 때에 이르더라도 시비를 잘못 보지 않고 일할[用舍] 때에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뒤엉키지 않으며, 기호[嗜欲]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참소나 아첨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연후라야 조정 백관이 바로 잡히지 않을 수 없어 태평의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깊이 명심[潛心]하소서.[100]

상기 상소는 정종의 선위 직후 경연 운영에 관해 작성한 것으로, 다른 기록[101]과 더불어 태종의 동궁 시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간관들은 태종의 꾸준한 참여를 요구하고자 세자 시절 서연 참여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으로 정종 때 시행된 국왕 교육이 제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또한 같은 시기 태종의 서연 참여 역시 정종의 경연 참여와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태조처럼 자율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에 맡길 수 없는 만큼, 태종도 교육의 참여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점에 비추어 정종 재위기의 국왕 교육 운영이 단순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처럼 정종의 재위기는 제도적으로 태종 때의 운영을 대비한 일종의 준비 기간으로 보인다. 경연의 경우 정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을 시도하면서 '촬요(撮要)', 또는 '절요(切要)'의 이름이 붙은 간략한 교재를 제작, 사용하였고, 동시에 태종도 세자로 삼은 이후로 서연에 참여시켜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였다. 또한 선위가 이루어지는 음력 11월 11일(양력 11월 26일) 이후로도 1달 보름 정도 쉬지 않고 과정을 개최하고 운영하고 있다. 아마도 이 기간 중에 실제 참여한 것은 새로 즉위한 태종일 가능성이 높으며, 정종의 경연관 대신 기존의 서연관을 임시로 참여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모든 정황은 정종 당시의 국왕 교육 과정 운영이 태종 즉위 이후 원활하게 지속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과연 이런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그 이듬해인 태종 1년(1401년) 1월에 올린 권근의 상소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

100)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1400년) 음력 11월 13일 : "臣等伏見, 殿下在東宮, 開書筵, 講《大學衍義》, 其於聖學, 已有緝熙之功。 伏惟殿下, 日御經筵, 講論道義, 益加存養省察之效, 則殿下之心, 光明正大, 事理之來, 是非不謬, 用舍之際, 賢愚不混, 嗜欲無自而撓, 讒諂無自而進。 然後朝廷百官, 莫敢不正, 而可以致太平之治也。 伏惟殿下宜潛心焉."

101)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1400년) 음력 7월 2일 : "一日, 世子與書筵官, 論遺逸之士, 乃曰: "吉再, 剛直人也。 我嘗同學, 不見久矣。" 正字田可植, 再同貫人也。 具言在家孝行之美, 世子喜, 下令三軍府移牒徵之。 再乘傳至京, 世子啓于上, 授奉常博士, 再不詣闕謝恩, 乃上書東宮曰: 所言,再於昔日, 得與邸下, 讀《詩》泮宮, 今之召臣, 不忘舊也。 然再於辛朝登科筮仕, 及王氏復位, 卽歸于鄉, 若將終身。 今者, 記舊徵召, 再欲上謁卽還, 從仕則非再志也。世子曰: "子之乃綱常不易之道也, 義難奪志。 然召之者吾也, 官之者上也, 告辭於上可矣."

넷째 경연에 부지런하소서. 제왕의 도는 학문으로 인해 갖추어지고[明], 제왕의 정치는 학문으로 빛나게 되는 것[廣]입니다. 예로부터 왕이 반드시 경연을 두어[設] 성학(聖學)을 강구하는 것이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즉위하신 이래 비록 경연을 베풀었으나 정강(停講)하는 날 또한 많았습니다. 전하의 천성은 영명하시고 학문도 정밀하고 박학[精博]하시니, 유신(儒臣)이 진강할 때 어찌 능히 발휘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 경연에 납시어 집중하여 정진한다면, 마음 가운데에 의리가 밝게 나타나 편안히 있을 때와 정사로 바쁜 때보다는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성학(聖學)이 어찌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진보하지 않겠습니까. 또 진강하는 신하들이 비록 모두 평범한 선비이오나 전하께서 배웠다고 하셨던 자들입니다. 윤번(輪番)으로 교대하여 나와서 부르실지 여부를 살피다가 분부가 없으시어 물러간 것이 여러 번이오니 선비를 존숭하고 배움으로 향하는 뜻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중략)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타고난 자질[天資]이 좋은(高明) 것을 믿지 말고, 유신(儒臣)들이 고루하다고 말하지 마시며,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서 마음을 비우고[虛心] 겸양하여[遜志] 부지런히 연구하시어 감히 하루라도 정지하지 마소서. 다른 연고로 정강(停講)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강관(講官)을 만나시고 면대한 뒤 끝내소서.[102]

이 상소에서 권근은 태종의 즉위 당시 경연 운영을 “거의 운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정강(停講)이 많아진다는 것은 처음 즉위한 정종 2년의 두 달에 비해 점차 핑계를 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이런 태종의 태만에 대해 사대부들이 우려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정종 재위기의 노력이 그다지 효과를 보이지 못함에 따라 권근은 태종에게 참여의 필요성을 성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하였으며, 여기서 그는 국왕의 교육 활동 참여를 그의 사적 시간[燕居無爲之時][103]이나 공식적 업무 시간[聽政多務之際]과 구분하면서 “하루라도 정지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마땅히 강관을 면대한 뒤 끝낼 것”을 주문하였다.

신은 전하의 호학(好學)하시는 것을 아옵니다. 그러하오나 여러 어진 신하들과 더불어 강론하지 않고, 오직 소신과 더불어 읽으면, 경연의 법은 장차 폐지될 것입니다. 후세의 자손이 반드시 이를 본받는 자가 있을 것이오니, 혹시 어둡고 용렬한 임금이 있어, 아첨하고 간사한 신하가 날마다 깊은 궁중에 들어와서 하지 않는 것이 없고,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임금께서 글 읽기를 좋아한다.’고 하면, 딱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교훈을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의 호학하시는 것과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104]

---

102)『태종실록』권1 태종 1년(1401년) 음력 1월 14일 : “四曰勤經筵。 帝王之道, 由學而明; 帝王之治, 由學而廣。 自古王者, 必設經筵, 以講聖學, 良以此也。 殿下卽位以來, 雖設經筵, 停講之日, 蓋亦多矣。 殿下天性英明, 學問精博, 儒臣進講, 豈能有所發揮者哉? 然而殿下御於經筵, 凝神講究, 方寸之天, 義理昭著, 必有異於燕居無爲之時, 聽政多務之際者矣。 聖學豈不由是而益進哉! 且進講之臣, 雖皆庸儒, 然殿下所號學焉者也, 輪日更進, 以候進止, 不報而退者屢矣, 崇儒嚮學之意, 不已輕乎? (중략) 伏望殿下, 毋恃天資之明, 毋謂儒臣之陋, 日御經筵, 虛心遜志, 孜孜講明, 毋敢一日或輟, 其有他故停講之日, 亦宜引見講官, 面諭而罷.”

103)『논어』위정편 “退而省其私”에 대한 주자 주 : “私, 謂燕居獨處.”

104)『태종실록』권1 태종 1년(1401년) 음력 3월 23일 : “臣則知殿下之好學也, 然不與諸賢臣講論, 唯與

한편 태종과 김과(金科)의 대화는 같은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김과는 태조 때부터 굳어진 경연 불참과 사적 교류의 고착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연 제도 자체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김과의 이런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었으며, 이 대화 이후로도 두 사람의 사적 교류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105] 이는 태종 역시 부왕(태조)과 마찬가지로 경연에 의한 공적 접견보다 사적 교류를 더 선호했음을 확인시켜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필요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결과적으로 태종 때까지 경연의 운영 실태를 통해 겸직과 상·하번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의 초기 형태는 분명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종일 교육이 이미 한 차례 대안으로 제시된 만큼 자연스럽게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미있는 점은 태종 역시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연 참여 요구에 대해 부왕(태조)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 세자께서 타고난 자질이 명료하고 순수하여[明粹] 학문에서도 날로 성취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사, 빈객[師賓]과 시학(侍學)의 진강은 때가 정해져 있고 〈세자와〉 더불어 거하며 출입하지 않은 반면 〈세자가〉 평상시에도 환관(內竪)과 더불어 어울리므로[遊戲], 학문에 힘쓸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덕(輔德) 이하는 원 소속[本司]의 업무(仕)로 인하여 시강에 전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 등은 <세자가 스승들에게 제대로> 감화[薰陶·涵養]를 받아 성학(聖學)에서 성취하는 공업[緝熙]을 이루는 데 이르지 못할까 조금 염려되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세자의> 시학(侍學)을 늘려 배치하고 보덕(輔德) 이하는 원 소속의 업무에서 면제하시고 동궁(內殿)에 모셔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평상시에도 항상 좌우에 있게 하고, 매번 2명씩 <세자의> 침전(內寢)에 숙직하게 하며, 일이 있을 때 조언하여 서로 덕행을 닦게 하십시오. 시위하는 환관은 온후하고 신중한[醇謹] 이 10명을 골라 번(番)을 나누어 모시게 하고, 간사한 소인들은 모두 면직[罷黜]하여 국본(세자)을 바르게 뫼시게 하소서.[106]

세자(양녕대군)의 교육에 관한 태종과 사대부들의 논의는 자신의 것에 비해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정종 때 문하부 낭사들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본직의 업무를 면제하고' '종일 모시게 하는' 등의, 약간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小臣讀之, 經筵之法, 將廢矣, 後世子孫, 必有效之者。儻有昏庸之主, 諂媚之臣, 日入深宮, 無所不爲, 出語人曰: '上好讀書', 則無乃不可乎? 是不可以爲訓也。得如殿下之好學難矣."

105)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1407년) 음력 7월 28일 : "今金科獨在經筵, 秩高務煩." 이 발언이 나온 시점에 김과는 당상 경관직에 있으면서 당상 겸직 경연관을 겸하고 있었다.

106)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1405년) 음력 6월 29일 : "今我世子, 天資明粹, 學問日就, 然師賓侍學, 進講有時, 而不得與居處出入, 故當燕居之時, 與內竪遊戲, 不勤學問; 輔德以下, 亦因本司之仕, 不專侍講。 臣等竊恐無以薰陶涵養, 以至緝熙也。 願殿下加置侍學, 令輔德以下, 除本司之仕, 入侍于內, 雖當燕閑, 常在左右, 每令二員, 直宿內寢, 隨事箴警, 以相琢磨。 其侍衛宦官, 擇其醇謹者十人, 分番入侍; 其憸小之徒, 悉令罷黜, 以端國本."

제시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국왕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단초가 오히려 서연에서 보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교관의 인원을 늘리자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 인원만으로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후 집현전 복설 이전에 다시 한 번 제기될 정도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 방식이 기존 체제에서 가장 상책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편 서연을 통해 나타난 국왕 교육의 새로운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태종은 세자(양녕대군) 책봉에 대한 명나라의 자문(咨文)을 받자마자 그 학업을 도울 방도를 찾고 서연관을 임명하는 등[107], 경연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태종은 경승부(敬承府)로 불리는 행정 기구와 익위사(翊衛司)라는 호위 기구까지 별도로 세우는데[108], 여기서 서연관의 역할은 교관으로서 업무를 전문화시킴으로써(세자관속 → 경승부/익위사/서연관) 각각 최적화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태조 즉위 당시 발표된 관제에서 의안군 방석의 세자관속은 교관들을 직제 안에 통합적으로 편성했기 때문[109]이다. 따라서 조선의 동궁관은 초기 세자첨사부와 비슷한 편제로 출발하여 태종 때 공양왕 말기의 형태(징원당/춘방원)와 같이 분할함으로써 서연관을 교관으로 확실히 자리 잡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종 대에 이르면 앞선 논의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경연에 나아갔다.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탁신(卓愼)이 아뢰었다. “요즘 경연관(經筵官)이 번(番)을 나누어 나아와서 강론하는데, 모두 다른 사무를 맡은 관계로 여러 경서의 깊은 뜻을 숙고해볼 여가도 없어, 강론 때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지금부터 번(番)을 통합하여 하나로 하며 강론 후 경연청(經筵廳)에서 물러나서 종일토록 토론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도 그 말을 따르고, 또 <경연관들에게> 점심밥을 주도록 명하였다.[110]

우선 동지경연사 탁신이 세종 즉위 초 경연 중에 제기한 운영 방식이다. 그는 겸직과 상·하번이라는 기존의 운영 형태에 대해 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는 세종 초까지도 여전하였으며 인원 추가와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탁신은

107)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1405년) 음력 6월 29일 사간원의 서연관 운영 대책을 곧바로 승인한 점과 음력 9월 14일 세자의 학업 미진을 이유로 환관의 처벌과 서연관에 대한 경고를 한 게 대표적이다.

108)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1404년) 음력 8월 6일 : “置敬承府司尹、少尹、判官、丞、注簿各一。 世子府也.” : 『태종실록』 권35 태종 18년(1418년) 음력 6월 7일 : “置翊衛司。 改世子左右司衛爲左右翊衛, 左右翊衛爲左右翊贊.”

109)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1392년) 음력 7월 28일 : “世子官屬: 皆兼, 掌講學侍衛等事。 左右師各一, 正二品; 左右賓客各一, 從二品; 左右輔德各一, 從三品; 左右弼善各一, 正四品; 左右文學各一, 正五品; 左右司經各一, 正六品; 左右正字各一, 正七品; 左右侍直各一, 正八品; 書吏四, 八品去官.”

110) 『세종실록』 권2 세종 즉위년(1418년) 음력 12월 17일 : “御經筵。 同知經筵卓愼啓曰: 近來經筵官分番進講, 皆任他務, 故群書蘊奧, 未暇講論, 進講之際, 未能詳盡。 願自今合爲一番, 進講後退于經筵廳, 終日討論. 上從之, 仍命給晝飯.”

기존 번을 통합하고 또 다시 정종 당시 문하부 낭사와 마찬가지로 겸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종일 교육을 주창하고 있다. 이처럼 정종 이래로 종일 교육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며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점은 이로써 세종 때 경연 운영 형태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즉, 이는 세자(양녕대군)의 서연관에 대한 논의에서도 제기되었던 '본직 업무의 면제'와 더불어 가까운 시점에 아예 국왕 교육을 위한 녹관(祿官)이 설치될 것을 예고한 것이었다.

서연관은 모두 겸직(兼官)으로 임명되니 불편하다. 또한 최만리(崔萬理)와 박중림(朴仲林)이 들어와서 모시고 섰을 때 세자가 그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활발히> 토론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 사람은 모신 것이 오래 되어 서로 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관원들은 날을 바꾸어 들어와 강론하니 모두 낯이 설은 사람들이므로 세자가 부끄러워 머뭇머뭇하면서 말하지 않는다. 이렇다면 서연관은 겸관을 없애고 실직(녹관)으로 하여, 장기 근속케 하고 그 임무만을 전담하게 함이 옳을 것이다.[111]

사실 상기와 같은 추정은 집현전 설치 이후 서연관에 관한 세종의 발언에서 그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세종은 면식의 정도에 따라 교육의 질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며 기존의 겸관을 없애고 실직으로 교체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하번으로 운영되는 타관겸직에 비해 집현전 담당인 실직의 성과가 더 뛰어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종이 점차 종신 전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 또한 그의 발언 가운데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점은 다른 한편으로 경연과 집현전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그 동안 경연 운영의 개선에 관한 논의의 산물로 집현전을 유력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집현전은 고려의 경연 기구로 운영되었던 보문각의 부속 전각 명칭인 동시에 당나라에서도 교육 기구 명칭으로 사용되는 등, 그 유래 상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 개선의 확실한 단서는 응당 가장 국왕 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했던 송나라이다. 여말 윤소종은 창왕에게 올린 상소[112]에서 『송사기사본말(宋史紀事本末)』[113]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경연관에게 적용된 윤번제를 강론 순서

111)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1431년) 음력 10월 29일 : "書筵官, 皆以兼官爲之, 未便。 且崔萬理、朴仲林入講之時, 世子頗與問難, 無他, 以二人侍從日久相親故也。 餘員更日入講, 俱是新面, 故世子羞澁不言。 以此觀之, 書筵官除兼官, 設祿官久任, 以專其任可也."

112) 『고려사』 권120 제신열전 권제33 '윤소종' : "昔程子爲講官而上言曰, '人主, 一日之內, 親寺人宮妾之時少, 接賢士大夫之時多, 則自然氣質變化, 德器成就.' 願殿下, 每朝問安慈闈之後, 出便殿, 進御膳. 命諸講官館閣學士, 常侍左右, 從容宴語, 開說道理, 至於日昃, 至於夜分. 天命之去留, 人心之向背, 稼穡之艱難, 征戍之勞苦, 治亂之源, 興亡之迹, 古今禮樂, 人物賢否, 日陳於前, 則上聽積久, 自然通達, 習與性成, 堯·舜同德." 여기서 윤소종이 인용된 정자(정이)의 발언은 『송사』 도학전 등에 있는 것으로 숭정전설서(崇政殿說書, 경연 시강관)로 임명된 뒤에 한 것이다.

113) 『宋史紀事本末』 권45 '낙촉당의(洛蜀黨議)' : "習與智長, 化與心成。今夫民善敎其子弟者, 亦必延名德之士, 使與之處, 以薰陶成性。況陛下春秋方富, 雖睿聖得於天資, 而輔養之道不可不至。大率一日之中, 接賢士大夫之時多, 親宦官、宮妾之時少, 則氣質變化, 自然而成。願選名儒入侍勸講, 講罷, 留之分直, 以備訪問."

뿐만 아니라 종일교육[以備訪問]을 위한 숙직의 순서로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이 방식은 충목왕 즉위년인 1344년[114], 사대부가 정치세력화 되던 시기[115]부터 제기되어 공민왕 이후 일반적 방식으로 정착되었으며[116], 고려와 달리 문한 기구를 주축으로 탄력적인 인사 운용을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책임관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다만 여말을 거쳐 마련된 초기 방식이 이에 적합하지 않음이 드러남에 따라 업무의 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고 겸업으로 인한 강론 수준의 저하를 방지하는 쪽으로 개선 방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세종 대에 이르러 이런 공감대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은 그의 호학(好學)적 자질로 인해 경연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 즉위 후 경연 개최의 횟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117], 이것이 선왕들에 비해 학업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갖춘 결과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기존 형태의 단점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경연 운영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적용해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교육 참여에 대한 국왕의 태도가 바뀐 것은 이 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그런 시점에서 집현전이 설치된 것은 이와 무관할 수 없는 충분한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당연히 이 중 집현전 부분에 관해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제 경연과 집현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세종의 설치 이전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한다. 고려는 이른바 금내학관과 예문관, 보문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문 기구들이 있었으나, 조선에서 이들 대부분은 산직(散職)처럼 되거나 국왕의 문서 행위, 또는 장서를 담당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태조 이후 조선은 경연청의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미 종일 교육이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었다. 더욱이 이런 시기에 정종은 고려 때 운영된 집현전을 복설(復設)하고자 시도하였다. 또 태종 당시 2차례에 걸쳐 유사한 논의가 단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경연 제도의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었고, 태조와 태종은 참여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이를 조장하고 있었다. 특히 그 변화의 방식이 이전에 운영된 문한 기구의 복설이라는 사실은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

114) 『고려사절요』 권25 충혜왕(후) 5년(1344년) 음력 7월 : "置書筵官, 分爲四番, 更日侍讀."

115) 변은숙(2004)에 따르면, 충목왕 초 관료들은 정통적 관료인 유신(儒臣)과 부원세력(附元勢力)이 공조하였고, 이 중 유신들은 과거 출신, 명문, 그리고 이제현과 연관을 맺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3쪽) 이것은 정치도감 설치 이후로도 유신, 과거 출신(좌주/문생)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5-26쪽) (「고려 충목왕대 정치세력의 성격」, 『중앙사론』 19집,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116) 『고려사』 권76 백관지(1) 권제30 '보문각' : "恭愍王元年, 開書筵, 亦分番入侍. 辛禑元年, 令五品以下四人爲侍學, 分兩番進講, 及遞官, 陞四品."

117) 세종이 처음 경연을 실시한 음력 10월 7일을 기준으로 3개월 간 총 28회(10월 8회, 11월 15회, 12월 5회)를 시행하였다. 이는 태조 재위 7년 간 5회, 정종 재위 2년 간 34회, 태종 재위 18년 간 9회 등에 비해 상당한 것이다.

2. 집현전의 복설과 경연 제도의 상관성

집현전은 왕조 교체 후 복설된 최초의 문한 기구로, 그 명칭은 당나라 현종 때 설치된 기구(집현원)에서 유래하였다. 중국에서 가장 활발히 운영된 시기는 개원 13년(725년), 여정전(麗正殿)을 개명한 이후로, 학사와 직학사, 시강학사 등 18명이 배속되었다.[118] 고려는 인종 14년(1136년) 연영전(延英殿)의 이름을 바꾸면서 등장하고, 이후 여말 우문관(右文館), 진현관(進賢館), 수문전(修文殿)과 함께 언급된다.[119] 이것은 고려의 집현전이 금내학관에 속하였음을 의미하며[120], 주로 당제(唐制)의 영향을 받아 산관(散官)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기구들은 그 명칭에서 보이듯 고려 국왕의 문치를 상징하고 그의 최측근으로서 의미를 지닐 뿐, 경연을 담당하는 등의 소위 '고문(顧問)'을 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관전(諸館殿)에 속한 학사들은 명예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121]

그렇다면 조선에서 이 기구를 다시 설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를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그 시점을 처음 시작된 정종 때로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는 정종 재위기의 성격이다.

<정종은> 유후사(留後司, 개성)에 도착한 뒤 친히 수창궁(壽昌宮)으로 가서 북원(北苑)에 올랐다. 그 때 <정종이> 좌우 근신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고려 태조가 지혜로써 여기에 도읍을 세웠으니 <그것이> 어찌 우연이었겠는가!"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송경(松京)으로 도읍을 옮길 뜻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122]

기존 연구는 즉위 초 정종이 개경으로 환도한 사실에 주목하는데, 그 까닭은 사실 무인정사(戊寅定社, 제1차 왕자의 난) 전후의 정국(政局)과 관련된다. 당시 한양 천도로 인해 발생한 영선(營繕)의 과중함으로 민심이 천도(遷都)에 호의적이지 않았고, 지배층 내부에서도 태조와 정도전이 내세운 요동정벌 등, 급격한 변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정종은 태조와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이었음을 천명하고[123],

---

118) 『舊唐書』 권8 본기 제8 '현종'(상) : "夏四月丁巳, 改集仙殿爲集賢殿, 麗正殿書院改集賢殿書院 ; 內五品已上爲學士, 六品已下爲直學士."

119) 『고려사』 권76 백관지(1) 권제30 '제관전학사' : "仁宗十四年, 改文德殿爲修文殿, 延英殿爲集賢殿. (…) 恭愍王五年, 廢兩館, 置修文殿·集賢殿大學士直學士. 十一年, 復置右文館·進賢館, 大提學·提學·直提學. 十八年, 復置修文殿·集賢殿, 例改提學爲學士. 二十一年, 復置右文進賢館, 改學士爲提學."

120) 당나라는 현종 때 집현전을 설치하고 학사와 시강 외 장서, 사서(寫書), 수서(修書), 지제고(知制誥) 등을 두었고, 고려도 예종에 이은 인종 때 대학사와 학사를 두어 당나라와 비슷한 모습을 갖춘 전력이 있다. (『고려사』 권76 백관지(1) 권제30 제관전학사 : "仁宗十四年, 改文德殿爲修文殿, 延英殿爲集賢殿. 文德·延英古有大學士·學士, 今隨殿改號.") 다만 이후 명칭을 바꾸어 진현관(進賢館)으로 불리면서 직제가 수시로 바뀐 점에 비추어 경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21) 신수정(2012), 「고려전기 학사관부와 예종대의 학사직 운영」, 『역사와 현실』 제86호, 한국역사연구회, 164쪽.

122) 『정종실록』 권1 정종 1년(1399년) 음력 2월 15일 : "至留後司, 御壽昌宮登北苑. 顧謂左右曰: "以前朝太祖之智, 建都于此, 豈偶然哉!" 遂有移都松京之志."

고려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여 지배층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정종은 부족한 정변의 명분을 보완하기 위해 복고(復古)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종이 재위 2년(1400년) 복설한 집현전을 보문각으로 명칭 변경한 점[124]에서 드러난 의도이다.

왕은 총명하고 슬기로우심이 연못처럼 깊고 아름다워 독실하고 밝은 덕으로 유학[儒術]을 숭상하고 화풍(華風)을 즐거이 흠모했다. 그래서 궁궐[大內]의 한쪽으로 연영서전(延英書殿)의 북쪽이며 자화전(慈和殿)의 남쪽에 따로 보문각(寶文閣)과 청연각(淸讌閣) 두 각을 창건하여 우리 송 황제의 어제조칙(御製詔勅)과 <하사한> 서화(書畵)를 받들어 게시하여 교훈으로 삼았다. <그는> 반드시 몸가짐을 엄숙히 하여 머리를 조아린 연후에 우러러 바라보았으며, 오로지 주공·공자·맹자[孟軻]·양웅(揚雄)으로부터 오늘날까지 고금의 서적을 모아 놓고 매일 연로한 스승(老師)·도에 달통한 선비(宿儒)와 함께 성인의 도를 토론하여 도를 날로 사방에 펼치니[敷暢], 왕이 그 마음 가운데 잊지 아니하고(藏) 마음이 수양되며(修), 만물이 길러지고(息) 그 은택이 흘러넘친다(游). 그러므로 정당(政堂)으로 나가 임어하지 않더라도 삼강오상(三綱五常)의 가르침과 성명도덕(性命道德)의 이치가 사방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이다.[125]

중국 측 기록에 보문각과 연영전이 함께 언급된 점[126], 그리고 정종 당시 제안된 집현전의 직능이 이 보문각과 상호 유사한 점[127]은 앞서 언급한 정종 재위기의 복고적 경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보문각은 고려 국왕의 경연기구였던 만큼 정변과 자신의 즉위에 대한 정당성을 경연의 재개에서 찾으려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상의 점들을 바탕으로 이제 집현전 복설에 관한 조박의 제안을 살펴보자.

---

123) 윤정(2015)은「정종대 상왕 태조의 임어와 개성 덕수궁」(『서울학연구』 제58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에서 정종과 태종의 정치적 입장을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이는 태종이 다시 개경에서 한양으로 복귀한 이유를 정종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가령 실록 정종 1년(1399년) 음력 3월 7일 환도 당시 태조는 "처음에 한양(漢陽)으로 옮긴 것은 오로지 내 뜻만이 아니었고, 나라 사람과 의논한 것"이라며 눈물을 지었다. 윤정은 이 발언이 환도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한다.

124)『정종실록』권3 정종 2년(1400년) 음력 1월 10일 : "改集賢殿爲寶文閣."

125)『宣和奉使高麗圖經』권6 궁전2 '연영전각' : "王以聰明淵懿, 篤實輝光之德, 崇尙儒術, 樂慕華風. 故於大內之側, 延英書殿之北, 慈和之南, 別創寶文淸燕二閣, 以奉聖宋皇帝御製詔勅書畫, 揭爲訓則. 必拜稽肅容, 然後仰觀之, 一以集周孔軻雄以來古今文書, 日與老師宿儒, 討論敷暢, 先王之道, 藏焉脩焉, 息焉游焉. 不出一堂之上, 而三綱五常之敎, 性命道德之理, 充溢乎四履之間."

126) 송나라 서긍의『선화봉사고려도경』은 보문각에 대한 기록을 그 장소 명인 '연영전각'으로 분류하고 있다.『고려사』권56 지리지(1) 권제10 왕경 개성부 연혁에 따르면 "연영전(延英殿)은 집현전(集賢殿)으로" 바꾼 기록이 있다. 또 서긍의 기록에서 "왕은 이곳에서 진사시(進士試)를 친히 주관한다. (중략) 앞에는 세 각(閣)을 세워 보문각(寶門閣)이라 했는데, 송(宋)의 여러 황제들[累聖]이 내린 조서를 보관한다. 서쪽은 청연각(淸燕閣)으로 여러 사서와 제자백가서[子集]를 보관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종의 개명 역시 이를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127) 당시 중국 사료에서 인용된「청연각기(淸燕閣記)」는 장서, 강론의 기능을 언급하고 있으며, 조박도 복설될 집현전의 직능으로 이 점과 유사하게 소개하고 있다.

처음 문신을 집현전에 모았다. 대사헌 조박(趙璞)이 아뢰었다. "집현전은 겨우 이름만 남고 실질은 없습니다. 청컨대 옛 제도를 회복하여 서적을 많이 비치하고 예문춘추관과 교서감(藝文校書)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되, 문신 4품 이상으로서 관각(館閣)의 직책을 띤 자는 날을 번갈아 모여서 경적을 강론하게 하여 고문에 대비케 하소서." 임금이 깊이 공감하여 허락하고[深許之], 좌정승 조준(左政丞 趙浚)·예천백 권중화(醴泉伯 權仲和)·대사헌 조박(大司憲 趙璞), 중추 권근(中樞 權近)·이첨(李詹)으로 제조관(提調官)을 삼고, 문신 5품 이하로 교리(校理)를 채우고, 7품 이하로 설서(說書)·정자(正字)에 채웠다.[128]

그의 제안에 따르면 집현전은 기능으로 장서[多置書籍]와 강론[講論經籍]을, 기구의 존재 이유로 국왕에 대한 고문[以備顧問]을 언급한다. 이 부분은 당연히 조박이 고려의 보문각을 참고하여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이다. 다만 조박은 소속 학사를 두는 대신 예문춘추관과 교서감의 인원을 겸직시키도록 요청하는데, 그의 이런 제안은 국왕의 측근이라는 의미보다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관(提調官)에 경연 당상을 일부 포함시킨 점도 국왕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정종 때의 집현전은 단순히 당시 복고주의의 영향을 드러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정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종 당시 집현전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실록의 다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숙부의 아들 이점이 종친으로서 고시에 합격하였으니 참으로 흔한 경우가 아니다. 네가 집현전·상서사(尙瑞司)와 삼관(三館)의 여러 선비와 더불어 의안공(義安公)의 집에 가서 축하하라.[129]

여기서 집현전은 삼관(三館, 교서관, 예문춘추관, 성균관), 상서사(인사와 부인(符印) 관리 기관)와 병칭되고 있으며, 이런 병칭은 기존 연구에서 단순한 장서 기능으로 축소된 채 남았을 것이라는 주장[130]과 상당히 배치된다. 일단 그 근거가 되는 명칭의 변경이 약 7개월 뒤에 있었기 때문[131]이다. 또한 정종 말년의 정치적 사건(제2차

128) 『정종실록』 권1 정종 1년(1399년) 음력 3월 13일 : "集賢殿, 徒有其名, 而無其實。 請復舊制, 多置書籍, 令藝文校書主之, 文臣四品以上職帶館閣者, 更日而會, 講論經籍, 以備顧問."

129) 『정종실록』 권1 정종 1년(1399년) 음력 5월 1일 : "叔父之子漸, 以宗親中試, 固非常例也。 爾與集賢殿尙瑞司及三館諸儒, 俱詣義安第以賀."

130) 최승희(1966)는 상기 동일한 기록을 언급하지만 도서관 이상을 넘지 못하고 무용하게 되었거나 폐지되었다고 보는데(「집현전연구(상)」, 『역사학보』 제32집, 역사학회, 4-5쪽), 음력 5월의 기록은 그와 달리 왕명을 봉행하는 기관들 중에 언급되어 어느 정도 활동성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 2년 1월 이후부터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태종 즉위 후 무용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할 듯하다. 왜냐하면 1월 28일 2차 왕자의 난이 나면서 태종이 세자로 임명되어 국정의 중심이 옮겨 갔기 때문이다.

왕자의 난(동해 음력 1월 28일), 태종의 세자 책봉(동해 음력 2월 1일), 그리고 정종의 선위(동해 음력 11월 11일)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집현전의 운영이 중단된 것은 최소 태종이 세자로 등극하고 서연청이 개청된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종 재위기 당시 집현전은 일단 복설에 관해 본격 논의되었다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려의 금내학관 운영에 대한 전통이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문신 중 재주와 학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겸직해온 데 따른 것[132]이다. 다만 정종의 경우 기능적으로 장서와 강론을 담당할 수 있는 해당 관사(官司)의 인원을 겸직시킨 점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겸직임에도 본직의 업무와 차이가 없도록 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전 논의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태종 당시 재차 그 운영 여부에 관한 언급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직제와 겸직 대상 등이 상당하게 거론되었기에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논의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태종 때 논의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정종 때 잠정 중단된 것의 재개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태종 재위기 집현전 복설의 기록에서 그 여부를 확인해보자.

청하건대 집현전을 열고 유사(儒士)를 뽑아 그 인원[額]을 채우고 경사를 강론하십시오.[133]

태종 10년(서기 1410년) 사헌부가 올린 집현전 복설의 안은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대단히 소략하다. 즉, 앞선 조박의 제안처럼 편제와 겸직 여부 등을 상세히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소속 인원을 뽑아 그 인원을 채우라'는 표현만 있다. 이렇듯 제안이 간단할 수 있었던 이유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과거 정종 당시 집현전에 겸직으로 관여했던 두 기구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나누어 두 관(館)으로 만드니, 예문(藝文)은 녹관(祿官)으로 하고, 춘추(春秋)는 겸관(兼官)으로 삼았다. 예문관에는 대제학(大提學) 하나, 제학(提學) 하나, 직제학(直提學) 둘, 직관(直館) 둘이다. 공봉(供奉)은 봉교로 하고, 수찬(修撰)은 대교(待敎)로 하고, 직관(直館)은 검열(檢閱)로 하고, 봉교(奉敎) 이하는 모두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겸하게 하였다. (…) 교서감(校書監)을 고쳐 교서관(校書館)으로 하여 소감(少監) 이상의 관원을 혁파하고, 종5품 교리(校理) 하나, 종6품 부교리(副校理) 하나를 두고, 참외(參外)는 전과 같이 하였다.[134]

---

131)『정종실록』권3 정종 2년(1400년) 음력 1월 10일 : "改集賢殿爲寶文閣."

132)『고려사』권76 백관지(1) 권제30 제관전학사 : "諸館殿學士廢置沿革未詳, 率皆選文臣之有才學者, 入銜兼帶, 以備侍從."

133)『태종실록』권20 태종 10년(1410년) 음력 11월 21일 : "請開集賢殿, 選儒士, 以補其額, 講論經史."

134)『태종실록』권10 태종 1년(1401년) 음력 7월 13일 : "分藝文春秋爲二館, 藝文爲祿官, 春秋爲兼官。 藝文館, 大提學一、提學一、直提學二、直館二。 供奉爲奉敎, 修撰爲待敎, 直館爲檢閱, 奉敎以下, 皆兼春秋館記事官. (중략) 改校書監爲校書館, 革少監以上官, 置校理一、從五品, 副校理一、從六

태종은 즉위 초 “관제가 명나라와 비슷하다”[135]는 이유로 예문관과 춘추관을 분리하고 교서감 역시 종5품 이하의 참상(參上)과 참외(參外)만 남겼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점은 예문관의 전문성을 제고했다는 점[136]으로, 사헌부의 집현전 복설 제안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 이 복설이 제안된 시기를 평가한 내용 역시 사헌부 제안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돌아보건대, 상제(喪制)가 기한이 있어 상사(祥事) 담제(禫祭)가 이미 끝났으나, 마음은 오히려 측연(惻然)하여 감히 편안할 수 없다. 고전(古典)에 상고하니 마땅히 부의(祔儀)를 거행하여야 하므로, 영락(永樂) 8년 7월 26일 신묘(辛卯)에 친히 태조 강헌 대왕(康獻大王)의 신주와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신주를 받들어 태실(太室)에 부(祔)하고, 공경히 곤면(衮冕)을 갖추어 예로써 강신(降神) 헌작(獻酌)하니, 중외(中外)의 신료가 서로 거느리고 하례하였다. 생각건대, 태조 강헌 대왕의 높은 공과 성한 덕이 천인(天人)에 이르렀고, 나 소자(小子) 또한 이루어진 공렬을 이었으니, 조선 억만년의 무강(無彊)한 아름다움을 맞이할 것이 오늘에 달려있다. 하물며, 성한 예를 거행함에 마땅히 비상한 은택을 내려야 하겠다. 금월 26일 새벽 이전의 모반(謀叛)·대역(大逆), 조부모·부모를 죽인 것, 처첩이 남편을 죽인 것, 노비(奴婢)가 주인을 죽인 것, 고독(蠱毒)·염매(魘魅), 모고살인(謀故殺人), 강도(强盜)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은 것, 이미 결정(結正)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다 용서하여 면제한다. 아아! 이미 황고(皇考)를 높이어 극향(克享)의 의(儀)를 베풀었으니, 아름답게 신민(臣民)과 더불어 크게 유신(維新)의 교화를 편다.[137]

기존 연구에 따르면 태조와 신의왕후 한씨의 부묘(祔廟)를 계기로 태종이 공론정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세종의 공론정치, 곧 경연과 집현전의 긴밀한 관계와 국왕 교육의 제도적 활성화도 그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138] 만일 이 주장을 전제로

品, 參外依舊.”

135) 『태종실록』 권10 태종 1년(1401년) 음력 6월 19일 : “照得, 本國陪臣官爵稱號, 因循高麗舊制, 其間不無與中朝官制相似者, 實爲未便.”

136) 최선혜(1995)에 따르면, 태종의 예문관 분설은 그 기구적 독립성을 높이고 유학자들의 기용 폭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다. (105-106쪽) 다만 이 연구는 태종의 예문관 활용을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 접근하기 때문에 경연과 직접적인 연관을 두고 고려한 것은 아니다. (최선혜(1995), 「조선초기 태종대 예문관의 설치와 그 역사적 의의」, 『진단학보』 제80호, 진단학회 참고)

137)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1410년) 음력 7월 26일 : “顧以喪制有期, 祥禫已畢, 心猶惻然, 罔敢或寧, 載稽古典, 當擧祔儀。 乃以永樂八年七月二十六日辛卯, 親奉太祖康獻大王神主及神懿王后神主, (祔)〔祔〕 于太室, 祗服衮冕, 祼獻以禮, 中外臣僚, 相率以賀。 仰惟太祖康獻大王, 隆功盛德, 格于天人, 予小子亦惟成烈是承, 以迓朝鮮萬億年(無彊)〔無疆〕 之休, 正在今日。 矧當縟禮之擧, 宜降非常之澤。 自今月二十六日昧爽以前, 除謀叛大逆、殺祖父母父母、妻妾殺夫、奴婢殺主、蠱毒魘魅、謀故殺人、但犯强盜外, 已發覺未發覺、已結正未結正, 竝皆原免。 於戲! 旣尊皇考, 式陳克享之儀; 嘉與臣民, 誕布惟新之化.”

138) 박홍규・이세형(2006), 「태종과 공론정치 : ‘유신의 교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6쪽.

같은 해 사헌부의 제안을 다시 들여다본다면, 간관들의 입장에서 그 동안 침체된 경연의 재개를 주청할 호기로 볼 수도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는 태종 즉위 후 벌어진 각종 정치적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소위 성리학적 질서로의 복귀를 확고히 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정종 당시의 기능과 편제가 있으므로 이 구상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 또한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집현전 복설 제안이 나오기 전인 태종 7년(1407년) 권근이 관각을 위해 제시한 권학조목(勸學條目)의 등장이다. 당시 태종이 권근의 이 제안을 수용하여 시행한 이 중월부시법(仲月賦詩法)은 이후 춘추과시법(春秋課試法)으로 통합되면서[139] 조선 후기까지 시행되었으므로 앞서 말한 예문관과 춘추관의 분설(分設)과 함께 제술에 전문적인 기구로서 그 위상을 정립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1. 직책이 관각(館閣)을 띠고 있는 문신(文臣)과 한량문신(閑良文臣)으로서 장차 임용될 자는, 매월 5일마다 한 차례씩 예문관에 모이어 서로 더불어 학문을 갈고 닦으며, 무릇 문한에 관한 일이 있으면 모두 제술하게 하여 잘 된 것을 택하여 쓰고 그 능한 정도를 검증하여 승진·폄출(貶黜)하도록 하며, 한량문신도 재주와 행실, 근무에 충실한지[勤慢]를 따져 예문관에 천거하여 채용하게 하고, 직관(直館) 이상은 매일 동인시문(東人詩文) 약간을 뽑아서 그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정부(政府)와 제조(提調)에게 나아가 보고하여 그 취사(取捨) 여부를 들어 책으로 만들게 하고, 양사의 관원(臺諫員)은 매월 (직관 이상의) 근무 태도의 성실함 여부(勤慢)를 따지게 하소서.

1. 삼관(三館)의 여러 학사들은 유학 제조(儒學提調)에게 매월 한 번씩 그들이 읽은 경사(經史)와 여러 서책들을 검증받아 이름을 장부에 기록해두게 하고, 연말[年終]에 품질(品秩)의 연한이 차서 옮기게 될 때에 그들이 읽은 경서(經書)의 수량을 함께 써서, 상등(上等)인 자는 초자(超資)하여 청요직(淸要職)에 두고, 중등(中等)인 자는 전례에 따라 품질을 옮기며, 하등(下等)인 자는 외직으로 임명하소서.[140]

권근의 이러한 제안은 기본적으로 그 관각(館閣) 운영의 중점을 점차 교육 쪽으로 맞추려 했다는 추정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141] 왜냐하면 이 제안을 받기 전이자 예문관 분설 1년 뒤 예조 내에서 이 제안과 같은 방식을 인재의 '양성[預養]'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태종이 예문관의 분설을 위해 명

139) 『세조실록』 권17 세조 5년(1459년) 음력 7월 9일 : "文臣三品以下, 依舊例, 每春秋仲月, 會于議政府, 試表・箋、或古・律詩"

140)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1407년) 음력 3월 24일 : "一, 職帶館閣文臣及閑良文臣可將任用者, 令每月五日, 一次會藝文館, 相與講磨, 凡有文翰之事, 皆令製述, 擇其善者而用之, 考其能否, 以爲升黜。 閑良者才行勤慢, 亦令藝文館薦擧錄用, 其直館以上, 每日選揀東人詩文若干篇, 令其下官, 進稟政府及提調之處, 聽其取舍, 以成全書, 臺諫員, 每月考其勤慢。 一, 三館諸員, 令儒學提調每月一次考其所讀經史諸書, 錄名置簿, 年終秩滿當遷之時, 幷書所讀經書多少, 上者超置淸要, 中者隨例遷秩, 下者外敍."

141) 서범종(2004), 「조선 초기 문신권학정책」, 『한국교육』 제31권 제1호, 한국교육개발원, 148-149쪽.

나라 한림원의 경우를 참조했다는 주장[142]과 더불어 주목할 점이다.

문과를 설치한 까닭은 덕을 갖추고 재질이 뛰어난[成德達才] 선비에게 정치 제도[治具]를 연구하게 하고 도리[謨猷]로써 이를 정당화하여 문(文)으로써 태평을 이루게 하고자 함이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학자들은 과거(문과)를 단지 출사의 수단으로 삼으므로, 출사한 뒤에 마침내 학업을 태만하게 합니다. 신 등이 삼가 송나라의 제도를 상고해보면, 관각(館閣)의 양제(兩製, 내지제고와 외지제고)[143]는 반드시 시험하여 임명한 까닭에 뛰어난 인재와 재상이 관각에서 나온 경우가 십중팔구(十中八九)이며 송나라의 치세도 그 융성함을 삼대에 비길 만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송나라 제도처럼 문신 종3품 이하부터 시직(時職)과 산직(散職)을 막론하고 전하께서 경사(經史)와 시무책(時務策)과 표문(表文)을 친히 시험하시어, 합격자는 정원[額數]에 구애치 말고 관각의 양제(내외지제교)로 채우심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勸勵] 하소서.[144]

이처럼 태종이 관각 학사들의 역량을 증대하는 데 고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태종 10년, 사헌부가 했던 집현전 복설 제안은 이런 사전 정지 작업들의 결과물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관(三館)의 여러 선비에게 경학(經學)을 토론하여 그 본질(體)을 깨닫게 하고 사장(詞章)을 지어 그 실제(用)를 드러내니 진실로 한 세대가 본받을만한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이제부터 매해 초에 고강(考講)으로 성적을 매기던 방식을 바꾸어, 독서의 경우 권근의 학식(學式)에 의하여 매월 삼관(三館)의 여러 선비로 하여금 각각 자기 이름 밑에 아무 책을 아무 달 아무 날로부터 시작하였다거나 아무 달 아무 날까지 이미 몇 편을 읽었다고 쓰도록 책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정안(政案)에 올려 아뢰는 것으로 항구한 법식을 삼고, 고강의 경우 봄·가을에 시를 지어[賦詩] 바치던 관례에 따라 관각(館閣)의 제학(提學)이 (선비들의) 읽은 바를 고강(考講)하여 그 우열을 정해 위에 아뢰도록 한다면, 모두 이에 자극을 받아 힘써 정진하던 사람들도 더욱 노력하고 전부터 나태하여 소홀했던 자들도 경계할 것입니다. 어찌 (학업을) 포기하게 하여 나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 본질을 저버리게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행한다면 권학하는 방법이 더욱 빈틈없게 되고 선비를 두루 예우하게 될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널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신 뒤 시행하시옵소서.[145]

---

142) 최선혜(1995),「조선초기 태종대 예문관의 설치와 그 역사적 의의」,『진단학보』제80호, 진단학회, 100쪽.

143) 문한 기구 권학의 근거로 인용된 송나라의 '관각(館閣)'은 사관(史館), 소문관(昭文館), 집현원(集賢院)과 비각(秘閣), 용도각(龍圖閣), 천장각(天章閣)으로 도서 관리 및 국사 편수 등의 업무를 맡아 일종의 국립학술연구기관으로 존재했으며, 양제(兩製), 곧 지제고(知制誥) 역시 문학(文學)에 능통한 인사로 임명되었다.

144)『태종실록』권3 태종 2년(1402년) 음력 2월 29일 : "文科之設, 欲得成德達才之士, 講明治具, 潤色謨猷, 而文致太平也。 今之學者, 以科擧但爲仕進之階, 旣得之後, 遂怠其業。 臣等謹按宋制, 館閣兩製, 必試而命之, 故賢才名相出於館閣者, 十常八九, 而有宋之治, 比隆三代。 乞依宋制, 自文科從三品以下, 不拘時散, 親試經史時務策一道、表文一道, 其入格者, 不拘額數, 以充館閣兩製, 以勵其餘."

실제로 태종은 김첨과 권근이 제안한 방식을 채택한 이후 문신을 대상으로 치룬 친시(親試)[146]에서 그 실효성을 확인한다. 즉, 관련 기구를 단순히 기능적으로 통합하던 정종 당시에 비해 확실히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역량의 제고를 확인한 것이다. 사헌부는 태종의 재위 초년 예문관의 분설과 삼관(三館)을 통한 인재 양성을 거쳐 정종 때 잠정 중단된 집현전의 편제에 그 인원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기구의 편제와 직능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단지 인원만 확보하여도 재가동이 충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밖에 정종 때 중단된 집현전 운영의 재개가 논의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자. 태종은 재위 초부터 연이어 한양 재환도(再還都)[147], 조사의(趙思義)의 난[148], 그리고 연이은 재이(災異)[149] 등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겪는다. 이것들은 왕실 내 갈등이 사회에 끼친 폐해로서 민심의 동요까지 부를 수 있는 사안들이었고, 이 시기에 제기된 사대부들의 경연 활성화 요구는 그 수습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었다.

지금 전하께서 만기(萬機)를 친정하시는 중에도 짬을 내어 한두 유신(儒臣)과 부지런히 강론하기를 한 번도 태만치 아니하시어 밤중까지 이르시기도 하니, 그 학문을 좋아하고 도학을 즐기시는 아름다움은 진실로 삼대(三代)에 비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친히 국학(國學)에 가셔서 연로한 유신(儒臣)을 예(禮)로써 맞이하시고 도의를 토론하신다면, 나라 안팎의 인민들 다수가 (전하를) 우러르며 감동하고 흠모하여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따를 것이며, 덕 있고 재질이 뛰어난 선비들도 다투어 (전하를) 뵈옵고 세상에 쓰이려 할 것입니다.[150]

---

145)『태종실록』권18 태종 9년(1409년) 음력 9월 4일 : "今我國家, 俾三館諸儒, 講經學以明其體, 賦詞章以達其用, 誠一代之令典也. (중략) 誠願自今, 革歲抄考講黜陟之法, 讀書則依文忠公權近學式, 每月三館諸儒, 各於名下, 讀某書自某月某日始, 至某月某日已讀幾篇, 備書開寫, 擧案進呈, 以爲恒式; 考講則依春秋賦詩例, 館閣提學, 講其所讀, 第其優劣, 以聞于上, 則人皆激勵, 精力者必加勉, 怠忽者必自警。 安有自暴自棄, 以負國家敎育之美意哉? 如是則勸學之方益密, 而待士之意周矣。 伏望申聞施行."

146)『태종실록』권13 태종 7년(1407년) 음력 4월 18일 : "親試文臣於廣延樓下."

147) 태종 1년(1401년) 음력 1월 14일 남양군 홍길민(南陽君 洪吉旼)이 처음 한양 환도를 제안한 이후 오랜 논의를 거쳐 5년(1405년) 음력 10월 20일 이궁(離宮) 완성 축하연을 함으로써 사실상 종료되었다. 이는 변계량이 문묘에 비석을 세우기 위해 찬술한 내용("을유년(1405년)에 한양(漢陽)에 환도하여")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48)『태종실록』권4 태종 2년(1402년) 음력 11월 5일 : "安邊府使趙思義等擧兵, 發人于州郡調兵。 大護軍安遇世適自東北面而還, 飛馹來告其由。 思義, 卽顯妃 康氏之族屬也, 欲爲康氏報仇也."

149)『태종실록』권18 태종 9년(1409년) 음력 8월 9일 : "近者, 殿下因災異之見, 不敢自安, 至下旨曰: "今玆災異, 實由否德", 乃閉宮徹膳, 不聽朝政, (…) 殿下比年以來, 停罷經筵, 不與賢士大夫, 講明聖賢之書, 敷求帝王之道, 豈不以爲我之學已至, 復何事於經筵哉? 臣等竊爲殿下惜之." 특히 '재이'의 경우, 당해(1409년) 음력 7월에도 국정에서 일시적으로 손을 떼려 한 기록이 있는 등, 국왕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으며(『태종실록』권18 태종 9년(1409년) 음력 7월 27일 : "今歲天文示變, 風雨、雷震、霜雹、山崩、水溢而致死者甚衆, 皆否德之致."), 이보다 앞선 5년과 7년에도 우박, 눈, 서리, 바람 등, 이와 유사한 천재(天災)가 언급된 점에 비추어 재위 초에도 이것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150)『태종실록』권8 태종 4년(1404년) 음력 8월 20일 : "今殿下機政之暇, 與一二儒臣孜孜講論, 未嘗少弛, 或至夜分, 其好學樂道之美, 誠無愧於前代矣。 願親詣國學, 迎禮耆儒, 講明道義, 則庶乎中外人民, 觀瞻感慕, 靡然趨向, 成德達才之士, 蔚然見用於世矣."

가령 조사의의 난 진압 후 사간원은 국학(성균관) 방문과 노유(老儒)의 만남을 건의한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왕실 내란으로 민심이 동요하거나 이반하지 않도록 민심을 다독이는 방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나, 본질적으로 백성의 교화를 명분으로 공적인 접견의 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간관들은 태종에게 간접적으로 경연과 유사한 환경을 경험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재이를 틈타 국왕의 수신(修身)을 권장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우레와 비가 그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철선(輟膳, 반찬의 수를 줄임)하였다. (풍해도[151]에서) 돌아오던 중 목촌(木村)[152]에 이르니 하늘이 활짝 개었다. 임금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내가 부덕하여 지워진 짐[負荷]을 감당치 못하니 천변도 이와 같도다." 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양위[遜位]할 뜻을 살짝 보였다. (그러자) 이숙번(李叔蕃)이 간하였다.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항상 단점을 책망하니, 하늘도 (전하를) 인애하기 때문에 재이를 보인 것입니다. 만약 재이의 변 때문에 이 만기(萬機)를 꺼리신다면 나태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땅히 부지런히 반성하셔서 천심에 보답하셔야 합니다."[153]

태종은 재위 말년 와병과 재이 등을 핑계로 자주 양위를 언급하는데, 이숙번은 이의 대안으로 “꾸준한 반성[극근극념(克勤克念)]”을 주문하고 있다. 이숙번의 이런 권고는 경연 도입 초기인 고려 광종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그 출처가 된 경전의 내용[154]에서 추리하면 응당 하늘에 대한 수신(修身)을 의미하는 것이었다.[155] 왜냐하면 거듭되는 와병과 천변재이(天變災異)는 보통 국왕의 부덕으로 해석되는 만큼 당연히 수신을 그 대안으로서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양위 파동이 태종과 세자(양녕대군)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기에 ‘수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치국(治國) 또한 이룰 수 없다’는『대학』의 논리로 간언할 수도 있다. 즉, 이로써 ‘국왕의 부덕은 수신으로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숙번이 발언한 시기와 같은 때에 올린 7개조에는 경연에 대한 사대부들의 인식이 담겨져 있다.

---

151) 황해도의 옛 지명 중 하나이다. 태조 4년(1404년)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태종 18년(1418년) 다시 황해도로 돌렸다.

152) 앞의 기록을 대조해보면 황해도의 기탄(岐灘) → 강음 적포현(江陰 赤布峴) → 목촌(木村)으로 이동한 것이며, 기탄을 건넌 뒤 밤부터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한 듯 보인다.

153)『태종실록』권20 태종 10년(1410년) 음력 10월 6일 : “雷雨不止, 上輟膳。 還至木村, 天乃開霽。 上泣謂群臣曰: ″予以否德, 不堪負荷, 故天變若是。″ 因微示遜位之志. 李叔蕃諫曰: ″父母之於子, 常責其所短, 天其仁愛之, 故示災異耳。 若以災異之變, 厭此萬幾, 怠心生矣. 宜克勤克念, 以答天心。″.”

154)『중용』수장 : “是故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155) 왕부지는 계신공구(戒愼恐懼)에 대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명으로서의 본성을 따르기 위한 노력”(『독사서대전설 - 중용』)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주자의 입장을 부연하여 마음 안(不睹不聞)과 밖(所睹所聞) 모두 수신의 대상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민(2010),「『중용』의 ‘계신공구’와 ‘신독’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동양철학연구 제63집, 동양철학연구회, 341쪽에서 재인용)

원컨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경연(經筵)에 임어하시고, (중략) 이것으로 성헌(成憲)을 삼아 후손에게 보이소서.[156]

태종 10년까지 이어진 정치적 변란과 재이, 그리고 척족(戚族)에 대한 논란[157]은 당시 지배층의 불안 요소 중 하나였다. 사대부들은 이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날마다 경연을 열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이를 "성헌"으로 굳히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국왕 교육 제도의 기본 형태인 겸직과 상・하번에 의한 인원 운용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정종 때부터 계속 종일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만큼, 고려 예종 때의 경연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종이 이미 고려 문한 기구를 복설한 데 이어 '보문각'으로 개명했다는 사실은 그 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태조 17년(1417년) 다시 사간원이 제기된 집현전 복설 요청은 앞선 태종 10년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인재(人材)는 나라에서 쓰는 그릇[器用]이니 미리 양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소위 수문전(修文殿)·집현전·보문각(寶文閣) 등은 겨우 이름만 있을 뿐이요 실상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나라 안에 집현전을 창립하고 관각(館閣)의 제학(提學) 중에서 문필(文筆)을 주관할 수 있는 자 여러 명을 택하여 제조로 삼으시고, 3품 이하의 시직(時職)·산직(散職) 문신으로 나이가 젊고 자질이 비슷한 자를 가려서 인원을 확정하고 모두 구두로 전해 일하게 하십시오. 제조(提調)는 항상 이곳에 모여서 경사(經史)를 강독(講讀)하거나 글제[題]를 주어 제술(製述)하게 하여 문풍(文風)을 일으키십시오.[158]

일단 이 당시 제안은 앞선 재위 10년에 비해 그 설치 목적이 상당히 뚜렷해진다. 물론 그 이유는 예문관에 실시된 교육과 친시(親試) 등, 문한 기구의 역량 강화가 이뤄진 때문이다. 이들 삼관(三館)의 개선은 문신으로 이와 유사한 조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특히 이 시기는 태종의 퇴위(1418년) 직전이었으므로 차기 국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재위 10년에 비해 편제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제시되고, 그 동안 교육 대상이었던 삼관의 인원들이 반대로 문신 교육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재위 17년 당

156)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1410년) 음력 10월 29일 : " 願殿下, 日御經筵, (…) 以爲成憲, 以示後嗣."

157) 민무구, 민무휼에 대한 처단을 이른다. 태종 7년부터 10년까지 3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었으며, 태종 8년 척신 민제가 사망하자 논란이 더 심해졌다. 결국 태종 10년 이 둘에게 자결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158)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1417년) 음력 1월 19일 : "人材, 國家之器用, 不可以不預養也。 今所謂修文、集賢、寶文等閣, 徒有其名, 而無其實。 乞於國中, 創立集賢殿, 擇館閣提學中, 可主文者數員, 以爲提調, 命擇三品以下時散文臣年富資近者, 定其額數, 皆口傳從仕。 提調常會于此, 或講讀經史, 或命題製述, 以振文風."

시의 집현전은 일종의 교육 기구 같은 느낌을 주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구의 운영 방식에서 겸직에 그쳤던 관각문신(館閣文臣)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일반 문신의 교육까지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큰 폭의 변화로 보인다. 간관들은 권근 등의 제안으로 관각의 학사들이 수행한 꾸준한 강론과 고강이 이미 그 효율성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그 대상(3품 이하의 현직과 산직 문신)을 확대하고 교육 방식(경사 강독과 제술)까지 세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인재 양성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현직뿐만 아니라 산직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그 동안 제안된 종일 교육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직 업무의 영향을 받는 현직보다 무록관(無祿官)에 가까운 산직의 경우 전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집현전의 성격이 차후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상의 점을 확인하기 위해 정종 당시와 태종 17년(1417년)의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참고)

[표 1. 정종과 태종 당시 제안된 집현전 편제의 비교]

<table>
<tr><th colspan="2">정종 1년(1399년) 당시</th><th colspan="2">태종 17년(1417년) 당시</th></tr>
<tr><td>제조관(提調官) 5명</td><td rowspan="3">관각(館閣)의 학사 겸관
(예문춘추관, 교서감)</td><td>제조(提調)</td><td>관각의 제학(提學) 겸관</td></tr>
<tr><td>교리(校理, 문신 5품 이하)</td><td rowspan="2">- (문신 3품 이하)</td><td rowspan="2">시직(時職),
산직(散職)의 문신 겸관</td></tr>
<tr><td>설서 · 정자
(說書 · 正字, 문신 7품 이하)</td></tr>
</table>

두 시기 사이에 나타난 변화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는데, 바로 태종 이후 경연의 중심이 당하관으로 바뀌는 경향[159]과 궤를 일치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시직과 산직 문신들은 모두 당하관으로 당시 경연의 운영 흐름으로 볼 때 국왕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다. 또한 관각(館閣)의 제학들 역시 경연 당상인 동시에 학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한 만큼 그 쪽에 상당한 경륜을 지니고 있었고, 당시 태종이 후계자의 교체 문제로 갈등하고 있던 시점[160]임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세종이 집현전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상당히 구축해준 것

159) 지두환(2009),「조선시대 경연관 연구」,『한국학논총』31호,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58쪽과 160쪽. 이에 따르면 집현전 복설 전후로 경연관의 운영 중심이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후 경연을 주도한 시강관, 시독관으로 불리는 인원은 대개 정 4품 이하로 당하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60) 양녕대군은 태종 18년(1418년) 음력 6월 5일 폐위되어 충녕대군과 교체되었다.

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현전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을 살펴보자. 먼저 국왕 교육 제도의 다른 축인 서연관에 관한 논의에서 보이는 담당 기구의 운영 방향이다.

원컨대 이제부터 보덕(輔德)에서 정자(正字)까지 열 사람 모두 소속 기관[本司]의 직무에서 면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겸임하여 오로지 시강(侍講)에 전념하게 하고, 대간 한 사람을 순서대로 입시하게 하여 서연관의 업무 태도와 환관들이 바르게 (세자를) 보필하는지 여부를 점검케 하여 서로 도에 따라 (세자를) 보좌하게 하도록 권장한다면, 반드시 저하도 (학업으로 인해) 진작되는 바가 있을 것이고 학문도 날로 진보되며 인덕과 공업[德業]이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161]

이에 따르면 서연관들은 교육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 여전히 본직의 업무에 영향을 받거나 개인적 사유를 대고 있었다. 그래서 간관들은 본 업무의 면제까지 언급한 것이다. 이것은 서연에서도 겸직에 의한 운영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기서 장기적으로 녹관(祿官, 실직)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정리하자면 태종 재위기까지 진행된 집현전 복설 논의가 경연과 서연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도 있음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고려 경연 기구의 직능 역시 조선 집현전의 그것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보문각직학사 윤언이(寶文閣直學士 尹彦頤)에게 명하여 『예기(禮記)』 월령편(月令)을 강론하게 하였다.[162]

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 대제(待制) 및 한림학사(翰林學士)에게 매일 정의당(精義堂)에 모여 『책부원구(冊府元龜)』를 교정하게 하였다.[163]

고려의 경연 기구인 보문각은 기본적으로 송나라처럼 경전의 토론 외에 도서의 보관 및 교정 등도 담당하였으며, 이것은 교감(校勘) 등의 관직이나 문첩소(文牒所), 동문원(同文院) 등, 속사(屬司)로 확인된다.[164] 물론 이 점은 고려에 설치된 금내학

161) 『태종실록』 권33 태종 7년(1407년) 음력 3월 7일 : " 願自今, 輔德至正字十員, 皆以可除本司之務者兼任, 俾專侍講之職, 又令臺諫一員, 輪次入侍, 以考講官之勤怠, 宦竪之曲直, 使之相與引道輔翼, 誘掖奬勸, 則邸下必振發有爲, 而學問日進, 德業日新矣."

162) 『고려사』 권16 인종 12년(1134년) 음력 7월 17일 : "命寶文閣直學士尹彦頤講月令."

163) 『고려사』 권17 의종 5년(1151년) 음력 6월 3일 ; "命寶文閣學士·待制及翰林學士, 日會精義堂, 校冊府元龜."

164) 문첩소는 의종 5(1151년) 처음으로 부설하여 14인의 문사 및 보문각의 교감(校勘)으로 일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사공 임광(司空 林光)을 별감으로 임명하였다. 직능은 자세하지 않으나 문서의 전적인 관리와 교정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동문원은 궁궐 내의 학관(學官)으로 학문과 문서 기록

관(禁內學官)[165]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후 세종의 집현전에 있던 주자소(鑄字所) 등 인쇄소나 정부 조직 안에 있는 교서관(校書館)으로 보이기도 한다. 반면 보문각이 도서 관리와 인쇄, 교정 등에 관해 직제 내에 이를 할 인원을 별도로 둔 것과 달리, 조선에서 복설된 집현전은 이와 관련된 속사를 두었을 뿐 편제에 두지 않았다. 이 점은 되도록 관직 설치의 원칙인 설관분업(設官分業)에 따라 업무 집중과 전문성 유지에 더 신경 썼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조선의 집현전은 세종에 의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이전부터 운영방식과 직제, 직능 등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종 재위 초부터 일부 운영됨으로써 그 경륜이 누적되고 태종 재위기에 이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 배경을 갖춰 세종 재위 초반 집현전의 복설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의 논의를 주도한 간관들은 사대부들이 제기한 경연의 종일 교육, 경연관의 본직 업무 면제, 그리고 당하관 중심으로 전환되는 운영 형태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안해왔고, 태종 역시 이를 위한 문한 기구 역량 강화에 관심을 두어 그 정책적 뒷받침을 지원함으로써 이후 세종의 집현전 구성에 유리한 자산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 모든 점은 집현전 복설을 위한 흐름이 국왕 교육 제도의 개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종과 태종은 직간접적으로 세종이 집현전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조선 경연의 전형성을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이것은 태조와 사대부 간 일어난 경연의 '매일 운영'에 관한 갈등에서 출발한 것이며, 대체로 국왕의 소극적 참여 외에 겸직 및 상·하번 체제의 문제점이라는 내부적 요인도 제기될 수 있다. 정종은 상설화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조박의 집현전 복설을 수용하여 제도적 근거를 남겼고, 태종은 본인의 회피에도 불구, 문한 기구의 역량 강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의 공헌을 하였다. 또한 태종은 서연관을 경승부, 익위사 등 행정 및 시위(侍衛) 편제와 분리시킴으로써 교관으로서의 임무를 확정하기도 한다. 이는 경연관에 비해 서연관이 상대적으로 전업화에 유리한 직능적 성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 국왕 교육 정례화(定例化)의 시작

조선은 국초부터 국왕 교육에 심혈을 기울일 만큼 제도화와 정례화에 힘을 기울

을 관장한 것으로 보이며, 비서(秘書)●사관(史館)●한림(翰林)●보문각(寶文閣)●어서(御書)●식목(式目)●도병마(都兵馬)●영송(迎送)과 함께 금내구관(禁內九官)의 하나이다. 문종 때 병과(丙科)에 합격한 자를 권무관(權務官)으로 배치하여, 관원으로 사(使 : 3품관 겸직) 1인, 부사(副使 : 5품관 겸직) 1인, 녹사(錄事) 4인(2인은 겸관)을 두었다. 충렬왕 24년(1298) 보문서(寶文署)를 합하여 확장되었으나, 충숙왕 원년(1314년) 다시 분리되었다.

165) 『고려사』 권76 백관지(1) 권제30 '통문관' : "禁內學官, 秘書·史館·翰林·寶文閣·御書·同文院也. 幷式目·都兵馬·迎送, 謂之禁內九官."

인 국가였다. 이전 고려 왕실은 무신 정변과 원 간섭기를 지나며 크게 쇠락하여 국왕의 위상도 추락하였으며, 신진 사대부들은 오래 전부터 그 원인으로 국왕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때문에 위화도회군 후 신진 사대부들은 본격적으로 형해화된 국왕 교육 제도를 정비했으며, 공양왕 때까지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통해 나름의 체계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충렬왕 이후 격하되었던 명칭의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국가 지도 이념인 성리학에 맞는 국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즉, 성인을 국왕으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왕을 성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전통 수립을 위한 시도였기에 많은 기대와 염려를 함께 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국왕 교육 제도의 운영에 관한 우려는 곧 현실화되었다. 그것은 국왕의 소극적 참여와 사적 교류의 집착으로 인한 갈등으로 나타났지만, 이면적으로 새 제도에 내재한 결함으로 안정적 운영이라는 목표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도 있었다. 여기에 세종 이전의 국왕들은 대체로 고려 때 유습(遺習)에 젖어 있어 정례화에 부정적이었고, 정변으로 즉위한 정종을 제외하면 경연관들과 제대로 된 만남이나 교육을 거의 하지 않았다. 심지어 태조와 태종은 공통적으로 후계자 교육인 서연에 관심을 쏟음으로써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일축하고 사대부들의 관심을 돌리려 하기 까지 하였다. 이런 안팎의 까닭으로 인해 사대부들은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그것은 고려 전기 경연 담당 기구 역할을 했던 금내학관에 대한 검토로 이어졌다.

사대부들의 그러한 문제 해결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경연관들의 겸직을 해제하고 녹관(祿官)으로 삼아 교관을 본직으로 하는 이른바 경연관의 전업화였다. 이를 위해 정종 때 처음으로 종일 교육 방식이 제안되었으며, 주로 경연관들이 국왕의 교육 후 따로 모여 논의하는 것이었다. 다음 고려 금내학관 중 하나인 집현전의 복설이었다. 이 명칭은 본래 고려 예종 때 사용했던 보문각의 전각에 붙여진 이름으로, 기구의 모본(模本)이 보문각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이다. 정종은 조선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예문춘추관과 교서감의 인원을 당상과 겸직시키는 형태로 운영하려 했고, 태종은 그 중 하나인 예문춘추관을 분설(分設)한 뒤 역량을 강화시켜 문신 교육 기구로 만들려 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이런 일련의 방향성은 차후 세종 즉위 후 집현전이 새롭게 창립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 장에서 이 맥락을 고려해 세종 재위기의 집현전 운영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다루고자 한다. 우선 경연 기구로서 집현전이 가진 이른바 '전형성(典型性)'이다. 기본적으로 세종 이전의 집현전 복설 논의에서 교열(校閱)을 제외한 '장서(藏書)'와 '강론(講論)', '고문(顧問)' 등의 직능이 보이는 등, 보문각이 조선 집현전의 모본으로서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단서들이 보인다. 이는 제도적으로 문한 기구로 하여금 국왕 교육의 운영을 맡기는 전통을 수용한 것이기도 했다. 다만 조선이 이 기구

를 복설한 목적은 국왕 교육의 실질적인 정례화인 만큼, 기구 편제와 인원 구성 역시 단순한 복설이 아닌, 정례화에 맞춰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문제가 달성된 이후 이를 전임(專任)으로 할 것인지 여부로 갈등이 빚어지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세종 말년에 나타난 집현전과 국왕 간 갈등, '언관화(言官化)' 경향이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는 이를 왕실의 불사(佛事)로 인한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었는데, 그것은 문한 기구 소속의 학사들이 간관처럼 행동한 일을 전례 없던 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경향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누적된 집현전의 문제점들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 즉, 집현전의 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두고 세종과 학사들 간 꾸준히 갈등을 보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종 당시 경연의 운영이 윤대, 상참과 연계되어 있었던 만큼 특수한 사안에 갑작스럽게 폭발할 까닭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세종이 집현전을 종신전업으로 묶으려고 한 점이 그 출발점인 만큼, 이를 정치적인 이슈로 다루기보다 경연 기구의 운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이 논란의 끝에 반드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조선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했던 기구인 세자첨사원(世子詹事院)이다. 기존 연구자들은 이를 설치한 세종의 실질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데 이르지 못했는데, 그것은 짧은 운영 기간으로 인해 사료적으로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식적인 명분 외에 세자첨사원은 설치를 위한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집현전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종 나름의 방안이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세종은 자신이 그 동안 주장해온 인사 원칙과 절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한 관행이 이후 문종 대에 이르러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세종의 기대와 달리 집현전은 점차 언론 기구로 변모하였으며, 그의 아들 세조에 의해 파국을 맞으며 국왕 교육 제도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Ⅲ. 경연 담당 기구의 등장

세종의 집현전 복설은 분명 제도적으로 의미 있는 행보였다. 태종 때까지 운영된 경연 제도의 초기 형태는 이미 운영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고, 제도적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전업(專業)과 종일 교육의 방식까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고려처럼 문한 기구가 경연을 담당해온 방식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세종의 집현전 복설은 지배층 안에서 진행된 이러한 논의의 산물로 조선 경연에 새로운 전통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으며, 그와 동시에 그 운영 과정에서 집현전은 국왕 교육 제도에 새로운 고민도 함께 안겼다. 따라서 앞선 논의에서 경연 정례화를 위해 제시된 것들이 세종 대 집현전에서 얼마나 제대로 발휘되었는지 정리하고, 동시에 그 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 다음의 논의로 이어가고자 한다.

1. 경연 기구의 성립과 발전

세종 등극 후로도 경연 운영에 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근래 경연관(經筵官)이 번(番)을 나누어 강론하는데, 모두 다른 사무를 맡은 관계로 여러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의를 충분히 숙고할 틈이 없어서, 강론할 때 (그 본의를) 자세하게 다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각 번을) 통합하여 한 번(番)으로 하고, 강론한 뒤 경연청에서 물러나면 종일토록 토론하게 하십시오.[166]

우선 세종 즉위 초 경연에 나타난 현상은 경연관의 증가(16명 이상(부검토관 인원 미정) → 19명 이상)[167]로, 그 원인은 바로 경연 횟수의 급격한 증가 때문[168]이었다.

---

166) 『세종실록』 권2 세종 즉위년(1418년) 음력 12월 17일 : "近來經筵官分番進講, 皆任他務, 故群書蘊奧, 未暇講論, 進講之際, 未能詳盡。 願自今合爲一番, 進講後, 退于經筵廳, 終日討論."

167) 이는 성종 때 『경국대전』의 직제와 차이가 있다. 1437년 당시 10여 명으로 줄어든 뒤(전임의 결과), 성종 때 정1품 영사 3인, 정2품 지사 3인, 종2품 동지사 3인, 정3품 당상참찬관 7인, 그리고 정4품 시강관, 정5품 시독관(侍讀官), 정6품 검토관(檢討官), 정7품 사경(司經), 정8품 설경(說經), 정9품 전경(典經)으로 확정된다. 이는 영사와 참찬관의 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직제도 세분화되고 최소 16명 이상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세종 즉위 후 인원 증가에 관해서는 『세종실록』 권1 세종 즉위년(1418년) 음력 8월 12일 5번째 기사(지경연·동지경연·시강관의 증가, "加設經筵官知經筵一人、同知經筵一人、侍講官一人.") 참조.

168) 세종 즉위년(1418년) 음력 8월 11일에 경연청의 편성을 마쳤고 2달 뒤인 음력 10월 7일 처음 경연을 시작한 이래 총 29회의 기록이 엿보인다. 이는 평균적으로 약 2-3일에 한 번씩 진행한 셈인데, 겸직으로 된 경연청은 이를 뒤따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즉위년 8월 12일에 지경연, 동지

이는 세종의 적극적인 경연 참여로 인해 강론의 질적 저하와 같은 문제점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그 동안 겸직 경연관들의 업무 집중도가 꾸준히 거론되었음에도 국왕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었다. 또한 이후 경연관의 증가로도 해결되지 않자 기존 방식[分番/進講]을 대체할 새로운 방식[合爲一番, 終日討論]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태종 때까지의 경연 운영 변화[169]와 관련시켜 본다면, 당시 경연 운영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당하 경연관을 녹관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런 추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영경연사 좌의정 박은의 발언이다.

청하건대 문신을 집현전에 선발[選聚]하여 문풍을 진흥[以振文風]시키시고[170]

세종 재위 초 박은이 태종 17년 당시와 동일한 목적[以振文風][171]으로 집현전 복설을 언급한 것은 그 이전까지 선행적으로 이뤄진 논의가 경연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즉, 박은은 태종 때부터 진행된 집현전 복설 논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집현전 복설이 종일 교육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아무리 최대한 본직의 업무를 면제해준다고 해도 겸직 하에서 본직의 업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고려처럼 문한 기구로 하여금 운영하는 전통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여러모로 적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경연 제도에 관한 개선이 제기되던 시기에 집현전 복설을 경연관인 박은이 언급했다는 사실도 이 정황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세종 2년(1420년) 음력 3월 집현전 설치[172] 전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발견된다.

일찍이 집현전 설치를 의논하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논의 결과를) 고하지 않는가. 유사(儒士) 10여 인을 뽑아 매일같이 강론하게 하면 될 것이다.[173]

처음에 고려의 제도인 수문전(修文殿)· 집현전· 보문각(寶文閣)은 대제학과 제학을 2품

경연, 시강관을 1명씩 늘린 것도 의미심장한 것이다. 그 만큼 운영의 횟수가 증대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이기 때문이다.

169) 지두환(1997)에 따르면, 조선 경연은 태종 때까지 주로 당상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편으로 태종 때 조용, 김첨, 김과 등 당하관들이 시강관으로 임명되면서 전문 경연관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이런 태종 당시의 전환은 세종의 집현전 복설 이후 본격화된다. (「조선전기 경연관 직제의 변천」, 『한국학논총』 제20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52-53쪽)

170) 『세종실록』 권3 세종 1년(1419년) 음력 2월 16일 : "請選聚文臣於集賢殿, 以振文風."

171) 집현전에 관한 이 대목은 태종 17년(1417년) 음력 1월 19일의 '혹은 경사(經史)를 강독하게 하며, 혹은 글제[題]를 명하여 제술하게 함으로써 문풍을 진작케 하소서(或講讀經史, 或命題製述, 以振文風)'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172)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1420년) 음력 3월 16일 : "新置集賢殿."

173) 『세종실록』 권6 세종 1년(1419년) 음력 12월 12일 : "曾有設集賢殿之議, 何不更啓? 其擇取儒士十餘人, 日會講論可也."

이상으로, 직제학· 직전(直殿)· 직각(直閣)을 3, 4품으로 임명하였지만, 소속 관서와 직무는 없이 오직 문신에게 관직(散官)으로 주었을 뿐이었다. 이제 모두 통폐합하여 다만 집현전만 남겨 두고 청사를 궁중에 두며, 문관 가운데 재주와 행실이 뛰어나고 젊은 사람을 택하여 충원하고, 오로지 경전과 역사서의 강론을 일삼아 임금의 자문에 대비하게 하였다.[174]

우선 세종의 발언에서 제시된 집현전 설치 조건은 정종과 태종 10년(서기 1410년) 당시 간관의 제안["請開集賢殿, 選儒士"]과 거의 유사하고, 이하의 설명 역시 태종 이후 경연 운영의 경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집현전의 인원 구성과 기준은 기존의 겸직에서 벗어나 당하 경연관을 녹관(祿官)으로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앞서 탁신이 제시했던 번의 통합과 종일 교육을 제도적으로 수용한 게 아닌가 짐작되며, 기존의 타관겸직과 병행하여 두 경우 모두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세종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후 나타날 경연 전임(專任)으로 갈 수 있게 한 일종의 과도기적 운영 방식이었던 것이다.

또한 고려의 금내학관으로 이미 허설화(虛設化)된 기구를 집현전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실록에서 이 관사(官司)들은 "소속 부서와 직무가 없다[無官署職任]"는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이들이 조선에서 비상설적 관직, 즉 산관(散官)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집현전은 이미 단속적으로 상설화가 논의된 적이 있었고, 조선의 관직은 이름과 실질이 일치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집현전은 그들 중 복설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실질적 복설 논의가 있었던 집현전을 제외한 나머지의 통폐합은 당연했으며, 동시에 이는 집현전을 산관이 아닌 실직으로서 운영하겠다는 의미였다. 즉, 세종은 집현전을 상설화된 독립 부서(官署)로 운영하고 인원과 실질적인 업무(職任)를 주어 경연관에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여기에 집현전이 초기부터 주자소(鑄字所)로 불리는 일종의 인쇄, 교정 기관을 부속으로 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와 집현전의 주자소는 모두 1백 65이니 … [175]

이 기록은 신부(信符)를 패용하는 대상자로 집현전의 주자소가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과거 보문각이 장서 보유(청연각[176])와 경전 및 교재의 제작(동문원, 어서원) 등을 수행하고 정기적인 숙위(宿衛)의 대상이었던 점[177]에 비춰볼 때, 조선

174) 상동, "初因前朝之制, 修文殿、集賢殿、寶文閣大提學、提學以二品以上爲之; 直提學、直殿、直閣以三四品爲之, 然無官署職任, 唯以文臣加官而已。 至是悉罷之, 只留集賢殿, 置司于宮中, 擇文臣有才行年少者充之, 專事講論經史, 以備顧問."

175)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1423년) 음력 1월 24일 : "三軍鎭撫所、集賢殿、鑄字所幷一百六十五."

176) 『고려사』 권76 백관지(1) 권제30 '보문각' : "尋以淸燕閣在禁內, 學士直宿出入爲難, 就其旁別置閣, 改官號曰寶文."

의 집현전은 고려처럼 직제 안에 관련 직을 두지 않고 '기능적으로 필요하되 주 업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즉, 이는 업무를 연구 - 교육 측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제 조정을 한 것이며, 한편 인쇄 및 교정, 감수 업무를 속사(屬司)로 분리하여 분장(分掌)을 통한 전문화를 추구한 것이었다. 이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료에 남은 고려 보문각의 연혁과 한번 비교해 보자. (표 2 참고)

[표 2. 보문각의 편제 변화]

시기	편제	기타
예종 11년 (1151)	학사(종3품), 직학사(直學士, 종4품), 직각(直閣, 종6품)	
	교감(校勘) 추가 (어서원 및 직사관 4인)	- 교정, 교열 등의 업무
	대제(待制) 추가 (종4품, 종2품(금자광록대부) 예우)	- 문한 업무
	제거(提擧)·동제거(同提擧)·관구(管勾)·동관구(同管勾) ·대학사(大學士)	- 중추내신 (2-3품)
의종 5년 (1151)	문첩소(文牒所) 추가 설치	- 별감(別監, 정1품) - 보문각 교감과 문사 14인
충렬왕 원년 (1275)	보문서(寶文署) 개명	
충렬왕 24년 (1298)	보문서와 동문원(同文院) 병합	
충숙왕 원년 (1314)	대제학(大提學, 종2품), 제학(정3품), 직제학(直提學, 정4품)	- 보문각 개명 - 여말 경연관 참여
공민왕 5년 (1356)	- 명칭 변경 * 대제학 > 대학사, 제학 폐지, 직제학 > 직학사 * 대제(待制) 설치(정5품)	
공민왕 11년 (1362)	- 명칭 변경 * 대학사 > 대제학, 제학 복설, 직학사 > 직제학 * 대제 폐지, 직각(直閣, 정4품)	- 공민왕 21년(1372) 회복
공민왕 18년 (1369)	- 명칭 변경 * 제학 > 학사, 직각 폐지 * 응교(應敎, 정5품)	

『고려사』 백관지(百官志)를 통해 보문각의 변화를 확인해보면 집현전과의 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보인다. 고려의 보문각도 인쇄 업무를 담당한 문첩소(文牒所)를 속사로 설치하지만, 동시에 교정 및 교열 업무에 해당하는 교감(校勘)이나 대제(待制) 등도 직제 안에 두고 있다. 또한 여말에도 중도에 옛 직제(대제)를 회복한 사실이 사료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공민왕 초기까지 자주성을 내세우며 고려 전기의 관제를 회복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신진 사대부들의 국정 참여가 활발해진 공민왕 11년(1362년) 이후 인쇄, 서적 발행 등과 연관된 직제가 사라진다. 신진 사대부의 등

177) 『세종실록』 권20 세종 5년(1423년) 음력 6월 24일 : "集賢殿官常仕闕內."

장 이후 이런 변화가 발생한 것은 기구 업무에서 이 기능이 더 이상 주 업무로 여겨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련 업무가 별도 하위기구로서 모두 이관되어 그런 기술적인 영역이 업무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집현전이 소속 학사를 실직으로 둔 점도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기구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집현전에 녹관(祿官)을 두게 하소서.[178]

조선의 녹관은 고유 업무를 지닌 직위로서 정직(正職), 상설직(常設職)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전 왕조의 전례와 비교해 문한 기구의 학사를 정직으로 임명하려 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그 대상이 부제학 이하였다는 것은 집현전을 독립된 기구로서 두려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즉, 집현전 정직으로 연구 - 교육을 하는 녹관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 '종일 교육', 또는 '전업' 등으로 제시된 대안들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연구 - 교육이 그들의 주된 업무가 된다는 점에서 경연과의 연관성을 예상할 수 있다. 앞서 말했던 '종일 교육'과 '전업'이 바로 경연의 정례화에 필수적으로 제시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세종 때 설치된 집현전의 편제를 살펴보자.

집현전에 새로 영전사(領殿事) 두 사람을 정1품으로, 대제학 두 사람을 정2품으로, 제학(提學) 두 사람을 종2품으로 두되, 이상은 겸직이요, 부제학(副提學)은 정3품, 직제학은 종3품, 직전(直殿)은 정4품, 응교(應敎)는 종4품, 교리(校理)는 정5품, 부교리는 종5품, 수찬(修撰)은 정6품, 부수찬은 종6품, 박사(博士)는 정7품, 저작(著作)은 정8품, 정자(正字)는 정9품으로, 이상은 녹관(祿官)으로 하며, 모두 경연관(經筵官)을 겸임하였다.[179]

박은·이원으로 영전사(領殿事)에, 유관·변계량을 대제학에, 탁신(卓愼)·이수(李隨)를 제학에, 신장(申檣)·김자(金赭)를 직제학에, 어변갑(魚變甲)·김상직(金尙直)을 응교(應敎)에, 설순(偰循)·유상지(兪尙智)를 교리(校理)에, 유효통(兪孝通)·안지(安止)를 수찬(修撰)에, 김돈(金墩)·최만리(崔萬理)를 박사(博士)에 임명하였다.[180]

앞서 실록에서 언급된 녹관은 필수 겸관(영전사, 대제학, 제학)을 제외한 부제학 이하의 인원이며, 이들이 모두 경연관에 참여한 점[181] 또한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세

178)『세종실록』권7 세종 2년(1420년) 음력 3월 13일 : "以置集賢殿祿官."

179)『세종실록』권7 세종 2년(1420년) 음력 3월 16일 : "新置集賢殿領殿事二正一品, 大提學二正二品, 提學二從二品, 以上兼官。 副提學正三品, 直提學從三品, 直殿正四品, 應敎從四品, 校理正五品, 副校理從五品, 修撰正六品, 副修撰從六品, 博士正七品, 著作正八品, 正字正九品, 以上祿官, 皆兼經筵官."

180)『세종실록』권7 세종 2년(1420년) 음력 3월 16일 : "以朴訔、李原領殿事, 柳寬、卞季良爲大提學, 卓愼、李隨提學, (申檣)［申檣］ 、金赭直提學, 魚變甲、金尙直應敎, 偰循、兪尙智校理, 兪孝通、安止修撰, 金墩、崔萬理博士."

181)『세종실록』권1 세종 즉위년(1418년) 음력 10월 7일 2번째 기사인 첫 경연 시 인원 구성을 기준

종의 이런 조치는 재위 초부터 집현전 운영과 경연 제도를 긴밀하게 연결시킨 것으로 연구 - 교육 업무와 경연 간 접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속 학사로서 배치된 당하 이하 경연관들이 겸직 아닌 녹관으로서 둔 것은 겸직 경연관에게 종일 교육을 시키려고 한 탁신의 제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독립된 기구로 집현전을 복설한 목적이 경연관의 전업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개설 초기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와 협업한 사실과 더불어 세종의 집현전 운영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세종은 연구의 대상을 제도에서 경전(經典)까지 확장시켰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시행된 사가독서(賜暇讀書)이다.

내가 너희들을 집현전 관헌으로 제수한 것은 나이가 젊고 장래가 촉망되므로 오직 독서에 실효가 있게 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각각 아침저녁으로 하는 (본직의) 직무 때문에 독서에 전심할 겨를이 없다. 지금부터 집현전[本殿]에 일하지 말고 집에서 오로지 글만 읽어 그 실효가 나타나도록 하여 내 뜻에 부합하고, 독서하는 방식은 (대제학) 변계량(卞季良)이 계획하도록 하라.[182]

윤대 후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계량(卞季良)이 일찍이 부왕(태종)께 아뢰어 나이 젊고 학업을 할 만한 한두 사람의 유생을 선택하여 본직에서 일하게[仕官] 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독서하게 하여 학업에 정통하게 되면 크게 쓰실 것을 청하였는데 부왕(태종)이 옳게 여기셨지만 실행하지 못하셨소. (이제) 또 내게 청하였으므로 (나는) 허락했소. (지금) 독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좌대언(左代言) 김자(金赭)가 아뢰기를, "신석견(辛石堅)과 남수문(南秀文)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권채(權採)에게 이르기를, "경도 일찍이 독서하는 대상자[讀書之列]에 들어갔었는데 무엇을 읽고 있소?" 하시니, 권채가 "『중용(中庸)』과 『대학(大學)』 입니다." 라고 하였다.[183]

경연에 나아갔다. 검토관 설순(偰循)이 아뢰기를, "신이 황제가 하사하신 『성리대전(性理大全)』을 보니 그 내용이 진서산(眞西山, 진덕수)의 갑집(甲集)과 유사하나, (안에 담긴) 논의가 세밀하고 여러 설도 소개되어 진실로 배우는 자들이 마땅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

한 것이다.

182) 『세종실록』 권34 세종 8년(1426년) 음력 12월 11일 : "予以爾等除集賢官者, 以其年少有將來, 祗欲其讀書有實效也。 然各緣職事早暮, 未暇專心讀書。 自今勿仕本殿, 在家專心讀書, 以著成效, 以副予意, 其讀書規範, 當受卞季良指畫." 다만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1425년) 음력 11월 29일에도 정인지, 설순, 그리고 인동현감 김빈(집현전 수찬으로 제수)에게 『사기』를 읽게 하여 국왕의 자순에 대비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전부터 어느 정도 집현전 내에서 시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3)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1428년) 음력 3월 28일 : "輪對, 經筵. 上曰: "卞季良嘗白太宗, 請擇年少可學一二儒, 除仕官就靜處讀書, 可能精通而大用, 太宗然之而未果, 又請於予, 予許之。 讀書者爲誰?" 左代言金赭曰: "辛石堅、南秀文也。" 上謂權採曰: "爾亦曾詣讀書之列, 所讀何書?" 採曰: "讀《中庸》、《大學》。"." 여기 언급된 신석견, 남수문은 앞선 8년에 사가독서 대상자로 지목된 인사들이다.

다. 원컨대 (이 책을) 간행해 널리 나누어서 과거에 합격한 젊은 선비들로 하여금 열심히 읽어 이학(理學)을 연구하게 하시고, 또 문한을 다루는 이들도 (『성리대전』을 읽혀) 반드시 이학에 정통하게 하여 능히 통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내가 갑집을 보니 (그대의 말처럼) 논의가 분명하고 명쾌하여 가히 익힐만하였소. 그런데 갑집(甲集) 뿐만 아니라 을집(乙集)도 역시 좋았소." 하셨다.[184]

윤대 후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집현전 응교 김돈(集賢殿應敎 金墩)에게 이르기를,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가 지금 인쇄되었는데, 내가 시험 삼아 읽어보니[試讀] 그 의미가 정밀하고 난해하여 파악하기에 쉽지 않았소. 그대는 정밀하고 세심한(精詳) 사람이니 열심히 읽어 보라." 하였다. 김돈이 아뢰기를, "누군가를 스승삼아 배우지 않으면 쉽사리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신이 마땅히 전심으로 해보겠습니다." 하였다. 임금께서는 "비록 스승을 구하고자 해도 진짜 얻을 수 없을 것이오." 하였다.[185]

실록에 따르면 사가독서의 대상은 경연 교재로서 사용된 일반 경사(經史)뿐만 아니라『성리대전』같은 신간 수입 서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심지어 세종 본인도 경연관과 마찬가지로 직접 시독(試讀)에 참여하는 등, 나름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사가독서를 통해 연구 - 교육이 경연 안에서 어우러지도록 하는 조치이며, 국왕이 몸소 참여하는 만큼 성과 또한 확실히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례상정과의 협업, 사가독서 실시, 그리고 녹관 배치 등의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집현전에 대한 당대 평가가 담긴 실록의 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3년 경자에 비로소 금중(禁中)에 집현전을 두시고, 당시의 문학의 선비를 정선하여 고문(顧問)에 대비하고 교정을 맡게 하여, 날마다 경악(經幄, 경연)에 이끌어서 경사(經史)를 강론하였다. (중략) 아직 학문의 숭상과 학교 진흥[右文興學]의 일로 말하면, 즉위하신 이래로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시어 밝은 학문을 시종 여일하게 싫어하지 않으시고, 동방에 서적이 적어서 사람들이 배울 수 없는 것을 깊이 염려하시어, 이에 임금의 뜻[宸衷]에서 우러나와 유사에 명하여 주자의 규모를 새롭게 하여 책마다 인쇄하지 않은 것이 없고, 사람마다 배우지 못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 또 유문(遺文)과 신집(新集)을 다 얻지 못한 것을 염려하시어 사신의 내왕 편에 중국에서 고루 구하고, 문신을 파견하시어 나라 안에서 널리 사들이니, 이에 서적이 날마다 더하고 달마다 불어나서, 장서궐(藏書闕)을 세우고 목록을 만들어서 간직하니, 동우(棟宇)에 차고 넘치어 동국이 있은 이래로 문적이

184)『세종실록』세종 8년(1426년) 음력 12월 8일 : "御經筵。 檢討官偰循啓曰: "臣見皇帝所賜《性理大全》, 其文似倣於眞西山 《甲集》, 議論精通, 衆說該備, 誠學者所當熟玩也。 願刊行廣施, 使登科年少之儒習讀, 硏窮理學。 且爲文章者, 必精於理學, 乃能大達。" 上曰: "然。 吾見《甲集》, 議論通暢, 誠可熟玩, 然非獨《甲集》, 《乙集》亦好。"."

185)『세종실록』권39 세종 10년(1428년) 음력 3월 2일 : "輪對, 御經筵。 上謂集賢殿應敎金墩曰: "《性理大全》書, 今已印之, 予試讀之, 義理精微, 未易究觀。 爾精詳人也, 可用心觀之。" 墩曰: "非因師授, 未易究觀, 然臣當盡心。" 上曰: "雖欲得師, 固難得也.""

많기가 오늘날처럼 성한 때는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진강하는 글이 의심나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여러 서적을 두루 상고하여 모두 그 참된 것을 얻어서 바루었고, 예악(禮樂)·종률(鍾律)·천문(天文)·의상(義像)·음양(陰陽)·역산(曆算)·의약(醫藥)·복서(卜筮)의 서적까지도 모두 새로 고치고[受葺] 정리하며 인쇄하여 출판, 반포[頒行]하였으며, 이제 또 『훈의(訓義)』를 찬수(撰修)하여 자세히 살피거나 점검하며 읽기에[考閱] 편하게 하고 매우 정밀하고 해박하게 하였으며 … .186)

이 기록에서 집현전은 경연 운영을 중심으로 세종 시대의 학문 진흥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기구로 평가되며, 그 성과들은 책의 교정과 출판 및 반포로 민간까지 배포, 공유되었다. 즉, 국왕의 지극한 관심 속에 집현전 학사들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성과물로 인쇄되어 민간에 유포됨으로써 조선의 학술과 문화 발전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이 점은 집현전이 그 동안 도모하였던 국왕 교육 제도의 활성화 문제를 해결했음은 물론, 고려의 고제(古制)를 기초하여 새로운 운영 방식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일련의 사실을 통해 그 동안 헌부(憲府)와 간관들에 의해 제기된 집현전 복설 요구가 국왕 교육 제도의 개선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을 역으로 보여준다. 세종이 복설한 집현전과 성과들이 주로 경연 운영에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세종은 집현전 소속 학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왕 의례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제부터 집현전의 관원으로서 경연관을 겸임하지 않는 4품의 관리 및 의정부의 사인(舍人)과 윤대에 참여하지 않는 각 관청도 모두 윤대하라.187)

신이 우리 문무관들에 대해 상고하여 보니 상참(常參)의 제도가 없어 사정전(思政殿)에서 아뢸 때 배례(拜禮)를 하지 않으니 전통적 법식[古典]에 어긋납니다. 원컨대 당·송의 성대할 때 시행된 법을 따라 우리 문무관들은 품계[品秩]와 각 기관의 사무와 체계, 그리고 법식을 참고하여 모든 문무 2품과 참의(參議)·대언(代言)·첨총제(僉摠制)·대간원(臺諫員)·집현전(集賢殿)의 6품 이상,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육조낭관(六曹郎官)들은 날마다 상참하도록 하십시오. 대언(代言)이 먼저 들어가 인사하고 올라가서 임금의 곁으로 나아가고, 여러 문무관은 사정전(思政殿)의 뜰로 가서 조참(朝參)하며, 그 후에 뒤에 의정부·육조·공신·

186)『세종실록』권68 세종 17년(1435년) 음력 6월 8일 : "上卽位之三年庚子, 始置集賢殿于禁中, 妙選一時文學之士, 備顧問、掌讎校, 日引經幄, 講論經史. (중략) 姑以右文興學一事言之。 自卽位以來, 日御經筵, 緝熙之學, 終始不厭, 深慮東方書籍鮮少, 人不能學, 乃出自宸衷, 命有司新鑄字之規, 無書不印, 無人不學。 又慮遺文新集之未盡得也, 因使介旁求於上國, 遣文臣廣購於國中, 於是書典之至, 日益月增, 建藏書(闕)［閣］, 籍而藏之, 充溢棟宇。 自東國以來, 文籍之多, 未有如今日之盛也。 由是進講之書, 有所疑謬, 則遍考諸書, 皆得其眞而正之, 以至禮樂、鍾律、天文、儀像、陰陽、歷算［曆算］ 、醫藥、卜筮之書, 皆修而整之, 印而頒之。 今又撰修《訓義》, 便於考閱, 極其精博, …."

187)『세종실록』권31 세종 8년(1426년) 음력 2월 20일 : "自今集賢殿官, 不兼經筵, 四品以上及議政府舍人與不參輪對各司, 亦幷令輪對."

삼군·한성부·대간(臺諫) 중에 마땅히 보고하여야 될 사람은 전(殿)에 올라가서 아뢰게 하고 나머지는 차례대로 물러가게 하소서.[188]

윤대는 세종 7년(1425년) 변계량 등 10인의 제안으로 동반(東班, 문관)은 4품 이상, 서반(西班, 무관)은 2품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189]이며, 상참은 고려 때부터 국왕에 대한 배알(拜謁)의 의미로 시행된 것을 세종 11년(1429년) 의례에 관한 부분들을 정비하여 활성화시킨 것이다. 세종이 여기에 경연관에 포함되지 않았던 집현전 관원까지 참여시켰다는 것은 집현전의 위상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후 점차 제도적으로 윤대(상참) - 경연의 체제로 정착되었다는 사실[190]은 집현전 학사들이 연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고문'의 명분으로 참여할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집현전의 업무 상 외연 확장과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은 종신전업(終身專業)의 빌미로도 작용하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조짐은 세종 17년(1435년), 집현전의 국왕 교육 업무 분장에 관한 개편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 서연관들은 모두 다른 관직으로써 겸임케 한 것이 이미 오래 되었는데 신해년(1431년, 세종 13년) 겨울부터 별도로 녹관(祿官)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신 등이 집현전의 서연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직능(職能)이 강론이므로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다. 원컨대 서연관의 녹관을 혁파하여 집현전과 합하시고, 직제학 이하 품계의 관헌(品官)마다 각각 1명씩 증설하여 모두 32명으로 하며[191], 그 중의 22명은 경연관을 겸무하고 10명을 서연

188)『세종실록』권44 세종 11년(1429년) 음력 4월 22일 : "臣等參詳本朝文武官, 無常參之制, 思政殿啓事, 又無拜禮, 有違古典。 乞依唐、宋盛時之法, 參以本朝文武職官品秩及諸司所管事務干係體式, 諸文武二品以上及參議代言僉摠制臺諫員集賢殿六品以上、議政府舍人六曹郎官, 每日常參。 代言先入行禮, 升就侍位, 諸文武官入就思政殿庭朝參後, 議政府六曹功臣三軍漢城府臺諫應啓事者, 升殿啓事, 餘官以次退出。" 從之。."

189)『세종실록』권28 세종 7년(1425년) 음력 6월 23일 : "藝文大提學卞季良等十人陳言: '一, 今我殿下令政府六曹臺諫日陳庶事, 以資治道, 可謂廣聰明而達下情矣。 然皆未能從容詳密, 以盡群下之情。 且旅進旅退, 吹竽混眞者, 或有之矣。 唐、宋盛時, 皆有輪對之法, 是不獨廣聰明, 而無壅蔽之患, 群臣之賢否, 亦且難逃於聖鑑矣。 乞依古制, 令四品以上逐日輪對, 益廣言路, 以盡下情, 以察群臣之邪正, 幸甚。' (…) 輪對, 令東班四品以上, 西班二品以上, 逐日入對."

190) 장영기(2010)에 따르면 조선 전기 윤대법은 당송대의 윤대법을 모본(模本)으로 하여 세종 7년(1425년) 음력 7월 11일에 첫 시행되었으며, 조계에 참석하지 않는 4품 이상의 관원이 1명씩 매일 조계 뒤에 참석하여 국정에 관해 논하게 하는 것이었다. (「조선후기 윤대의 정례화와 궁궐전각 운영」,『한국학논총』제34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763-764쪽) 또 장영기는 세종 당시 윤대 운영이 조회 - 시사 - 윤대 - 경연의 체제였다고 말하고 있어(표1, 765쪽) 경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연이 주로 자문의 통로로 이용된 점을 감안하면, 윤대 역시 집현전 학사들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1)『세종실록』권72 세종 18년(1436년) 음력 6월 2일 : "本殿官員三十二人, 厥數猥多, 不無員冗之弊。 且今《訓義》已畢, 宜當汰去, 乞革十二人, 只置二十人. (…) 乞依時王之制, 集賢殿員, 皆令兼帶經筵書筵。 但書筵官, 本五位各二員, 今若二十人, 竝皆兼帶, 則一位當爲四員, 分左右爲難, 除左右二字, 令分仕兩處, 其中有故, 則互相遞仕何如?" ;『세종실록』권73 세종 18년(1436년) 음력 윤6월 11일 : "庚子年始設集賢殿, 置員十人, 丙午年增置六人, 乙卯年因《訓義》修撰, 又增六人, 又罷書筵官十人, 合爲三十二人。 厥數猥多, 不無冗員之弊, 請汰十二人, 只置二十。 書筵官, 旣非祿官, 以集賢殿及他官, 隨宜兼差." ;『세종실록』권83 세종 20년(1438년) 음력 11월 7일 : "初書筵官十人, 竝以集賢殿官

관을 겸무하도록 한다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192]

상기 인용에서 언급된 녹관의 혁파는 앞서 서연관직에서 나타난 방식을 경연관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장기 근무하는 직책으로 전환하여 전임시키기 위한[設祿官久任, 以專其任]" 것이었다.[193] 그래서 세종 17년에 집현전 학사가 아닌 이들이 맡았던 녹관의 자리마저 집현전 학사가 독점한 것이다. 더욱이 이를 계기로 인원이 증설되어 2:1의 비율로 경연관과 서연관을 맡긴 것은 집현전을 경연 전임 기구로 확정한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즉, 이 조치를 통해 집현전이 조만간 장기 근무에 맞는 형태로 개편될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그보다 1년 전인 세종 16년(1434년), 내부 승진의 근거가 되는 인사이동 금지[專業學術, 期以終身] 조치의 발동이다.

집현전을 설치한 것은 오로지 문한(文翰)을 일삼기 위한 것이다. 지난 정미년(1427년, 세종 9년)에 친히 시험한바 집현전 관원이 많이 이에 합격하니, 나는 은근히 기뻐하며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필시 항상 문한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근자에 들으니 집현전 관원들이 모두 그것(문한을 일삼는 것)을 꺼리고 대간(臺諫)과 정조(政曹)로 전출하기를 희망하는 자가 꽤 된다고 한다. 나는 집현전(관원)을 신중히 선발하였고 예로 대하는 것[禮待] 또한 대간과 다를 것 없이 특별하게 하는데도, 일을 꺼리고 옮기려 하는 게 또한 이와 같다면 나머지는 어떻겠는가? 신하된 자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이와 같아야 하는가? 그대들은 태만하지 말고 오로지 학술을 자기 업으로 삼아 죽기까지 할 것을 기약하여야 할 것이다.[194]

세종은 친히 주관한 중시(重試)에서 집현전의 성과를 확인한 뒤[195] 장서각(도서관) 설립을 지시[196]하고, 집현전에 통합시켰던 고려의 문한기구를 새롭게 분설(分設)시

員兼任, 已有立法。 後改以集賢殿及各司官吏, 隨宜兼差, 令更日入仕。 各司官吏, 各有所掌, 或曠其職, 又數遞代, 不得久於書筵之任。 今後除他官, 以集賢殿官員二十人, 分差經筵書筵各十人, 以久其任." 이후 상정 업무가 종료하면서 인원이 최종 20명으로 확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장기근속 등 세종의 운영 방향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192) 『세종실록』 권69 세종 17년(1435년) 음력 7월 11일 : "本朝書筵官, 皆以他官兼任, 其來已久, 歲在辛亥冬, 別立祿官。 臣等參詳集賢殿書筵官, 皆職在進講, 其任不異。 願革書筵祿官, 合於集賢殿, 直提學以下每品, 各加設一人, 摠三十二人, 其二十二人兼經筵, 十人兼書筵, 庶乎便益."

193)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1431년) 음력 10월 29일 : "上曰: "書筵官, 皆以兼官爲之, 未便。 且崔萬理、朴仲林入講之時, 世子頗與問難, 無他, 以二人侍從日久相親故也。 餘員更日入講, 俱是新面, 故世子羞澁不言。 以此觀之, 書筵官除兼官, 設祿官久任, 以專其任可也。" 安崇善曰: "設祿官擇正士, 以專敎養甚可。" ."

194) 『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1434년) 음력 3월 20일 : "設集賢殿, 專事文翰也。 昔丁未親試, 集賢殿多中之, 予竊喜焉, 以爲此必常事文翰之故也。 近聞集賢殿官員, 率皆厭之, 希望臺諫政曹者頗多。 予以集賢殿爲重選, 而禮待異常, 無異臺諫, 厭事求遷, 尙且如此, 而況庶官乎! 人臣奉職之意, 果如是乎? 爾等毋有怠心, 專業學術, 期以終身."

195) 『세종실록』 권35 세종 9년(1427년) 음력 3월 19일 : "取文科重試直集賢殿鄭麟趾等十二人, 初試生員南季瑛等二十人."

196) 『세종실록』 권41 세종 10년(1428년) 음력 8월 7일 : "營繕雖多, 停之者亦多。 今集賢殿藏書閣, 不

키는 방안까지 검토[197]한다.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집현전의 내부 승진[198]과 가지는 관련성이다. 이것은 세종이 집현전을 경연 전임 기구로 인식했던 사실[199]과 일관된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집현전과 유사한 기구를 늘려 경연관의 모집단을 확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대에 과거 급제 후 권지(權知)로 문한 기구에 배속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사를 늘림으로써 연구 - 교육 분야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실제 세종의 이런 의도는 집현전 학사와 서연관을 대상으로 한 월말 평가 관련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집현전 관원은 오직 강경(講經)과 제술(製述)로써 그 재주를 연마하도록 일찍이 명령하여 밝혔는데 근래 오랫동안 그 직임(職任)을 행하지 않으니 실로 옳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서연관(書筵官)도 다만 진강할 교재만 읽을 뿐, (각각) 경서를 나누어서 강독하지 않으니, 이 역시 불가하다. 지금부터 집현전 관원은 경·사·자·집(經史子集)을 그 낭청(郎廳)들의 재질에 따라 나눠 강독하게 하고, 매일 어느 관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읽었는지 명확히 장부에 기록했다가 월말에 이를 확인하여 등사해 보고하게 하라. 또 매월 열흘에 한 번씩 당상관이 시·문의 글제를 내어서 (집현전의) 여러 관원에게 제술하게 하고, 그 1등으로 입격한 시와 문을 가려서 역시 월말에 확인하여 등사해 보고하라. 서연 관원도 빈객(賓客)이 경서를 나누어 주어서 집현전 관원의 예에 의하여 강독하도록 시행할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도록 하라.[200]

상기 기록은 집현전의 인사 지침을 언급하던 시기에 나온 전지(傳旨)로서, 세종이 연구 - 교육 분야의 강화에 매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세종은 장기적으로 문한 기구들을 국왕 전용의 연구 - 교육 기구로 발전시킴으로써 문화 진흥과 정치로의 영향을 추구했던 것 같다. 즉, 이것은 경연의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

可不構, 卿等思之.” ;『세종실록』권93 세종 23년(1441년) 음력 7월 12일 : “以昌德宮朝啓廳及東月廊集賢殿藏書閣, 皆在宗廟主山來脈, 悉皆毁撤, 別開新路, 以通宗廟往來.” 경복궁과 창덕궁의 주산은 북악산이고, 종묘가 이 주산의 내맥(來脈)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점으로 보면 창덕궁 안에 집현전의 장서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보면 세종 10년 당시의 논의가 실제 실행에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197)『세종실록』권44 세종 11년(1429년) 음력 4월 27일 : “臣等以爲宜復修文殿、寶文閣, 量宜定數, 大小文臣之文藝行義, 爲人所推服者, 皆帶其銜, 而外知製敎, 則館閣之中, 尤加妙選以兼之, 集賢殿則宜如內制而皆兼之.”

198) 정두희(1980)는「집현전 학사 연구」(『전북사학』제4집, 전북사학회)에서 성종 당시 임사홍의 발언(『성종실록』권60 성종 6년(1475년) 음력 10월 12일 : “世宗朝, 於集賢殿置博士、著作、正字之職, 擇年少可學者補之, 次次遷轉, 至於直提學・副提學.”)과 관력을 기초로 한 재임기간의 추정을 통해 집현전의 내부 승진이 학사들에게 적용된 인사 정책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110-113쪽)

199)『세종실록』권83 세종 20년(1438년) 음력 11월 23일 : “集賢殿, 專爲經筵而置.”

200)『세종실록』권63 세종 16년(1434년) 음력 3월 17일 : “集賢殿官員, 專爲講經製述, 以鍊其才, 曾有著令, 近來久廢職事, 誠爲不可。書筵官員, 只讀進講經書, 全不分經講讀, 亦爲不可。 自今集賢殿官員, 經史子集, 隨其郎廳材質, 分授講讀, 每日某官, 自某處、至某處講讀, 明白置簿, 至月季開寫以聞。 每月十日一次, 堂上出詩文題, 令諸官製述, 揀擇一等, 入格詩文, 亦於月季開寫以聞。 書筵官員賓客分經, 使之講讀, 依集賢殿官員例施行, 永爲恒式.”

로 국정을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전업화가 확실히 시행된 세종 17년(1435년) 이후 집현전 관헌들의 부담은 과중해지고, 전업 요구와 내부 승진에 대한 불만은 팽배해졌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학사 입장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실제 정치에서 발휘해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경연 기구의 운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과 영향

장기 근무와 내부 승진과 관련된 세종과 집현전 소속 학사들 간의 갈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실록에서 살펴봐야 할 기록이 하나 있다.

전번에 강서원에서 왕세손으로 하여금 조칙(詔勅)을 대신 받게 하도록 청하였었는데, 더벅머리 선비란 말은 이를 가리킨 것이다. 처음에는 임금이 유술(儒術)을 매우 숭상하여 학문을 좋아하고 항상 책을 가까이 하였으며, 집현전을 설치하기 시작한 뒤 문사를 모아서 강관(講官)에 충당시키고 밤마다 3, 4고(鼓)가 되어야 비로소 취침하며, 내시[中官]를 숙직하는 곳에 보내서 계속 물었으므로, 당직을 맡은 사람이 반드시 밤새도록 의관을 단정히 하고서 기다렸다. (그러나) 재위가 중반을 넘어간 이후 두 왕자를 연이어 잃고 소헌왕후마저 훙서(사망)하셨고, 불자들이 비로소 자기들의 설을 아뢰니 임금이 불교를 숭상하게 되어 불당(내불당)을 세웠다. 시종(내시)과 대간·유신(儒臣)들이 그 잘못을 강력히 간언하였으므로 임금이 몹시 꺼려 자주 물리쳤는데, (그때) 혹, (대간과 유신 등을) "어리석은 선비[迂儒]", 혹은 "더벅머리 선비[竪儒]"라고 하였다.[201]

세종은 당시 왕실 내 내불당을 설치하는 문제로 대간과 유신(儒臣, 집현전 학사들)을 하나로 묶어 '어리석은 선비', 혹은 '더벅머리 선비'로 비칭(卑稱)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왕실의 암묵적 숭불(崇佛)에 대한 대간과 집현전 학사들의 반발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고, 연구자들이 그들이 특정 시점부터 간관처럼 행동하였다는 의미로 이른바 집현전 학사들의 '언관화(言官化)'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 반발을 집현전 설치 후 발생한 '특수 상황'으로 본 것이며, 원인 역시 숭불 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없다고 인식한 것이다. 집현전이 경연을 통한 고문을 하고 있었으나 간관의 단체 시위[闔司]와 같은 행동까지 허용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종 20년(1438년) 간관들이 돌연 내불당 혁파를 제기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실 다른 연구는 사대부들이 억불(抑佛)을 넘어 배불(排佛)을 거론하는 지 오래였음에도 이면적으로 숭불을 고려의 유풍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 또

201) 『세종실록』 권127 세종 32년(1450년) 음력 1월 18일 : "前此講書院請令王世孫代受詔勅, 竪儒之言, 指此也。 初, 上敦尙儒術, 好學不倦, 始置集賢殿, 聚文士以充講官, 每夜三四鼓, 始就寢, 遣中官至直廬, 顧問不絶, 當直者必終夜正衣冠以待。 及中年以後, 連喪二子, 昭憲王后又薨, 佛者始以其說進, 上乃崇尙釋敎, 創建佛堂。 侍從、臺諫、儒臣極言其不可, 上深惡之, 屢斥之, 或曰迂儒, 或曰竪儒."

202) 채상식(1998), 「고려・조선시기 불교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사론』 28, 국사편찬위원회, 89-90

한 세종 1년(1419년) 왕찰(王刹)인 흥천사 석탑에 있던 사리 등을 내불당으로 옮긴 기록으로 있는 것은 왕실에서도 고려 유풍으로서 숭불에 대한 관용이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반발이 나타난 것은 아마도 그것이 경연을 통해 도학정치(道學政治)를 표방해온 세종의 행보와 맞지 않다고 본 것이고, 불경 언해본 발간 등, 이후 불교를 존숭하는 것 같은 행보를 보인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성리학 국가라는 조선의 이념과 그와 다른 왕실의 잦은 숭불 행보에서 발생할 혼란을 우려했던 것이다.

이처럼 세종의 즉위와 함께 복설된 집현전 학사들이 왕실의 숭불 유풍을 바로 공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언관화'로 표현된 세종과 집현전의 갈등을 야기한 본질적 요인은 따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집현전의 '전임화(專任化)' 과정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금이] 이조에 전지하기를, "집현전은 오로지 문학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나, 학사로 오래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꺼리고 있다. 지금 응교 정창손(鄭昌孫)을 [사헌부] 집의(執義)로 제수하였는데, 집현전의 여러 선비들이 이것을 핑계 삼아 다른 벼슬에 옮기고자 하니, 그 일에 오로지 힘쓰게 할 수 없는 것인가? 정창손도 도로 집현전에 제수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나] 이것을 의정부에서 의논하게 하였는데, 의정부에서도 논의가 일치하지 않았다. 임금이 도로 집현전에 제수하려고 하였는데, 대사헌 강석덕(姜碩德)이 바꾸지 말기를 청하여 그대로 따랐다.[203]

세종은 재위 16년(1434년) 이후부터 국왕 교육 교관을 집현전 전임으로 모두 대체하는 등, 이에 대한 집현전의 책임과 비중을 크게 높였다. 또한 종신전업을 언급하면서 인사 운용도 내부 승진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집현전 학사의 체직을 금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종종 체직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실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 큰 만큼 세종의 인사운용 원칙에 불만이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세종과 집현전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바로 정창손 사헌부 체직 건에서 나타난 것이다. 즉, 세종은 집현전을 '오로지 문학을 위해 설치'했다는 입장인 반면, 집현전 학사들은 '다른 벼슬로 옮기고자' 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심지어 이로 인해 세종이 예정된 정창손의 체직조차 철회하려고 할 정도였던 것이다. 이 시기가 집현전의 전업화가 진행된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 불만이 상당히 노골

쪽.

203) 『세종실록』 권109 세종 27년(1445년) 음력 8월 3일 : "傳旨吏曹: 集賢殿, 專爲文學而設. 然久居其官, 人皆厭之。 今應敎鄭昌孫, 除執義, 無乃集賢諸儒據此欲遷他官, 不能專務其業乎? 欲以昌孫還授集賢, 何如? 其議諸政府, 政府之論不同。上命還除集賢, 大司憲姜碩德請勿改, 從之." 이것은 재위 22년(1440년) 음력 7월과 24년(1442년) 음력 2월, 부수찬 이사철(李思哲)이 지방관과 사헌부로 잇따라 이동하였고, 3년 뒤 응교 정창손까지 사헌부로 발령되면서 인사이동 욕구를 자극한 것이다.

화된 것을 보여준 셈이다. 또한 세종이 예정된 사람의 체직을 철회하려고 할 정도였던 것은 그 만큼 이 반발을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전업화 선언 이후로 세종이 두 차례에 걸쳐 집현전 학사의 인사이동을 단행하면서 체직 욕구를 자극한 셈이고, 이런 모순된 상황으로 인해 이에 해당되지 않은 학사들의 불만이 심화된 것이다.

그럼 정창손보다 앞서 함길도 경력(외관)과 사헌부 장령(경관, 양사), 예문관 직제학 겸 동첨사(同詹事)에 차례로 임명된 이사철(李思哲)의 경우도 들여다보자.

나와 같은 부류들(予之族屬)은 모두 아직 학문을 잘 알지 못하므로, 네가 학문에 힘쓰는 것을 가상하게 여겨 내가 오래도록 집현전에 두고 싶었다. 그러나 네가 나를 모시며 따른 게 오래 되었고 나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알기에 네가 오랫동안 그 임무를 도맡아 해온 것으로 특별히 너를 보내는 것이니, 너는 그리로 가서도 (학업을) 게을리 하지 말도록 하라.[204]

당시 이사철은 4군 6진 설치의 계기가 된 파저강(婆猪江) 전투(세종 15년(1433년) 음력 4월)로 인해 체직된다. 비록 세종 본인이 "오래도록 집현전에 두고 싶었다[欲久置集賢殿]"고 말하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이런 인사는 세종 본인이 세운 장기근속과 내부 승진 원칙을 깬 사례였다. 문제는 그 후로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집현전 학사들은 이를 깨려고 시도했으며, 세종은 이런 집현전의 동요에 무척 당황하면서 이를 진화하려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언관화의 요인으로 지목된 내불당의 재창건[205] 이전부터 세종과 집현전은 이미 내부적으로 갈등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세종이 집현전의 전업화를 시도한 시점[206]은 지배층 내부에서 문제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던 시기였다.

근자에 들으니 집현전 관원들이 모두 이(문한)를 싫어하고, 대간(臺諫)과 정조(政曹)에의 전출을 희망하는 자가 자못 많다는 것이다. 나는 집현전(에 임명한 것)을 극히 중용한 것[重選]으로 생각했고, 특별한 예우[禮待]를 더해 대간과 다를 것이 없이 해주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일(문한)을 싫어하고 체직[遷轉]을 희망함이 이 정도라면 하물며 다른 관리[庶官]들이겠는가! 인신(人臣)으로서 그 직임을 봉행하는 뜻이 과연 이와 같은가?[207]

---

204) 『세종실록』 권90 세종 22년(1440년) 음력 7월 21일 : "予之族屬, 皆未知學術, 深嘉汝力學, 予欲久置集賢殿。 然汝侍從日久, 知予至懷, 故特遣汝, 以久專其任, 汝往毋怠."

205) 실록에 따르면, 내불당은, 세종 1년(1419년)부터 나온 점에 비추어, 왕실에서 암묵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종 20년(1438년) 음력 7월 6일 기록에 "내불당을 혁파했다[又罷內佛堂]"고 한 점에 비추어 세종 초년에 사라진 것으로 보이며, 10년 뒤인 세종 30년(1448년)에 "새로 내불당을 창건한다[百姓又聞新創內佛堂之說]"는 언급이 보이는 점에서, 이 시기가 기존 연구에서 집현전 언관화의 도화선으로 보는 불사 문제의 시점(始點)인 것으로 추정된다.

206) 『세종실록』 권83 세종 20년(1438년) 음력 11월 23일 : "集賢殿, 專爲經筵而置." 서연관을 시작으로 국왕 교육을 전임케 한 이후, 집현전은 점차 경연 기구로 규정되기 시작한다.

집현전의 불사 반대가 시작된 것은 재위 17년(1435년)부터지만[208], 집현전 학사들에게 더 직접적인 갈등 요인은 세종의 전업 요구였다.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이 중시(重試)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자 자신의 운영 방향에 확신을 가졌고, 이후 종신전업으로 인사정책을 추진하였지 않았을까 짐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경연관과 서연관을 모두 국왕 교육 전임으로 돌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세종이 전업을 고집하면서도 체직이 계속 발생하면서 동요가 일어났고, 세종은 이를 막지 못한다면 전업화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재위 20년(1438년) 이후 양측의 갈등은 이미 심화되었을 것이다.

또 전하께서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문하는 선비를 모아 매일 경연을 열고 도의를 강론하시고, 여러 조치는 모두 옛 제도를 상고한 뒤에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일만 대신들이 말하여도 들이지 아니하시고 근신(近臣)들이 상소하여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209]

집현전 직제학 신석조(集賢殿 直提學 辛碩祖) 등이 단체 행동[闔司]하여 와서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석조 등이 말하기를, "신 등이 비록 말을 다하고자 하나 친히 진달하지 못하니 어떻게 소회를 펴서 다할 수 있습니까. 원컨대 알현을 허락[賜見]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친형제와 노신(老臣)이라도 친히 보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무엇이기에 꼭 알현[引見]을 원하는가." 하였다. 조금 뒤에 정부와 육조 판서가 모두 대궐로 들어갔다[詣闕].[210]

설령 숭불에 대한 반대를 중심으로 언관화 경향을 논하려 해도, 그것이 집현전만의 고유하고 특수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 당시 왕실 숭불에 대한 반대는 조정 전체가 참여할 만큼 큰 이슈였으며, 집현전 역시 조정의 한 관사(官司)로서 동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집현전이 양사(兩司)처럼 관사의 문을 닫고 모이는 단체 행동을 했다고 이를 언관화 된 증거로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세종 재위기 중 집현전이 이 같은 행동을 보인 경우는 1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만큼 왕실 숭불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따라서 이 시기 집현전 학사들의 움직임은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파악할 필요

---

207) 『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1434년) 음력 3월 20일 : "近聞集賢殿官員, 率皆厭之, 希望臺諫政曹者頗多。 予以集賢殿爲重選, 而禮待異常, 無異臺諫, 厭事求遷, 尙且如此, 而況庶官乎!"

208) 그 해 음력 4월 20일에 집현전 부제학 김돈(金墩) 등이 불교의 폐단과 금지를 상소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면 세종과 왕실의 불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수재와 한재가 겹치던 시기에 나타난 현상을 사회 병리적으로 이해한 것에 가깝다.

209) 『세종실록』 권94 세종 23년(1441년) 음력 윤11월 21일 : "且殿下置集賢殿, 聚文學之士, 日開經筵, 講論道義, 凡諸施措, 皆令參考古制, 而後行之, 何獨至於此事, 大臣言之而不納, 近臣疏之而不許歟?"

210)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1448년) 음력 7월 18일 : "集賢殿直提學辛碩祖等闔司來請, 不聽。 碩祖等曰: "臣等雖欲盡言, 未能親達, 何由展盡所懷! 願賜見。" 上曰: "雖親兄弟老大臣, 尙不能親見, 汝等何物, 必欲引見乎!" 俄而政府六曹判書皆詣闕."

가 있으며, 이것이 왕실 숭불이라는 특정 시기의 한 가지 이슈와 연관된 특이한 경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세종과 집현전의 갈등을 이해하는 또 다른 단서로 볼 수 있는 것이 세자(문종)의 보좌기구인 세자첨사원이다. 세종은 자신의 심각했던 병세로 인해[211] 이미 재위 19년(1437년)부터 세자(문종)에게 정무를 맡겨왔는데[212], 재위 21년(1439년) 세종이 강무(講武, 군사훈련)[213]를 위임하는 하교를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내가 지난번에 세자에게 강무를 위임하게 하려고 하였더니 대신들이 그치게 하고 너도 역시 그러하였으나 나는 왜 불가한지 알지 못하겠다. 더욱이 이제는 쇠하고 병이 심하기까지 한데 말이다. 금년 가을과 내년 봄에는 (내가) 친히 수렵을 주관하지 못할 듯하니, 세자로 하여금 숙위(宿衛) 군사를 나누어서 강무를 이끌게 하라. 군중의 일은 (대부분) 병조의 당상(堂上) 한 사람과 병방 승지(兵房承旨) 한 사람이 같이 의논하여 처결하되, 만일 중대한 일이 있거든 다만 세자에게 고하도록 할 것이다.[214]

이 당시는 불사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될 즈음[215]이었으며, 세종은 부왕(태종)보다 훨씬 많은 수의 강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216] 그리고 재위 말년 무렵부터 세종의 병색이 완연한 까닭에 상당한 정무를 세자(문종)에게 넘기려 하였으며, 세자(문종)와 사대부들은 그것을 국왕의 대권에 속하는 정치 행위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것은 고려에 비해 낮아진 세자의 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런 관례로 인해 평상적인 감국(監國)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음을 우려한 것이었다.

---

211) 『세종실록』 권81 세종 20년(1438년) 음력 6월 12일 : "上未寧日久, 議政府六曹逐日問安." 왕의 병을 의미하는 '미녕(未寧)'으로 검색하면 세종 12년(1430년)부터 등장하지만, '날이 오래 되었다[日久]'는 표현에 비추어 그 증세가 심해진 것은 세종 20년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212) 『세종실록』 권76 세종 19년(1437년) 음력 1월 3일 : "議于承政院曰: "予今年氣體多不平, 將不能親斷萬幾。 吏、兵曹除授及軍國重事, 予親聽斷, 其餘細碎之事, 令王世子處決何如?" 承旨等啓曰: "此事至重, 不可輕易也。"."

213) 국왕이 강무를 지휘하는 관례는 태조 5년(1396년) 음력 11월 30일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가 왕도(王都)와 외방(外方)에서 강무하는 법을 아뢴 데에서 시작되었으며 세종 때 이르러 춘추(春秋)에 각각 시행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세자(문종)는 세종 13년(1431년) 음력 1월 30일부터 그 수종(隨從)을 언급되어 3년 뒤(1434년)부터 지속적으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214)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1439년) 음력 6월 21일 : "予於向者, 欲令世子講武, 大臣止之, 汝亦止之, 吾不知其可也。 況今衰病甚矣. 今秋及來春, 似不能親狩, 欲令世子分宿衛軍士, 以講武事. 其軍中之事則兵曹堂上一人、兵房承旨同議處決, 如有大事, 則但告世子而已."

215) 세종은 재위 19년(1437년) 가을 강무(음력 9월 11월 기록)부터 지휘권을 세자(문종)에게 주려고 시도하였고, 재위 24년(1442년)에도 가을 강무(음력 9월 3일 기록)를 대행시키려고 하여 관철시킨다. 이렇게 보면 재위 21년(1439년) 이후부터 강무 대행의 관철로 세자(문종)의 정치적 폭이 크게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기록 상 이는 태종과 세종 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세조와 성종이 뒤를 이었다.

216) 국사편찬위의 사이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강무'를 키워드로 검색해 봐도 163건과 317건으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특히 상왕 시절 태종이 한 것(세종 7년 이전)을 빼도 차이가 상당하다. 또한 세종 13년(1431년)부터 세자(문종)도 강무에 수행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보이기까지 한다. 더불어 횟수도 음력 3월과 9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종 15년(1433년) 음력 10월 26일 첫 번째 기사에서 "봄・가을의 강무 때[春秋講武時]"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좌전』 은공(隱公) 5년의 "春蒐, 夏苗, 秋獮, 冬狩, 皆於農隙以講事也, 三年而治兵, 入而振旅"에서 유래한 것이라 추정된다.

따라서 집현전의 언관화 경향이 발현된 시점(始點)(재위 20년(1438년) 이후)[217]으로 보는 기간이 왕실의 불사(佛事) 문제가 조정의 쟁론 대상으로 떠오르던 시기[218]와 겹친다는 점도 중요하다. 세종 재위 말년이 이처럼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된 것은 이 시점 국왕의 환후가 중증에 이르고 동시에 숭불로 인해 안팎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등, 여러 문제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이런 복잡한 사정을 풀어나가기 위해 세종에게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고착화되어 가는 세종과 학사 간 갈등을 빨리 해소해야 했던 것이다. 그 만큼 차기 국왕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집현전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갈등으로 인해 국왕 교육 제도가 전반적으로 위기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세종 입장에서 문종으로 선위하기 이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이 시기 세종이 세자 보좌 기구인 세자첨사원(世子詹事院)을 설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219] 실록에서도 "정사를 나누어 (왕의) 권한을 분리한다[이정분권(二政分權)]"고 비판한 기록이 보일 정도로 이것은 당시 지배층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 때문에 자칫 세자(문종)의 대리청정이 거의 대권을 넘보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명령의 출납(出納)을 담당하는 승정원을 통하지 않는 세자만의 별도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과 세자가 감국을 통해 정치와 군사 양면을 통령하는 것도 문종이 조선에서 유일했다. 그래서 세종의 이 조치는 일반적인 대리청정의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는 의심을 받아 연구자들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품게 한 것이다. 당연히 이런 기구에 관한 분석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기구 설치에 담긴 세종의 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인적 구성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세종 24년(1442년)의 기록을 살펴보자.

의정부에서 첨사원의 제도를 개정하였다. 의정부에서 보고하였다. "첨사 1명을 종3품에서, 동첨사 2명을 정4품에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연관과 문무반의 업무가 중하지 않는 이(閑官) 중 그 능력이 합당한 자를 겸임시키고자 하는데, 대체로 그 반차(班次)가 보덕과 필선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것을 따랐다.[220]

---

217) 최승희(1967),「집현전연구(하)」,『역사학보』제33집, 역사학회, 44쪽.

218)『세종실록』권85 세종 21년(1439년) 음력 4월 19일 : "太宗繼述, 減寺院而收臧獲, 以示澄革之兆, 至我殿下, 尤加裁抑, 緇流之弊, 十去七八。 自往歲漢江水陸之設、檜巖大會之後, 僧勢復振, 其貪饕者受至化疏, 爭趨貴戚之門, 勸誘同願, 貴戚亦以爲福利所在, 悉從其請, 齎至中外富家, 且誘且脅, 其佞佛者信而悅從, 雖不欲者, 畏而勉從, 佛事之興, 遂濫觴于茲矣." 효령대군 때문에 양주 회암사 중수를 명하던 시기부터 조금 더 심해지기 시작했기에 불사 쟁론의 심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19)『세종실록』권97 세종 24년(1442년) 음력 8월 26일 : "伏聞殿下將置東宮詹事院, 分委庶務, 實駭觀聽。 政府六曹臺諫累請停之, 殿下不允, 臣等不勝驚惶, 敢陳危懇。 臣等竊謂二政分權, 古人所戒。 世子之職, 在於視膳問安而已, 若其分決庶政, 非三代盛世之事也."

220)『세종실록』권97 세종 24년(1442년) 음력 9월 3일 : "議政府改定詹事院之制, 啓曰: "詹事一人從三品, 同詹事二人正四品。 以書筵官及東西班閑官, 擇其人器相當者兼差, 班在輔德弼善之上。" 從之."

유의손(柳義孫)으로 행 집현전 직제학 겸 첨사원 첨사를, 이선제(李先齊)로 행 집현전 직제학 겸 첨사원 동첨사를, 이사철(李思哲)로 예문관 직제학 겸 첨사원 동첨사를, 김전(金塡)으로 사헌부 집의를 삼았다.[221]

세종이 채택한 의정부의 제안은 도승지 조서강이 올린 시안(試案)[222]과 편제상의 중점은 물론, 참여 대상도 판이하게 다르다. 먼저 조서강의 시안은『당육전(唐六典)』의 태자첨사부(太子詹事府)를 참조하여 기능적으로 행정적인 보좌[宮中庶務] 중점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세종에 의해 채택된 의정부의 제안은 참하 설치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당시 집현전 전임(專任)이었던 서연관과 소속과 업무가 없는 한관(閑官)을 대상으로 하며 그 직무 범위 역시 명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자의 강력한 권한에 비해 지나치게 소략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으며, 업무 대상과 범위도 명시되지 않아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여기에 의정부 제안에 따라 세자첨사원에 임명된 인원 역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설치 초기 임명된 집현전 전·현직 인사는 총 3인으로[223] 이 중 국왕 교육 유경험자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이사철은 외임(外任)과 청요(淸要)로 집현전에서 체직한 예외적 인물로서 대체로 상당 기간 장기근속과 내부 승진 원칙에 걸려 있었던 선진(先進)이었다. 세종이 이런 인사들을 첨사와 동첨사에 임명한 것은 집현전에 적용된 인사 운영 원칙을 깬 것으로, 세자첨사부의 직능에 관해 소략하게 언급된 점과 함께 매우 의미심장하다. 원래 세종이 집현전의 전임을 추진한 것은 종신전업으로 연구 -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서연관인 집현전 소속 학사들이 세자첨사원에 참여하여 국정을 폭넓게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세종이 이런 세자첨사원의 구성을 의도했을까. 그 단서는 문종 즉위년(1450년) 삼관(三館)과 승문원(承文院) 관련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예전에 이 삼관(三館)의 관직 제수는 고과[殿最]에 구애받지 않고서 선진(先進)과 후진(後進)을 차례대로 인사 이동시켰는데, 이때(문종 재위기)에 [이런 방식이] [불문]법으로 자리 잡았다.[224]

다만 한 원(院)에만 얽매어 대간과 육조의 좋은 요직[華官要職]에는 옮기지 못하니, 비

221)『세종실록』권97 세종 24년(1442년) 음력 9월 18일 : "以柳義孫行集賢殿直提學、兼詹事院詹事, 李先齊行集賢殿直提學、兼詹事院同詹事, 李思哲藝文直提學、兼詹事院同詹事, 金塡司憲執義."

222)『세종실록』권97 세종 24년(1442년) 음력 7월 28일 : "乞倣古制設詹事院, 置左右詹事各一人、同詹事一人, 皆從三品官, 在藝文直提學之上。 主事二人正八品階, 除七品去官, 使專掌宮中庶務, 以分職任."

223) 유의손은 집현전 학사로 오래 있으면서 재위 22년(1440년) 서연관, 이선제는 재위 21년(1439년) 경연관(검토관), 당시 예문관 직제학으로 역시 동첨사에 임명된 이사철 역시 집현전 출신이었다.

224)『문종실록』권1 문종 즉위년(1450년) 음력 4월 3일 : "前此三館除授, 不拘殿最, 以先後進, 次第遷轉, 至是乃立此法."

록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자리에 가도록] 권하지 않고, 사람들도 [그 자리를] 영예로운 직분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중략) 청컨대 강이관(講肄官, 한어와 이문을 익히는 관원)의 권과격례(勸課格例)를 따라 그 재질[才品]대로 대간과 육조에 제수시켜 사람들로 [그 자리로] 뽑혀가는 것을 영광스러운 것[榮選]으로 여기게 하고, 본원의 관직과 일을 겸하여 하는 것도 그만 두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225]

문종 대의 두 기록은 문한 기구에 대한 인사 운용에 몇 가지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우선 선진(선배)부터 조정 실직으로 이동시키고 후진(후배)에게만 내부 승진을 하거나, 다음 고강(권과격례)으로 선정된 인사를 대간과 육조에 겸직하도록 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이런 변화는 모두 모종의 일을 계기로 관행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한 기구의 선진(선배)들이 공식적으로 체직하거나 실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세종 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아직 나라의 성헌(成憲)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이런 관행과 관례들이 관습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종이 집현전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기구를 설치한 목적은 문종 이후 유사한 성격을 가진 도감(都監)에서 그 대략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도감의 직임(職任)은 모두 신하의 직분으로 당연한 것이다. [다만] 세종의 국상(國喪) 때부터 [도감 직임 수행 후] 처음 가자(加資)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조신(朝臣)들이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권문(權門)에 청탁하여 도감에 참여하는 것을 이익으로 여겼다.[226]

일반적으로 도감의 인선(人選)은 전문성과 함께 업무가 많지 않은 직임의 인물이나 정치적 인선까지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는데[227], 단종실록은 대체로 문종 때부터 그 인선의 이유로 가자(加資)라는 포상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세자첨사원을 거친 집현전 전·현직 인사들의 관력[228]을 통해 실록에서 언급된 이런 형태의 포상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선진이 실직, 또는 겸직으로 이동할 때 포폄(褒貶)의 형태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는 근

225) 『문종실록』 권3 문종 즉위년(1450년) 음력 8월 7일 : "但拘於一院, 而不得遷臺諫六曹華要之職, 雖善其任者, 無所勸, 而人亦不以爲榮。 (중략) 請依講肄官勸課格例, 隨其才品, 除授臺諫、六曹, 以示榮選, 兼帶本院職事, 不廢所業."

226) 『단종실록』 권4 단종 즉위년(1452년) 음력 10월 1일 : "且都監之任, 皆臣子職分當爲也, 自世宗之喪, 始得加資, 是後朝臣, 當君父賓天之初, 奔走權門, 求爲都監, 因以爲利." 이 점은 기존 연구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나영훈(2014), 「조선전기 도감의 조직과 기능」, 『조선시대사학보』 제70집, 조선시대사학회, 57쪽)

227) 나영훈(2014), 「조선전기 도감의 조직과 기능」, 『조선시대사학보』 제70집, 조선시대사학회, 57쪽.

228) 실제 문종 즉위년(1450년) 음력 7월 6일의 기록에서 첨사원의 첨사(종3품), 동첨사(정4품)였던 도승지(정3품) 이사철과 집현전 직제학(종3품) 이선제가 이조참판(종2품)과 예문관제학(종2품)으로 옮긴 것이 확인된다는 점, 초기 첨사 중 한 명이었던 유의손도 이후 예조참판을 거쳤다가 즉위년 6월 9일 사망한 점이 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집현전 내부 승진 원칙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증거로 추정해볼 수 있다.

거이다. 즉, 임시 기구를 거치며 자격을 더해주는[加資] 방식으로 관직의 체직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세종 30년(1448년), 6명의 승지를 첨사원에 모두 참여시킨 조치[229]도 상기에서 언급한 인선의 해석에 상당한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세종의 승지 배치를 '세자(문종)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함께 '확대된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하여'[230] 배치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받아들인다면 세자첨사원에 대한 당대 기술[時, 文宗監撫庶事, 書筵官掌機密]"[231]과 더불어 집현전 학사와 한관(閑官)에 비해 전문적 인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집현전 소속의 서연관들은 한관과 더불어 정치적 인선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후 대리청정 시 승지가 참여한 전례가 정착된 모습이 보이는 것[232]도 그 후과(後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세종의 세자첨사원 설치와 집현전 선진의 배치는 이런 정치적 인선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상과 같은 추정을 근거로 세자첨사원의 설치에 담긴 세종의 기획을 정리하여 보자. 기존 연구는 세종의 세자첨사원에 대해 조서강의 시안에서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의 태자첨사부(太子詹事府)를 참고했다는 주장[233]과 세종이 즉위하게 된 태종의 전위 과정을 참고로 했다는 주장[234]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전례를 가지고 오랫동안 운영된 기구인 점과 그 실행의 양상만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태자첨사부의 경우 그 전통이 뚜렷하고 직능과 직제가 확연해 세자첨사원과 크게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조서강이 이미『당육전』을 직접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기구의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세자첨사원과 곧바로 비교하기보다 세종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을 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먼저 태종의 전위는 세자를 양녕대군에서 충녕대군(세종)으로 교체 후 곧바로 이루어졌다.

처음에 내가 유후사(留後司)에서 주상에게, '너는 장차 나의 근심을 물려받게 될 것인데, 내 비록 덕이 없으나 오래 왕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군국(軍國)의 중요한 일은 내가 친히 청단하겠노라.'고 하였다.[235]

---

229)『세종실록』권121 세종 30년(1448년) 음력 9월 8일 : "六承旨皆兼詹事院詹事."
230) 김혜화(1990),「조선세종조 첨사원에 관한 연구」,『성신사학』제8집, 동선사학회, 108쪽.
231) 최승희(1967),「집현전연구(하)」,『역사학보』제33집, 역사학회, 53쪽.
232) 숙종 때 마련된 대리청정절목(代理聽政節目)은 교령 출납에 대해 "세자의 명령을 승정원이 주관한다"면서 세종조의 전례임을 언급하고 있다. (임혜련(2018),「조선후기 '대리정치'의 권한 범주와 왕권」,『역사와 담론』제85집, 호서사학회, 180쪽에서 재인용)
233) 김혜화(1990),「조선 세종조 첨사원에 관한 연구」,『성신사학』제8집, 동선사학회, 98-99쪽.
234) 김혜화(1990),「조선 세종조 첨사원에 관한 연구」,『성신사학』제8집, 동선사학회, 96쪽.
235)『세종실록』권1 세종 즉위년(1418년) 음력 8월 25일 : "初予在留後司, 語主上曰: '爾將受我憂, 予雖否德, 在位久、識人多, 軍國重事, 予親聽斷。'."

이 당시 태종은 충녕대군(세종)에게 곧바로 왕위를 물려주어 별도의 동궁관을 둘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236], 전례 없던 세자 교체로 정국이 받은 충격과 후유증을 단시간 내 최소화시켜야 했다. 또한 당초 양녕대군으로 인해 상당한 국정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세자 교체로 인한 반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태종은 병권과 인사권을 여전히 쥔 채로 세종의 보호자를 자처했으며, 이 경우 세자에서 곧바로 조선의 국왕이 된 세종은 오히려 그 위상을 갖출 수 없었다. 이런 저간의 사정에 비춰 보면 태종과 세종의 관계는 요동치는 정국으로 인한 부담을 새 국왕이 안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병 하나가 겨우 나으면 또 다른 병이 생기니 내가 많이 노쇠해졌다. [그래서] 나는 큰 일만 처결하고 소소한 일을 세자로 하여금 처결하게 하고자 하였는데 너희들과 대신들이 모두 말렸다. [이에]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비록 많은 병에 걸리긴 했지만 아직 늙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경솔히 말을 꺼낸 것을 후회한다. 다만 강무(講武)는 나라의 큰일이자 조종께서 이미 세우신 법이거늘 하물며 지금 바야흐로 동서 국경을 방비해야 할 일이 일어난 때이니 군자의 준비[武備]를 늦출 수야 있으랴?[237]

세자(문종)는 세종의 오랜 지병으로 오랫동안 감국을 맡아왔을 뿐만 아니라 정식 후계자로서 서연관을 거느리고 교육을 받아왔다. 또한 그는 양녕대군처럼 적장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정통성 역시 갖춘 상황이었다. 이 점은 세종과 확연히 다른 점이었다. 또한 세자첨사원의 설치 배경을 보더라도 부왕의 재위 말년 그 감국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면서 서연관을 포함한 임시 기구를 설치한 것이고, 단지 그로 인해 반발이 컸기 때문에 세종이 주요 사안을 결단하는 절충을 한 경우이다. 즉, 세종이 세자(문종)의 보호자 역할을 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이 점은 곧바로 국왕의 지위를 받은 이후에도 상왕으로서 인사와 국방을 쥐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세종 생전에 세자(문종)에게 군권을 상당 부분 위임하고 국정 역시 그러했던 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다음 세종이 설치된 세자첨사원은 고려의 태자첨사부와 성격부터 확연하게 차이를 보인다. 상설 기구인 고려의 태자첨사부는 호위, 교육, 그리고 기타 잡무(서무와 재산관리)까지 통합된 형태의 독립된 상설 기구로서 외왕내제(外王內帝)의 후계자로서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 조선의 동궁관은 태종 때 설치된 호위인 익위사

236) 실록에 따르면 태종 18년(1418년) 음력 6월에 세자를 교체한 뒤 8월 즉위 이전까지 3명만 동궁관으로 임명했다. 그것이 이수와 박은, 유창(유경)이었다.

237) 『세종실록』 권85 세종 21년(1439년) 음력 6월 21일 : "一病纔愈, 一病又生, 予之衰老甚矣。 予欲但決大事, 而小事則令世子處決, 爾等與大臣皆止之。 予更思之, 予雖多病, 年今未老, 悔予輕易發言也, 但講武則國之大事, 而祖宗已立之法也, 況今東西兩界, 戍禦方興, 武備其可緩乎?" 이 기록은 김혜화(1990)가 세종의 병세를 알 수 있는 기록으로서 인용하기도 하였다.

(翊衛司)와 서연관으로 분할되었고, 서무는 점차 내명부의 내관에게 이관되어 갔다. 다만 세종은 감국의 업무 범주가 넓어진 점을 감안, 동궁관인 서연관에 추가로 한관(閑官)을 추가하고, 보좌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승정원의 승지로써 실질적인 장악을 하게 한 것이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세자첨사원을 임시 기구인 도감처럼 운영하면서 집현전 출신들에게 체직의 기회를 주어 대간과 육조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세자첨사원과 고려의 태자첨사부의 차이를 당제(唐制)의 변형 여부로 본 것[238]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고려와 조선 모두『당육전』과 원, 명의 법률을 기반으로 운영한 점은 동일하지만, 제도적 운영의 창의성을 자주성 판단의 유효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후 이와 동일한 성격의 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세조 때 논의된 세자의사청(世子議事廳)을 살펴봐도 그 점은 곧바로 확인되는데, 특히 그 반대 이유에서 세자첨사원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실록에 따르면 세조는 형(문종)의 경우(세자첨사원)를 전례로 두고자 했던 세자(예종)의 보좌 기구에 대해 사대부들은 예종이 '문종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239] 이것은 세자첨사원이 그 만큼 부득이하게 만들어진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종의 세자첨사원 운영은 조선 후기 동궁관이었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경우[240]와도 다르다. 조선은 세조 이후 동궁과 국왕의 교육과 분리하여 동궁관을 되도록 교관(敎官)의 역할로 한정하고 대리청정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서만 추가적으로 업무를 부여하는 데 그쳤다. 이는 태종이 서연관에서 호위 기능(익위사)을 분리한 것과 더불어 조선 동궁관 운영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앞서 봤던 세자의사청이 사대부들에 의해 불필요하다고 여겨 만들지 않았던 까닭도 본질적으로 그것이 의전 기구의 성격[241]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그 전신인 세자첨사원이 대신을 접견하는 등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세자의 위상과 조선 왕조의 체제와 맞지 않는 특수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직

---

238) 즉, 『고려사』 백관지의 동궁관 설명으로 보면 서술 순서 상 다소 기이하게 되어 있는데, 기능적인 관점의 서술이라고 보면 학문 및 예의범절을 담당한 경우(교육)와 나머지(행정)으로 분리된다는 식이다. (김혜화(1990), 98쪽) 단, 여기서 김혜화는 '고려는 당제를 그대로 수용했고, 조선은 변형하여 수용한 점에서 자주성 여부의 차이를 갖는다는' 해석을 첨언한다. 사실 이는 고려가 외왕내제(外王內帝)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이런 건원칭제(建元稱制)를 두고 자주성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종종 발견된다.

239)『세조실록』권4 세조 2년(1456년) 음력 7월 27일 : "宦官安忠彦宣傳曰: "世子接見朝臣, 不可無其處。 世宗朝嘗立世子議事廳, 今依世宗故事爲之如何?" 元亨啓曰: "殿下欲令東宮習見朝政, 此意甚美。 然世宗於晩年, 凡軍國庶務, 悉委世子, 故特設議事廳耳。 今則殿下親決庶務, 且每當朝參、朝啓, 世子亦參, 是所以接見朝臣, 不必別立議事廳也。"."

240) 노관범(2008),「『영조동궁일기』로 보는 왕세제의 서연과 미시정치」,『규장각』제3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참조. 여기서 시강원은 왕세제(영조)에게 홍문관과 승정원의 역할을 하였다고 언급되는데(65쪽), 이는 저자가 왕세제 시절 영조의 정치적 행위를 '미시정치'로 규정함으로써 나온 것이다.

241)『세조실록』권4 세조 2년(1456년) 음력 7월 27일 첫 번째 기사 참고.

명(職名) 등 일부를『당육전』에서 차용했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제 집현전과 경연 제도의 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내릴 수 있다. 우선 세종은 집현전을 꾸준히 연구 -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며, 그것은 "학술전업"[專業學術]과 "종신근속"[期以終身]의 요구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었다. 세종이 집현전 복설 후 고제상정(古制詳定)에 참여시키고 사가독서(賜暇讀書)를 정책적으로 설치, 운영한 것은 그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세종 20년(1438년)을 기점으로 잇따라 갈등을 빚은 것도 그런 목적으로부터 소속 학사들이 이탈할 조짐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한편으로 재위 말년 대간과 더불어 국정 자문에 참여하는 등[242], 스스로 고문의 범위를 확대시킬 빌미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것은 집현전의 정치적 기능을 최소한으로 하려는 의도에도 불구, 새로운 대안 없이 세종이 원하는 소기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세종이 장기간의 대리청정과 자신의 와병을 명분으로 설치한 세자첨사원은 자신의 집현전 운영 목적(연구 - 교육 중심)에 불만을 품은 집현전 소속 학사들에 대해 선진(先進)의 인사 적체 해소로써 이를 해결하려는 출구 전략이었다.[243] 즉, 이 기구가 시안과 달리 서연관과 한관(閑官) 및 승지를 대상으로 하게 된 데에는 체직을 강하게 원하는 집현전 선진들의 체직 명분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244] 또한 이 기구 설립 당시 나온 인사 상의 관행이 이후 유사한 성격의 기관(문한 기관이나 도감)에 그대로 반영되었던 점은 세종이 세자첨사원을 설치하게 된 목적을 상당히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존 연구처럼 이 기구를 고려의 태자첨사부와 비견하거나 태종의 전위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세종의 이러한 노력이 집현전 소속 학사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했다.[245] 이는 문종과 단종 시대에 집현전이 보여준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세종

---

242)『세종실록』권109 세종 27년(1445년) 음력 9월 2일 : "今立大法, 必示臺諫集賢殿而行之."

243)『성종실록』권60 성종 6년(1475년) 음력 10월 12일 : " 世宗朝, 於集賢殿置博士、著作、正字之職, 擇年少可學者補之, 次次遷轉, 至於直提學・副提學, 又慮其拘於一處, 或出爲臺諫之任, 不授他官, 故人才輩出." 이 발언은 내부 승진[次次遷轉]의 타관으로의 체직[或出爲臺諫之任]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중 후자는 문종 때 주로 나타난 점으로 볼 때, 문종 때 이러한 인사 운용 상 변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바로 선진과 후진의 인사 교체 방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244) 하나는 최승희(1967)의 경우로 세종 19년(1437년)을 그 기점으로 한다. 그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문종의 대리청정과 더불어 첨사원에 서연관으로서 집현전 학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집현전연구(하)」,『역사학보』제33집, 역사학회, 39-40쪽) 다른 하나는 유영옥(1994)의 경우로 언관화의 근본 이유로 경연관의 참여를 꼽고 있으며, 최승희의 관점처럼 첨사원 참여도 다른 한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집현전의 운영과 사상적 경향」,『부대사학』제18집, 부산대학교 사학회(현 효원사학회), 22쪽) 가령 김혜화(1990)는 "설립 초부터 학술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있던 집현전관의 정계 진출의 길이 열렸음"이 선학(先學)에 의해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첨사'와 '서연관'의 본거라 할 수 있는 집현전은 자연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 세종조 첨사원에 관한 연구」,『성신사학』 제8집, 동선사학회, 91-92쪽) 이런 그의 주장은 이미 집현전을 거의 최초로 연구하기 시작한 최승희(1967, 「집현전연구(하)」,『역사학보』제33집, 역사학회)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점은 집현전과 첨사원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45) 최승희(1967),「집현전연구(하)」,『역사학보』제33집, 역사학회, 53쪽.

사후 집현전은 기존 경연 담당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정치 참여로도 비판에 직면한다. 더욱이 이 시기 집현전은 집정대신들과 세조 등 왕족들 사이에게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비춰졌고, 이는 세조 초년에 경연과 집현전에 대한 이런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끝에 경연과 집현전이 함께 혁파되는 사건이 있다. 세조는 단종 복위 사건을 빌미로 집현전을 혁파하고 경연을 정지시킨 뒤, 친강(親講) 체제로 바꾸면서 국왕 주도로 변형, 운영한 것이다. 이처럼 국왕이 직접 무력화에 나선 결과, 경연 제도는 조선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3. 소결 : 경연과 경연 기구의 제도적 전형성 형성

집현전은 조선 경연 제도 정착에 한 획을 그었던 기구이다. 세종 이전부터 고려의 보문각을 제도적 근거로 하여 복설 논의가 진행되었고, 복설 후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와 더불어 고제의 연구와 사가독서를 시행하였다. 또한 경연관으로 참여치 않았던 다른 소속 학사들도 상참과 윤대 참여 대상에 포함되어 활동의 폭을 넓혀왔다. 집현전의 이런 발전 과정은 국왕 교육 제도의 정례화를 넘어서서 연구(詳定) - 교육(講論) - 정치(時事)의 유기적 연결이라는 하나의 전형성을 발생시켰다. (표 3 참고) 그리고 이것은 집현전을 조선 시대 국왕 교육의 모본(模本)으로서 자리 잡게 하는 동시에, 고문[備顧問]이라는 형태로 교육과 정치를 제도적으로 융합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즉, 조선의 집현전이 유교의 학행일치(學行一致)를 실천하고 숭현(崇賢)을 구현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경연 제도를 구축하게 했던 것이다.

[표 3 : 집현전의 직능과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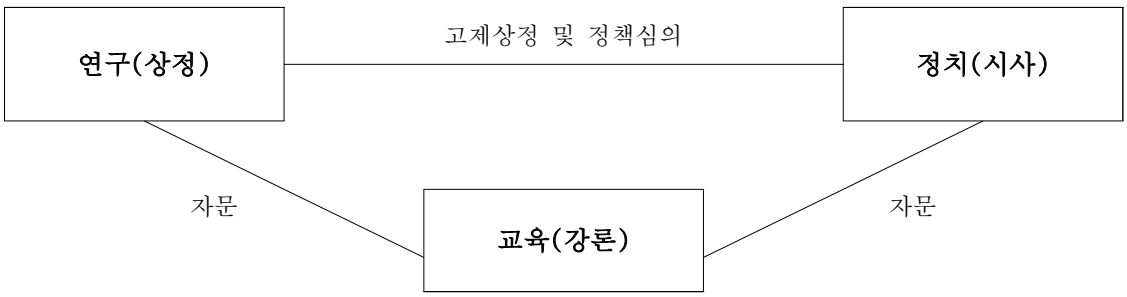

그러나 뒤이어 시행된 세종의 후속 조치는 소속 학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새로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그 시작은 세종 20년(1438년) 집현전의 국왕 교육 전임화(專任化)로, 왕실 숭불 문제와 세자(문종)의 대리청정 등 주요 정치적 사안과 엮이면서

세종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당연히 세종은 몇몇 불가피한 체직을 두고 벌어진 요구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했지만, 왕실 숭불 문제로 집현전 학사들까지 간관처럼 집단행동까지 보이자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세종은 세자(문종)의 대리청정 상황을 집현전과 연관시켜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시기 전무후무한 새로운 기구가 탄생하게 된다. 즉, 집현전 소속 학사가 담당한 서연관을 포함한 세자(문종)의 의전 및 보좌 기구가 집현전 선진의 체직을 위한 출구 전략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추론에 보다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단서는 이후 세종 이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설치 초기 세자첨사원은 집현전 학사가 맡은 서연관과 한직(閑職)을 구성 인원으로 하였으며, 첨사(詹事)와 동첨사(同詹事)로 집현전 전·현직 출신을 다수 임명하였다. 이들은 이후 추가로 참여한 승지 6인과 더불어 임시 기구 인선에 전문성 외에 정치적 고려나 업무량이 적은 인원의 선발이 가능하게 한 관행적 근거가 된다. 또한 문종 재위 초에 집현전 소속 학사들이 양사(兩司)에 겸직하는 경우가 생긴 것 역시 도감 참여 후 가자(加資)를 받거나 문한기구에서 고강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등, 세자첨사원의 유풍(遺風)으로 보이는 관례에 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문종 이후 이런 문한 기구와 임시 기구 등에 잔존한 관례와 관행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세자첨사원의 인사 조치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상의 것을 바탕으로 문종 이후 집현전의 변화가 어떻게 국왕 교육 제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문종과 단종의 재위기 동안 조선의 정정(政情)은 상당히 불안정하였으며, 그로 인해 집현전도 경연 담당 기구보다 정치적 기구의 역할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집현전의 이런 경향과 세조의 혁파 전후 상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여기서 파생된 국왕 교육의 제도적 위기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즉, 세조로 인해 촉발된 경연의 제도적 위기가 세종에 이어 또 하나의 새로운 전형성 형성으로 해소되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또한 그를 위해 성종 시대 경연 운영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서 홍문관이 집현전의 반면교사로서 발생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Ⅳ. 경연 제도의 위기와 극복

세종 사후 조선의 경연 기구는 큰 변화를 맞는다. 즉, 집현전은 선진(先進)의 체직과 후진(後進)의 겸직으로 업무 영역이 확장된 반면[246], 기구의 존재 이유였던 경연의 운영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감소되고 있었다.[247] 이런 경향은 문종의 와병과 어린 국왕인 단종 당시 정국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세조 때 경연이 일시 중단되고 집현전이 혁파되며 파국에 이르게 된다. 세조는 집현전 혁파 후 서연을 독립시키고 경연을 임의로 운영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세조와 그 후계자 예종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 사대부들은 경연과 담당 기구의 정상적인 복원에 주력하였으며, 이는 경연과 분리된 뒤 곧바로 안정화된 서연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성종이 사대부의 안을 수용하여 이뤄진 예문관과 홍문관의 분설(分設)은 세조 이후 나타난 이런 갈등의 산물이었다.

1. 경연의 존폐 위기와 지배층의 갈등

세종 이후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당시 집현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임금이 즉위하여 집현전의 유사(儒士)들을 많이 임용하고 품계를 올려[陞資] 대간(臺諫)에 배치[布列]하니 조정과 민간에서 장차 볼만한 것이 있으리라고 여겼다. (중략) 이날에 장령(掌令)과 지평(持平)에 겸무(兼務)시킨 것을 파하고 본직으로 돌렸다.[248]

상기에서 언급된 내용의 핵심은 집현전 소속 학사들의 대간 겸직[249]이다. 이것은 세

---

246) 처음으로 이 경향에 주목한 최승희(1967)는 세자첨사원의 참여 등으로 집현전이 경연 기구 이상의 위상을 지니게 된 점, 특히 세자 시절부터 문종과 가까웠던 점이 대간 진출을 용이하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56쪽) 이 경향은 세조 2년, 집현전이 단종 복위 사건을 계기로 혁파되기 전까지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문종이 양사를 중심으로 집현전 출신의 정치 참여 폭을 넓혀준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그 이유는 이미 세종 말년부터 그런 인사 경향이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이다. (「집현전연구(하)」, 『역사학보』 제33집, 역사학회)

247) 김중권(2005)에 따르면 문종은 재위 2년 3개월 동안 총 219회의 독서토론을 했는데 주로 재위 초(1451년, 142회)에 집중되었으며 그나마 병의 악화로 인해 점차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 (415-416쪽) 그에 비해 단종은 1일 3회를 강제하였으나 개인적 태만과 정국의 동요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며, 단종 3년(1455년) 음력 6월, 강제 퇴위를 앞두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427쪽) (「조선조 문종, 단종 연간 경연에서의 독서토론 고찰」, 『서지학연구』 제30집, 한국서지학회)

248) 『문종실록』 권3 문종 즉위년(1450년) 음력 9월 13일 : "上卽位, 多用集賢儒士, 陞資布列臺諫, 朝野將有望焉。 (중략) 是日, 罷兼掌令、持平, 令還本職."

249) 집현전 인사들의 면면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음력 5월 13일의 것으로 신석조(우사간), 어효첨(사헌집의), 신숙주(사헌장령), 하위지(사헌장령) 등이 등장하며, 다음 상기 기록 중에서도 최항(우사간), 구인문(좌정언)이 등장하고 있다. 그 밖에 세자첨사원 겸직으로 간관 외의 관직으로 이동한 이선제(예문관제학)와 이사철(도승지)의 경우도 있다.

종 재위 말년에 나타난 집현전의 언관화가 점차 강화되었다는 기존 연구의 입장[250] 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만 전후 사정으로 보아 집현전의 언관화 심화가 이후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거나 최소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 듯하다. 한 마디로 집현전에 나타난 경향과 이에 대한 일반 여론이 서로 괴리를 보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왜 집현전에 대해 이처럼 중외(中外)의 여론이 흘렀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단서가 바로 문종 초 집현전 직전(直殿)이었던 성삼문의 발언 속에 담겨 있다.

(문종이) 승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전 집현전에서 경연관과 사헌부·사간원 등을 겸하고 있는 이들은 윤대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다른 예에 의거하여 참여하는 것을 영구한 항식으로 삼으라." 나라의 제도에 집현전 학사들은 20명으로, 10명은 경연관을 겸하고 10명은 서연관을 겸하였다. (그 중) 경연관과 대간을 겸하는 자들은 상시 진대(進對)하기 때문에 윤대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직집현전 성삼문(成三問)이 아뢰었다. "경연관과 대간은 매우 자주 면대(面對)하니 평소 품은 생각을 마땅히 아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뵙고 보고하는 것은 한가할 때 조용히 아뢰는 것과 다릅니다. 옛날 국왕들은 혹 독대해주고 혹은 밤에 대면하는 것도 허용했으니 생각한 바를 다 아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경연관과 대간도 윤대하는 것이 옳다고 아뢴 것입니다." 임금(문종)이 이를 따라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251]

성삼문의 발언을 보면 문종 등극 후 집현전 학사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즉, 집현전 학사들의 의례 참석 범위 변동을 통해 과거 윤대에 참석치 않았던 경연관과 대간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것은 정국 운영에 대한 집현전 소속 학사들의 발언권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이런 집현전의 광폭 행보는 정치적 역할에 치중한다는 인상도 줄 수 있었으며, 동시에 집현전 직능의 하나인 연구 - 교육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국왕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중외의 여론을 악화시킨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세종이 집현전을 경연 담당 기구로 정한 후로 그 인식이 널리 자리 잡았고, 말년부터 진행된 언론 기구로의 전환도 이 시기 겸직의 허용과 함께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교육 과정 운영의 이런 부실은 같은 집현전 출신이었던 도승지 이계전(李季甸)

---

250) 최승희(1973),「조선 초기 언관에 관한 연구」,『한국사론』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75쪽. 실록에 기록된 것은 총 6회(표 1,‘집현전관의 언론활동 상황표’참조)으로 주로 즉위년(5회)에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는 집현전 학사들의 대관(臺官) 진출이 많았던 시기와 일치한다.

251)『문종실록』권10 문종 1년(1451년) 음력 11월 29일 : “傳敎承政院曰: ″前此集賢殿內, 職帶經筵者, 司憲府、司諫院等, 不參輪對, 今後依他例入參, 永爲恒式。″ 國制, 集賢殿官二十人, 十人帶經筵, 十人帶書筵。 其帶經筵者及臺諫, 以常時進對, 不參輪對。 直集賢殿成三問啓曰: ″經筵官及臺諫, 面對煩數, 有懷則固當上達。 然旅見而啓事, 不如燕間從容。 古之人主, 或賜獨對, 或許夜對, 欲盡其言也。 臣謂, 經筵官及臺諫, 亦可輪對。″ 上從之, 乃有是命.”

이 한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이 (그 동안) 벼슬을 역임했던 것을 살펴본다면, 서연의 경우 서연관이 서연에 종사하여 근무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으며, 집현전의 경우 학사들(集賢官)이 집현전 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 나라 안에서 처음으로 여러 서적을 편찬하는데 문신을 불러 모으니, 경연관·서연관이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없고, 다른 부서[各司]에서도 문신들 중 조금이라도 우수하면 불러 모으니 본직(本職)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서적 편찬)이 비록 학문을 위해 하는 일일지라도 부서마다 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폐단이 처음 일어난 것입니다.[252]

이 발언은 문종 재위기 집현전뿐만 아니라 조정의 여러 부서들이 전반적으로 본직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만연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집현전 학사의 경우 응당 간관 겸직 등으로 인해 연구와 교육에 관한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을 것이며, 그로 인해 초기 진행된 문종과의 경연 강론 수준도 부왕(세종) 때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대간 겸직이라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당연할 수 있다. 집현전에 대한 중외의 이런 불만은 당초 세종이 추구했던 집현전 내부 불만의 해소가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으며 그 정도 역시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 집현전은 직접 간관 활동까지 하고 있었다.

집현전에서 아뢰었다. "젊은 환관[小豎]인 문중선(文仲善)이 별감을 시켜서 오매패(烏梅牌, 임금 명을 전하기 위해 내시에게 내려지는 명령패)를 가지고 와서 전지(傳旨)를 전하러 와서 '『 통감총류(通鑑總類) 』를 책방에서 청해 가져간다.' 하기에, 신 등이 '선전은 별감의 소임이 아니니, 그대는 돌아가서 (이를) 말하라.' 하였습니다. 잠시 후 문중선이 사람을 시켜 책방 서리[冊史]를 불러 '패를 믿지 못하는가? 이와 같다면 패는 있으나마나 일 것이다. 네가 끝내 전지를 막아서느냐?' 하고 (청한) 관원이 친히 찾아와서 가져갔습니다. 신 등이 삼가 상고해보니 정통(명나라 영종 연호) 연간에 도승지 조서강(趙瑞康)이 받든 전지에 '무릇 내전에 들이는 책은 환관이 오매패를 가지고 명을 (직접) 전하여야 들이는 것을 허가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라.' 하였습니다. 법이 이와 같은데 근래 환관[內史]들이 간혹 직접 오지 않고 별감을 시켜 가져가므로, 신 등이 아뢰고자 하였으나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 문중선이 별감을 시켜서 명을 전한 것은 이미 국법[大體]을 어긴 것인데, 또 신 등을 비난하면서 도리어 견책하여 모욕하려고 하니, 이와 같은 방자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임금께서 결단하시기[上裁] 바랍니다." (왕이) 헌부에 명하여 (문중선을) 논핵하게 하였다.[253]

---

252)『문종실록』권5 문종 즉위년(1450년) 음력 12월 4일 : "以臣歷仕之處觀之, 在書筵, 則書筵官會仕書筵, 無干他事; 在集賢, 則集賢官會仕集賢, 亦無他事. (…) 內則始撰諸書, 會聚文臣, 經筵、書筵官, 不得專事其事, 其他各司, 文臣之稍優者, 亦皆聚之, 不治其司之事。 此雖右文之事, 各司廢事之弊, 始起矣."

물론 집현전의 이런 모습은 당시 언관화 경향으로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나, 집현전 안에 이미 양사 겸직을 하는 인사들이 있음에도 그러했다는 것은 다르게 보인다. 이미 체직하여 조정을 채우고 있는 집현전 출신 선진들과 양사에 겸직하고 있는 집현전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들이 상당히 세력화된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문종은 뒤로 갈수록 병마에 시달려 끝내 단명하고 말았다. 이는 그 후계자인 단종이 어린 나이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집현전의 이런 위상이 고착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문종 당시의 집현전은 경연 담당 기구라기보다 양사의 겸직을 넘어 스스로 간관처럼 행동함으로써 사실상 언론 기구처럼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집현전의 이런 제고된 위상은 단종 계위(繼位) 후에도 여전하였다.

파평위 윤암(坡平尉 尹巖)을 궁성(宮城)의 남면 절제사(南面節制使)로, 전의위 이완(全義尉 李梡)을 서면 절제사(西面節制使)로, 첨지중추원사 이영(僉知中樞院事 李齡)을 북면 절제사(北面節制使)로, 중추원 부사 최숙손(中樞院副使 崔淑孫)을 동면 절제사(東面節制使)로 삼아 각각 통솔하는 군사로 숙위(宿衛)하며 순찰을 돌게 하였다. 그 날 밤에 의정부(의 인사들)는 궐내에서 숙직하고, 승정원·집현전도 또한 숙직하였다.[254]

상기 인용된 문종의 훙서(薨逝) 당시 기록을 실록 상의 여러 곳과 비교해보면 단종 재위기 집현전의 위상을 추측할 수 있다. 먼저 집현전은 의정부, 승정원과 같이 궐내에서 숙직하는 기구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미 집현전은 세종 즉위 초부터 숙위 대상이었던 점[255]으로 볼 때 이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또한 오례의(五禮儀) 중 흉례에서 집현전이 참여 대상에 포함되는 등[256], 세종 이래로 집현전은 이런 조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관행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세종 2년(1420년) 국장(國葬)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될 도감이 정비되는 과정[257]과 오례의 중 흉례 계령(戒

253)『문종실록』권8 문종 1년(1451년) 음력 6월 12일 : "集賢殿啓: "小竪文仲善, 使別監, 齎烏梅牌, 來傳旨云: '《通鑑總類》, 聽冊房取去', 臣等云: '宣傳, 非別監所任, 汝其回語。' 仲善, 俄使人呼冊史, 詰之云: '牌不足信歟? 如此則可無牌也, 汝終防傳旨乎?' 官員親來聽去。 臣等謹考, 正統年間, 都承旨趙瑞康敬奉傳旨, '凡入內書冊, 俟宦官齎烏梅牌宣傳, 方許入內以爲恒式。' 立法如此, 近來內史, 或不親來, 使別監取去, 臣等欲啓, 未敢。 況今仲善使別監宣傳, 已違大體, 又以臣等爲非, 反加詰辱, 放恣至此, 漸不可長。 伏惟上裁。" 命憲府, 劾之."

254)『단종실록』권1 단종 즉위년(1452년) 음력 5월 14일 : "以坡平尉 尹巖爲宮城南面節制使, 全義尉 李梡西面節制使, 僉知中樞院事李齡北面節制使, 中樞院副使崔淑孫東面節制使, 各領所統軍士宿衛徼巡。 是夜, 議政府直宿闕內, 承政院、集賢殿亦會直."

255)『세종실록』권127권 세종 32년(1450년) 음력 1월 18일 : "初, 上敦尙儒術, 好學不倦, 始置集賢殿, 聚文士以充講官, 每夜三四鼓, 始就寢, 遣中官至直廬, 顧問不絶, 當直者必終夜正衣冠以待." 이 발언은 이미 세종 5년(1423년) 음력 6월 24일 경연 중 세종의 발언("집현전(集賢殿) 관원이 항상 궐내에서 벼슬하니"[集賢殿官常仕闕內])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56)『세종실록』권134 오례 흉례의식 청시종묘의(請諡宗廟儀)에 "前期, 奉常寺集諡報禮曹, 禮曹傳報議政府, 議諡 【六曹, 集賢殿, 春秋館二品以上同議。】 啓聞, 敬依令, 工曹製冊及寶" 구절을 참고한 것이다.

令)의 내용[258]을 참고하여 볼 때, 문종 훙서 후 궐내 숙직 기구로 포함된 점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단종 당시 대성(臺省, 사헌부)과 육조가 황표정사(黃標政事)를 수행하는 등의 중대한 국정 책임을 맡은 의정부를 보좌하는 위치로 전환된 만큼[259], 국상 기간 이들과 함께 집현전이 숙직한 것은 단지 국상(國喪)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어린 국왕의 보좌를 위한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졌다는 단서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일에는 권도(權道)와 상도(常道)가 있는 것이니, 비록 상중이더라도 (황제의) 조명(詔命)을 맞이할 때에는 참최(斬衰)를 벗고 길복(吉服)을 입는 것은 천자의 명을 공경하고 중하게 여기는 까닭에 권도에 따르는 것이 예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신 등이 비록 고제(古制)를 잘 알지 못하나 구구한 사정은 전날에 다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금일에 다시 청하는 이유는 정부·육조와 대간(臺諫)·집현전이 함께 의논하여 중의(衆議)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고금에 해박한 유자(儒者)들과 함께 의논한다면 반드시 권도와 상도를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260]

실제로 단종의 중전 추대 여부를 논의하는 일에 참여한 것은 흉례 중 왕후의 명사봉영례(命使奉迎禮)를 수행해야 할지의 여부에 대해 집현전이 의견을 낸 기록[261]과 더불어 국정 전반에 여러 명분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즉, 의정부가 국정을 수행하는 데 육조, 대간과 더불어 집현전의 보좌를 반드시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 당시 단종은 어린 군주로서 언행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했으므로, 국정에 관한 고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렇게 높아진 집현전의 정치적 위상은 집정(執政) 측에서도 부담스럽게 여길 정도였다.

저 유성원(柳誠源)은 일개 소유(小儒)로 겨우 책을 끼고 다니며 공부하는 것[挾冊]을 면

---

257)『세종실록』권8 세종 2년(1420년) 음력 7월 19일 세 번째 기사 참고.

258)『세종실록』권134권 오례 흉례의식 계령 참고.

259) 한춘순(2016)에 따르면, 단종 즉위 직후 인사권을 의정부・6조가, 왕명 출납은 승정원이 장악하였다. (137쪽) 섭정인 황보인과 김종서는 황표정사를 통해 단종의 인사권을 배제하였고, 승정원도 대간의 언론보다 대신의 결정에 따르는 양상을 보였다. (138, 141쪽) 숙위기구로서 집현전이 이들과 병칭되었다는 것은 언관화의 결과로 대간처럼 국정에 책임을 맡은 주요 기구 중 하나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단종 대 계유정난과 그 성격」,『한국사연구』제174집, 한국사연구회 참고)

260)『단종실록』권6 단종 1년(1453년) 음력 5월 20일 : “況事有權經, 故雖在喪中, 若迎詔命, 則釋衰卽吉者, 敬重朝命而從權, 合禮也。 臣等雖不識古制, 區區之誠, 前日盡啓之矣。 今日之所以再請, 欲其下議於政府、六曹暨臺諫、集賢殿而取衆議也。 其該博古今之儒, 必有用權行經之議矣.”

261)『단종실록』권10 단종 2년(1454년) 음력 1월 23일 : “集賢殿副提學河緯地、直提學李石亨等啓曰: ″百官初請納妃, 非不知爲未安也, 出於不得已耳, 上之勉從, 亦不得已也。 今遽停之, 是前日臣等之請、殿下之勉從, 似非不得已, 甚不可也。 且《春秋》責其圖婚, 今旣納采、納徵、告期, 雖不納妃, 豈有異乎? 況已冊妃而爲國母, 豈可一日在於閭閻乎?″ 傳曰: ″不可聽也。″ 緯地更啓曰: ″上敎雖如是, 已告于宗廟、社稷、景禧殿矣。 今若停之, 以何辭而又告于神明乎? 請召大臣熟議之。″ 不聽.”

했을 뿐인데 집현전의 관원이 된 뒤 고담준론[高論]하기를 좋아할 뿐 국가의 대체는 알지 못한다.[262]

해당 발언자인 이명민(李命敏)은 단종의 삼중신(三重臣) 중 한 명으로 불린 민신(閔伸)의 사위로서 인맥과 편법으로 승차해왔다는 의혹을 받았으며[263], 단종 당시에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자리 보존을 시도해서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인물[264]이다. 또한 당시 유성원이 이명민을 논핵할 수 있었던 것은 집현전(경연관)과 양사(兩司, 대간)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265]으로, 이 기록을 통해 집현전의 겸직 허용이 단종 당시에도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록에서 단종 당시 집현전이 언론 기구로 전화(轉化)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종 이래로 이들의 겸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연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단종 당시 집현전은 국왕의 소극적 경연 참여[266]와 맞물려 경연 담당 기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까지 보인다.[267] 즉, 이런 경향이 단지 어린 단종의 나태함에 있다고 탓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처럼 집현전이 경연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까닭이 겸직에 따른 업무량 폭주였기 때문이다.[268] 게다가 단종 즉위 초년에 발생한 계유정난(단종 1년 음력 10월 10일)으로 수양대군(세조)으로 집정이 넘어감에 따라 국왕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되어 경연과 고문의 필요성이 약화된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는 문종 이래로 집현전 소속 학사

---

262) 『단종실록』 권6 단종 1년(1453년) 음력 5월 25일 : "彼誠源, 一小儒也, 纔免挾冊, 爲集賢殿官, 好爲高論, 而不知國家之大體者也."

263) 상기 발언의 주인공인 이명민(李命敏)은 세종 시절부터 인맥에 의해 벼슬을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으며(세종 26년 음력 7월 25일 기사, 문종 즉위년 음력 9월 10일 기사), 황보인의 추천으로 함길도의 축성을 맡으면서 관직을 이어갔던(문종 1년 음력 6월 11일 기사) 인물이다.

264) 단종 즉위년 윤9월 3일 기사에 "이때 이명민(李命敏)·김우무(金雨畝)와 같은 자가 역사(役事)를 맡아 한갓 도청(都廳)이라 이름하여 모든 토목 공사가 있으면 이를 주장하므로 선공감(繕工監)에서 손을 쓰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동해 12월 11일과 이듬해(1년) 3월 21일의 발언을 통해 당시 집권세력의 당여로 과도한 월권을 행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다. 또 단종 1년 9월 5일에도 "이명민이 아첨하는 뜻으로 정부(丁夫)를 함부로 부려서 성급히 밤에 낮일을 계속하여 심한 추위에도 폐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굶어서 죽는 것이 연달았다"는 기록도 있다.

265) 『단종실록』 권9 단종 1년(1453년) 음력 12월 2일 : "經筵官進講。 領經筵鄭麟趾・韓確、知經筵李思哲、參贊官朴彭年、侍講官金鉤、掌令柳誠源、正言李繼孫等入侍."

266) 김중권(2005)에 따르면, 단종 시기 열린 경연 횟수는 총 25회로 신병, 또는 관사(觀射)나 사냥 등의 이유로 자주 빠졌다. (435쪽) 게다가 단종 3년(1455년) 윤6월 5일 삼복을 이유로 정강한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조선조 문종・단종 연간 경연에서의 독서토론 고찰」, 『서지학연구』 제30집, 한국서지학회 참고)

267) 단종 즉위년 음력 10월 26일 기사에서 "요사이 정사(政事)를 보지 않고 경연(經筵)도 열지 않으니" 라고 언급하고 있고, 단종 2년 음력 1월 26일 기사에서 "집현전 관리도 또한 모두 경연(經筵)의 관직을 띠고 있는데" 라는 주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경연의 활성화와 국왕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단종 때 경연의 운영에 관한 논의의 횟수에 비해 실제 경연을 시행했다는 기록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268) 최승희(1967), 「집현전연구(하)」, 『역사학보』 제33집, 역사학회 64쪽 참조. 최승희는 집현전 자체의 모순, 또는 변화에 의해 세조의 혁파를 초래했다고 보면서, 그 모순의 요인으로 호간(好諫, 간언을 자주 하는 것), 고론(高論, 고담준론) 두 가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으로 확대된 집현전의 직능을 언급하고 있다.

들이 양사 겸직 등으로 증대된 업무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배경에 바로 세종의 실패한 출구 전략(세자첨사원을 통한 불만 해소)이 있었던 셈이다.

이렇듯 문종과 단종 당시 집현전과 경연은 조선 지배층에게 두 가지의 큰 숙제를 안겨주었다. 우선 세종 이래로 집현전이 경연 담당 기구로서 정례화에 기여하였지만, 체직을 두고 일어난 갈등을 해소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실패하였다. 이는 세종이 제시한 '선진의 체직과 후진의 내부 승진 유지'를 안착시키기에 문종과 단종의 재위기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정국 하에서 집현전이 자연스럽게 교육 활동보다 정치 활동에 치중함으로써 하나의 세력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집현전이 양사, 특히 헌부(憲府)의 관직을 겸직함으로써 언로(言路)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선 세종의 조치로 조정 내에도 선진이 다수 포진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종으로부터 선위를 받은 세조에게도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실제로 선위 후 세조는 '경연과 집현전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두고 사대부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그가 태종처럼 정변에 의해 집권 후 선위 받았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왕권 강화의 방향에 따라 경연 제도의 운영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경연이란 국왕과 유신(儒臣)이 도의에 관해 토론하고 정치를 논하는 자리이니 잠시라도 폐지할 수 없다. 내가 날마다 경연에 임하려고 하지만, 다만 승지와 집현전, 사관 각 1명만이 들어와 참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중략) 윤대와 경연은 하루에 동시 행하기는 어려우니 나는 하루씩 돌아가며 하고자 한다.[269]

경연관이 아뢰었다. "세종 때(世宗朝) 집현전 3명이 진강하다가 뒤에 1명을 줄였고, 문종 때(文宗朝) 지경연사(知經筵事)·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중 2명은 이틀 걸러서 나왔으며, 승지(承旨) 1명, 집현전 2명, 사간원 1명, 그리고 사관 1명은 매일 진강하였습니다." 임금은 다만 집현전 2명만 진강하게 하였다.[270]

"일찍이 경연과 윤대는 하루를 거르며 한다고 하였는데, 금후부터는 윤대는 연고가 있으면 그 다음날, 다음날에도 유고(有故)가 있으면 또 그 다음날 하되, 반드시 윤대를 한 뒤에 경연에 나가겠다."[271]

---

269)『세조실록』권1 세조 1년(1455년) 윤6월 13일 : "經筵, 人主與儒臣講道義、論政治者也, 不可或廢。 予欲日御經筵, 只令承旨、集賢殿史官各一人, 入參何如? (중략) 輪對、經筵一日竝擧爲難, 予欲間日爲之."

270)『세조실록』권1 세조 1년(1455년) 음력 윤6월 17일 : "經筵官啓: "世宗朝, 集賢殿三員進講, 後除一員, 文宗朝, 知經筵事、同知經筵事中二員則間二日, 承旨一員、集賢殿二員、司諫院一員、史官一員, 則逐日進講。" 命只令集賢殿二員進講."

271)『세조실록』권1 세조 1년(1455년) 음력 윤6월 26일 : "經筵輪對, 曾命間日爲之, 自後輪對日有故,

사간원에서 아뢰었다. "간관(諫官)으로 하여금 경연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시니 불가합니다." 이에 임금이 전교하였다. "세종 때(世宗朝) 대간(臺諫)이 경연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간을 자주 보는 것은 좋으니 들어오게 하라."[272]

사헌부에 전교하였다. "본부(本府, 사헌부)는 사무가 많으니 지금부터 일이 많을 때는 경연에 참여하지 말라." 하였다.[273]

과연 즉위 후 세조는 경연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사대부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런 개입이 장기적으로 경연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시도로 보였기 때문이다.[274] 더욱이 세조는 경연에 관해 일찍부터 "단지 제왕의 품격을 나타내는 수단에 불과"[275]한 것으로 생각했고, 경연 담당 기구인 집현전이 정치색을 띠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즉, 세조도 이전부터 집현전의 간언을 '고담준론(高談峻論)'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세조의 인식은 "집현전의 문사들이 원칙을 내세워 자신을 가르치려 하거나 반대할 경우 예민하게 반응"[276]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집현전의 양사 진출의 경우 그 해석이 엇갈리기는 하지만[277], 확실히 집현전 전・현직 출신들이 조정과 경연관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양성지가 세조 2년(1456년) 음력 2월 20일 "시정(時政)의 득실과 민생의 이해를 말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길이 없다"[278]고 말하면서 전조(前朝, 고려)의 급사중(給事中) 복설을 언급한 점은, 이 직제가 본래 중서문하성의 간관(諫官)이었던 점에 미루어, 경연의 운영 횟수나 인원의

次日, 次日有故, 又次日, 須經輪對, 乃御經筵."

272) 『세조실록』 권1 세조 1년(1455년) 음력 윤6월 17일 : "司諫院啓曰: "經筵勿令諫官入參, 不可。" 傳曰: "世宗朝臺諫不入經筵, 故有是命。 然數見臺諫, 甚爲美事, 其令入參。"."

273) 『세조실록』 권1 세조 1년(1455년) 음력 윤6월 18일 : "傳于司憲府曰: "本府事務煩刻, 自今多事時, 勿參經筵。"."

274) 최선혜(2015), 「조선 세조대 강론의 시행과 유신의 성장」, 『역사학연구』 제57집, 호남사학회, 6쪽.

275) 강태훈(1993), 「조선 전기 경연 제도의 발달 과정」, 『교육학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교육학회, 125쪽.

276) 박현모(2013), 「세조의 국정 운영방식 연구」, 『한국사연구』 제161호, 한국사연구회, 257쪽. 그가 제시한 근거는 『세조실록』 권2 세조 1년(1455년) 음력 8월 16일의 기록이다. ("宴罷幸琰第, 還宮, 御思政殿, 臨瀛大君 璆及琰、季甸、達孫、叔舟侍。 季甸從容啓曰: "今日上御醞似過, 請還內。" 上大怒曰: "予之持身, 從心處之, 汝焉得我敎?" 令免冠, 命達孫捽髮下庭, 召衛士杖之, ….")

277) 가령 정두희(1980)의 경우 (1) 대간에 다소 진출한다고 해서 정치적 지위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없고 (2) 그나마 이 진출마저도 용이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그 영향을 제한적인 것이라고(145쪽) 평가 절하하는 반면, 최승희(1967)는 (1) 첨사원, 서연관 등으로 이미 정치적 위치가 중요해졌고 (2) 언관화까지 진행되면서 대간 진출이 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종 때 그 경향이 극에 달했다(총 9명의 집현전 출신 임명)고 보고 있다. (56-57쪽) 이것은 문종 이후 집현전 학사들의 양사 진출에 대한 학계의 평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78)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1456년) 음력 2월 20일 : "御經筵, 侍讀官梁誠之啓曰: "人主一身, 處臣民之上, 時政得失、民生利病, 若無言者, 無由得聞。 然大臣惜寵而不敢言, 小臣畏罪而未敢言, 請廣開言路, 善者從之, 雖或不中, 亦不加罪。"."

변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사대부들의 우려가 엿보인다. 다시 말해 사대부들은 세조가 점진적으로 경연을 포함한 언로를 막으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연 축소와 집현전 혁파에 가장 큰 계기로 작용한 단종 복위 사건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집현전을 포함한 사대부들의 '관료중심체제'에 대한 강한 의지는 재위 초반 세조의 적극적인 설득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279] 이것은 국왕 교육과 그 담당 기구인 집현전의 활동에 대한 세조의 인식과도 무관할 수 없다. 세조 입장에서 집현전이 과정 운영의 주체인 동시에 언론 기구처럼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왕권에 대한 견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연에서 진행되는 국왕의 교육 활동은 '훈도함양'으로서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난에 의해 자립한 뒤 세조가 의도적으로 이에 개입한 것은 이 견제를 약화시켜 왕권을 재확립하려는 시도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근래 이개(李塏)·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유성원(柳誠源)· 박중림(朴仲林)· 권자신(權自愼)· 김문기(金文起)· 성승(成勝)· 유응부(兪應孚)· 박쟁(朴崢)· 송석동(宋石同)· 최득지(崔得池)· 최치지(崔致池)· 윤영손(尹令孫)· 박기년(朴耆年)· 박대년(朴大年) 등이 은밀히 반역(反逆)을 꾀하였으나 …[280]

먼저 실록에 등장하는 사건의 주범 중 집현전 인원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다.[281] 언급된 인사 중 집현전 출신은 총 8명으로[282] 대부분 계유정난 이후 공신호(功臣號)를 받거나 승차한 인물들[283]이다. 기존 연구는 이에 대해 세조의 의심을 피하기

---

279) 최선혜가 인용한 정두희(정두희(1983),「집현전 학사의 사회적 배경과 정치적 성장」,『조선 초기 정치지배세력 연구』, 일조각, 191-192쪽)와 한영우(한영우(1983),「왕권의 확립과 제도의 완성」,『조선 전기 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81-98쪽)가 바로 이 경우에 속한다. 자세한 것은 최선혜(2015),「조선 세조대 강론의 시행과 유신의 성장」,『역사학연구』제57집, 호남사학회, 3쪽 각주 2 참조.

280)『세조실록』권4 세조 2년(1456년) 음력 6월 6일 : "近日李塏、成三問、朴彭年、河緯地、柳誠源、朴仲林、權自愼、金文起、成勝、兪應孚、朴崢、宋石同、崔得池、崔致池、尹令孫、朴耆年、朴大年等潛謀反逆."

281) 최승희(1967)는 본 사건에서 거론된 집현전 출신이 '10명이 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현전 혁파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승희는 이들이 계유정난의 유공자들이었던 사실도 제기하면서 혁파에 명분이 없다고 보기도 한다. (「집현전연구(하)」,『역사학보』제33집, 역사학회, 59-62쪽)

282) 양지하(2008)는 단종 복위 사건 참여자 분류를 통해 5명을 집현전 출신 문신으로 밝혔으나(「세조 2년(1456) 단종 복위 사건의 성격」, 이화여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1쪽), 기타에 놓인 박중림(박팽년의 아버지)도 세종 9년(1427년) 집현전 수찬에 임명된 것(안종화(1909),『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1권, "世宗置集賢殿, 仲林以文章德行應選" ; 박의성(1897),『기년편고(紀年便攷)』, "丁未以修撰, 登重試, 歷修文舘大提學, 集賢殿大提學")으로 알려져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 박기년과 박대년은 박중림의 아들들로 집현전 수찬, 또는 정자를 지냈다. 그 밖에 이개의 매부로 함께 참여했다가 자살한 허조 역시 집현전 부수찬을 지냈다.

283)『단종실록』권9 단종 1년(1453년) 음력 11월 8일 2번째 기사를 근거로 한 것이다.

위해 받아들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실제로 이들 중 성삼문을 제외하면 이를 거부하였다는 기록이 없다.[284] 또한 당시 김질과 정창손이 발고(發告)한 성삼문을 중심으로 범인들을 색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은 사건의 심중함과 비교하여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적은 인원의 참여만 가지고 집현전 혁파의 명분으로 삼기에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일로 의심을 받을까 두려워 자살한 허조(許慥)와 유성원(柳誠源)까지 색출하여 사후 처벌을 했던 것이다.[285]

다음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음력 6월 1일)에 별운검(別雲劍)으로 임명되었다는 성승(成勝), 유응부(兪應孚), 그리고 박쟁(朴崢)에 관한 기록(전내(殿內)가 비좁다는 이유로 별운검 배치를 무산시킴)에서 추론하여 소위 복위 세력들이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만을 노렸다고 보는 데 무리가 있다. 그 단서가 성삼문의 불궤를 논한 세조 2년(1456년) 음력 6월 2일 2번째 기사로, 후일 다른 장소에서 시도하자는 내용["후일에 관가(觀稼, 임금이 농작물의 작황을 살피던 일)할 때 길에서 거사하고자 하였습니다."]으로 이어져 있다. 즉, 이 공초(供招)만으로 보면 이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시해를 기도하려고 생각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별운검 배치 무산의 연유가 사전에 시해 기도를 눈치 챈 것이라면 왜 김질 등의 고변을 기다렸는지에 관해서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세조 재위기 중 별운검 기록을 보면 반드시 무신(武臣) 출신만 서는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단종 복위 사건으로부터 4년 뒤인 세조 6년(1460년)에 한명회와 구치관 등이 이 임무를 맡았다. (한명회와 구치관은 문신 출신임) 이는 전상(殿上)의 호위를 위해 반드시 칼을 잘 쓸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매우 형식적인 임무에 불과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당시 연회에서 성승과 유응부, 그리고 박쟁 같은 무신들이 차출된 것은 아마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나, 형식적인 역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배치가 취소되었을 수도 있다. 반대로 별운검이 세조를 시해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이었다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인원으로 배치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날 배치 취소의 사유도 나중에 정황 상 우연히 맞아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단종 복위 사건에 관한 국문 내용이 여러모로 모호하다. 가령 성균

---

284) 그나마 성삼문도 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몇 차례 사양했을 뿐, 이후 특별히 정무에 태만하거나 세조의 정변을 비방한 일이 없다. 또한 나머지 7명도 정난 직후 사양하거나 물러나는 등, 반대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세조와 뜻을 달리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정두희는『단종실록』권7 단종 1년(1453년) 음력 7월 28일 3번째 기사 중 김종서의 박중림 비판을 근거로 세조와 정국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정두희(1980),「집현전 학사 연구」,『전북사학』제4집, 149-152쪽) 또 강문식(1998)은 집현전 학사 출신 관인으로 세조의 집권을 도운 경우에 대해 세조 1년(1455년) 하위지와 이승소(李承召)의 사론(史論) 논쟁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즉, 이전 왕권의 약화로 권력이 신하들의 손에 있었던 것을 우려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집현전 출신 관인의 학문관과 정치관」,『한국사론』39, 서울대 국사학과, 120쪽)

285)『세조실록』권4 세조 2년(1456년) 음력 6월 7일 두 번째 기사 참조.

관 사예 김질과 우찬성 정창손이 발고의 증거로 제시한 혜성 관련 발언의 경우 오히려 학술적으로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286] 또한 앞서 인용된 승지 권채의 서문에서 세종 당시 집현전이 인쇄, 반포한 서적 중 천문과 풍수 등에 관한 것이 언급되어 있어 성삼문 역시 천문에 관한 지식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세조와 추국관(推鞫官)들은 이 성변(星變)의 내용을 확대 해석하고 전날 연회에서 성승 등이 배치되었다가 빠진 사실과 상왕으로 물러난 단종을 엮어서 시역죄(弑逆罪)로 확대시킨 것이다. 고려에 비해 조선은 성변을 기록하기는 하되 이에 대해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거나 정사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복위 성공을 위한 여론 형성에 그다지 도움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한 고변이 있은 지 4일 만에 경연을 정지시키고 집현전을 혁파한 사실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단종 복위의 기도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집현전을 겨냥한 사건이라는 추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다소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세조와 집현전 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287] 당시 집현전 출신들은 양사와 육조를 중심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고, 경연의 경우도 집현전 주도로 운영되어 대권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이제 국왕이 된 세조 입장에서 이들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으며, 특히 국왕 교육 제도가 세종 이래로 그들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이 사건은 경연과 집현전이 하나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단종 복위 사건으로 명명된 일련의 대역 사건은 작은 불씨를 크게 키운 정황을 의심해볼 수 있다.

실제로 경연을 포함, 세조의 전 재위기 중 언론 활동은 이전 부왕(세종)의 그것과 비교하여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참고)

[표 4. : 세종과 세조의 언론활동 비교][288]

구분	세종	세조
재위월수	390개월(32.5년)	163개월(13.6년)
언론회수	1,862회	447회
월평균	4.8회	2.7회

286) 고변 내용에 관해서『세조실록』권4 세조 2년(1456년) 음력 6월 2일 2번째 기사의 김질 주장을 참고.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고변 내용이 '성변(星變, 천문으로 나타난 재이의 징후)을 빗대어 불궤를 논했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복위 사건의 전말과 전혀 다르며, 심지어 이들이 이런 실제 행동을 실행하려 했는지에 관해서도 기록이 없다. 심지어 문제가 된 잦은 혜성의 등장조차 "『개원점(開元占)』에서 감씨(甘氏)가 말하기를, '유성(流星)이 낮에 나타나면 크게 가문다[『開元占』 甘氏曰, '流星晝行, 大旱。']'고 하였습니다"고 언급한 점에 비추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

287) 강문식(1998)에 따르면, 초기 세조의 정난(靖難)을 도왔던 신숙주도 국정이 안정되자 재상총재제를 실행하려고 한 까닭에 대해 '이전부터 집현전 학사들이 공통적으로 이를 선호했기 때문(120쪽)'으로 추론하였다.

288) 박현모(2013),「세조의 국정운영 방식 연구」,『한국사연구』161, 한국사연구회, 259쪽에서 재인용.

세조 재위기 언론(간쟁 및 고문) 활동은 월 평균으로 봐도 거의 부왕(세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 연구에서 집현전 혁파와 경연 정지를 "국왕을 비판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장치의 소멸"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289] 더불어 세조는 이후 사대부들의 간언이 크게 줄어들 것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론을 적대시하여 직간을 자제하도록 엄중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290] 이처럼 국왕이 대역 사건의 추국 후 나타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만큼 세조의 경연 정지와 집현전 혁파는 조정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던 집현전 출신들에 대한 견제와 연관될 수도 있다.

경연에서 보인 세조의 이러한 조치는 국왕 교육의 다른 축인 서연관에도 나타났다. 세조는 집현전 혁파 후 녹관(祿官)에서 직제학과 직전 각 4인만 남겨 산관(散官)처럼 만든 뒤[291], 그 동안 집현전이 전임하던 서연관 역시 녹관과 겸관을 6 : 4의 비율로 배치한다.[292] 이때 녹관은 보덕과 필선을 제외한 참상 경연관(문학, 사경, 정자)으로 강론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조선의 세자 교육은 세자시강원의 신설로 나가며 국왕 본인이 하는 경연과 분리된다. 이와 동시에 사대부들의 관심도 서연보다 경연에 맞춰지게 되었으며, '매일 경연'과 같은 정례화 여부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주요 쟁점이 옮겨졌다. 국왕 교육의 인식에 관련된 이런 변화는 집현전 혁파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경연 문제를 아뢴 대사헌 신석조(辛碩祖)의 상소에서 확인된다.

지금 전하가 이미 천명[帝命]을 받아서 그 기초를 바로 잡으셨으니 왕위[天位]에 올라와 겪을 어려움을 항상 생각하시고 서정[民事]의 중한 것을 잊지 않아 삼가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은 마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하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구휼하며, 사악함을 제거하고 올바름을 숭상하고자 시종 학문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날마다 경연에 참여하여 이제삼왕의 다스림과 『원육전(元六典)』, 『속육전(續六典)』, 그리고 『국조보감(國朝寶鑑)』을 강론하고 때때로 관람하며 조종의 성헌(成憲)을 힘써 준행하기를 재위 초[初服]부터 힘쓴다면, 후세대에도 마땅히 모범이 될 것이요 영원히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게[迓] 될 것이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293]

---

289) 박현모(2013),「세조의 국정운영 방식 연구」,『한국사연구』161, 한국사연구회, 256-257쪽.

290) 박현모(2013)에 따르면, 재위 3년인 1459년 음력 7월 11일 발언에서 세조가 왕의 눈치를 보느라 발언 수위를 조절한다는 식의 언급을 하고 있으며, 재위 12년인 1468년 음력 8월 29일 기록된 세조의 발언("유자(儒者)들이 모두 공론(公論)이 있다면 조정의 대신(大臣)들도 모두 유자(儒者)인데, 그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나라에는 권신(權臣)이 없는데, 그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 친강 중 종학사회 김종련(宗學司誨 金宗蓮)에게 반박하며)을 통해 "공론을 적대시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291)『세조실록』권4 세조 2년(1456년) 음력 6월 25일 : "集賢殿副提學以下祿官革罷, 直提學二員、直殿二員, 依館閣例, 以他官兼差, 書筵祿官六員, 兼官四員定額."

292)『세조실록』권4 세조 2년(1456년) 음력 7월 12일 : "書筵祿官六、兼官四, 依在前兼官官制, 左右輔德從三品, 左右弼善正四品, 左右文學正五品, 左右司經正六品, 左右正字正七品, 隨品除授, 祿官依科給祿."

신석조의 상소는 대체로 경연에 대한 세조의 조치를 바라보는 사대부들의 관점을 함축하고 있다. 우선 신석조가 언급한 '아름다운 전통[億萬世無疆之休]'은 세종 재위 기간에 형성된 관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해당 시기의 경연 운영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세조의 재위 초[初服]을 언급한 점은 집권 초 나름 국왕 교육에 참여했던 세조의 바뀐 태도에 대한 우회적 비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경연 정지와 집현전 혁파라는 세조의 행보는 조선의 전통은 물론, 재위 초까지 보였던 태도를 일순 바꾸는 명분 없는 행보라는 의미이다. 이 점으로 봐도 단종 복위 사건 이후 세조의 행보에 대해 다수의 사대부들이 의구심을 품었다는 단서일 수도 있다. 아무튼 국왕 교육 과정의 운영은 건국 초부터 세워진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세조는 신석조의 이 요구에 대해 어떤 대응을 보여주었는가?

사정전(思政殿)에 친림하시어 직접 문신과 강론하였다. 겸 성균관 사성 김신민(兼成均司成 金新民)· 성균관 대사성 이예손(成均大司成 李禮孫)을 문난관(問難官)으로 삼고, 예문관 직제학 안지귀(藝文直提學 安知歸)· 성균관 사성 정수충(成均司成 鄭守忠), 직집현전 이계선(直集賢殿 李繼善)·이하성(李夏成), (성균관) 사성 이승소(司成 李承召)· 예문관 응교 서거정(藝文應敎 徐居正)· 직예문관 유자황(直藝文館 柳子滉)· 직보문각 이효장(直寶文閣 李孝長)· 직수문전 김필(直修文殿 金瑾)· 사예 김수온(司藝 金守溫)을 강설관(講說官)으로 삼았다.[294]

비현합(丕顯閤)에 친림하였다. 효령 대군 이보(李補)·임영 대군 이구(李璆)·내종(內宗) 및 하동 부원군 정인지(鄭麟趾)·봉원 부원군 정창손(鄭昌孫)·영의정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 한명회(韓明澮)·좌의정 구치관(具致寬)·우의정 황수신(黃守身)·좌참찬 최항(崔恒)·이조판서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이 입시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또 정자영(鄭自英)·구종직(丘從直)·유희익(兪希益), 겸예문유신(兼藝文儒臣) 등을 불러 《주역(周易)》 구결(口訣)을 묻고 논란[問難]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겸예문관(兼藝文官)이 이 정도로 (경전에) 정통하고 능숙할 줄 생각지 못하였다." 하였다.[295]

---

293)『세조실록』권5 세조 2년(1456년) 음력 9월 3일 : "今殿下旣受帝命, 以正其始, 永念天位之艱, 毋忘民事之重, 兢兢業業. 益堅今日之志, 畏天恤民, 去邪崇正, 終始典于學. 日開經筵, 講論二帝三王之治, 《元》、《續六典》及《國朝寶鑑》等書, 以時觀覽, 務遵祖宗成憲, 以謹初服, 以示後範, 以迓億萬世無疆之休, 不勝幸甚."

294)『세조실록』권5 세조 2년(1456년) 음력 9월 11일 : "御思政殿, 親講文臣. 以兼成均司成金新民、成均大司成李孫禮爲問難官, 以藝文直提學安知歸、成均司成鄭守忠、直集賢殿李繼善・李夏成、司成李承召、藝文應敎徐居正、直藝文館柳子滉、直寶文閣李孝長、直修文殿金瑾、司藝金守溫爲講說官."

295)『세조실록』권37 세조 11년(1465년) 음력 10월 21일 : "御丕顯閤。 孝寧大君 (補) [補] 、臨瀛大君 璆、內宗及河東府院君 鄭麟趾、蓬原府院君 鄭昌孫、領議政申叔舟、上黨府院君 韓明澮、左議政具致寬、右議政黃守身、左參贊崔恒、吏曹判書韓繼禧、戶曹判書盧思愼入侍, 設酌。 又召鄭自英、丘從直、兪希益兼藝文儒臣等, 問難《周易》口訣。 上曰: "不意兼藝文精熟至此。"."

신석조의 주청이 있기 전, 세조는 정창손을 집현전 대제학, 권람을 집현전 대제학, 신숙주를 보문각 대제학으로 각각 임명하는데[296], 세종 당시 이미 통합되어 정리된 고려의 옛 문한 기구 명칭이 언급된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조치로 보인다. 또한 신석조의 상소가 올라간 지 2일 뒤 세조의 직접 하명으로 강경문신(講經文臣)이 선발된다.[297] 당시 기록으로 봐도 이들이 당하 경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상기 인용문에서 '겸예문유신'이라는 표현이 보이고 세조가 재위 기간 동안 예문관을 집현전의 후신으로 언급한 점[298]에 비추어 볼 때, 신석조의 상소를 대한 세조의 대응이 겸예문제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충분하다. 즉, 겸예문제 자체가 집현전 혁파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세조의 의지를 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석조 상소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세조 2년 기록을 봐도 그런 특징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 인용된 새 경연청은 이전 관명(官名) 대신 '문난(問難)'과 '강설(講說)'로 단순화되어 있는데, 이는 경연관을 국왕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되 이전과 같은 책임과 권한은 부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후로 갈수록 예문관의 교육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원수가 정해지지 않은 다수의 젊은 문신들을 겸직시킴으로써[299] 구성을 위한 모집단(母集團)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조의 이런 대응은 경연과 집현전이 강하게 연계되었던 기존 방식에 대한 세조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300], 이를 통해 세조 시대의 경연은

---

296)『세조실록』권4 세조 2년(1456년) 음력 7월 5일 : "以鄭昌孫爲輸忠勁節佐翼功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贊成、集賢殿大提學、兼判吏曹事、兼成均大司成、世子貳師、蓬原府院君, 姜孟卿輸忠勁節佐翼功臣、議政府左參贊、世子左賓客、晋山君, 權寧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吏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吉昌君, 申叔舟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兵曹判書、寶文閣大提學、高靈君, 金何工曹判書, 河漢中樞院使."

297)『세조실록』권5 세조 2년(1456년) 음력 9월 5일 : "傳于承政院曰: "自罷經筵後, 久不講經。 欲與文臣講說, 其令禮曹, 錄講經文臣以啓." 특히 후자의 경우 세조 재위기만 시행된 겸예문제(兼藝文制)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설치 이유로 집현전 혁파를 꼽고 있다는 사실이 그 단서라고 볼 수 있다.『세조실록』권33 세조 10년(1464년) 음력 7월 6일 기사에 "나이 어린 문사를 뽑아서 모두 본관(本官)을 가진 채 예문관의 관직을 띠고 그들로 하여금 학업을 닦게 하고 겸예문(兼藝文)이라고 일컬었다"고 말하며 "이숙감(李淑瑊)·이육(李陸)·조지(趙祉)·최한량(崔漢良)·김초(金軺)·손소(孫昭)·김계창(金季昌)·손비장(孫比長)·이칙(李則)·유윤겸(柳允謙)·유순(柳詢)·홍귀달(洪貴達)·배맹후(裵孟厚)·이경동(李璟仝)·성현(成俔)·김유(金紐)·최숙정(崔淑精)·이익배(李益培)" 등의 세부적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298)『세조실록』권33 세조 10년(1464년) 음력 5월 29일 두 번째 기사에 "예문관(藝文館)은 바로 경연하는 곳(藝文館乃經筵之所)"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혁파되기 전 집현전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상호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99)『세조실록』권33 세조 10년(1464년) 음력 7월 6일 두 번째 기사 참조.

300)『세조실록』권3 세조 2년(1456년) 음력 4월 15일 : "上謂集賢官曰: "人當務實學, 實學根本也。 國家以詞章切於用, 故不得已用此取人, 在自爲之道, 捨實學不可也。 今日汝等論經, 無有暢達者, 亦可自愧。 予欲使汝等, 隨所欲就四書、五經中各讀一書, 予時時親講。"." 최선혜(2015)는 이 대목에 주목하면서 경연 폐지의 의도와 연관성이 있을 것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조선 세조대 강론의 시행과 유신의 성장」,『역사학연구』제57집, 호남사학회, 6-7쪽) 같은 맥락에서 세조 2년(1456년) 음력 10월 29일 집현전에 대해 "근일에 집현전 선비들이 자못 교만한 마음이 있기에, 내가 명하여 개혁하였다"고 언급한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최선혜(2015)가 세조 당시의 경연을 정의한 '경사 강론'(「조선 세조대 강론의 시행과 유신의 성장」,『역사학연구』제57집, 호남사학회, 3쪽)을 이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것은 자신의 방식을 이전 경연의 운영 방식에 대한 대체의 모형으로 간주한 것이다.

최대한 국왕 주도의 진행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당 이런 방식에 대한 비판과 반대는 사대부 안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바라건대 경연을 서연처럼 녹관과 겸관을 두어 날에 따라 교대로 진강시켜 성학(聖學)을 더욱 부지런하게 한다면, 고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사서(史冊)(의 이해)에도 나아지는 바가 있을 것이며, 제도를 상고하고 옛 경전[典墳](의 본연을) 지키는 데도 옳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경연이 이미 폐지되어 갑자기 설치할 수가 없다면, 원컨대 명나라[中朝]에서 춘방(春坊)으로써 한림(翰林)을 겸임시키는 예에 의거하여 서연관으로써 윤번으로 진강하게 하소서.[301]

판서운관사 양성지(判書雲觀事 梁誠之)의 상소는 세조의 예문관 활용(겸예문제)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에 제기된 것으로 신석조의 주장보다 구체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양성지는 세조 주도의 새로운 경연 체제에 대한 대응으로 서연관의 편제[302]와 유사하게 녹관과 겸관을 구성하거나, 이웃한 명나라의 방식인 '춘방(春坊)의 한림 겸무'라는 운영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 주목되는 점은 바로 명나라 방식의 적용을 제안한 것으로, 앞서 세조가 초기 서연의 운영에서 점차 독립 기구 설치로 진행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303], 장기적으로 담당 기구 복원의 제도적 근거를 두려는 행보로 보인다. 왜냐하면 명나라의 경우 황제의 경연이 조선처럼 정례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춘방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성지는 장기적으로 이로써 옛 경연 제도를 복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세조의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친히 유생(儒生)들과 강론하였다. 종친과 우의정 강맹경(姜孟卿), 좌찬성 신숙주(申叔舟), 판중추원사봉조청 이징석(判中樞院事奉朝請 李澄石), 이조 판서 한명회(吏曹判書 韓明澮), 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 지중추원사 홍윤성(洪允成)· 양정(楊汀), 겸 성균관사성 김구(金鉤)· 김말(金末)· 김신민(金新民)과 승지(承旨), 주서(注書), 사관(史官) 등이 입시(入侍)하였다.[304]

---

301) 『세조실록』 권7 세조 3년(1457년) 음력 3월 15일 : "乞復經筵置祿官、兼官, 如書筵之制, 輪日進講, 益勤聖學, 庶幾有補於顧問, 有光於史冊, 至於考制度、守典墳, 無所不可。 且經筵旣罷, 不可遽設, 則乞依中朝以春坊兼翰林之例, 以書筵官輪次進講."

302)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1456년) 음력 6월 25일 : "傳旨吏曹曰: "集賢殿副提學以下祿官革罷, 直提學二員、直殿二員, 依館閣例, 以他官兼差, 書筵祿官六員, 兼官四員定額." :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1456년) 음력 7월 12일 : "吏曹啓: "書筵祿官六、兼官四, 依在前兼官官制, 左右輔德從三品, 左右弼善正四品, 左右文學正五品, 左右司經正六品, 左右正字正七品, 隨品除授, 祿官依科給祿。" 從之."

303) 기존 연구도 강녕전 경연을 담은 세조 12년(1466년) 음력 6월 2일 첫 번째 기사에 등장하는 '시강원 필선(侍講院 弼善)'을 기준으로 그 전후에 서연을 담당하는 기구 설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는 만큼, 집현전 혁파 이후 녹관과 겸관의 겸용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304) 『세조실록』 권10 세조 3년(1457년) 음력 11월 2일 : "親講儒生. 宗親及右議政姜孟卿、左贊成申叔舟、判中樞院事奉朝請李澄石、吏曹判書韓明澮、兵曹判書洪達孫、知中樞院事洪允成・楊汀、兼成均司成金鉤・金末・金新民、承旨、注書、史官等侍."

양성지의 제안 이후에도 세조는 상기의 경우처럼 여전히 주도적으로 경연 참여 인원을 편성하였고,[305] 강론 참여의 목적도 “한갓 경서를 강론하려는 뿐만 아니라 조정의 의식도 익히게 하려고 함”[306]임을 밝히는 등, 기존 경연과 동떨어진 운영을 계속 보이고 있었다.

경연(經筵)·집현전(集賢殿)·보문각(寶文閣)·수문전(修文殿) 등은 모두 관제가 이름만 남았고[虛銜] 직임도 없으니 이를 혁파하소서.[307]

또한 세조는 양성지 제안 3년 뒤, 경연청의 편제를 이름만 남은 고려 때 문한 기구와 함께 묶어 혁파시켜 버린다. 이것은 당해 무의미한 관직(冗官)과 관청에 대한 혁파의 의지를 표명한 점[308], 같은 날에 서연관 녹관과 겸관의 비율을 3 : 2로 축소한 것[309]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전 방식으로의 회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조는 사대부들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어서 연회를 열고 신숙주· 윤기(尹耆)· 유희익(兪希益)· 이맹현(李孟賢) 등에게 술을 올리게 하였다. 세조는 친히 시(詩)를 지었는데,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무비[武備]를 살피는 것도 마땅히 급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본업(本業)은 경전과 사서에 있으니, 어찌 때때로 익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경연을 폐했다고 말하지 마라. 경연에 의탁할 게 없기 때문이라네." 하고 입시한 문신들에게 명하여 화답하게 하였다. (그러자) 이맹현이 지어서 바치기를, "오랑캐까지 성덕(聖德)이 미쳤으니 무위를 드러내는 것[示威]도 또한 급하네. (그러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본래 경전과 사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항상 익혀야 하네. 끊임없이 생각해야 반드시 하나를 얻을 것인데 경연에 어찌 의탁할 만한 것이 없으리오." 하였다. 임금이 다 읽어보고, "예리하구나! 이것이 또한 재능을 세상에 드러낸 것[囊中之錐]이다."라고 하였다.[310]

내 이미 불혹의 나이가 지났지만 심기가 더욱 강장(强壯)하고 조금도 쇠퇴하지 않았으니, 날마다 경연에 나가라는 말에 힘이 부족하여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연

---

305) 최선혜(2015),「조선 세조대 강론의 시행과 유신의 성장」,『역사학연구』제57집, 호남사학회, 14쪽.

306)『세조실록』권28 세조 8년(1462년) 음력 5월 15일 : “非徒欲講經書, 使習朝儀耳.”

307)『세조실록』권20 세조 6년(1460년) 음력 5월 22일 : “又經筵、集賢殿、寶文閣、修文殿等官竝虛銜無所任, 請革之.”

308)『세조실록』권8 세조 3년(1457년) 음력 7월 5일 : “傳旨吏兵曹曰: ″設官所以代天理物, 冗官不可不汰。 昔唐太宗有天下, 首革冗員。 我國冗官實多, 磨勘沙汰。″.”

309)『세조실록』권20 세조 6년(1460년) 음력 5월 22일 : “今奉傳旨, 可減員及可革司磨勘具錄以啓. (…) 書筵輔德一、弼善一、文學一、司經一、正字一, (…) 上項書筵官置五員, 實官三、兼官二.”

310)『세조실록』권21 세조 6년(1460년) 음력 7월 26일 : “仍設酌, 命叔舟、耆、希益、孟賢等進酒。 御製詩云, ″濟世多經度, 閱武當急急。 本業在經史, 何不維時習? 毋謂廢經筵, 經筵無所托。″ 命入侍文臣等和之. 孟賢製進云, ″山戎外聖德, 示威方且急。 正心本經史, 無時不時習。 千慮必一得, 經筵豈無托?″ 上覽訖曰: ″利哉! 便是囊中錐也。″ .”

은 옛날 성현들이 행한 일이 아니니 요순도 경연을 하지 않았으며 주공(周公)도 진실로 사부가 없었다. 송나라의 황제들이 졸속으로 처음 만든 것[區區草創之事]을 어찌 본받을 수 있겠는가?[311]

심지어 세조는 사대부들에게 공공연히 경연 자체를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진북정(庚辰北征)[312] 등 다양한 정국 속에서 활발하게 정사를 펼친 데 비해, 문치를 기반으로 지배층의 협치를 상징하는 경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심지어 세조는 정창손에게 경연이 성인의 제도라는 주장을 불인정하면서 "송나라 황제들이 졸속으로 만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비치는데, 이것은 경연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온 그 동안의 기조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발언인 것이다. 세조의 이런 극단적인 태도 때문에 사대부들은 경연 제도 존폐에 대해 위기를 느끼게 되었으며, 그의 후계자들은 세조의 친강(親講) 체제를 그대로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옛 제도로 환원할 것인지를 두고 부담을 느껴야 했던 것이다.

2. 위기의 극복과 경연 제도의 완성

세조 재위 중 진행된 경연 정상화 논란은 예종 즉위 후에도 여전했다.

이전에 이조(吏曹)에서 경연관을 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대행 대왕의 유교(遺敎)에, '유생은 고담준론[高談異論]을 좋아하며 시사(時事)를 의논하기를 좋아하여 따로 독립된 관제[一官]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다른 관서로 겸하게 하여 날을 바꾸어 진강(進講)하라." 하였다. 이에 당상은 예전 인원(額數)대로 하고 낭관은 6명만 두어 모두 시강관(侍講官)으로 불렀다.[313]

이조는 즉각 경연청의 개청 여부를 상주했고, 예종은 세조의 유교(遺敎)를 명분으로 소략한 편성을 지시한다. 이렇게 개청된 예종의 새 경연청은 독립된 관제(경연청 및 기구)를 두지 않고 겸직으로 운영하며, 세조 당시 명칭(문난관/강설관) 대신 이전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시강관'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아마도 자신의 이 조치와 선왕(세조)의 유교(遺敎)가 상충되지 않도록 나름 타협한 것으로 보이며, 선왕처럼 국왕

311) 『세조실록』 권33 세조 10년(1464년) 음력 4월 22일 : "上又召昌孫曰: "予已年踰不惑, 心氣愈壯, 無小衰憊, 日御經筵, 非力不足也。 然經筵非古聖賢所爲, 堯、舜不經筵, 周公固無師. 宋朝人主區區草創之事, 何足法也?"."

312) 이것은 1460년(세조 6년, 庚辰) 신숙주(申叔舟) 등이 두만강 일대에 사는 모련위(毛憐衛) 여진족을 정벌한 사건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경진북정(庚辰北征))]

313)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1468년) 음력 10월 6일 : "前此, 吏曹請置經筵官, 上曰: "大行大王遺敎: '儒生好高談異論, 群議時事, 不可別設一官。' 今宜皆以他司兼之, 逐日進講。" 至是, 堂上依舊額, 郎官只置六員, 皆稱侍講官."

주도의 운영을 강요하지 않는 대신 사대부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당연히 국왕 교육에 대한 예종의 이런 소극적 대응은 사대부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른 불만은 예종의 구언령(求言令)[314]을 응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임금이 살펴보고 승정원에 영을 전하였다. "구언하는 것은 나의 과실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효손의 상소는 선왕의 법을 비난하였으니 잡아와 국문(鞫問)하라." 하였다. 그리고 도승지 권감(權瑊)을 불러서 조목에 따라서 묻게 하였다. "네 상언은 대체로 옳다. 그러나 나의 일이 그르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찌 선왕의 법을 비난하느냐?" … [315]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훈련원 부정 윤효손(訓鍊院 副正 尹孝孫)의 상소가 올라간 후 발생한다. 여기서 예종은 상소 열람 뒤 갑자기 '선왕(세조)의 법'을 명분으로 당사자를 국문에 넘겼는데, 과연 이처럼 예종을 크게 분노한 이유인 선왕(세조)의 법[先王之法]은 과연 무엇인가?

선왕[世祖]의 시정(時政)을 아울러 아뢴 것은 신이 선왕께서 구언하실 때 앞서 아뢴 공금(貢金), 사창(社倉), 정병유방(正兵留防) 등의 일에 관한 폐단을 상소하여 아뢰니 선왕께서 친히 상정소(詳定所)에 글을 내리셨으나 일이 시행되지 못해 신이 마음에 그 때 회한을 잊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때 마침 구언의 교서가 내려졌기로 신이 감히 진달한 것입니다.[316]

일단 윤효손이 도승지 권감(權瑊)을 통해 예종의 하문에 답한 바를 살펴보면 상소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선왕(세조) 대 아뢰었던 내용으로 추정되며, 당시 이에 대한 선왕(세조)의 반응도 호의적이었고 예종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善則善] 있다. 즉, 굳이 예종이 그 상소의 전반적인 내용에 격하게 반응할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첫 경연청을 설치할 때 언급한 선왕의 유교에 비추어 윤효손의 상소에 대한 예종의 불쾌감을 자아낸 요인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윤효손의 상소를 다시 살펴보면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로 경연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다.

---

314) 구언령이 내려진 시점은 예종 즉위년(1468년) 음력 11월 3일, 도승지 권감(權瑊)의 제안을 예종이 수용하여 전조(銓曹, 이조와 병조)에 전지(傳旨)를 내린 것으로 추정하였다.

315)『예종실록』권2 예종 즉위년(1468년) 음력 11월 13일 : "上覽之, 傳于承政院曰: "求言所以欲聞予過失也, 孝孫書, 非先正之法, 拿來鞫問。" 召都承旨權瑊, 令逐條問曰: "汝之上言, 善則善矣, 然以予之事爲非則可也, 何以非先王之法乎?"."

316)『예종실록』권2 예종 즉위년(1468년) 음력 11월 13일 : " 世祖時政并啓之意, 則臣於世祖求言之時, 將上項貢金、社倉、正兵、留防等事, 上書陳弊, 御書下詳定所, 事未施行, 故臣未忘於懷, 今適有求言之敎, 臣敢陳之."

그렇다면 인재를 기르는 도(방법)는 또 전하께서 성학(聖學)을 밝게 하시고 몸소 행하여 솔선하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중략) 방금 상중[亮陰]에 계시니, 장사를 치루기 전에는 상례(喪禮)를 읽으시고, 이미 장사를 지낸 뒤에는 제례(祭禮)를 읽으시어, 주자[朱文公]의 가례(家禮)에 정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졸곡(卒哭) 후에는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아가 경적(經籍)을 강론하며 고금에서 실마리를 찾아 아직 혼란스럽지 않을 때 다스림을 준비하시고 아직 위태하지 아니할 때 나라를 보전하도록 하소서. (이처럼) 날마다 좌우의 신하와 뛰어난 재상과 더불어 나라를 잘 다스려 평안케 할 도리를 강구하신다면 심술(心術)이 바르게 되고 행실이 돈독해지며 군자가 출사하고 소인을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깊이 있는 계략(謀計)과 먼 날까지 내다보는 숙려(熟慮)로써 종사(宗社)를 보존하여 평안케 되며, 관대한 은혜와 큰 은택으로써 곤궁한 백성들을 어루만져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중략) 신이 듣기로 공경은 한 몸의 주재이고 만사의 근본이며, 성학(聖學)의 시작과 끝이라 합니다.[317]

앞서 언급된 정황에 비추어 예종의 분노를 자아낸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성학을 밝게 하라[緝熙聖學]"는 표현이다. "밝게 하라[緝熙]"는 말은 경전에서 임금의 학문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상용 표현에서 유래한 것[318]으로 조선에서 경연 참여를 지칭할 때 사용되며, 윤효손도 같은 맥락에서 예종의 경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소의 전반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런 표현이 경연을 불신하면서 국왕 주도로 운영했던 세조의 불통과 비교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윤효손이 날마다 경연에 참여하여 조언을 받도록 제안한 것은 상대적으로 이에 외면했던 세조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처럼 볼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추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는 '간하는 일로 인하여 폄척(貶斥)당한 것[古人有因諫見斥者]'에 관한 언급이다. 이 고사는 중국에서 신하가 국왕에게 간쟁하였다가 도리어 배척을 당한 사례[319]인데, 이 역시도 사대부의 언로 형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세조를 깎아내린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세조 재위기의 언관 활동은 경연과 집현전 혁파 직후 부왕(세종)에 비해서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종의 입장에서 윤효손의 이와 같은 비유는, 비록 용례 상 관행적인 표현이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선왕(세조)의 치세에 대한 사대부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후계자인 예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부담감은 이후 윤효손을 석방하면서 내린 전지(傳旨)[320]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

317) 『예종실록』 권2 예종 즉위년(1468년) 음력 11월 13일 : "然則作成之道, 又在殿下, 緝熙聖學, 躬行以率之耳. (중략) 方在亮陰未葬之前讀喪禮, 既葬讀祭禮, 一如朱文公之儀。 卒哭後, 日御經筵, 講論經籍, 紬繹古今, 制治于未亂, 保邦于未危。 日與宏臣碩輔, 講求治安之道, 正心術敦實行, 進君子退小人。 深謀遠慮, 以保安宗社; 寬恩沛澤, 以子惠困窮。 聽忠言納直諫, 杜僥倖塞讒說。(중략) 臣聞敬者, 一身之主宰, 而萬事之根本, 聖學之所以成始而成終者也."

318) 『시경』 대아(大雅) '문왕지십(文王之什)' : "穆穆文王、於緝熙敬止."

319) 여기서 언급된 "대정(大庭)의 대책(對策)을 올려도 강도(江都)의 명이 내리시고, 불골표(佛骨表)를 올려도 조양(潮陽)의 견책(譴責)이 따르고" 라는 언급은 전한의 동중서와 당나라 한유의 경우를 말한 것으로 임금에게 대책과 표문을 아뢰었다가 좌천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종의 이러한 분노에도 그와 동일한 상황이 음력 12월, 의금부 경력 이인휴(義禁府 經歷 李仁畦)의 상소 때에도 반복되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바르게 하여 수신하시라는 것[正心修身]'입니다. 대저 국왕은 스스로 모든 교화의 근원인데, (그의) 마음이 바르면 천하의 일도 바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로잡는 핵심은 오직 학문에 있으니, 정사를 친히 돌보시는 중에 부지런히 경연에 임하여 성현의 학문을 배우십시오. 제왕 정치의 본질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수신하는 핵심에 임금의 숙고를 더하여 늘 삼가시는 모습[兢兢業業]으로 위로 하늘을 경외하고 아래로 백성을 경외하여, 무릇 베풀어 행하는 바가 바름으로부터 나오도록 힘써서 태평한 다스림[治平]의 실질적 성과를 이루소서.[321]

이인휴가 새 국왕의 국정 과제로 '마음을 바르게 하여 수신'하도록 주청한 것은 그것이 사대부들이 세조 시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임을 보여준다. 이인휴의 이런 언급은 사대부의 강론 대신 국왕 주도로 친강을 했던 세조의 불통을 꼬집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322] 예종도 이인휴의 이런 요구를 세조 치세에 대한 비판과 관련지어 생각한 것으로 보고, 이 상소의 의도를 윤효손보다 더욱 불손하게 여겨 매우 엄정한 비답(批答)을 내렸다.

지금 이인휴가 오로지 망령된 소견으로 선왕(세조)을 헐뜯으니[非毁先王] 정황과 실정[情實] 상 지극히 나쁘다[薄惡].[323]

즉, 예종은 경연 정상화를 제안한 이인휴의 주장을 '선왕을 헐뜯었다고 보이는 정황이 뚜렷한 만큼' 본질 상 선왕을 향한 비난으로 여긴 것이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예종 즉위 초에도 여전히 언로(言路)의 개방 여부를 중심으로 경연 문제가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세조 6년(1460년) 중요하지 않은 벼슬(冗官)이라는 이유로 경연관을 폐지하고 간관과 서연관의 규모를 줄인 이후[324] 국왕 주도로 경연을 운영하였고, 사대부들은 후계자인 예종이 이 문제

320)『예종실록』권2 예종 즉위년(1468년) 음력 11월 15일 : "汝誹謗先正, 死有餘辜。 然予旣求言, 而復加之罪不可, 故特赦之, 勿復如是."

321)『예종실록』권2 예종 즉위년(1468년) 음력 12월 6일 : "其一曰, "正心修身。" 夫人主一身萬化之源, 心旣正則天下之事, 可從而正矣。 正心之要, 惟在於學, 乞於萬幾之暇, 勉臨經筵, 講明聖賢之學, 於帝王爲治之本、正心修身之要, 更加聖慮, 兢兢業業, 上以敬畏乎天, 下以敬畏乎民, 凡所施爲務出於正, 以成治平之効."

322) 세조는 경연에 관한 신하들의 주청을 불용(不容)하는 태도를 취했고, 사정전에서 맹족(盟簇)을 받을 때 이계전을 모욕한 일(권2 세조 1년(1455년) 음력 8월 16일 첫 번째 기사)도 있었다. 또한 어진 신하에 대한 인견도 기본적으로 경연의 훈도(薰陶)와 의미 상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323)『예종실록』권2 예종 즉위년(1468년) 음력 12월 6일 : "今仁畦輒以妄見, 非毁先王, 情實薄惡."

324)『세조실록』권20 세조 6년(1460년) 음력 5월 23일 : "且削經筵之號、減書筵之員, 臣等竊惑焉。 殿下天縱睿智, 經學高明, 雖不煩經筵, 固已高出百王之上矣, 如使聖嗣不復知有經筵之迹, 則後雖有建白

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기대했지만 선왕(세조)의 유교만 앞세웠으므로 구언(求言)을 계기로 다시 제기했던 것이다. 더욱이 예종은 구언에 응한 신하들을 징치하고 난 뒤 즉위년 음력 12월 하명하였던 경연 참여를 또 다시 번복함으로써[325] 사대부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느끼게 했다. 이에 사대부들은 그 이듬해 2월, 명사(明使)의 방문을 계기로 경연의 재개를 주청하는데, 이것은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국왕을 압박하여 경연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공손히 살펴보건대, 우리 주상 전하는 등극[臨御]하신 즈음에 맨 먼저 유신(儒臣)을 뽑아서 경연의 벼슬을 띠게 하여 고문에 갖추게 하고, 곧이어 명하기를, '지금부터 장차 경연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전하는 타고난 자질이 성인의 학문을 즐기시니 진실로 번거롭게 스승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인데도 오히려 이러한 명을 내리시니, 이것은 임금이 하루 동안 어진 사대부를 많이 접하고 환관· 근습(近習)을 가까이 할 때가 적어야만 기질을 함양하고 덕성을 훈도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하의 이 일이 진실로 한 나라 신민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사를 보신 지 여러 날이 되었으나 오직 경연(講筵)만 행하지 아니하니 신 등이 그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하물며 근래 (명나라) 황제께서 사서오경을 하사하신 것은 어찌 전하께서 성학(聖學)을 열심히 해야 함을 통찰하시어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신 등은 매양 정사를 보신 뒤 바로 경연관을 불러서 경사(經史)를 강론하고 고금을 밝게 살펴서 당나라 홍문관과 송나라 이영각(邇英閣)의 고사와 같이 날마다 부지런히 힘쓰시어 성상이 정사를 생각하지 않을 때(즉, 편안할 때) 경연을 하신다면 다스리시는 방안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여길 것입니다.[326]

사헌부의 이 제안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사실은 명나라 황제의 하사품 중 하나인 사서오경을 언급한 점[327]에서 보인다. 당시 명나라의 사신은 조선의 고부청시사(告訃請諡使, 선왕의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내려주기 청하는 사신)에 대한 답방(答訪)의 성격으로 온 것이었으나, 조선 조정은 당시 요동의 여진 사이에서 일어난 군

者, 將謂曰, "經筵, 吾先王之所罷也。 吾何敢焉?", 則臣等竊恐王求多聞之美, 自此墮矣。 古人有愛禮而存羊者, 豈殿下慮不及此乎? 書筵, 自輔德以下只十人, 曰輔德, 曰弼善, 曰文學。 卽古者少師、少傅之遺制。 初非虛設, 爲世子置僚, 更日直宿以備講問, 豈容以十員爲多耶?"

325) 예종이 즉위년(1468년) 음력 12월 12일 예조에 전지해 세종의 전례를 따라 "3년상 안에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는 것"을 지시했다가 6일 뒤 족질(足疾)을 핑계 삼아 시행치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회강을 없애도록 한 사실을 이른다. 여기서 '회강'은 당상관인 경연관까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를 말하는 듯한데, 참찬관과 검토관에 해당하는 승지, 대간과 참상관 이하인 시강관으로 출석을 제한한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326) 『예종실록』 권4 예종 1년(1469년) 음력 3월 2일 : "恭惟我主上殿下, 臨御之初, 首選儒臣, 職帶經筵, 以備顧問, 仍命曰: "自今將御經筵視事。" 殿下天縱聖學, 固不煩於師資, 而猶且有是命者, 豈不以人君一日之中, 接賢士大夫之時多, 親宦官近習之時小然後, 可以涵養氣質熏陶德性者乎? 殿下此擧, 實一國人民之福也。 今者視事有日矣, 獨講筵不設, 臣等竊惑焉。 況近者皇帝欽賜《四書》、《五經》, 豈非洞見殿下緝熙聖學之心而然耶? 臣等伏望, 每於視事之後, 仍召經筵官, 講論經史, 商確古今, 如唐弘文館, 宋邇英閣故事, 孜孜汲汲, 日勤一日, 聖念不在政事, 則在於經筵, 治道幸甚."

327) 『예종실록』 권4 예종 1년(1469년) 음력 윤2월 7일 : "崔安、鄭同、沈澮等, 將皇帝別賜《五倫書》、《五經大全》、《性理大全》、《四書》、白玉玲瓏天鹿帶、黑白玉玲瓏架上鷹鬧粧、各樣閃色蟒龍紵絲、熟絹、象牙等物, 詣闕."

사적 행동[328]으로 인한 청병사(請兵使, 군사 출병을 요청하기 위한 사신)의 역할까지 예상하고 있었다.[329] 더욱이 명나라는 세조 초년 자체적으로 여진 부족을 정벌한 일을 두고 따진 전력[330]도 있는 만큼, 예종과 조선이 이런 명나라의 예상되는 행동에 대해 크게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때 사헌부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명나라 측에서 하사한 경전을 명분 삼아 대국의 환심을 유인한다는 명분으로 경연청의 개청(開廳)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헌부의 시도에 대한 결과는 동해 4월 즈음 있었던 경연 기록[3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이 경연은 명나라 사신의 체류 기간[332] 중에 실시된 것으로, 황제의 하사품으로 친히 학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이벤트로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영성군 최항(寧城君 崔恒)은 세종 때부터 집현전에서 활동한 인물로 당시 조선과 명나라 모두에서 문재(文才)를 인정받았는데[333], 예종은 당시 현관(顯官)으로 있지 않던 그를 사신 방문 기간 중 열린 경연에 초청, 명나라 측의 눈길을 사로잡으려 했다. 물론 이것은 이런 이벤트를 통해 당시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시도되었으나, 기실 사대부들은 이를 계기로 예종에게 경연의 지속적 참석을 유인하려는 데 더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 점은 바로 공조 판서 양성지의 발언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오늘부터 계속하여 경연(經筵)에 나아가서 『통감(通鑑)』을 강하는 것을 마치고, 다음으로 『대학연의(大學衍義)』·『자경편(自警編)』·『정관정요(貞觀政要)』·『송원절요(宋元節

---

328)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1468년) 음력 9월 30일 : "咸吉北道節度使金嶠馳啓: "今九月十五日, 訓春住野人大護軍多尙介來言: '欲報復南訥兀狄哈, 請兵於野人 者邑同介家, 聞深處韃靼, 與三衛韃靼戰, 三衛韃靼敗北, 移來火剌溫地面, 火剌溫亦欲移朝鮮地面野人所居。' 且建州衛 充尙弟充也等二百餘人, 朝見于大明, 大明以前日作耗, 竝殺之, 毛憐衛 野人, 亦欲朝大明, 路聞充也等被殺乃還。 多尙介之還, 又見尼麻車兀狄哈六人, 言: '前者入寇穩城而不利, 聚兵欲報, 聞朝廷將領軍躪殺, 竝挈家登山。' 然待氷合, 必欲作賊。" 命示都摠府、兵曹."

329) 실제로 원접사 윤자운(尹子雲)이 당시 명사와 대화한 내용을 보고한 내용(예종 1년 음력 2월 18일)을 봐도 "신이 인하여 묻기를, '요동에서 만약 또 다시 거사(擧事)하게 되면, 또 우리에게 군사를 징발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니" 라는 대목이 있다. 물론 당시 명사는 이에 관해 일이 원만히 해결된 것을 언급하며 부정하였지만, 그 이전 1월 4일과 6일에 각각 서쪽을 정벌할 군사 규모를 논의하고 한산(閑散)한 무사들을 징발한 것, 특히 6일 기사에서 "명나라에서 군사를 징발하라는 명령이 있을 것을 생각한 때문"이라고 한 점은 이와 차이를 보인다. 이후로도 조선은 실제 요동의 정황을 계속 탐지하여 그 진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330) 세조 당시 신숙주를 앞세워 여진을 초무(招撫)한 것에 대한 명나라와의 외교적 갈등이나 모련위 정벌 등을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한성주(2012), 「조선 세조대 여진 화해사(和解事)에 대한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38호,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331) 『예종실록』 권5 예종 1년(1469년) 음력 4월 22일 첫 번째 기사 참조 : "御經筵, 寧城君 崔恒、左贊成金國光、刑曹判書姜希孟、禮曹判書任元濬、戶曹參判韓致仁及承旨等入侍."

332) 실록을 보면 그 해 5월 2일 모화관에서 예종의 전송을 받은 뒤 홍제원(洪濟院)과 벽제(碧蹄)까지 전송한 것이 확인된다. 홍제원은 명나라 사신을 위한 국영 여관, 벽제관은 고양시에 위치한 객사였다.

333) 『예종실록』 권5 예종 1년(1469년) 음력 4월 22일 : " 恒以文章著名, 出入臺閣、典司、藝文, 一時詞翰, 皆經其手乃定。 天順年間, 帝以詔書, 問我國野人除職事, 恒撰表有曰: "詔忽頒於十行, 淵氷罔措; 悔無及於萬死, 天日有臨。" 翰林院歎表辭精切."

要)』·『대명군감(大明君鑑)』·『동국사략(東國史略)』·『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국조보감(國朝寶鑑)』, 또 사서(四書) 가운데 『논어(論語)』, 오경(五經) 가운데 『상서(尙書)』를 강하여 항상 관람하시면 심히 다행함을 이길 수 없겠습니다.[334]

여기서 양성지가 "오늘부터 계속[繼自今日]"라는 말과 함께 교과들을 상세하게 나열한 것은 5월 초 명나라 사신이 떠난 뒤 더 이상 경연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예종에게 경연을 단지 정치적 이벤트로 이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금부터 제대로 하도록 권고하려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가 이런 발언을 꺼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무렵 예종 역시 고문(顧問)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일 정사를 보면서 승지가 보고한 것을 여러 종친과 재상들에게 하문하였는데 단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으니 내가 도리어 부끄러웠다. 지금부터 원상 한 사람씩 차례대로 입시하여 고문에 대비케 하라.[335]

구언령 사건 이후 국왕에 대한 고문이 현저히 약화되었음은 이 발언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 경연마저 완전히 중단하고 있던 예종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 나이 어린 국왕의 입장에서 고문에 대한 중신들의 소극적 태도는 국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예종은 이로 인해 경연에 대한 처음의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었다.

임금이 친히 비현합(丕顯閤)[336]에 임하니, 우부승지 정효상(鄭孝常)이 『예기』를 진강했다.[337]

종친 및 위장(衛將)이 무경(武經)과 『4서(四書)』를 강하였다. 부장 강정(姜精)이 사마법(司馬法)에 통하고, 가림령(嘉林令) 이추(李秋)· 모양도정(牟陽都正) 이직(李稙)·오 천령(烏川令) 이사종(李嗣宗) 등이 모두 『대학』에 통하니, (임금이) 각기 녹비(鹿皮) 1장씩을 하사했다.[338]

---

334) 『예종실록』 권6 예종 1년(1469년) 음력 6월 29일 : "繼自今日, 御經筵, 畢講《通鑑》, 次講《大學衍義》、《自警編》、《貞觀政要》、《宋元節要》、《大明君鑑》、《東國史略》、《高麗史節要》、《國朝寶鑑》。 又四書中《論語》, 五經中《尙書》, 常常觀覽, 不勝幸甚."

335) 『예종실록』 권4 예종 1년(1469년) 음력 윤2월 24일 : "今日視事, 承旨所啓事, 問諸宗宰, 而無一人對者, 予反慙焉。 自今其令院相一人, 輪次入侍, 以備顧問."

336) 비현합(丕顯閤)은 경복궁 동궁전인 자선당(資善堂) 동쪽에 있는 전각이다. 원래 왕의 연거지소(燕居之所)로 만들었다가 고종 대에 동궁의 전각으로 삼았다. 비현합은 1463년(세조 9)에 왕이 거처하는 곳으로 만들어졌다. 사정전(思政殿) 동쪽 모퉁이의 내상고(內廂庫) 2칸에 창을 내고 연거지소로 삼은 것이다. 그 이름은 『서경(書經)』의 "새벽에 크게 덕(德)을 밝히시어" 라는 매상비현(昧爽丕顯) 구절에서 따왔다. 처음에는 비현합으로 주로 칭하였으나 중종 대를 거치면서 점차 비현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고종 대에 경복궁을 중건할 때 동궁의 전각으로 성격이 바뀐 것으로 여겨진다. (인터넷 조선왕조실록사전 참조)

337) 『예종실록』 권4 예종 1년(1469년) 음력 3월 10일 : "御丕顯閤, 右副承旨鄭孝常進講《禮記》."

338) 『예종실록』 권5 예종 1년(1469년) 음력 4월 15일 : "宗親及衛將, 講《武經》與《四書》, 部將姜精, 通司馬法, 嘉林令 秋、牟陽都正 稙、烏川令 嗣宗等, 皆通《大學》, 各賜鹿皮一張."

공조판서 양성지(梁誠之), 행 중추부첨지사인 송처관(行 中樞府僉知事 宋處寬)과 정자영(鄭自英) 등에게 명하여, 사정전의 월랑(月廊)에 모여서 종친, 문신, 제장, 제학 유생(諸學儒生) 등에게 경서를 강(講)하게 하였다.[339]

경연에 나아가니, 지경연사 임원준(知經筵事 任元濬)이 『예기(禮記)』를 강(講)하였다.[340]

경연에 나아가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講)하였다.[341]

순서대로 살펴보면 예종은 사대부의 요구에 곧바로 응하기보다 선왕(세조)의 방식으로 시작하여 점차 옛 방식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경연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즉, 예종 1년(1469년) 음력 8월까지 국왕 주도의 형태를 띠며 그의 요구에 맞게 경서와 무경(武經)을 섞어가며 운영하였으나, 실질적인 경연이 진행된 음력 9월부터 세조 때 폐지된 경연관의 명칭과 대표적인 교과가 언급된 것이다. 예종이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한 것은 정난을 주도한 선왕(세조)과 달리 국정을 주도할 역량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재위 초 선왕(세조)의 유교를 따랐다가 이후 역풍을 맞은 것도 예종의 그런 사정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종 재위기의 이런 변화는 이후 경연 정상화 논의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이처럼 예종은 경연의 정상화를 두고 선왕(세조)의 유교와 현실적인 필요 속에서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즉, 예종은 선왕(세조)에 비해 국왕 주도로 경연을 주도할 정도의 정치적 역량이 없었으면서도 재위 초 과도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고문과 간언을 약화시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보이게 된 것이다.[342] 결국 예종은 바로 경연을 정상화하기보다 고문을 명분으로 세조 때와 같은 친강의 모습을 거쳐 음력 9월에 이르러 옛 모습을 거의 회복시켰다. 이런 단계적인 회복은 아마도 그 동안 세조의 유교를 명분으로 했던 강경한 모습을 보인 만큼 자신의 면을 세우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종이 재위 1년(1469년)에 훙서(薨逝)함으로써 이제 조선 경연 제도의 운명은 성종에게 넘어갔다.

다만 성종의 경연 운영을 이해하려면 시기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종은 7년 동안 세조의 왕후인 정희왕후 윤씨(貞熹王后 尹氏)의 수렴청

339) 『예종실록』 권7 예종 1년(1469년) 음력 8월 21일 : "命工曹判書梁誠之、行中樞府僉知事宋處寬・鄭自英等, 會思政殿月廊, 講宗親、文臣、諸將、諸學儒生等經書."
340) 『예종실록』 권7 예종 1년(1469년) 음력 9월 19일 : "御經筵, 知經筵事任元濬講《禮記》."
341) 『예종실록』 권7 예종 1년(1469년) 음력 9월 20일 : "御經筵, 講《大學衍義》."
342) 『예종실록』 권7 예종 1년(1469년) 음력 9월 30일 첫 번째 기사와 권8 예종 1년(1469년) 음력 10월 4일 4번째 기사 참고. 이 시기에 사대부들이 경연에 나온 예종에게 낯빛을 온화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등, 구언령 당시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권한 점은 그 필요성으로 경연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군신 모두 인식했다는 증거로 보인다.

정을 받았으므로 그 전후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졸곡 전에 진강을 시작하고 매달 초1일에 영경연(領經筵) 이하 낭관(郎官)까지가 함께 들어오고 다섯 아일(衙日, 조참(朝參)하여 국왕과 정사(政事)를 보던 날)에는 영경연· 지경연(知經筵) 이하 승지(承旨) 각 한사람, 낭관 두 사람, 매일 조강(朝講)에는 지경연(知經筵) 이하 승지 각 한 사람, 낭관 두 사람, 주석강(晝夕講)에는 승지 한 사람, 낭관 두 사람으로 할 것.[343]

임금이 장차 경연에 나오려고 하는데, 고령군 신숙주가 사목(事目)을 만들어 아뢰기를, "1. 『논어』를 진강할 것. 1. 조강(朝講)에는 음(音)·석(釋)을 각각 3번씩 하고 난 후에 임금이 음·석을 각기 1번씩 읽고, 주강(晝講)에는 임금이 아침에 배운 음·석을 각기 1번씩 읽도록 할 것. 1. 조강에는 당직원상(當直院相) 2인, 경연 당상(經筵堂上) 1인, 낭청(郎廳) 2인, 승지 1인, 대간 각 1인, 사관 1인과, 주강(晝講)에는 승지 1인, 경연낭청, 사관 1인이 궁중에 입시하여 상시로 음 20번, 석 10번을 읽을 것." 하였다. 대왕대비가 묻기를, "졸곡 전에는 예절을 갖추기가 어려울 듯한데, 시강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니 원상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조강에는 대간과 경연 낭청 1인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344]

임금이 처음으로 보경당(寶敬堂) 경연에 나아가니, 영사 신숙주(領事 申叔舟)· 윤자운(尹子雲), 동지사 정자영(同知事) 鄭自英)· 도승지 이극증(都承旨 李克增)· 대사헌 이극돈(大司憲 李克墩)· 대사간 강자평(大司諫 姜子平)· 시강관 유권(侍講官 柳睠)· 기사관 김종(記事官 金悰)이 입시하였다. 정자영이 『논어』의 학이편(學而篇)을 진강하면서 음독과 해석을 각기 세 번씩 하니, 임금이 음독과 해석을 각기 한 번씩 하였다.[345]

수렴청정 후 이뤄진 경연청은 일단 새로 즉위한 어린 국왕을 교육하는 데 집중했다. 성종은 즉위 당시 관례(冠禮) 이전이었고(13살), 예종도 재위 10개월 만에 사망하는 등, 왕으로서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종과 같은 조건의 국왕이었던 단종의 경우를 참고했을 것이다. 실제로 실록에 기록된 단종 당시 경연청[346]과 비교해보면, 신설된 원상(院相)을 제외한 모든 구성 면에서 상당한 유

343)『단종실록』권1 단종 즉위년(1452년) 음력 6월 16일 : "卒哭前始進講, 每月初一日, 領經筵以下至郎官俱入; 五衙日領經筵、知經筵以下, 承旨各一、郎官二; 每日朝講, 知經筵以下, 承旨各一、郎官二; 晝夕講, 承旨一、郎官二."

344)『성종실록』권1 성종 즉위년(1469년) 음력 12월 9일 : "上將御經筵, 高靈君 申叔舟作事目以啓: ″一, 進講《論語》。 一, 朝講, 音、釋各三遍後, 上讀音釋各一遍; 晝講, 上讀朝授音、釋各一遍。 一, 朝講, 當直院相二人, 經筵堂上一人, 郎廳二人, 承旨一人, 臺諫各一人, 史官一人; 晝講, 承旨一人, 經筵郎廳一人, 史官一人, 入侍宮中, 常讀音二十遍, 釋十遍。″ 大王大妃問曰: ″卒哭前備禮爲難, 侍講者無乃太多乎?″ 院相議啓曰: ″講除臺諫及經筵郎廳一人, 何如?″ 傳曰: ″可。″."

345)『성종실록』권2 성종 1년(1470년) 음력 1월 7일 : "上始御經筵于寶敬堂。 領事申叔舟、尹子雲、同知事鄭自英、都承旨李克增、大司憲李克墩、大司諫姜子平、侍講官柳睠、記事官金悰入侍。 自英進講《論語》 《學而篇》, 音釋各三遍, 上讀音釋各一遍."

346)『단종실록』권1 단종 즉위년(1452년) 음력 6월 16일 2번째 기사 참고.

사성을 보이고 있다. (표 5 참고)

[표 5 : 단종과 성종의 경연청 구성 비교]

단종		성종	
조강	지경연(1), 승지(1), 낭관(2) *매달 초1일 전원 참석 * 5아일(초5일●11일●15일●21일●25일) 영경연 참석	조강	원상(2), 경연당상(1), 낭청(1), 승지(1), 사관(1)
주/석강	승지(1), 낭관(2)	주강	승지(1), 낭청(1), 사관(1)

이때 원상제는 단종 때 고명대신의 정사 참여를 제도화한 것으로 어린 국왕 보좌의 실효성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경연 정상화에 대한 성종 본인의 의지를 확인하려면 친정 이후를 주목해야 한다. 당시 사대부들은 이미 어린 나이 임에도 경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종에게서 경연 정상화에 대한 큰 기대를 품었을 것이나, 그 때는 정희왕후와 원상들의 주도 하에 어린 국왕에 대한 교육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친정 이후 경연의 참여 여부를 봐야 성종의 본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사대부들의 이 기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이 친정 2년 후 올린 예문관 봉교 최을두(藝文館 奉敎 崔乙斗)의 상소이다. 그 주장의 요지는 수찬 이상 15명 중 봉교 이하 4명을 신설된 참외 4명과 함께 분리, 별도의 기구에 배치할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 기구의 모본(模本)은 집현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경연 담당 기구의 복원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47]

관제를 설치하고 직무를 나누어서 각기 그 임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임무가) 서로 섞이지 않게 하도록 위함입니다. 생각건대 우리는 예문관· 춘추관 양관을 설치하여 역사와 문한[史翰]을 맡게 하고, 또한 집현전을 설치하여 강론을 맡아 관직(의 임무)이 서로 섞이지 않았는데, 세조(世祖朝) 때에 처음 집현전을 혁파하고 예문관· 춘추관만 두었습니다. 전하도 즉위 초에 집현전의 구제를 회복하려고 하셨으나 집현전을 혁파한 지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회복하지 못하기에, 특별히 예문관 수찬 이상으로 15명 두어 고문에 대비하시고, 또 봉교 이하로 또한 경연관을 겸대(兼帶)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찬 이상은, 비록 직책이 춘추관을 겸하고 있으나, 예전처럼 시강(侍講)과 논사(論事)에 배치되었고, 봉교(奉敎) 이하는, 비록 직책이 경연관을 띠었다고는 하나, 예전대로 문한[기언(記言)·서사(書事)]에 배치되니, 동일한 기관의 관직이라고 해도 직사(職事)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참외(參

347) 『경국대전』 이전(吏典) '경관직' 중 경연과 홍문관 두 조(條)에서 모두 홍문관 관원 전원을 시강관 이하에 참여시킨다는 구절이 포함된 점이 그 근거이다. (한국고전국역위원회 역주(1960), 국역 『대전회통』, 고려대학교 출판부, 50-51쪽.)

外)인 박사(博士)·저작(著作)·정자(正字) 4원을 설치하고 젊은이들에게 일찍부터 교양을 쌓게 하여 집현전의 제도를 모두 회복하였으니 취지(趣旨)가 매우 좋습니다. 다만 개선함에 미진한 바가 있는 것이 한스러우니, 사관 8명을 각 부서의 음직[南行]으로 나누어 놓아 품계 상 예문관의 참외(參外)이나 임무가 현저히 다르니, 원래 섞일 수 없는 것임에도 억지로 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신 등은 품계가 비록 낮으나, 위로 전하의 언동과, 아래로 군신(群臣)의 득실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하여 만세에 전하므로 그 임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데 무용지물[附贅懸疣]처럼 다른 부서에 의탁하여 있으니, 나라에서 관제를 설치하고 관직을 나누어 둔 본의에 비교해 어떠하며, 전하가 사관을 예우하시는 것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전하가 옛 법을 상고하여 신 등 8명을 별도로 한 국(局)에 배치하여 그 임무에 전념하게 하도록 조종의 제도를 복구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348]

이에 관한 성종의 대응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최을두가 별도의 기구 설치를 위해 예문관 현황에 주목한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태종 때 개편된 직제[349]를 기준으로 보면, 최을두는 검열을 제외한 4명의 관직(봉교 2, 대교 2)을 신설된 직제(박사 1, 저작 1, 정자 2)[350]와 함께 분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같이 한 배경은 바로 이들의 사관(기사관) 겸직이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최을두에 따르면 이 신설된 직제의 경우 당초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사관을 겸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선의 관직 설치 원칙[說官分職]을 위반한 인사 조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을두는 원래 직제 설치 원칙과 업무 전념을 위해 경연관 겸직인 4명을 신설된 직제와 합하여 예문관으로부터 분리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이제 성종이 내린 비답을 통해 그가 이 제안을 얼마나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문관 부제학(藝文館 副提學) 이하의 각 인원을 홍문관(弘文館)의 실직[實銜]으로 옮겨 임명하고, 봉교(奉敎) 이하 8원은 예문관의 직을 겸하며, 홍문관 응교(應敎) 2원 중의 1원은 장래 문한을 맡을만한 자를 택하여 겸하고, 이에 앞서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을 도승지(都承旨)가 겸임하던 것은 이제 마땅히 예문관으로 바꾸어 임명하라.[351]

---

348)『성종실록』권90 성종 9년(1478년) 음력 3월 19일 : "設官分職, 各當其任, 不可混也。 惟我國家設藝文、春秋兩館, 以掌史翰, 又設集賢殿, 以任講論, 官職不相混矣, 至世祖朝始革集賢殿, 只置藝文・春秋館. 我殿下卽位之初, 欲復集賢舊制, 而集賢之革已久, 不可遽復, 特於藝文館設修撰以上十五員, 以備顧問, 又令奉敎以下, 亦兼經筵。 然修撰以上雖曰職帶春秋, 而依舊以侍講論事爲重, 奉敎以下雖曰職帶經筵, 而依舊以記言書事爲重, 名曰同官, 而職事則異。 今者又設參外官博士、著作、正字四員, 使年少輩早有所儲養, 而悉復集賢舊制, 其意甚美。 第恨未盡更張, 史官八員猶使混處, 遂令一司有各樣南行, 其秩則俱爲藝文參外官, 而其任則懸殊, 其不可混處而冒居也較然矣。 臣等職秩雖卑, 然上焉殿下之言動, 下焉群臣之得失, 無不悉書以垂萬世, 則其任固非輕矣。 如是而寄寓於他司, 若附贅懸疣焉, 於國家設官分職之意何? 於殿下待史官之意何? 伏望殿下參酌古典, 令臣等八員別作一局, 以專其任, 以復祖宗之制, 不勝幸甚."

349)『태종실록』권2 태종 1년(1401년) 음력 7월 13일 2번째 기사 참고.

350)『성종실록』권89 성종 9년(1478년) 음력 2월 28일 6번째 기사 참고.

351)『성종실록』권90 성종 9년(1478년) 음력 3월 19일 : "藝文館副提學以下各員, 移差弘文館實銜, 奉敎以下八員, 仍帶藝文館, 弘文館應敎二員內一員, 擇將爲主文者兼差應敎, 前此弘文館直提學都承旨兼之, 今宜移差藝文館."

성종의 전교를 보면 그가 최을두의 제안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이 잘 드러난다. 우선 여기서 언급된 홍문관은 예문관의 도서관으로서[352] 그 모본(模本)인 집현전 장서각[353]을 근거로 하여 세조 때 설치된 것[354]이다. 이후 세조가 겸예문제(兼藝文制)를 시행한 것이 참외(참하)의 신설을 가능하게 했고, 성종도 재위 1년(1470년)[355]과 재위 9년(1478년)[356] 직제 증설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었다. 이제 성종은 증설된 직제의 인원(참하)을 모두 홍문관의 실직으로서 예문관직을 겸직하게 하고, 홍문관 응교 2명을 분리하여 업무의 연장성을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당초 예문관 직제로 홍문관 직제학을 겸했던 도승지를 예문관 내 겸직으로 바꾼 것도 부제학의 실직화와 같은 맥락으로서, 성종의 이 방식도 세종 당시 집현전의 경우를 상당히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표 6 참고)

[표 6 : 예문관 직제 변천 과정[357]]

<table>
<tr><th>관명</th><th>태조(예문춘추관)</th><th>태종(예문관)</th><th>성종(예문관)</th></tr>
<tr><td>영사(정1품)</td><td>감관사(監館事, 정1품)</td><td>영관사(領館事, 정1품, 태종17년)</td><td>영사(領事, 정1품, 세조 12년)</td></tr>
<tr><td rowspan="2">대제학(정2품)</td><td>대학사(大學士, 정2품)</td><td rowspan="2">대제학(大提學, 정2품)
: 춘추관 분설 영향</td><td rowspan="2">대제학(정2품)</td></tr>
<tr><td>지관사(知館事, 정2품下)</td></tr>
<tr><td rowspan="2">제학(종2품)</td><td>학사(學士, 종2품)</td><td rowspan="2">제학(提學, 종2품)
: 춘추관 분설 영향</td><td rowspan="2">제학(종2품)</td></tr>
<tr><td>동지관사(同知館事, 종2품下)</td></tr>
<tr><td rowspan="3">직제학(정3품)</td><td rowspan="3"></td><td rowspan="3">직제학(直提學, 정3품)</td><td>직제학(정3품上)</td></tr>
<tr><td>부제학(정3품下)</td></tr>
<tr><td>전한(典翰, 종3품)</td></tr>
<tr><td rowspan="6">응교(정4품)</td><td rowspan="2">[편수관(정4품↑)]
: 춘추관 겸직</td><td>응교(정4품, 세종18년)</td><td>응교(정4품)</td></tr>
<tr><td>직관(정4품↓, 세종 29년 근거) - 전한(세조)</td><td>부응교(종4품)</td></tr>
<tr><td rowspan="4">응교(應敎, 정5품)</td><td rowspan="4"></td><td>교리(校理, 정5품)</td></tr>
<tr><td>부교리(종5품)</td></tr>
<tr><td>수찬(정6품)</td></tr>
<tr><td>부수찬(종6품)</td></tr>
</table>

352)『세조실록』권31 세조 9년(1463년) 음력 11월 17일 : “初, 同知中樞院事梁誠之議立崇文殿, 弘文館皆設兼官, 以掌出納。 至是, 上曰: ″若立崇文殿, 則後世人主或有好製詩文, 專事述作者, 不可從也。 以藏書閣爲弘文館則可。 其設兼官, 大提學一、提學一、直提學一、直館一、博士一、著作郎一、正字二。″.”

353) 이계전 ‘집현전장서각송서(集賢殿藏書閣頌序)’ : “多收經史, 以備講論.” 이계전의 이 기록은 실록 기준으로 세종 10년(1428년) 음력 8월 7일 이후로 볼 수 있다. (이재철(1973), 「집현전의 기능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 제30권,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133쪽에서 재인용)

354)『세조실록』권31, 세조 9년(1463년) 음력 11월 17일 첫 번째 기사 참고.

355)『성종실록』권1 성종 1년(1470년) 음력 4월 26일 : “增置藝文館副提學一員秩正三品堂上官、直提學一員正三品、典翰一員從三品、應敎一員正四品、副應敎一員從四品、校理二員正五品、副校理二員從五品、修撰三員正六品、副修撰三員從六品, 俱帶知製敎, 兼經筵春秋館職.” 수찬 이상 15명의 제도적 근거가 이것이다.

356)『성종실록』권89 성종 9년(1478년) 음력 2월 28일 : “但其職次皆六品以上官, 故初登第秩卑者不得與焉, 分任庶司, 汨沒錢穀簿書間, 雖有美質, 終無成就者, 以違朝家作成人才之意。 請於本館加設參外官正七品博士一員、正八品著作一員、正九品正字二員, 擇年少有學行者充差預養, 以次遷陞, 使久於其職, 庶幾才可有成.” 참외(참하) 4명의 신설 근거가 이것이다.

357) 성종이 분설(分設)을 발표한 성종 9년(서기 1478년 음력 3월 19일)까지를 기준한 것이다.

봉교(정7품)	공봉(供奉, 정7품)	봉교(奉敎, 정7품)	봉교, 박사(博士, 정7품)
대교(정8품)	수찬(修撰, 정8품)	대교(待敎, 정8품)	대교, 저작(著作, 정8품)
검열(정9품)	직관(直館, 정9품)	검열(檢閱, 정9품)	검열, 정자(正字, 정9품)
기타	서리(書吏)	**겸 예문관 유신(세조)**, 서리	

※ 색면(色面) 부분은 검열을 제외하고 최을두가 홍문관 배속을 해달라고 요청한 인원임.

그렇다면 최을두가 세종의 집현전 복설이 아닌 예문관의 분설(分設)을 선택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이 점은 상소를 올리기 이전, 경연에서 나온 사대부들의 발언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 이예(李芮)가 아뢰었다. "문사를 선발하여 예문관의 관직을 제수한 것은 오직 문한을 다루기 위함인데, 요즈음 이 직을 받은 자는 제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부서로 옮기니 어느 겨를에 학업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다시 연소한 자를 선발해서, 세종 집현전의 사례에 의거, (예문관에) 장기 근속시켜 다른 관직에 제수하지 않고 (내부에서) 차례로 승진시키고, 때로 사가독서하게 하여 10여 년을 넉넉히 할 수 있게 된다면 해박하고 문장도 능한[博洽能文] 학자를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신숙주가 아뢰었다. "대개 선비는 과거 급제 후 모두 출세[榮進]를 바라고 독서를 즐기지 않습니다. (학문에) 뜻이 있는 선비가 아니라면 누가 학문에 전심전력을 하겠습니까? 이예가 아뢴 것이 지당합니다." 영사 홍윤성은 아뢰었다. "신이 일찍이 세종 때의 고사에 따라 예문관원으로 하여금 산사에 나아가 독서하게 하도록 하자고 청하였을 때 대비께서, '유생은 절에 갈 수가 없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숙주도 집현전 학사로서 산사에서 독서했던 자였습니다. 대체로 문장은 반드시 전업으로 삼아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문관의 임무를 맡은 자들 중 적합하지 못한 자도 있으니, 다시 정밀하게 선발하여 제수하고 (내부에서) 차례로 승진시켜서 학업에 전력하도록 하소서."[358]

이 당시 사대부들은 세종 때와 달리 장기근속을 통한 전업과 내부 승진을 예문관 운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359] 이것은 이전 세조의 집현전 혁파와 경연의 변칙 운영으로 예종 때까지 국왕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반면, 예문관을 포함한 삼관(三館)이 태종 이래로 권학의 유풍(遺風)을 지니고 있어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집현전 혁파 후 겸예문제 등을 통해 임시적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던 예문관에

358) 『성종실록』 권41 성종 5년(1474년) 음력 4월 8일 : "講訖, 大司憲李芮啓曰: "揀選文士, 以授藝文館職, 欲專治文翰也, 今爲此職者, 除授未幾, 遽移他官, 何暇有所進業? 願更擇年少者, 依世宗朝集賢殿例, 久於其任, 毋授他官, 以次陞敍, 有時賜暇讀書, 使得優游十餘年, 則博洽能文之士出矣。 上問左右。 領事申叔舟啓曰: "凡爲士者, 自登科第, 皆慕榮進, 不喜讀書。 非有志之士, 誰肯潛心力學? 芮之所啓當矣。" 領事洪允成啓曰: "臣曾請依世宗朝故事, 使藝文館員就山寺讀書, 懿旨以 '儒生不可上寺', 不許。 如申叔舟亦以集賢殿員, 讀書山寺者也。 大抵文章, 必專業然後有成。 但今見任藝文者, 或有不稱, 更加精選授之, 以此陞敍, 以專其業。"."

359) 『성종실록』 권60 성종 6년(서기 1475년) 음력 10월 12일 : "今者藝文館官員特授外吏曹毋得注擬他職, 其培養之意至矣." 또 권75 성종 8년(서기 1477년) 음력 1월 3일 : "然非如承文院、藝文館專門久任而後習其事也,"

주목하여 이에 세종 때의 운영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다. 한 마디로 이는 고문(顧問)의 복원이 이 당시의 시급한 과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성종의 대응은 방식 면에서 사대부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석강에 드셨다. 동부승지 조위가 보고하였다. "근래 홍문관 관원이 다른 관직으로 많이 제수되고 있는데, 옛날 세종 때(世宗朝)에는 집현전 관원이 장기간 근무하여 전업하게 하였습니다. 신용개(申用漑)· 강혼(姜渾)과 같은 이들은 다른 관직을 제수하지 말고 전업하게 하거나, 혹 여유를 주어 독서하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홍문관 관원은 아니더라도, 나이 젊고 재예 있는 김일손(金馹孫) 같은 문신도 또한 여유를 주어 글을 읽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비록 홍문관 관원일지라도 어찌 한 관직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겠는가? 유독 나이 젊고 재예 있는 자만 자주 교체할 수 없고, 또 나이 젊고 재예 있는 문신이라면, 비록 다른 관직에 있더라도, 마땅히 여유를 주어 독서하게 해야 할 것이다."[360]

“특진관 성건(成健)이 아뢰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중히 여기는 것은 문장력 때문이니, 문사들에게 문장력을 갈고 닦도록 권고하는 데 소홀[疎闊]할 수 없습니다. 지경연사 홍귀달이 월과에 관해서 아뢴 것은 바로 이것이며, 사가독서도 반드시 홍문관 인원만 할 것이 아니라 문학에 능한 자를 정선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홍문관만 재주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술(心術)을 겸하여 취해 쓰는 것입니다. 다만 (홍문관도) 자주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마땅히 오랜 기간 근무케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홍문관 관원 또한 어찌 한 관직에 오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다만 국정을 맡은 관직은, 비록 학문에 힘쓰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학업에 전념할 수가 없으니 바쁜 직책으로 옮겨 제수할 수 없다." [중략] 사헌부 집의 정석견(鄭錫堅)이 아뢰었다. "예전 홍문관 관원은 여러 해 동안 갈지 않았는데, 지금은 혹은 승지, 혹은 외관에 임명되기도 하므로, 스스로 오래 근무하기로 마음먹지 않고 혹자의 경우 (다른 관직으로 승진할 것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먹도록 한 관직으로 그치게 된다 하더라도, 경전을 연구하는 것은 장차 쓰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끊임없이 힘쓰지 않는다면 어찌 나라를 빛낼 인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중략] 만일 홍문관 관원을 그 소임에 장기 근무하게 하여 고금의 사변(事變)과 예악·문장을 깨달아 재주를 이룬다면 어찌 이에 이르겠습니까?" 특진관 박건(朴楗)은 아뢰었다. "세종 때[世宗朝] 정인지(鄭麟趾)· 박팽년(朴彭年)· 성삼문(成三問) 등은 집현전 관원[集賢殿員]이 되어 여러 해 동안 갈지 않았으며, 상참도 모두 자주 입참(入參)하게 하였고, 집현전에 출근해서 날이 저물어서야 퇴근하였으니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승지와 거의 같았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비록 경연관으로 임명된 자가 아니더라도 역시 모두 입참해야 할 것이다. 사헌부 집의(정석견)의 말도 옳지만 어찌 한 사람이 한 부서에 오래 있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정석견이 아뢰었다.

360)『성종실록』권261 성종 23년(서기 1492년) 음력 1월 6일 : “御夕講。 同副承旨曺偉啓曰: ″近日弘文館員多除他官, 昔世宗朝集賢殿之員, 久於其任, 使之專業. 如申用漑、姜渾之輩, 勿除他官, 而俾專其業, 或賜暇讀書, 甚爲有益。 雖非弘文館之員, 若年少有才文臣如金馹孫者, 亦當賜暇讀書矣。″ 上曰: ″雖弘文館員, 豈可久守一官, 獨年少有才者不可數遞, 且年少有才文臣, 雖在他官, 亦當賜暇讀書。″.”

"문학하는 사람을 얻기는 쉽지 않으니, 그 자질이 있으면 양성하고 성취하게 하여 키우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관리의 재목[吏才]과 문학은 같지 않은데, 만일 오락가락하면서 나랏일을 본다면, 어찌 그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아뢰었다. "사가독서는 다른 부서에 있는 자로 학문에 재능이 있는 자로 다시 가려 채우라." 하였다.[361]

사대부들은 홍문관 설치 후 인사 운용에 불만을 보이면서 세종의 집현전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대부들이 세종의 집현전과 동일한 방식의 운영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성종은 이미 사가독서제를 모든 문신(文臣)에게 적용[362]한 바 있으며, 예문관 분설 후에 홍문관도 대상에 추가[363]하였다. 특히 이후 전경문신제(專經文臣制)[364]로 전환된 점을 감안할 때, 일련의 변화가 사대부들의 전업(專業)의 요구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자면 성종은 세종 당시 국왕과 집현전 학사들의 갈등 요인을 정확하게 인지하였고, 다시 이를 수용할 경우 다시 반복될 것을 예상하였기에 새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체 문신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렇다면 홍문관의 체직(遞職)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전교하였다. "이문(吏文)을 진강할 수 있는 자는 김자정(金自貞)과 이창신(李昌臣)뿐이다. 사헌부 집의 이명숭(執義 李命崇)을 홍문관의 관직 중 품계와 관직이 맞는 곳으로 바꾸어 임명함이 어떻겠는가?" 도승지 이길보(都承旨 李吉甫)와 동부승지 오순(同副承旨 吳純)이 아뢰었다. "마땅합니다." 좌승지 노공필(左承旨 盧公弼)·우승지 이세좌(右承旨 李世佐)·좌부승지 성준(左副承旨 成俊)·우부승지 김세적(右副承旨 金世勣)이 아뢰었다. "비록 집의로 진강

361)『성종실록』권264 성종 23년(1492년) 음력 4월 16일 : "成健啓曰: "中朝之重我國者, 以有文獻也, 文士勸勵之方, 不宜踈闊。 貴達所啓月課之事誠是, 且賜暇讀書, 不必弘文館人員, 又精選有文學者爲之可也。 弘文館豈必盡得有才之人, 兼取其心術而用之。 但不宜數遞, 須積年久任。" 上曰: "弘文館員亦豈宜長在一官? 但治事之官, 則雖欲力學, 必不得專業, 不可移授劇職也。" 貴達曰: "弘文館在密近之地, 法司不得檢覈, 官員多不勤仕, 請自今特命糾擿, 或使政院檢擧。" 錫堅曰: "昔弘文館人員, 累年不遞, 今則或爲承旨, 或任外官, 故皆不以久遠自期, 或有希望之心, 窮經將以致用, 雖不可終老一官, 然若是不已, 豈得華國之才? 先王朝主文者, 若有故則人知主文之有歸, 蓋物論已前定故也。 近者主文無人, 至於收議而定之, 無乃傷於大體乎? 若弘文人員, 久於其任, 知古今事變禮樂文章, 以成其才, 則豈至如是乎?" 特進官朴楗啓曰: "世宗朝鄭麟趾、朴彭年、成三問等, 爲集賢殿員, 累年不遞, 至於常參, 亦令專數入參, 仍仕進本司, 日暮而罷, 早晚與承旨略同。" 上曰: "雖非經筵當次者, 亦全數常參可也。 執義言亦是, 然一人豈可長在一司耶?" 錫堅曰: "文學之人, 未易多得, 有可爲之資, 則培養成就, 以大其才可也。 且吏才與文學不同, 若出入治事, 則豈能專業乎?" 上曰: "賜暇讀書, 更擇他官有文學者補之。"."

362)『성종실록』권68 성종 7년(1476년) 음력 6월 14일 : "議政府、吏曹、館閣堂上擇賜暇讀書文臣以啓, 吏曹正郎蔡壽成均館直講權健、司憲府監察許琛、奉常寺副奉事兪好仁、及第曺偉、承文院正字楊熙止." 실록 상으로 사가독서 절목이 정해진 성종 7년(1476년) 음력 6월 4일 전후로 보인다.

363)『성종실록』권114 성종 11년(1480년) 음력 2월 11일 : "凡人才成就, 在於業專。 今國家置弘文館, 選年少文臣任之, 欲其才學之成就也, 然不能專心於學, 請依祖宗朝故事, 賜暇讀書, 俾專其業." ;『성종실록』권115 성종 11년(1480년) 음력 3월 20일 : "命弘文館員每賜暇三人, 相遞讀書于山寺."

364)『성종실록』권137 성종 13년(1482년) 음력 1월 3일 : "傳曰: "來初五日, 堂下官文臣殿講, 優等者當賜鞍具馬。" 試官洪應來啓曰: "文臣多不可聚一處講之。 請分三所, 四書中二書、五經中一經, 抽籤以講, 其中格者殿講。" 從之." ;『성종실록』권137 성종 13년(1482년) 음력 1월 17일 : "命議文臣專經可否."

한다 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전교하였다. "(관직을) 바꾸어 임명하라."[365]

상기 기록은 사헌부 관원을 홍문관 소속으로 체직시키는 내용으로, 두 가지 점에서 홍문관 체직의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집의로 진강한다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라 말한 것은 양사 관헌의 경연관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는 세종 때부터 확립된 관행이 성종 때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성종이 홍문관 소속으로 옮긴 것은 타관으로 체직하는 것에 제약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미 앞서 보았듯이 성종은 홍문관을 문한(文翰)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여러 관직과 직임(職任)의 경험을 위해 열린 인사 운영을 허용하고 이로 인해 성종이 경연의 시사 강화와 정치적 기능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종 시대 경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신이 홍문관 · 예문관 관원의 공사(供辭)를 보니."[366]

한편 홍문관 설치 후 등장하는 '공사'라는 표현은 성종의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이다. '공사'는 신문(訊問)에 대해 구술로 답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타관에 대한 논핵을 상징하는데[367], 이후에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명확히 언급된 점[368]에 비추어, 성종이 홍문관과 예문관에 이런 권한이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경연관 자격을 갖춘 문한관(文翰官)들이 이전에 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은 세종 말년 집현전의 언관화 경향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처럼 성종이 이를 수용한 것은 경연을 언로(言路), 즉 군신 간 소통의 장으로 정립한 것이다. 성종의 이런 운영 방식은 세조의 그것에 대한 반면교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이후 국왕 교육 제도의 관행으로 정착되는 중대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중종 이후 이 방식을 하나의 전형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종 시대의 홍문관은 점차 언론 기구의 모습을 띄게 된다.

임금이 주현(州縣)을 선별하여 직숙하는 경연관을 나누어 보내어서 부정을 적발[摘奸]하게 하였는데, 홍문관 직제학 안침(弘文館直提學 安琛)은 경상도 곤양에 가고, 부수찬 김수동(副修撰 金壽童)은 전라도 장흥에 가게 되었다.[369]

---

365)『성종실록』권137 성종 13년(1482년) 음력 1월 21일 : "傳曰: "吏文進講者, 只金自貞、李昌臣耳。執義李命崇, 弘文館職次相當處, 換差何如?" 都承旨李吉甫、同副承旨吳純啓白: "允當。" 左承旨盧公弼、右承旨李世佐、左副承旨成俊、右副承旨金世勣啓曰: "雖以執義進講, 恐無妨也。" 傳曰: "其換差。"."

366)『성종실록』권92 성종 9년(1478년) 음력 5월 1일 : "臣見弘文、藝文館官員供辭."

367)『성종실록』권91 성종 9년(1478년) 음력 4월 27일 첫 번째 기사 참조.

368)『성종실록』권112 성종 10년(1479년) 음력 12월 17일 : "其時論劾元濬父子者, 弘文、藝文兩館, 無慮數十餘人,"

369)『성종실록』권160 성종 14년(1483년) 음력 11월 10일 : "上抽籤州縣, 以直宿經筵官, 分遣摘奸, 弘

임금이 추첨하여 홍문관 교리 민사건(弘文館校理 閔師騫)을 진잠(鎭岑,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동 일대)에, 수찬 박문간(修撰 朴文幹)을 청송(靑松)에 보내어 수령의 불법한 일을 적발하게 하였다.[370]

홍문관 소속 학사들이 지방에서 부정을 규찰(糾察)하게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확실히 성종 재위기의 새로운 풍경이었다. 특히 경연관 겸직을 맡은 학사들에게 이런 직접적인 임무를 부여한 것은 세종 당시 집현전 학사들의 단점으로 지적된 부족한 실무 경험("더벅머리 선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경내외(京內外)를 가리지 않고 국정의 현황을 살펴보게 하게 함으로써, 경연에서 다뤄지는 시사(정무협의)와 고문의 수준도 함께 상승시킬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 이 조치는 이로써 경연 운영의 활성화를 유인함으로써 국정의 중심으로서 경연 제도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홍문관과 간관인 양사(兩司)의 참상관들을 청요(淸要)로 만든 하나의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경연관 중 특진관(特進官)을 신설한 것도 조선 경연의 제도적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2품 이상 고문(顧問)이 될 자격을 갖춘 자를 골라 날마다 돌려가면서 참시(參侍)하게 하여 이름을 특진관이라 하셨다.[371]

특진관은 다른 경연관과 책임과 권한이 동일하지만[若論思則自有經筵官][372] 인사 상으로는 별정직(別定職)[373]인 겸직으로, 경연 당상과 함께 국정에 대한 자기 경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자 성종 주도로 마련되었다. 이 보직의 신설은 이념적으로 유교 본연의 숭현(崇賢)에 부합하는 등의 순기능을 가지며, 국왕 스스로 이 정책을 주도함으로써 경연을 중심으로 국가 경영을 할 뜻을 분명하게 내비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연의 제도적 운영에 유교의 이념[求賢, 崇賢]이 명확하게 반영된 만큼, 성종에 의해 경연 활동이 곧 교육과 정치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교화(敎化)로

文館直提學安琛往慶尙道 昆陽, 副修撰金壽童往全羅道 長興."

370) 『성종실록』 권160 성종 14년(1483년) 음력 11월 27일 : "上抽籤, 遣弘文館校理閔師騫于鎭岑, 修撰(朴文幹)〔朴文幹〕於靑松, 摘守令不法事."

371) 『성종실록』 권297 성종대왕 묘지문 : "寵待講官加以異數, 每於經筵孜孜聽受, 猶以爲未廣。 擇二品以上可顧問者, 輪日參侍, 號爲特進官."

372) 『성종실록』 권191 성종 17년(1486년) 음력 5월 7일과 권272 성종 23년(1492년) 음력 12월 25일.

373) 현재 법령 상 별정직은 보좌 업무 따위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경연특진관은 성종 17년(1486년) 기존의 경연관 이외에 별도로 둔 경연관으로 5년 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운영되었으며, 보통 현직 문관 3품 이상이나 문무 음관(陰官) 2품 이상으로, 의정부, 육조, 한성부의 벼슬을 역임한 사람들 가운데 홍문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였다. 다만 특진관은 그 법령적 근거를 대전(大典) 등 성문법 상에 두지 않고 관례적으로 운영되었다.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진관 임명의 대상이 경연의 주제에 따라 동서반(東西班)을 아우른다는 점도 성종 시대 경연 운영의 특징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명회(領事 韓明澮)가 아뢰었다. "지금 문신의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상은 특진관으로 삼으셨으나, 무신(武臣)은 전혀 허용하지 않으시니 불편합니다. 청컨대 문·무(文武)를 막론하고 입시하게 하소서."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특진관 김승경(特進官 金升卿)이 대답하였다. "국경[邊鄙]의 일은 무신(武臣)이 반드시 알아야 하니, 만약 접견하신다면 각기 생각해둔 바를 진술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처음 문신만 입시하게 한 것은 경연 때문이었다. 앞으로 문·무(文武)를 막론하고 아울러 입시하게 하라."[374]

가령 성종이 당시 북벌[375]에 맞추어 무신(武臣)의 특진관 선발을 허용한 점은, 앞선 세종, 세조 등 변방의 대소 정벌이 있었던 시기에도 시행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특진관 제도로 인한 경연의 기능적인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홍문관의 분설과 전경문신제가 교육적 측면에서 경연의 책임성과 안정적 운영을 동시에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면, 특진관 제도는 시의성 있는 주제에 맞추어 관련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경연의 정치적 기능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성종의 이러한 조치들은 그가 세종의 집현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하게 대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특진관 운영의 시의성은 인사의 재임 기간에서도 드러난다. 성종은 재위 17년부터 총 53명의 특진관을 부임시켰는데, 그 중 1년 부임인 경우가 23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43%를 차지한다.[376] 이처럼 특진관의 부임 기간을 짧게 한 점은, 기존 연구의 주장처럼 재상과 언관 사이의 완충적 역할[377]이라기보다, 시기별 국정 운영 당시 주제와 여론 동향에 따라 임명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야 경연 내 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제도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후기로 갈수록 현직 관료가 아닌 경우에도 특진관 임용의

374) 『성종실록』 권191 성종 17년(1486년) 음력 5월 28일 : "御經筵。 講訖, 領事韓明澮啓曰: "今文臣嘉善以上爲特進官, 而武臣不與, 未便。 請勿論文武入侍。" 上顧問左右, 特進官金升卿對曰: "邊鄙之事, 武臣必知之, 若許接見, 則各陳所蘊, 裨益必多。" 上曰: "初只令文臣入侍者, 爲經筵也。 自今勿論文武, 竝令入侍."

375) 상기 언급된 무신의 경우, 재위 시절 진행된 건주여진정벌(建州女眞征伐)에 관한 것으로 시의성을 갖춘 선발이었다.

376) 송영일(1998), 「조선 성종조 경연 진강 연구」,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 한문교육전공 박사학위 논문, 15쪽.

377) 하덕남(2003)은 특진관 제도가 신설된 재위 17년 이후부터 이 경향이 매우 심해졌다고 하는데(31쪽), 이것으로 특진관 제도를 재상과 대간 등 언관 사이의 갈등을 완충시키는 기제로 보게 한 배경(30쪽)이 되기도 한다. 또한 경연 당상으로 참여한 의정과 대신이 삼사의 탄핵에 위축되었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50-51쪽) (「조선 성종대의 경연과 경연관」,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기회를 열어놓음으로써[378] 경연이 폭넓은 공론 수용의 장으로도 기능하게 된다.[379] 결국 이후 특진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성종의 이 조치가 당초에 목적했던 경연 활성화 도모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성종 재위기 경연 운영의 특징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7 참고)

[표 7 : 홍문관의 기능과 상호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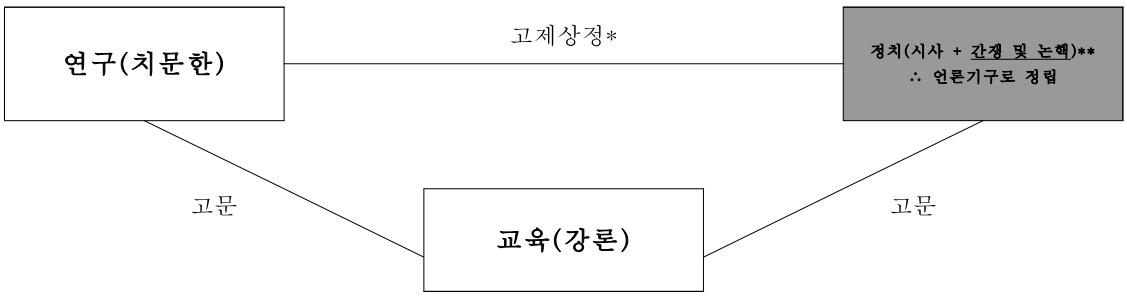

* 사가독서는 전경문신제와 더불어 대상을 문신 전체로 확대

** 특진관 신설로 시사 기능의 강화 도모

우선 세종 말년부터 나타나기 시작된 경연 기구의 언관화가 이 시기에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왕실 불사에 대한 비판을 매개로 가속화된 집현전의 언관화는 한편으로 경연 기구의 혁파를 부르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홍문관을 분설하면서 간쟁 및 논핵까지 허용함으로써 경연이 국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한다. 더욱이 성종은 홍문관 학사들을 지방 규찰에 파견하는 등, 어사(御史)와 다를 바 없는 권한을 부여하여 경연의 시사(정무협의) 기능을 실효적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연구 - 교육면에서 전경문신제를 통해 전업에 대한 요구를 다른 방식으로 보완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홍문관이 직능 면에서 변화를 꾀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히 경연을 조선 국정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도 상당히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 문한관(文翰官)의 자유로운 인사이동 허용은 이를 둘러싸고 지속되었던 갈등을 해소시켰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종 때 국왕과 집현전이 심각하게 반목한 까닭은 기구와 인사 운용에 관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었

378) 인조 이후 산림(山林)이 서연관의 당상(찬선, 진선, 자의)에 임명되었고, 이들이 서연뿐만 아니라 경연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영조 즉위년(1724년) 음력 9월 26일 1번째 기사에 "현종(顯宗)께서 동궁에 계실 적에는 빈객 이외에 산림의 선비들까지도 같이 서연에 들어오게 했는데 더구나 경연이겠는가? 나는 낮 소대(召對) 때에 경연관과 특진관으로 하여금 돌아가며 들어와서 토론하게 하려고 한다"는 언급이 이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79) 다만 경연 기구의 이런 변화를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와그너의 경우, 연산군 시대의 사화를 재평가하면서 "삼사 - 대신 - 국왕' 간의 알력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그 시작이 언론기구로 전화(轉化)된 홍문관을 포함, 삼사의 발언권 증대로 보았다. 즉, 그는 이 간쟁권의 증대로 왕실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최선혜(2012),「연산군 시대 선왕 세조와 성종에 대한 기억과 충돌」,『서강인문논총』제35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89쪽.

다. 성종은 기구 운영에서 비롯된 이런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아 사가독서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전경문신제) 종신 전업의 원칙을 포기(인사이동의 허용)함으로써 경연과 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홍문관은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였고, 경연 제도 역시 시사(정무협의)의 강화를 통한 공론 정치라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경연 제도는 윤대, 또는 상참과 결합한 대표적 의례로 자리 잡게 되었고, 성종은 홍문관을 경연 기구로서 뿐만 아니라 문한(三館)과 언론(三司)의 성격을 갖춘 독특한 기구로 성장시켰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연 내 별정직(특진관) 신설로 공론 정치로의 이행이 가능한 제도적 시의성이 확보된 것이다. 성종은 고문(顧問)의 강화를 목적으로 직접 경연 당상에 해당하는 특진관의 신설을 주도했으며, 그 대상으로 점차 서반(무반)까지 포함시키고 대체로 1년 임기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재야의 현인을 중시하는 유교 사상의 특징[崇賢]과도 일치되는 동시에 경연 주제를 확장하여 시사(정무협의)의 시의성을 강화시켰다. 또한 경연관의 이런 증설은 이후 소위 산림직(山林職)으로 불리는 직제를 서연관과 학교 교관에 증설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조선 중기 이후 이른바 숭용산림(崇用山林)의 문화를 정착시키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성종은 세종이 윤대, 또는 상참과 경연을 결합시킨 데에 이어 다시 한 번 경연의 제도적인 변화를 주도하여 그 안착을 이뤄냈던 것이다. 이것은 조선을 사회적으로 성리학적 국가로서 확정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3. 소결 : 조선 국왕 교육의 정립

세종 사후 집현전의 언관화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즉, 문종의 단명과 단종 재위 중 국정 혼란으로 인해 경연 담당으로서 연구 - 교육 업무는 감소한 반면, 세종 말년 세자첨사원 설치 전후로 발생한 인사 상 관행(양사 겸직과 순차적 체직)은 정착되며 점점 언론 기구처럼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이미 체직하여 조정 곳곳에 옮겨 간 선진과 더불어 하나의 세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빌미가 되었고, 양사 겸직은 경연관 겸직과 함께 당시의 정무를 책임진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경연과 연관을 맺으며 그 위상을 정립한 집현전은 점차 간쟁의 권한까지 확보하면서 다소 그 운영의 방향성을 잃어 버렸던 것이다. 한 마디로 집현전이 이미 경연 기구보다 언론 기구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더 이상 이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조가 문한관(文翰官)에 불신을 갖게 되면서 단종 복위 사건을 계기로 집현전을 혁파함으로써 경연 제도 역시 존폐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경연을 시행하던 즉위년에도 세조는 여전히 이의 운영에 개입하려고 하였으며, 이로도 여의치 않게 되자 정치적 사건을 일으켜 혁파하게 된 것이다. 세조 2년에 시

행된 이 조치 이후 예문관이 잠시 집현전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하지만, 경연관의 구성은 매우 소략해지고 운영 주도권 또한 국왕에게 넘어갔던 것이다. 심지어 기존의 경연청 편제를 무의미한 관직(冗官)이라는 이유로 혁파한 것은 경연관의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 줄여 국왕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경연청의 폐지는 다시 복구할 의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세조와 사대부 간의 갈등은 아주 깊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세조 재위기 중 국왕 교육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세조 본인도 계속해서 경연을 폄훼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내뱉는 등, 이전 형태의 운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함으로써 경연의 제도 존폐 논란이 지배층의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세조는 경연을 초입사(初入仕), 또는 미출사(未出仕) 선비들의 등용문으로 사용하거나 본인 주도의 학문적, 정치적 주제를 논의케 하는 용도로 운영하였으며, 사대부들의 주장처럼 성인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 송나라에서 한때 잠깐 운영한 것으로 언급하는 등, 제도의 복구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당연히 경연의 정상화 여부는 그 후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과 동시에 사대부들로 하여금 세조 시대의 정치를 비판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이로 인한 갈등은 세조의 직접 후계자인 예종 재위 초에 바로 나타났다.

그 출발점은 경연 정상화에 대한 예종의 미온적인 태도였다. 재위 초 예종은 세조와 달리 경연 당상과 시강관(侍講官) 6명을 두었으나 재위 1년 초까지 경연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예종의 구언령에 응한 신하들이 경연 참여를 요구하자 '선왕(세조)에 대한 비방'으로 간주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등,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이것은 곧바로 경연 재개를 할 경우 부왕(세조)의 입장을 비판해온 사대부들의 주장을 용인하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으로, 오히려 부왕(세조)의 유신(儒臣) 불신을 명분으로 삼아 그 정치적 부담을 크게 덜려고 했던 것이었다. 동시에 부왕(세조)의 유교(遺敎)를 방패삼아 사대부들이 자신에게 강하게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려고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예종이 사망한 의경세자를 대신하여 저위(儲位)를 이음으로 인한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낸 결과였다.

그러나 예종의 이런 태도는 곧바로 사대부들로부터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사대부들은 부왕(세조)의 부음(訃音)과 자신의 고명(誥命)을 요청하는 사절에 대한 명나라의 답방이 이뤄지는 외교적 상황을 이용하여 경연의 재개를 추진하였고, 예종도 내외의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여 이에 잠깐 응함으로써 그 제도적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 더욱이 이전 유훈통치(遺訓統治)의 여파로 종친과 대신들이 정사를 위한 고문(顧問)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문제가 유발된 점도 이에 한 몫을 하게 되었다. 결국 예종은 명나라 사신이 돌아간 이후 부왕(세조)의 방식으로 경연을 시작한 뒤 점차 예전의 모습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국왕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이것은 예종이 훙서(薨逝)하는 즉위 1년 음력 11월 이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는 성

종 대에 나타날 경연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실질적인 정상화는 성종 때 이뤄졌다. 정희왕후 윤씨는 수렴청정 당시 국왕의 보령(寶齡)을 고려하여 단종 때의 전례를 따라 교육에 중점을 둔 경연을 진행하였다. 정희왕후와 사대부들은 어린 국왕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원상제(院相制)를 도입하는 한편, 단종의 경우처럼 1일 3강의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국왕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데 주력했다. 당연히 이것은 어린 국왕의 교육을 명분으로 예종 때까지 실현되지 못한 경연의 제도적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수순이었으며, 이때 사대부들은 성종의 호학(好學)적 자질을 확인하며 경연 기구의 복설도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을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철렴(撤簾) 이후인 재위 9년, 예문관 봉교 최을두가 성종에게 올린 제안이다. 정리하자면 경연과 그 담당 기구 모두를 회복하는 것이 사대부 입장에서 제도적 정상화의 기준이었던 것이다.

최을두의 상소에 담긴 경연 기구의 복설 방식은 바로 예문관의 분설(分設)이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방식은 사관 겸직의 철폐를 통한 관직 설치의 원칙[設官分業] 회복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세조 때 설치된 겸예문(兼藝文)으로 증설된 참외관(參外官)들을 독립 기구로 배속시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집현전 폐지 후 경연관 역할 중 일부를 예문관이 맡고 있었고 초입사 관료들이 거치는 삼관(三館) 중 하나였던 만큼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즉, 예문관이 집현전처럼 선진과 후진을 교대로 순환시키고 문사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된 만큼 이를 위해 증설된 참외관을 중심으로 기구를 분리시키기에도 용이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 비추어 이 예문관 분설의 목적이 처음부터 경연 담당 기구의 복설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요구에 대한 성종의 태도이다. 성종은 예문관의 장서각이었던 홍문관의 직제를 실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참외관의 겸직 해제를 허용함과 동시에 당하 직제를 상호 보완적인 직제로 만들어 업무의 연장성을 확보[380]하였다. 또한 성종은 전경문신제의 시행으로 문신 전체의 학문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연 운영에 대한 홍문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유로운 인사이동과 간관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언관화 경향까지 수용하였다. 이는 세조의 혁파 이후 종신 전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사대부들과 확연히 달라진 점으로, 경연에서 시행되는 교육과 정치 두 기능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였다. 왜냐하면 문종 초년부터 집현전 소속 학사들에게 나타났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그런 방식의 운영이 보인 단점과 불만 요인을 확실하게 제거해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성종이 경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選任) 별정직인 특진관을 신설한 것도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재위 17년부터 신설된 이 직제는 경연 당상에 준하

380) 대표적으로 응교와 부응교, 교리와 부교리, 수찬과 부수찬을 들 수 있다. 응교 2인 중 1인을 다음에 교체할만한 인물로 두려했다는 성종의 발언을 참고한다면, 이후『경국대전』에서 당하 직제를 이처럼 정부(正副)로 분리해둔 것도 같은 취지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는 위치로 대체로 1년 안팎의 임기로 운영되었으며, 주제에 따라 문신뿐만 아니라 무신(武臣)까지도 가리지 않고 임용하였다. 이것은 대상과 임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연 고문의 강화와 주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경연 제도를 유교 본연의 이상인 숭현(崇賢)의 정신에 따라 운영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조 이후 조선은 숭용산림(崇用山林)의 분위기 속에 서연관과 학교의 교관에도 선임 별정직의 신설이 일어나고, 경연 제도의 개선 이후 국왕이 소위 사대부의 공론(公論)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풍조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성종 시대에 확정되어 승계된 것이었다.

결국 성종의 경연은 세종 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그와 다른 새로운 경연 방식을 확립시켰다. 여기서 시작된 이른바 공론정치(公論政治)는 16세기 이후 주체적으로 발전한 성리학 이해와 붕당(朋黨)의 발생으로 이어졌으며, 조선은 중국에 비해 경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제도가 잘 정착하였다. 그것은 경연에서 연구 - 교육에 치중하려 했던 세종과 달리 성종이 교육과 정치를 균형 있게 운영하려고 한 결과였다. 다만 이로 인해 새 경연 기구인 홍문관이 사실상 언론 기구로 자리 잡게 된 점은 국왕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 별도의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후 국왕 교육의 제도적 발전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분명 그것이 내놓은 성과와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술적 성과와 별도로 제도 운영이 확실히 고착화된 경우인 만큼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요약 및 결론

국왕 교육 과정은 제도로서 경연과 서연을 모두 가리키며, 그 활동은 국왕의 덕을 진작하도록 장려하는[勸進君德,『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총서] 것을 말한다. 즉, 교육 방식으로 하·은·주 삼대(三代)의 체험, 곧 역대 치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한 경사(經史)의 내면화를 도모하여 성군(聖君)의 통치라는 삼대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381] 이를 위해 사대부들은 전조(前朝, 고려)에서 형식적 의례에 불과했던 국왕 교육 제도의 운영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위화도회군 이후 개혁의 과제로서 여러 차례 정비하여 조선 건국 후 이를 승계시켰다. 따라서 조선 국왕 교육 제도의 위상에 성리학과 신진 사대부의 등장이 심중한 요인임은 분명하며, 여말선초 중 진행된 제도 개혁의 논의가 이 제도의 정착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조선의 경연이 운영 면에서 각각 기대되는 공효(功效)가 다른 두 활동을 융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과연 하나의 제도 안에서 심성의 배양(교육)과 삶의 적용(정치)이라는 두 가지 활동 목적이 과연 어떻게 달성될 것인가?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여말선초 국왕 교육의 발전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새로운 지배층들이 바라는 국왕의 모습과 그 기획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후 조선 건국 후 제도적 운영 속에서 이 기획이 의도대로 달성되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조선의 경연 기구가 이 기획 속에서 고려의 그것과 달리 어떻게 운영되고 발전하였는지도 살펴보았다. 이 점은 국왕의 주요 의례로서 경연이 자리를 잡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로써 중기 이후의 국왕 교육 제도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본 논문에서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여말선초 경연을 살펴보았다. 사대부들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선택한 방식은 교육(강론)과 정치(시사)의 융합으로, 창왕 때 경연청에서 그 대체가 드러나고 공양왕 때 최종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보직겸관(補職兼官)을 맡은 관헌들이 순번에 따라 입시하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국왕이 참여를 해야만 하는 하나의 의무[日御經筵]로 여겨지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방식은 경연을 처음 제도화된 중국(송나라)부터 성리학자들에서 유래한 것이며, 위화도회군 이전까지 수행했던 방식 및 목적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 빠르게 제도적 정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말에 등장한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 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특히 이제현 등에 의해 그 대강(大綱)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었다.

---

381) 강태훈(1997),「경연의 교육학적 접근」,『교육연구』제18호, 원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3쪽.

이처럼 여말선초의 제도화 과정은 지배층의 성리학 수용이 경연 내의 활동을 교육적인 의미로 새롭게 해석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교(성리학)에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은 '인성(人性)'이며, 성리학적 교육은 이에 반하는 인간의 행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일찍이 유가는 이를 위해 예교(禮敎)라는 통치 방식을 제안해왔는데, 성리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왕의 교육적 활동 참여를 체계화했던 것이다. 이 활동은 '훈도(薰陶)', 곧 덕의 발양(發揚)을 목적으로 한 인격적 관계의 형성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국왕을 만들려는 것으로, 그를 '정치적 지도자(君)이며 인류의 스승(師)'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경연의 활동은 이러한 성리학적 관념의 모본(模本)으로서 그들이 지향하는 인간과 삶을 실증하는 장이었던 것이다.

2장은 이 점에 비추어 "왜 신진 사대부들이 일찍부터 경연에 주목하고 활성화하려 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신진 사대부들은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충목왕 이후 경연을 개혁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공민왕의 등장과 함께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활성화가 본격화된 것은 위화도 회군 이후 등극한 창왕 때부터이며, 이후 공양왕 때까지 몇 차례 정비 과정을 거쳐 새 왕조에 적용하였다. 다만 이런 숙의와 정비에도 불구, 조선도 국초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보이지 못했는데, 국왕들이 그 운영의 목적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본 장은 여말부터 태종까지 국왕 교육 과정의 제도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한 편, 오랜 준비에도 목적대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 과정을 함께 다루었다.

더불어 본 논문의 논의 방식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바로 여기서 집현전은 경연 담당 기구로서 한정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기존 연구가 집현전을 다양하게 규정한 만큼 이 방식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초 설치 과정을 전반적으로 통찰했을 때 집현전이 대체로 경연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현전이 본래 고려 경연 담당 기구였던 보문각(寶文閣)의 부속 전각인 연영전(延英殿)의 명칭 중 하나였던 점은 이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다. 따라서 집현전은 이전에 없던 것을 조선에서 신설했다기보다 경연을 담당했던 옛 왕조의 기구를 '복설(復設)'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세종 초의 복설은 이전부터 누적된 논의의 결과라는 것이다. 집현전 복설에 관한 언급은 정종 때부터 있었으며,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무용한 기구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집현전은 당상과 예문관 및 교서감(校書監) 인원의 겸직으로 이뤄졌으며, 이 당상 중에 경연관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연구(토의)를 중점으로 두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종에 이르러서는 예문관의 강화와 함

께 집현전 복설 논의가 단속적으로 재개되었으며, 그 기구의 운영 목적도 점차 교육(인재 양성)으로 확대시키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런 논의들 때문에 세종은 즉위 초에 복설과 운용을 빠르게 이뤄낼 수 있었으며, 초기 운영 형태로 봐도 고제상정(古制詳定)과 연구(토의) 위주로 잡힐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속한 제도적 정착은 모두 옛 왕조의 경험을 잘 참고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음 세종은 단순히 기존 전통의 승계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혁신하여 기능적인 측면에서 재창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은 집현전에 소속 학사를 두고 장서(藏書), 교열(校閱), 강론 등의 역할을 수행했던 보문각처럼 고제상정(古制詳定)과 강론의 형태로 운영하는 동시에 조선 경연의 시사(정무협의)의 강화를 위해 세종 때 새로 신설한 상참, 윤대 등 국왕의 정치 의례와 결합하여 경연의 고문(顧問)을 보강시켰다. 이것은 경연을 단순한 형식적 의례로 운영하던 고려보다 제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다양한 정치 의례에도 참여시켜 실무 경험과 소통 증진을 도모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연에서 나온 논의는 충분히 숙성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었고, 학습량 또한 충분히 보장되어 학행일치(學行一致)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종의 집현전은 두 가지 특징을 나타냈다. 하나는 경연 기구 직능의 전형(典型)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세종의 집현전은 태종 때 설치된 의례상정소와 더불어 고제의 상정(연구)을 주도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경연(교육 및 정치) 및 기타 국왕 의례(정치)에 참여하면서 기구 위상이 강화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난 경연의 운영 방식은 이후 설립된 모든 경연 기구들이 집현전을 모본(模本)으로 거의 고스란히 계승하게 되었다. 가령 집현전 혁파 후 세조와 예종 때 주로 경연관으로 참여한 예문관이나 성종 때 이로부터 분설(分設)된 홍문관 역시 기본적으로 세종의 집현전 운영을 참고하고 있으며, 세조 당시 이른바 친강(親講)으로 불린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에서도 경연 기구를 통한 사대부 주도의 운영을 정상화의 기준으로 다수 거론되기도 하였다.

다른 하나는 세종 말년부터 나타난 경연 기구의 언관화(言官化) 경향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왕실의 불사(佛事)를 간쟁한 것에 맞춰져 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세종의 장기근속과 내부 승진 요구에 있었다. 경연 기구 직능에 나타난 전형성이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집현전의 국왕 교육 전임(專任) 때문이었지만, 세종의 기대와 달리 집현전 학사들은 기회 될 때마다 인사이동에 관심을 보였다. 세종은 이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 오히려 장기근속(종신전업)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집현전 학사들의 불만은 점차 누적되어 가고 있었다. 따라서 왕실 불사 문제로 터진 간쟁은 현실 정치 참여의 길이 막힌 집현전 소속 학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종신전업 요구 이후 오래 곪아가고 있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경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 또한 불가피하게 되었다.

바로 이와 관련해 살펴봐야 할 시기가 당시 세자(문종)의 대리청정 기간이다. 세종은 와병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세자(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겼는데, 이때 이례적이고 전무후무한 보좌기구인 세자첨사원(世子詹事院)을 신설한다. 무엇보다 이 기구가 국왕 교육과 관련하여 다뤄져야 할 이유는 참여 대상으로 집현전 소속인 서연관을 포함시켰다는 것 때문이다. 특히 이 점은 문종 즉위 후 문한 기구와 임시 기구(도감)에 나타난 인사 운영 방식을 교차 검증함으로써 보다 잘 드러나는데, 선후배의 교체를 통한 인사이동과 체직과 겸직의 허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이런 인사 관행을 통해 세자첨사원이 집현전의 불만과 세종의 운영 방침 사이에 절충의 산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여파가 단종 복위 사건 이후 경연과 집현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에도 영향을 끼쳤음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3장은 세종의 집현전을 제도적 정착 과정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켰다. 앞서 언급했듯 세종은 고려의 제도와 국초 나온 논의를 종합하여 경연 기구의 운영에 성공하였으며, 경연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국왕 의례와 집현전을 연계시켜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것은 세종의 호학적 기질과 경연의 제도적 활성화가 맞물린 결과로 기구 직능의 전형성도 바로 이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분명 이것은 이전까지 경연 운영의 핵심 쟁점이었던 활성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 성공이 이후 독으로 작용하면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집현전이 왕실의 불사를 매개로 간쟁에 적극 참여하면서 언관처럼 행동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세종도 세자첨사원 설치라는 다소 전무후무한 방식의 해결책을 도모하게 되었다.

또한 4장은 세조 전후 경연 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해소 과정을 이야기하였다. 세조는 경연과 집현전에 대해 매우 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단종 복위 사건을 계기로 이 둘을 혁파하는 초유의 결단을 내리게 된다. 이와 동시에 사대부들의 반발에 대비하여 세조는 친강(親講)이라는 변형된 경연 운영을 시도하는 동시에 겸예문제(兼藝文制)로 경연 기구 부재를 보완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보인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대부들의 반발은 무마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세조 역시 세종 말년과 같은 유신(儒臣) 불신을 드러내게 된다. 세조의 이런 태도는 세종 말년부터 단종에 이르기까지 집현전이 점차 경연을 매개로 비대해진 것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였으며, 이후 이 갈등의 해결이 경연 제도의 복원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직접 후계자인 예종은 경연에 대한 오락가락한 태도로 오히려 사대부들과 갈등만 빚었다. 먼저 예종은 즉위 초 유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부왕(세조)의 유교(遺敎)를 빌미로 구언령(求言令)에 응한 몇몇 인사들에게 과도하게 반응하면서도 부왕(세조)처럼 친강 대신 혁파된 옛 체제에서 유래한 당하 경연관만 선임해두었다. 이런 예종의 모호한 입장 때문에 사대부들은 명사(明使)의 조선 체류 기간 중이었던

음력 4월 한 차례 황제 하사품으로 들여온 경전을 핑계로 경연 재개를 요구했다. 이는 예종이 곧바로 기존 경연 방식으로 재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 해석하였다는 증거로, 구언령 파문 이후 사대부들이 점진적인 방법으로 경연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경연 재개에 대한 거부감을 낮춤으로써 예종에게 참여의 명분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예종 역시 부왕(세조)과 같은 방법으로 국정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었다. 즉, 즉위 초 구언령에 응한 인사들에 대한 과도한 반응의 여파로 점점 종친과 대신들이 고문에 응하지 않자, 예종은 점차 경연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실제로 훙서(薨逝)하기 2개월 전까지 예종은 부왕(세조)의 방식으로부터 점차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는 등, 진전된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고, 특히 기존 방식으로는 한 달 사이 무려 두 차례나 연속으로 진행하는 등, 부왕(세조)의 방식을 포기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초창기 지나친 대응의 이유가 예종 자신과 부왕(세조)이 상충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럼에도 결국 사대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예종 스스로 국정을 주도할 만큼 역량이 충분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연히 조선 경연의 정상화 문제는 성종 시대에도 계속 이어졌지만, 즉위 초와 철렴(撤簾) 이후의 상황은 다소 간 차이가 있었다. 즉위 초 대왕대비인 정희왕후 윤씨는 사대부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단종 때를 참고하여 경연관의 편제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대소사를 대왕대비가 주관하는 만큼 성종의 의지와 무관한 것이었지만, 어린 성종이 호학적 기질로 경연 참여에 열성을 보임에 따라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그 방식도 정치적 고문의 역할보다 상대적으로 훈육(訓育)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성종이 왕위 계승자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점에 유의하여 운영되었다. 따라서 정희왕후 윤씨의 수렴청정 기간 중 진행된 국왕 교육은 단지 그 편제와 운영 방식을 집현전 혁파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정도에 만족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경연에 대한 성종 본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문관 봉교 최을두가 올린 상소에 대한 그의 비답(批答)이다. 먼저 상소에 따르면 최을두는 세조가 낭관이나 유림(儒林)의 경연 입시를 위해 설치되었던 겸예문제를 기반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던 예문관의 참외를 홍문관의 녹관으로 옮겨 분설(分設)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것은 등극 후 경연을 통해 확인된 성종의 호학적 기질에 의지하여 사대부들이 다시 한 번 오랜 숙원이었던 경연 담당 기구의 복설까지 밀어붙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 성종이 다행히 이러한 사대부들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함으로써 비답을 통해 완전한 경연 제도의 부활을 이루어 줌으로써 세종에 이은 경연과 담당 기구의 관계를 복원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세조의 집현전 폐지와 경연 축소 이후 국왕과 사대부 간 쌓인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종의 홍문관 운영은 세종의 집현전과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성종은 새로 홍문관에 속한 유신(儒臣)의 인사이동과 간쟁, 논핵을 허용하여 세종 말년부터 나타난 경연 기구의 언관화 경향을 받아들이는데, 이로 인해 경연 기구의 고문(顧問)이 실효성을 가지면서 이 경연을 중심으로 정국(政局)이 형성되는 공론 정치(公論 政治)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것은 경연 내 활동이 실제 정치에 가지게 될 영향력의 증대를 의미하며, 경연관의 발언이 간관의 그것처럼 그 무게감을 지니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후 홍문관은 양사와 더불어 삼사(三司)로 불리는 동시에, 예문관, 교서관과 더불어 삼관(三館)으로도 불리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청요(淸要)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경연 담당 기구가 문한 기구인 동시에 언론 기구의 성격을 갖는 새로운 형태로 거듭난 것이다.

성종이 재개한 사가독서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된 홍문관 운영 변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이 제도의 부활은 문신(文臣) 전반의 학문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루어졌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정치적 명분을 앞세워 집현전을 혁파한 세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대부들은 성종과 향후 홍문관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종 때와 달리 유신(儒臣)의 전업을 지지했는데, 이것도 세종 당시 집현전 소속 학사들이 이 문제를 두고 대립했던 입장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달라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성종은 전업을 선택하는 대신 사가독서를 문신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이후 이 정책은 이른바 전경문신제로 확립되었다. 성종의 이런 선택은 세종 말년의 결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일종의 반성적(反省的) 조치인 것이었다.

한편 성종 당시 경연 제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경연관으로 새롭게 추가된 특진관(特進官)이다. 이것은 경연청 내 보직(補職)인 겸관 외에 추가적으로 임명되는 별정직(別定職)으로, 대체로 짧은 임용 연한(1년 이내인 경우가 40여% 정도)을 지니고 있는 경연관직을 이른다. 특히 기존 연구는 그 단기적 임명으로 인해 이 직책이 간관과 대신 사이의 완충적,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사료 상 성종이 경연의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 임명 대상을 무신(武臣)까지 확장한 점으로 볼 때 오히려 제도적 시의성(時宜性)과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특진관의 신설은 경연의 고문 기능과 시사(정무협의) 기능을 동시에 강화시켜 주고, 국초부터 경연이 지향한 교육과 정치의 융합이라는 제도적 의미를 확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조선 전기 경연 제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경연의 활성화[日御經筵]에 대한 사대부들의 강한 의지가 제도 개선과 보완을 이루게 한 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국왕 교육이 그 유래였던 중국에 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은 조선 경연의 주된 특징이며, 그 구성 면에서도 담당 기구를 중심으로 당상과 당하 이하의 겸관(간관과 사관)을 두는 등, 독특하

게 편성하였다. 또한 세종과 성종은 각각 경연 담당 기구를 적극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경연의 비약적인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이루었다. 조선 전기의 이런 노력이 중후기의 국왕 교육과 정국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시기의 제도적 개혁과 성취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심중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이 성리학적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 제도가 기여한 바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다음 세종의 집현전은 조선 경연 제도의 전형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었다. 세종은 정종 이래로 누적되었던 경연 운영에 관한 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즉위 초 집현전을 '복설'하였으며, 이후 그는 호학적 기질을 바탕으로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연에 대한 사대부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다. 특히 세종은 기존의 조회와 상참 외에 윤대라는 국왕 의례를 추가하고 집현전 학사들을 참여시켜 경연과의 연계성을 부여하는 등, 고문(顧問) 기능을 정착시키고, 태종 때 설치된 의례상정소와 함께 예제(禮制)와 경전을 연구하는 상정(詳定)과 이의 출간을 위한 인쇄 등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교육과 정치의 융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만들었다. 이때 형성된 경연 담당 기구의 전형성은 이후 성종이 설치한 홍문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선 경연의 제도적 발전과 안정적 운영은 의외로 중기 이후 성리학적 이해의 성취로도 이어지게 된다. 가령 경연 운영의 명분으로 자주 거론되는 '훈도(薰陶)'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훈도함양(薰陶涵養)을 일컫는 것으로, "단아한 사람[端人]과 바른 선비[正士]가 한 시도 떠나지 않고 임금의 보는 바에 반드시 바른 일[正事]로, 임금이 듣는 바를 반드시 바른 말[正言]로 하여 삿됨이 없도록 함"[382]으로 정의된다. 조선 사대부들은 이런 경연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성학(聖學)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였으며, 그것이 이른바 퇴율(退栗)로 대표되는 16세기 조선 성리학의 등장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이 두 사람이 모두 선조의 국왕 교육을 위해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들 간의 교류와 후학 양성 등으로 그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학통(學統)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상의 여러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다음의 문제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조선 국왕 교육의 다른 한 축인 서연에 관해서도 이번 경우처럼 제도의 발생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 공양왕 때 동궁관을 징원당(澄原堂)과 춘방원(春坊院)로 분리시키는데, 이것은 태종 때 추진된 서연관과 익위사(翊衛司, 호위)의 분리 못지않게 특이한 현상이다. 이후 세조 때 집현전 혁파 후 서연관을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으로 독립시키는데, 이런 제도적 변천 과정에 반드시 일관된 맥락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이 중기 이후 태교부터 아동교육까지 연령별로 다양한 기구(강서원(講書院), 보양청(輔養廳))

382) 『단종실록』 권14 단종 3년(1455년) 음력 4월 17일 : "所謂涵養薰陶者, 使端人正士, 跬步不離, 人主所見必正事, 所聞必正言, 邪僻無自而入矣."

를 두어 교육적 활동의 전문성을 기하는 데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균관입학의(成均館入學儀)의 수행과 같은 조선 세자 교육의 '특수성'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교육학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세자는 스스로 독립된 서연청과 서연관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성균관 입학을 위한 의례를 수행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균관을 다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 '굳이' 이 수행이 왕세자에게 필요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교육학적으로 이를 정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미 왕실 교육 관련 연구에서 이른바 '교육의례(敎育儀禮)'라는 개념이 등장한 만큼, 세자의 의례 수행이 가지는 일반적 측면과 특수한 측면을 교육학적으로도 다뤄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국왕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좋은 개념적 도구(*conceptual tool*)를 제공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조선은 고려의 유제(遺制)로 계승된 것, 세종 이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로 정착된 것과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등 궁중의례와 궁중음악 등, 국왕 본인에게 적용되는 의례들도 상당하다. 만일 이런 국왕의 의례도 교육적 의미를 지닌 교육의례(敎育儀禮)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그 수행만으로 충분히 교육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말한 성균관입학의의 경우처럼 좋은 개념적 도구를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면,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의례 수행의 교육적 가치를 명료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자의 의례 수행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왕실 의례의 수행에 어떤 교육적 기대효과가 있었는지도 연구를 진행한다면, 도덕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관한 동양적, 교육학적 관점에 새로운 시사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조 시대 운영된 규장각(奎章閣)이 과연 집현전, 홍문관 등과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정조 재위기 개편된 이 기구는, 이미 홍문관이 있었음에도 불구, 유사한 성격을 지닌 채 병존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이것은 영・정조 시대부터 사대부 기용 기준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탕평론(蕩平論)과 왕도론(王道論)인 이른바 황극경세론(皇極經世論)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의 단초를 제시한 박세채(朴世采)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수덕(修德)에 의한 치도의 정립', 곧 건극(建極)을 통해 탕평의 방식인 '조제(調劑,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 기용)'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반인 것이다. 더욱이 홍문관이 언론기구(삼사)로서 이미 정치의 중심으로 된 점을 감안할 때, 정조가 세종의 집현전에 버금가는 연구 - 교육 기구의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국왕 교육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언급된 것들에 대한 보완 연구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세자첨사원이다. 설치된 시기로 보면 이것은 세자(문종)의 권력 인수기구이지만, 사료적으로 보면 설치 목적(교육과 잡무의 분리)[383]과 구성(서연관의 참여)[384]의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설치 당시 세자첨사원

의 인원을 궁관(宮官, 동궁의 소속 관료)으로 인식[385]하였지만, 세자시강원을 그 후신으로서 세자 정무기구의 제도적 전범으로 간주[386]한 점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자첨사원의 이런 특징은 세조가 이 기구를 전범으로 세자(예종)에게 세자의사청(世子議事廳)를 두려고 했을 때의 논점과도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세자의 의례청(儀禮廳)을 왜 이와 연계시키려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만큼 세자첨사원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성종 때 신설된 특진관과 중후기의 산림직(山林職) 증설 간 연관성 역시 조금 더 다뤄볼 필요가 있다. 경연관 직제의 확대는 인조 이후 서연관 및 성균관 등의 증설로 이어졌는데, 특진관이 입시가 필요한 주제별로 융통성 있는 운용이 가능한 별정직이었던 점에서, 성종의 이 조치가 이후 다양한 형태의 별정직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조선의 지배층이 대체로 교관(敎官)에 대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처럼 국왕 교육 외로 일반 교관까지 증설한 점은 매우 이례적일 수 있다. '경연관의 증설이 과연 이후 서연관과 교관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조치를 통해 조선 왕조가 기대한 것은 무엇인지' 밝혀보는 것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교육적 활동 참여에 대한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 사이의 괴리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 경연과 관련된 그 밖의 주제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고려에서 경연 및 서연 제도를 최초로 수입한 시점과 정제화(定制化) 과정, 그리고 고려 경연의 특징으로 지목된 동궁관(東宮官) 중심의 운영이 지닌 의미가 그 첫 번째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국왕 교육이 후계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황제국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바, 고려 역시 외왕내제(外王內帝), 즉 대내적으로 황제국을 표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고려의 경우 당송의 제도를 도입하되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서긍의『선화봉사고려도경』을 통해 밝혀진 만큼,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경연이 대체로 11-12세기 즈음 보문각의 설치와 함께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왜 경연의 정제화가 서연의 그것에 비해 늦어졌다고 보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려와 조선의 문한 기구 간 차이를 알기 위해 먼저 고려의 금내학관(禁內學館)들도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도 있다. 고려는 조선에 비해 국왕의 자순(諮詢)에 응할 수 있는 문한 기구를 많이 두었는데, 이 기구들은 소위 '내시(內侍)'로 불리는 국왕의 측근 세력을 위한 조직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왕 교육과 언로(言路)로 정비되었던 조선과 달리, 고려의 경우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아직도 충분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육적 활동을 할 것으로

383)『세종실록』권97 세종 24년(1442년) 음력 7월 28일
384)『세종실록』권97 세종 24년(1442년) 음력 9월 3일
385)『세종실록』권102 세종 25년(1443년) 음력 11월 20일.
386)『숙종실록』권60 숙종 43년(1717년) 음력 7월 25일

추정되는 내시 중 교관(敎官), 학사(學士)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조선과 다른 측면에 관해 나름의 성과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선에 비해 정부 조직을 방만하게 경영하던 특징을 보인 만큼, 고려의 학관(學館) 운영은『주례』에 기초한 개혁을 추구한 성리학자들에게 반면교사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간관과 경연관이 경연의 시사(정무협의)를 통해 시행하는 '간쟁(諫諍)'의 교육학적 의미도 다뤄져야 할 것이다. 간쟁은 사대부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이나, 만일 다수의 견해대로 경연이 교육적 활동의 장이라면, 그 안에서 수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를 가져야 마땅할 것이다. 더욱이 이미 사학 쪽에서 이미 조선 전기 경연의 간쟁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387], 이 역시도 경연이 정치 제도로서 군신 간의 소통을 위한 것임을 전제로 접근하여 다루고 있다. 실제로 국초에 간관의 참여 여부를 두고 국왕과 사대부 간 논쟁이 있었던 만큼, 경연 내 교육적 활동의 특수성 측면에서 이를 다뤄봄으로써 정치 활동으로 여겨지는 일반적인 간쟁과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연 내 간쟁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특수한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향후 이상의 과제들을 다루기 위한 일종의 교두보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경연은 기본적으로 삶을 주제로 한 두 활동의 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조선 성리학의 태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제도였다. 동시에 조선이 국왕 교육 과정인 경연과 서연을 충실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했던 점은 이웃한 중국과 이전 왕조인 고려의 경우를 충분히 반성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이 주장했던 바를 면밀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이상에서 제기한 과제들도 다뤄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교육학적으로 국왕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아직까지 많지 않은 만큼, 최소한 이에 대한 초기 수준의 성과를 내놓아야 후속 연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국왕 교육 연구에 관한 동기 부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387) 대표적으로 권연웅(1991)의「조선 전기 경연의 간쟁론」(『경북사학(구. 복현사림)』제14집, 경북사학회)이 있다.

참 고 문 헌

1. 자료

『大典會通』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舊唐書』
『宋史』
『宋史紀事本末』
『經濟文鑑』
『宣和奉使高麗圖經』
『論語』
『中庸』
『書經』
『詩經』
『大戴禮記』
『周禮』
『禮記』
『春秋孔氏正義』
『朱子語類』
『紀年便攷』
『國朝人物志』

2. 논저

강문식(1998),「집현전 출신 관인의 학문관과 정치관」,『한국사론』39, 서울대 국사학과
강태훈(1997),「경연의 교육학적 접근」,『교육연구』 제18호, 원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_____(1989),「고려시대 군왕교육 연구」, 혜전전문대학논문집 제7집, 혜전대학교
_____(1993),「조선 전기 경연 제도의 발달 과정」,『교육학연구』제31권 제3호, 한국교육학회

고대혁(2012),「『근사록』과 유학의 공부론」, 『동방학』 제22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권연웅(1983),「고려시대의 경연」,『경북사학』제6집, 경북사학회,
_____(1998),「조선전기 경연의 위임론」,『경북사학』제21집, 경북사학회
_____(1991),「조선전기 경연의 간쟁론」,『경북사학』제14집, 경북사학회
김대식(2003),「고려전기 중앙관제의 성립과 육전제의 영향」, 성균관대 사학과 한국사 전공 박사학위논문
김동민(2010), 「『중용』의 '계신공구'와 '신독'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 제63집, 동양철학연구회
김영수(1997),「고려 공민왕대 초반기(공민왕 1-5년)의 개혁정치와 반개혁정치의 대립」, 『한국정치연구』 제6집,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김인규(2018),「『경제육전』의 성립배경과 편찬자 조준의『주례』 인식」,『퇴계학논총』 제32집,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김인호(1998),「고려후기 사대부의 경세론 연구」,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1998),「여말선초 군주 수신론과 대학연의」,『역사와 현실』제29권, 한국역사연구회
김정기(2002),「성종조 홍문관의 정치 행정적 기능」,『한국행정사학회지』제11호, 한국행정사학회
김종명(2007),「세종의 불교신앙과 훈민정음 창제」,『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제6권 제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 학회
김중권(2005),「조선조 문종, 단종 연간 경연에서의 독서토론 고찰」,『서지학연구』제30집, 한국서지학회
김지선(2014),「고려 문종의 즉위와 동궁관 확충」,『한국중세사연구』제40호, 한국중세사학회
김태희(2018),「조선의 유가적 법치 이념」,『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제17권 제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김혜화(1990),「조선세종조 첨사원에 관한 연구」,『성신사학』제8집, 동선사학회
나영훈(2014),「조선전기 도감의 조직과 기능」,『조선시대사학보』제70집, 조선시대사학회,
남지대(1983),「조선 초기의 경연 제도 : 세종·문종 연간을 중심으로」,『한국사론』제9집,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
노관범(2008),「『영조동궁일기』로 보는 왕세제의 서연과 미시정치」,『규장각』제3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문재우(1993),「현대 막료조직과 조선조 집현전과의 비교연구」,『한국행정사학지』제2권 제1호, 한국행정사학회

박재우(2011),「고려의 정치제도와 권력관계 : 통일신라의 정치제도와 비교」,『한국중세사연구』 31집, 한국중세사학회
박현모(2013), 「세조의 국정 운영방식 연구」, 『한국사연구』 제 161호, 한국사연구회,
박홍규・이세형(2006),「태종과 공론정치 : '유신의 교화'」,『한국정치학회보』제40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변은숙(2004),「고려 충목왕대 정치세력의 성격」,『중앙사론』19집,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서범종(2004), 「조선 초기 문신권학정책」, 『한국교육』 제31권 제1호, 한국교육개발원
송영일(1998),「조선 성종조 경연 진강 연구」,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 한문교육전공 박사학위 논문
송재혁(2015),「정도전의 정치체제론 :『서경』의 정치이념과 왕권의 정상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신수정(2012),「고려전기 학사관부와 예종대 학사직 운영」,『역사와 현실』제86권, 한국역사연구회
양지하(2008),「세조 2년(1456) 단종 복위 사건의 성격」, 이화여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동건(2017),「『논사록』을 통해 본 고봉의 도학정신」,『퇴계학논집』 20호, 영남퇴계학연구원
이원택(2014),「유교적 공론장으로서의 경연과 유교지식인의 정체성」,『태동고전연구』 제33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이재철(1973),「집현전의 기능에 대한 연구」,『인문과학』제30권,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임혜련(2018),「조선후기 '대리정치'의 권한 범주와 왕권」,『역사와 담론』제85집, 호서사학회,
유영옥(1994),「집현전의 운영과 사상적 경향」,『부대사학』제18집, 부산대학교 사학회
윤정(2015),『서울학연구』제58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윤훈표(2009),「고려말 개혁정치와 경연제도의 개편」,『사학연구』제93호, 한국사학회
_____(2010),「조선 정종 때의 경연에 대하여」,『한성사학』25집, 한성사학회
장경상(2018),「『대학연의집략』과『국조대학연의』역주」, 고려대학교 고전번역협동과정 고전번역전공 박사논문
장영기(2010), 「조선후기 윤대의 정례화와 궁궐전각 운영」, 『한국학논총』 제34

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정대환(2002),「『입학도설』을 통해 본 권근의 성리학」,『범한철학』제26집, 범한철학회
정두희(1980),「집현전 학사 연구」,『전북사학』제4집, 전북사학회
지두환(1998),「조선 전기 경연관 직제의 변천」,『한국사논총』제20호,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_____(2009),「조선 경연 실시의 의미」,『율곡사상연구』제18집, 율곡연구원
_____(2009),「조선시대 경연관 연구」,『한국학논총』31호,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채상식(1998),「고려·조선시기 불교사 연구현황과 과제」,『한국사론』28, 국사편찬위원회
최선혜(1995),「조선초기 태종대 예문관의 설치와 그 역사적 의의」,『진단학보』제80호, 진단학회
_____(2015),「조선 세조대 강론의 시행과 유신의 성장」,『역사학연구』제57집, 호남사학회
_____(2012),「연산군 시대 선왕 세조와 성종에 대한 기억과 충돌」,『서강인문논총』제35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최승희(1966),「집현전연구(상)」,『역사학보』제32집, 역사학회
_____(1967),「집현전연구(하)」,『역사학보』제33집, 역사학회
_____(1973),「조선 초기 언관에 관한 연구」,『한국사론』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하덕남(2003),「조선 성종대의 경연과 경연관」,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한성주(2012),「조선 세조대 여진 화해사(和解事)에 대한 연구」,『동북아역사논총』38호, 동북아역사재단
한영우(1983),「왕권의 확립과 제도의 완성」,『조선 전기 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한춘순(2016),「단종 대 계유정난과 그 성격」,『한국사연구』제174집, 한국사연구회
함재학(2006),「유교전통 안에서의 입헌주의 담론」,『법철학연구』제9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홍완표, 이진한 등(2000),「고려시대 동궁 4품 이하 관직의 제수와 녹봉」,『한경대학교 논문집』제32집, 한국중세사학회, 국립 한경대학교

3. 역사자료 검색 시스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meaning of Loyal learning in early Chosun Dynasty

Park, SangJin
Major Advisor : Woo, Yong-J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show the educational meaning revealing du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Dynasty loyal learning institution(經筵). The Joseon Dynasty's loyal learning, along with crown prince's, is a representative king education system, which aims to make the king a transcendent and symbolic existence in the Neo-Confucian culture. However, no agreement can be found in existing research on the actual direction of operation of this system. This is because the loyal learning is simultaneously engaged in educational activities and political roles in its institutional form. Moreover, the system has been operated more strictly than China, which is unique to the Joseon Dynasty, and if the system itself is not fully understood, it would be difficult to explain why

Joseon operated king education in this direction. Eventually, it will be necessary to first organize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 and then address the related topics more carefully.

The first characteristic to pay attention about loyal learning is the relevance between the reform during the end of Goryeo and the opening of the Joseon Dynasty. the scholar-gentry class(士大夫) have been steadily striving to refine the loyal learning system, and have prepared for the opening of the country with joining the rising and growing of military power(新興武將勢力) after Wihwado Retreat(威化島回軍). Because of this, Joseon was able to operate an organization related to loyal learn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country, but the short period of system maintenance immediately revealed problems in operation. In other words, while the scholar-gentry class sought to revitalize the loyal learning system by cultivation of mind and human nature, the kings did not respond properly to the requests of the scholar-gentry class, focusing on private interchange. Naturally, to make up for this, discussions were held immediately after the prince's rebellion, but the actual settlement was not reached, and there were two re-arguments after King Taejong's ascension, but this was also nullified. Therefore, such efforts by the scholar-gentry class could be meaningful in that they explored the reform of the system only through discussion.

Instead it was during the King Sejong era to be famous in history. He actively accepted the former discussions and gradually participated in education with the concurrent instructors, participated in evaluating an ancient statute(古制詳定) and allowed private reading(賜暇讀書), greatly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academic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rough this, the loyal educational institution(集賢殿) gained comparative advantage over concurrent instructors in many ways, and eventually became a full-time organization covering the entire education of the king in the second half of his reign. In particular, the loyal educational institution was able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scholar-gentry

class who had originally expected the revitalization and stable operation of the loyal learning course by securing a organization that mainly functions as political and philosophical adviser, researcher - educationalist typically. However, there was a disagreement between King Sejong and scholars regard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King Sejong's demand for full-time life and long-term service by internal promotion caused a new conflict.

Since then, this has led to a serious crisis in the loyal educational system itself. King Sejong tried to solve the problem by establishing a crown prince's assisting agency(世子詹事院) in the reason for King Munjong's vicarious government(代理聽政), but practically caused an opportunity to transform the loyal educational institution into an organization for political advice(臺諫) and liberal-arts(文翰). As a result, the restoration of King Danjong in the early years of King Sejo led to the abolition of the loyal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led to a crisis in the loyal educational system. King Sejo and King Yejong actively defied the demands of the scholar-gentry class by operating them in an arbitrary manner, as well as blocking discussions on its reconstruction, undermining the method of enlightenment that has been pursu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untry. As a result, conflicts within the ruling class triggered various aftereffects and discussions, and continued until King Seongjong separated the liberal-arts institution(藝文館) to establish the loyal educational-political advice institution(弘文館). In short, the king's education system faced a crisis by failing to properly respond to the direction of operation after King Sejong.

loyal educational-political advice institution is a complete institution that solves the accumulated problems. King Seongjong fully accepted to restore the organization along with the system of the loyal education, allowed the impeachment for the official, unlike the scholar-gentry class. In addition, King Seongjong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the topics and revitalization of the

loyal educ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officials in special advice(特進官). As a result, with the trend of public opinion politics(公論政治) taking place, the loyal educational system became the center of the Joseon government, and the loyal educational-political advice institution was completely established as a political adviser. This, on the one hand, contributed to the purpose of operating the fusion of education and politics, while enhancing the status of the loyal educational-political advice institution by making it a incorrupt government official.

.....

Keywords : loyal learning, daily loyal curriculum, the loyal educational institution, the loyal educational-political advice institution, officials in special advice, public opinion politics.

Student Number : 2010-30367